

언론중재

2012년 겨울호

제32권 · 제4호 / 통권 125호

CONTENTS

2012. **Winter** VOL. 125

SECTION 01

2012년도 정기세미나

영상·사진보도와 초상권 침해

07 언론조정·중재 사례를 통해 본 초상권 침해 현황 및 특징 _ 손영준

초상권 침해에 대한 1차적 구제수단으로서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및 중재 사례를 통해 언론사에 의한 초상권 침해 현황과 특징을 탐색하였다.

24 언론보도에 의한 초상권 침해에 관한 법적 검토 _ 김재형

초상권의 개념과 근거, 내용과 보호범위, 위법성, 구제수단 등에 관하여 법원의 판결들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바람직한 보도방법을 고찰하였다.

47 종합토론

SECTION 02

연구논문

57 인터넷 뉴스 소비 시대의 오보 지수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_ 주영기

온라인 저널리즘의 질 저하가 사회 여론 형성 메커니즘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하여 객·주관적 오보의 여부와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지수 개발을 위한 이론적 고찰과 실증적 탐색을 시도하였다.

69 성폭력 관련 보도특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_ 김선남

성폭력 보도에 관한 문제점을 다룬 기존 연구를 토대로 성폭력 보도의 특성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고자 했다.

SECTION 03

언론보도와 인격권

- 84 나쁜 언론과 '반론보도닷컴' _ 이정림

SECTION 04

국제회의의 참석보고서

- 90 유럽 언론평의회(AIPCE) 국제컨퍼런스

SECTION 05

조사보고서

- 124 2012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이용만족도 조사

SECTION 06

언론과 법

- 129 국내동향
132 해외동향
139 해외통신원 보고 _ 송동현 통신원

SECTION 07

자료

- 147 언론조정 · 중재신청 사례
156 국내언론관계판결
181 외국언론관계판결
219 외국신문평의회사례
224 언론법제관련문헌

정기
세미나

영상 · 사진보도와 초상권 침해

- ① 언론조정 · 중재 사례를 통해 본 초상권 침해 현황 및 특징
- ② 언론보도에 의한 초상권 침해에 관한 법적 검토
- ③ 종합토론

INAC

언론조정 · 중재 사례를 통해 본 초상권 침해 현황 및 특징

손영준

서울제3중재부 중재위원,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

I. 서론

영상물이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되는 시대이다. 언론환경은 ‘읽는’ 매체 시대에서 ‘보는’ 매체 시대로 변했다. ‘읽는’ 매체 시대에서는 원고지와 불펜만 있으면 됐다. 그러나 ‘보는’ 매체 시대에는 영상이 중요하다. 그럴듯한 사진과 화면으로 독자와 시청자, 네티즌의 시선을 한순간에 사로잡아야 한다. 요즘 언론은 한 발 더 나아가 독자와 시청자의 눈을 끌 수 있는 ‘스토리(story)’가 있는 ‘실감나는’ 사진이나 화면을 좋아한다.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도 대충 찍지 않는다. 그 사람 얼굴 사진을 통해 어떤 분명한 메시지(message)가 수용자에게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 문제는 언론인들이 사진이나 화면 같은 영상물을 보도함에 있어서 이런 목적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영상을 – 그것

도 적시에 – 확보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실감나는’ 영상물을 그것도 ‘손쉽게’ 구하려다보니, 사람들의 초상이나 용모를 보도함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영상물을 보도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초상권의 문제는 이런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최근의 예를 살펴보자. 조선일보는 2012년 9월 1일자 신문 1면¹⁾에 나주 초등학교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라며 한 젊은이의 사진을 게재했다. 그러나 사진의 주인공은 그 사건과 무관한 사람이었다. 조선일보는 다음날 정정보도를 냈다. 잘못된 보도라며 사과를 했다. 그 젊은이는 흉악범 피의자로 지목돼 신문 1면에 실린 본인의 사진을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이었을까? 오보 소식을 듣고 “미칠 지경이었다”는 그 젊은이가 받은 피해는 어떻게 치유될 수 있을까?²⁾ 그 젊은이가 조

1) 조선일보 2012년 9월 1일자, “병든 사회가 아이를 범했다”

2) 노컷뉴스 2012년 9월 1일자, “무고한 시민 얼굴을 고종석으로... 조선일보 대형오보”

선일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지는 알 수 없다.

조선일보를 포함해 많은 신문들은 다음날 피의자 고모씨 사진을 일제히 게재했다. 이번에는 오보가 아니었다. 피의자 스스로 범행을 자백했다고 한다. 그러나 각 언론사가 보도한 피의자 사진은 시각적으로 큰 차이가 있었다. 어떤 신문사는 피의자 얼굴을 식별하기 어려운 사진을 실었으며, 어떤 신문사는 자세히 보면 누군지 알 수 있는 사진을 실었다. 이런 차이는 범죄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한 입장차에서 비롯된 것이다. 피의자가 누군지 정확히 분간하기 어려운 사진을 실은 언론사는 초상권이 범죄피의자를 포함해 모든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적 인물이 아닌 형사사건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피의자가 누군지 알 수 있는 사진을 게재한 언론사는 국민의 알 권리(right to know)를 충족시키고 유사 범죄의 예방을 위해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이에 대해 어떤 법률적 판단을 제시할 재간 이 없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 공분(公憤)에 찬 여론의 압력을 내세워 피의자 초상을 공개하는 것이 과연 법치(法治)에 부합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또 여론의 향배에 따라 사진 공개여부를 정하는 것이 정의로운 방식인지도 의문이다. 피의자 상태에서 초상과 성명을 공개한다면, 피의자를 공인(公人)으로 간주한다는 것인지도 궁금하다.

저널리즘의 관점에서 보면, 범죄피의자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얼굴 공개는 언론 윤리문제에 해당된다.³⁾ 사인(私人)의 초상을 동의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개인의 인격권 침해'와 '공적 이익의 확보'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사안이다. 목적이 숭고하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은 정의로운 것이며 또 합리화될 수 있는가? 나주 피의자 얼굴 공개를 둘러싼 오보 해프닝과 뒤이은 후속 보도는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초상권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권리이다. 즉 사람이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동의 없이 촬영돼 공표되지 아니하고(문재완, 2008; 유일상, 2000) 또한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권리(박경신, 2008)이다. 초상권은 헌법 10조에 명시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조항과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조항에 의거해 정당한 인격적 권리로 인정되고 있다.⁴⁾

초상권 침해는 그림이나 광고, 서적 등을 통해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부분 대중매체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언론보도를 통해 초상권 침해가 발생하는 구조적인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가 크다고 생각한다.

첫째,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에 기초한 언론의 취재 보도 관행이다. 언론은 공적인 업무수행이나 정책 집행, 공적 이익과 관련된 활동, 국민적 관심을 받는 이슈 등이 뉴스 가치(news value)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취재대상에게 게재여부를 일일이 물어보지 않고

3) 우리 언론은 흉악범 얼굴이나 이름을 보도하는데 있어서 각 언론사별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사건의 비중과 여론의 반응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언론관련 규정(신문윤리강령 5조 '개인의 명예존중과 사생활 보호'; 신문윤리실천요강 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 규정 19조 '사생활 보호', 20조 '명예훼손의 금지', 23조 '형사 피의자 무죄추정 원칙' 등)도 범죄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해 원론적 준칙을 적시하고 있지만, 구체적 판단은 언론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흉악범 얼굴 공개는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때 일부 언론이 '알 권리와 범죄 예방'이라는 공익(public interest)을 명분으로 사진을 게재하면서 시작했다. 몇몇 언론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의자 인권보호차원에서 사인(私人)의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됐더라도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근에는 언론사간의 보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대부분의 신문 방송이 흉악범의 경우에는 초상을 공개하는 추세이다. 미디어오늘, 2012년 9월 12일자 "성폭행 사건 언론사별 보도준칙 만들어야."

4) 헌법 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17조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보도하는 관행을 가지고 있다. 공적인물의 경우에는 초상권이 크게 논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문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워 개인(私人)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경우이다. 언론인이나 언론사는 알 권리의 범위에 대해 가급적 확대 해석하는 경향인데 반해, 법원의 판단은 알 권리의 범위와 대상을 상대적으로 축소 해석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매체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초상권 침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같은 개인 매체 이용이 활발해지고 또 영상매체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다른 사람의 모습을 허락받지 않고 – 또는 허락 받은 범위를 넘어서 – 사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동시에 인터넷 블로그나 스마트폰을 통해 영상물이 게재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당사자가 초상권 침해 여부를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⁹⁾

언론의 초상권 침해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는 공적 제도는 언론중재위원회와 법원이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은 18조 2항에서, “피해자는 언론보도 등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본 글은 초상권의 1차적 구제수단으로서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및 중재 사례를 통해, 언론기관에 의한 초상권 침해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초상권 침해 관련 언론조정·중재 현황 및 특징

1. 전체 현황

언론중재위원회는 방송이나 신문, 통신 그리고 인터넷 매체의 보도를 통해서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조정신청 또는 중재신청을 접수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가. 조정

언론중재위는 법정기구로 설립된 1981년부터 2011년까지 31년 동안 모두 18,220건의 조정사건을 처리

〈표 1〉 연도별 침해 유형별 조정 현황

단위 : 건수 (%)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명예훼손	827 (93.7)	1,004 (92.4)	953 (91.4)	899 (94.2)	1,457 (92.6)	1,995 (90.5)	2,030 (95.6)	9,165 (92.9)
초상권 침해	15 (1.7)	48 (4.4)	53 (5.1)	29 (3.0)	56 (3.6)	109 (4.9)	39 (1.8)	349 (3.5)
신용훼손	23 (2.6)	17 (1.6)	2 (0.2)	6 (0.6)	6 (0.4)	20 (0.9)	8 (0.4)	82 (0.8)
성명권 침해	14 (1.6)	1 (0.1)	3 (0.3)	4 (0.4)	1 (0.1)	4 (0.2)	22 (1.0)	49 (0.5)
음성권 침해	2 (0.2)	7 (0.6)	12 (1.2)	10 (1.0)	5 (0.3)	3 (0.1)	—	39 (0.4)
프라이버시 침해	—	4 (0.4)	11 (1.1)	3 (0.3)	18 (1.1)	20 (0.9)	24 (1.1)	80 (0.8)
기타	2 (0.2)	6 (0.6)	9 (0.9)	3 (0.3)	30 (1.9)	54 (2.4)	1 (0.0)	105 (1.1)
계	883 (100.0)	1,087 (100.0)	1,043 (100.0)	954 (100.0)	1,573 (100.0)	2,205 (100.0)	2,124 (100.0)	9,869 (100.0)

*출처: 언론중재위원회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연간보고서

5)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을 언론 활동으로 볼 수 있을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팔로어가 148만 명이라는 ‘트위터대통령’ 소셜가 이외수씨가 다른 사람의 영상물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려 그의 초상권을 결과적으로 침해했다고 하자. 이런 경우는 트위터라는 개인간 미디어를 통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중을 상대로 한 언론행위(mass communication)의 효과가 나타난 사례로 볼 수 있다.

했다.⁶⁾ <표 1>에 제시된 것처럼, 개인의 인격권과 관련된 초상권이나 성명권, 음성권,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한 조정이 처리된 2005년 이후 조정사건 9,869건을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명예훼손으로 인한 청구가 9,165건으로 전체의 92.9%를 차지했다. 명예훼손 사건을 제외하면 초상권 침해에 대한 조정이 349건(3.5%)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한 해 평균 49.8건 정도의 초상권 침해 청구가 있었다.

연도별로 보면, 2005년에는 15건에 불과했으나 2006년 48건, 2007년 53건으로 점차 늘어났다. 2008년에 29건으로 줄었다가 2009년, 2010년에는 각각 56건, 109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인터넷 포털 뉴스가 2009년부터 조정대상으로 편입되면서 생긴 현상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지난해 2011년에는 다시 39건으로 줄어들었다.

<표 1>의 초상권 침해 조정 현황에 나타난 특징적인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계상으로 보면, 전체 조정 사건에서 초상권 침해 청구 비율(3.5%)이 상대적으로 낮다. 명예훼손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이를 언론보도에서 초상권 침해 사례가 많지 않다거나 또는 중재위원회 심리에서 초상권 관련 사항이 그렇게 많이 다뤄지지 않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본다.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청구 사건의 특성이 초상권 침해를 포함해 복합적 성격을 띠는 경우에 피해자들이 조정과 중재를 신청함에 있어서 사건의 주된 피해 유형을 명예훼손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초상권 침해의 여지가 있더라도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받은 권리가 복합적·다면적 성격을 갖는 경우, 포괄적 권리 침해인 명예훼손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난 7년

간 초상권 침해로 청구된 349건은 그 사안의 주된 침해가 명백하게 초상권에 해당되는 경우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본다.

둘째, 초상권 청구가 2010년을 정점으로 2011년에 대폭 감소했다.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어떤 장기적인 추세를 반영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초상권과 관련해, 언론계 내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먼저 언론사나 언론인 측면에서 보면, 메이저 언론사를 중심으로 초상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이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정정보도 가능성을 더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방송은 초상권 침해를 고려해, 사람의 얼굴이 식별되지 않도록 모자이크 처리하는 경우가 확실히 많아졌다. 물론 공중파 TV나 메이저 신문에서 이런 변화가 감지된다고 해서 초상권 침해 소지가 완전히 사라졌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언론사간의 영상특종 경쟁이 치열하고 또 단순한 과실 등의 이유로 초상권 침해 가능성이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동시에 신생 인터넷 언론 가운데는 초상권에 대한 편집상의 고려가 충분하지 못한 곳이 적지 않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나. 중재

2005년에 중재 기능이 도입된 후⁷⁾ 2011년까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처리한 중재사건은 모두 332건으로 나타났다. <표 2>에 제시된 연도별 침해 유형별 중재 현황에 따르면, 중재의 경우에도 조정 심리와 비슷하게 전체 침해 사건의 88.6%가 명예훼손사건이다. 초상권 침해 사례는 전체 중재건수의 9.3%로 나타나

6) 언론중재위원회 2005년 연간보고서, 2006년 연간보고서, 2007년 연간보고서, 2008년 연간보고서, 2009년 연간보고서, 2010년 연간보고서, 2011년 연간보고서, <http://www.pac.or.kr/html/about/ab_report_list.asp> 언론중재위원회 30년사 (2012) <http://www.pac.or.kr/html/data/dt_30y.asp>

7) 언론중재위원회는 1981년 언론중재제도 도입 때부터 '중재'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내용면에서 보면 현재의 '조정' 기능에 가까운 진정한 '중재' 기능은 2005년 이후 도입되었다고 본다.

〈표 2〉 연도별 침해 유형별 중재 현황

단위 : 건수 (%)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명예훼손		3 (42.9)		4 (40.0)	99 (89.2)	76 (98.7)	112 (99.1)	294 (88.6)
초상권 침해		3 (42.9)	12 (85.7)	5 (50.0)	10 (9.0)		1 (0.9)	31 (9.3)
신용훼손								
성명권 침해		1 (14.3)						1 (0.3)
음성권 침해				1 (10.0)	2 (1.8)			3 (0.9)
프라이버시 침해			2 (14.3)					2 (0.6)
기타						1 (1.3)		1 (0.3)
계	0 (100.0)	7 (100.0)	14 (100.0)	10 (100.0)	111 (100.0)	77 (100.0)	113 (100.0)	332 (100.0)

출처 : 언론중재위원회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연간보고서

조정(3.5%)보다는 비율이 높다. 신용훼손에 대해서는 한 건의 신청도 없었다.

2. 초상권 침해 관련 언론조정의 세부 현황

초상권 침해 청구사건의 특징을 가. 초상권 침해 유형, 나. 청구 유형, 다. 손해배상 조정액, 라. 매체 유형, 마. 처리결과와 유형별로 나눠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⁸⁾

가. 초상권 침해 유형

초상권이 침해되는 유형은 세 가지 경우로 나뉘볼 수 있다. 첫째,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초상 사진이

나 화면을 사용한 경우이다.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사용한 경우, 타인이 제공한 초상사진을 동의 없이 사용한 경우, 다른 매체가 게재한 초상사진을 복제하여 무단 전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둘째, 본인의 동의를 받아 촬영했지만 그 동意的 범위를 넘어서 사용하는 경우이다. 셋째, 보관중인 자료사진이나 영상 파일을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이다 (이승선, 김연식, 2009).

〈표 3〉에 제시된 것처럼,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초상권 침해 조정 사건 가운데 68.5%는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사진이나 화면을 사용한 경우’이다. 전체 초상권 침해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있지만, 절대 사건 수는 적지 않다. 두 번째 유형인 ‘동의를 받았지만 허락한 범위를 넘어서 사용한 경우’

〈표 3〉 초상권 침해 유형

단위 : 건수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동의 없이 무단 사용	44 (83.0)	26 (89.7)	37 (66.1)	63 (57.8)	170 (68.5)
동意的 범위를 벗어나 사용	7 (13.2)	2 (6.9)	10 (17.9)	36 (33.0)	55 (22.2)
보도내용과 무관한 자료화면으로 이용			9 (14.3)	2 (1.8)	11 (4.4)
기타	2 (3.8)	1 (3.4)	1 (1.8)	8 (7.3)	12 (4.8)
합계	53 (100.0)	29 (100.0)	57 (100.0)	109 (100.0)	248 (100.0)

*2007년 이전과 2011년은 분석하지 못하였음.

8) 언론중재의 경우 전체 건수가 31건에 지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에 대한 초상권 청구는 전체의 22.2%를 차지한다. 이 유형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이다.

나. 청구 유형별 초상권 조정 현황

〈표 4〉에 제시된 것처럼,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초상권 침해로 조정된 349건 가운데 손해배상이 청구된 경우는 305건으로 전체의 87.4%를 차지했다. 정정보도가 신청된 경우는 11.5%(40건)였으며, 반론보도는 1.1%(4건)에 불과했다. 청구 유형별 조정 현황과 관련해 특기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손해배상청구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2005년의 경우에는 53%에 그쳤지만, 2006년부터는 90% 안팎의 손해배상청구 비율을 보이고 있다. 2011년에는 전체 조정 건수 가운데 92.3%를 차지했다. 이런 결과는 피해자들이 초상권 침해 구제방안으로 금전적 손해배상을 선호함을 보여준다. 둘째, 정정보도 혹은 반론보도를 신청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정정보도 신청의 경우 2005년 전체 조정 건수의 26.7%에 달했지만 점차 감소해

2011년에는 7.7%에 그쳤다.

손해배상이 구제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를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았다. 〈표 5〉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침해 유형별 손해배상청구 비율을 나타낸다. 손해배상청구 비율은 전체 조정 건수 대비 손해배상청구 건수이다. 음성권 침해의 경우가 89.7%로 손해배상청구 비율이 가장 높고, 프라이버시권 침해가 87.5%, 초상권 침해가 87.4%, 성명권 침해가 79.6%로 나타났다. 초상권은 음성권, 프라이버시권, 성명권과 함께, 권리 구제 방안으로 손해배상이 많이 활용되는 인격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명예훼손은 전체 조정 9,165건 가운데 손해배상이 청구된 경우가 31.7%에 그쳤으며, 신용훼손도 전체 82건 가운데 20건(24.4%)밖에 되지 않았다.

다. 손해배상 조정액별 초상권 침해 관련 조정 현황

〈표 6〉은 초상권 침해 청구가 손해배상을 통해 조정된 경우의 조정 금액을 연도별로 정리한 결과이다.

〈표 4〉 청구 유형별 조정 현황

단위 : 건수 (%)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정정보도	4(26.7)	6(12.5)	5(9.4)	5(17.2)	5(8.9)	12(11.0)	3(7.7)	40(11.5)
반론보도	3(20.0)		1(1.9)					4(1.1)
손해배상	8(53.3)	42(87.5)	47(88.7)	24(82.8)	51(91.1)	97(89.0)	36(92.3)	305(87.4)
계 (%)	15(100.0)	48(100.0)	53(100.0)	29(100.0)	56(100.0)	109(100.0)	39(100.0)	349(100.0)

*출처 : 언론중재위원회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연간보고서

〈표 5〉 침해 유형별 손해배상청구 비율

	2005년~2011년 전체 조정 건수	2005년~2011년 손해배상청구 건수	손해배상청구 비율(%)
명예훼손	9,165	2,906	31.7
초상권 침해	349	305	87.4
신용훼손	82	20	24.4
성명권 침해	49	39	79.6
음성권 침해	39	35	89.7
프라이버시 침해	80	70	87.5
기타	105	31	29.5
계	9,869	3,406	34.5

*출처 : 언론중재위원회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연간보고서

손해배상 조정액을 보면, '100만 원 이하'가 전체의 47.5%로 가장 많았으며, '101만 원~200만 원'과 '201만 원~300만 원'은 각각 24.6%, 16.4%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301만 원~400만 원'은 3.3%, '401만 원~500만 원'은 4.9%, 그리고 '501만 원 이상'은 3.3%에 불과했다.

손해배상을 통해 조정이 된 경우에, 전체의 88.5%의 사례에서 조정액이 300만 원 이하였다. 이 정도 수준의 조정액이 초상권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필요 충분한 금액인지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⁹⁾

라. 매체 유형별 초상권 침해 관련 조정 현황

〈표 7〉은 초상권 조정 현황을 매체 유형별로 정리한 것이다. 먼저 방송이 전체의 39.0%로 초상권 조정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인터넷뉴스서비스는 24.1%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일간신문과 인터넷신문은 각각 12.9%와 12.0%로 나타났다. 포털사이트 등의 인터넷 뉴스서비스는 2009년부터 언론중재위 조정대상에 포함되었지만, 초상권 조정 사례 수는 방송 다음으로 많다는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신문의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 조정 사례가 감소하고 있다.

〈표 6〉 초상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 조정액

단위 : 건수 (%)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100만 원 이하		13 (59.1)			4 (30.8)	12 (75.0)	29 (47.5)
100~200만 원		6 (27.3)	3 (50.0)	2 (50.0)	3 (23.1)	1 (6.3)	15 (24.6)
201~300만 원		2 (9.1)		2 (50.0)	3 (23.1)	3 (18.8)	10 (16.4)
301~400만 원		1 (4.5)			1 (7.7)		2 (3.3)
401~500만 원			1 (16.7)		2 (15.4)		3 (4.9)
501만 원 이상			2 (33.3)				2 (3.3)
합계	0 (100.0)	22 (100.0)	6 (100.0)	4 (100.0)	13 (100.0)	16 (100.0)	61 (100.0)

*2011년은 자료 미비로 집계되지 못했음

〈표 7〉 매체 유형별 초상권 조정 현황

단위 : 건수 (%)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일간신문	1 (6.7)	15 (31.3)	10 (18.9)	4 (13.8)	5 (8.9)	7 (6.4)	3 (7.7)	45 (12.9)
주간신문		4 (8.3)	5 (9.4)	2 (6.9)	1 (1.8)	2 (1.8)		14 (4.0)
방송	10 (66.7)	21 (43.8)	27 (50.9)	14 (48.3)	29 (51.8)	14 (12.8)	21 (53.8)	136 (39.0)
케이블TV	5 (33.3)							5 (1.4)
잡지		5 (10.4)	1 (1.9)		3 (5.4)			9 (2.6)
뉴스통신		1 (2.1)	6 (11.3)	3 (10.3)		2 (1.8)	1 (2.6)	13 (3.7)
인터넷신문		2 (4.2)	4 (7.5)	5 (17.2)	7 (12.5)	19 (17.4)	5 (12.8)	42 (12.0)
인터넷뉴스서비스					11 (19.6)	65 (59.6)	8 (20.5)	84 (24.1)
기타				1 (3.4)			1 (2.6)	2 (0.6)
계 (%)	15 (100.0)	48 (100.0)	53 (100.0)	29 (100.0)	56 (100.0)	109 (100.0)	39 (100.0)	349 (100.0)

*인터넷뉴스서비스는 2009년부터 조정대상이 됨

9)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손해배상청구심리는 법원에 비해 손해배상 합의 비율이 낮고 또 손해배상 금액도 적다는 특징이 있다(언론중재위 보도자료, 2011. 7. 22.). 즉 언론중재위에 신청된 모든 손해배상청구사건 가운데 손해배상이 실제 이뤄진 사건의 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에는 12.7%, 2009년 7.2%, 2010년 5.6%에 그쳤다. 그러나 법원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각각 52.1%, 47.0%, 26.8%로 조사됐다. 또 언론중재위와 법원의 손해배상 금액(평균값)은 언론중재위의 경우 2008년 333만원, 2009년 359만원, 2010년 274만원이었으며, 법원의 인용액은 각각 2,340만원, 2,348만원, 2,424만원이었다. 언론중재위와 법원의 건당 손해배상 금액을 단순 비교하면 언론중재위를 통한 손해배상액은 법원의 14.2%(2008년), 15.2%(2009년), 11.3%(2010년) 수준에 해당한다.

마. 초상권 침해 관련 처리 결과

〈표 8〉에 제시된 것처럼, 초상권 침해 조정은 신청인 취하로 해결되는 경우가 45.8%로 가장 많았다.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33.8%로 전체 청구 가운데 1/3 정도를 차지했다. 조정성립 비율은 2006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직권으로 조정이 결정된 경우와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는 각각 7.4%에 달했다. 기각된 경우도 5.4%를 차지했다. 기각은 주로 언론보도와 초상권 침해 사이의 관련성이 낮은 경우에 이뤄진 것이다.

초상권 침해 처리 결과와 관련해 특이한 점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취하가 많다는 것이다. 〈표 8〉을 보면 신청인이 취하한 경우가 160건인데, 이 중 76.9%에 달하는 123건(표에서 []로 표시된 부분)은 신청인이 언론기관과 합의를 한 뒤 자발적으로 취하한 것이다. 합의 후 취하는 대개 신청인이 조정과정에서 피신청인측과 정정보도, 반론보도, 사과, 기사제재, 손해배상 등의 방법을 통해 피해구제를 약속받거나 피해구제방안이 이행돼 조정신청을 스스로 취소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취하를 했지만 사실상 피해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전체 취하 160건 중 23.1%인 37건)와 합의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은 경우는 구분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합의 후 취하는 사실상 조정에 갈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8〉 처리결과 유형별 조정 현황

단위 : 건수 (%)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조정성립	3(20.0)	27(56.3)	21(39.6)	11(37.9)	20(35.7)	27(24.8)	9(23.1)	118(33.8)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1(6.7)	9(18.8)	5(9.4)	1(3.4)	5(8.9)	1(0.9)	4(10.3)	26(7.4)
조정 불성립결정	1(6.7)	5(10.4)	2(3.8)	3(10.3)	2(3.6)	10(9.2)	3(7.7)	26(7.4)
기각	3(20.0)			1(3.4)		12(11.0)	3(7.7)	19(5.4)
취하	7[5](46.7)	7[3](14.6)	25[11](47.2)	13[10](44.8)	29[25](51.8)	59[54](54.1)	20[15](51.3)	160[123](45.8)
계 (%)	15(100.0)	48(100.0)	53(100.0)	29(100.0)	56(100.0)	109(100.0)	39(100.0)	349(100.0)

*[] 안의 숫자는 심리 이전이나 진행 중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피해구제(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등)에 대해 합의하거나 구제가 이뤄져 신청을 취하한 건수임

Ⅲ. 초상권 침해 관련 언론조정 · 중재 사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 중재를 통해 초상권 침해가 문제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최근 발생한 7건의 케이스를 무작위로 선정한 뒤, 1. 본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보도된 경우, 2. 본인의 동의 범위를 벗어나 보도된 경우, 3. 보도내용과 무관하게 자료화면으로 이용된 경우로 나눠서 살펴본다.

1. 본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보도된 경우

가. 2011서울조정893 손배청구 : 미혼남녀 미팅이벤트에 참여한 신청인의 초상과 음성을 동의 없이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방송)는 2011년 7월 서울시 강남구청 미혼남녀 미팅 행사를 보도하면서 여성 A씨의 초상과 음성을 모자이크 없이 방영했다. 방송 후 A씨는 “도시의 풍토병이 돼 버린 노처녀들”이라는 타이틀로 방송돼 수치심을 느꼈고, 자신의 허락 없이 초상과 음성을 보도했으며, 또 자신이 소개팅 행사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주변에 알려져 피해를 입었다며 2,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심리결과, 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가 이뤄져 조

정이 성립되었다.



나. 2010서울조정1590 손해청구 : 휘발유 값 폭등 관련 사진에 주유원의 초상을 동의 없이 실어 피해를 입었다.

○○신문은 2010년 12월 휘발유 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주유소에서 주유업무를 하던 신청인 B씨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계약사에 전송했다. 신청인은 자신이 주유소에서 일하고 있을 당시 사진촬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지 못했고, 사진이 신문에 보도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 바도 없으며, 사진이 이를 전송받은 각종 언론매체에 게재되어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신청 후, ○○신문은 B씨에게 100만 원을 지급했고, B씨는 조정을 취하였다.



다. 2011서울조정1115 손해청구 : TV프로그램 출연자에 대한 인터넷 비난글을 기사화 하면서 당사자 사진을 실었다.

직장인 여성 C씨는 ○○○(방송)가 2011년 주최한 남녀단체미팅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또래 남녀 출연자와 어울리며 색다른 경험을 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나서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TV 프로그램을 본 누군가가 방송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녀의 사적인 남녀관계를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으며, 이후 악플이 달리기 시작했다. 인터넷 매체 ‘△△뉴스’는 이런 내용을 기사화하면서 C씨의 사진을 게재했다. C씨는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심리결과, 초상권 침해가 인정돼 손해배상액 150만 원에서 조정이 성립되었다. C씨는 인터넷 매체 ‘△△뉴스’외에도 이 사건을 보도한 다른 인터넷 언론사 6개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해, 각각 조정이 이뤄졌다.

2. 본인의 동의를 벗어나 초상이 보도된 경우

가. 2011서울조정1031 손해청구 : 카드사 ‘리볼빙 제도’의 문제점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동의 범위를 넘어 초상 및 실명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방송)는 카드회사 리볼빙 시스템의 문제점을 보도하면서, 리볼빙 서비스 이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신청인 D씨의 인터뷰를 방송했다. 방송 후 D씨는 음성만 노출하는 조건으로 인터뷰에 응했는데 모자이크 되지 않은 얼굴과 함께 실명, 나이, 영업장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어 피해를 입었다며,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가 이뤄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2011서울소정697 손배청구 : 아파트 부실시공을 비난하는 모습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방송)는 2011년 서울 은평 뉴타운 부실공사 보도에서, 아파트 거주민 E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방송했다. E씨는 보도할 경우에 모자이크 처리를 해달라고 여러 번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초상이 그대로 노출되었고, 인터뷰 장면도 카메라가 찍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촬영되어 초상권이 침해당했다며 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담당 중재부는 취재 당시 동영상 자료에 의하면 모자이크 처리를 전제로 신청인이 소극적으로 촬영에 응하였다기보다는 오히려 아파트의 하자로 인한 피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촬영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적극적으로 인터뷰에 응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3. 보도내용과 무관하게 자료화면으로 이용된 경우

가. 2011서울조정658·659 정정·손배청구: 보도와 무관한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자료화면으로 사용했다.

○○○(방송)는 2011년 5월 보도에서 20만 원이면 결혼 비용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알뜰 결혼 관련 소식을 전했다. 이 과정에서 혼인 예복을 입고 촬영한 신청인 F씨의 초상을 동의 없이 자료화면으로 보도했다. 신청인은 방송에서 소개된 알뜰 결혼 방법으로 결혼하지 않았으며, 신청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신청인의 화면을 방송해 주변 사람들로 부터 싸구려 결혼식을 했냐는 문의를 받게 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와 500만 원

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심리결과, 정 정보도 게재와 함께 3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양 당사자는 결정에 동의했다.



나. 2010대구조정2 손배청구 : 대게 불법 포획 기사를 보도하면서 2년 전 촬영 영상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했다.

○○○(방송)는 2010년 동해안 대개자원의 고갈원인이 불법 어획 때문이라는 보도를 하면서 어업지도선이 불법조업을 하던 어선을 단속하는 영상을 자료 화면으로 보냈다. 그 자료화면은 2008년 촬영된 것이었다. 방송 후 화면에 얼굴이 잡힌 선원 G씨는 2008년 불법조업사건으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는데 2년 뒤 그 화면이 또 다시 방송되어 초상권침해를 받았으며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심리결과, 방송사가 피신청인에게 25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뤄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IV. 요약 및 결론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사례를 통해 살펴본
초상권 침해 현황과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된 9,869건을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명예훼손이 92.9%를 차지하며, 초상권 침해 청구는 349건으로 3.5%에 불과하다. 초상권 침해 사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지만, 초상권과 다른 권리가 복합적으로 논의될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청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언론보도를 통한 초상권 침해 가능성은 여전히 중요한 법적 이슈이다.

② 초상권 침해로 인한 조정은 한 해 평균 49.8건 꼴로 이루어졌다. 2009년부터 인터넷 포털 기사가 조정대상으로 편입되면서 초상권 조정 사례가 2009년, 2010년 증가하다가 2011년에는 다시 감소했다. 초상권 침해에 대한 언론의 경각심이 높아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 방송은 초상권 침해 우려가 있을 경우에 사람 얼굴을 모자이크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터넷 언론은 초상권에 대한 고려가 아직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③ 초상권 침해의 68.5%는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사진이나 화면을 사용한 경우였다. 동의는 받았지만, 당사자가 허락한 범위를 넘어서 사용한 경우는 22.2%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자료화면 등을 통해 초상권을 침해한 경우다.

④ 청구 유형별 조정 현황을 보면, 손해배상이 청구된 경우가 87.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정보도가 신청된 경우는 11.5%였으며, 반론보도는 1.1%에 불과했다. 이는 초상권 침해를 청구하는 사람들이 피해 구제방안으로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선호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정정보도와 반론보도가 초상권 침해로 인한 권리구제에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⑤ 손해배상이 활용되는 비율을 청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초상권과 음성권, 프라이버시권, 성명권 청구 조정사건에서는 손해배상청구 비율이 80~90%를

차지했다. 그러나 명예훼손에서는 그 비율이 31.7%에 불과했고 신용훼손의 경우에도 24.4%에 그쳤다.

⑥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조정액은 전체 손해배상 조정의 88.5%가 배상액 300만 원 이하에서 정해졌다. 이 정도의 금액이 피해 구제에 적절한지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⑦ 초상권 조정 사례를 매체별로 살펴보면, 방송이 39.0%로 가장 많고 인터넷뉴스서비스가 24.1%로 그 다음이다. 일간신문과 인터넷신문은 각각 12.9%와 12.0%를 차지했다. 신문의 초상권 침해 조정사례는 감소하고 있다.

⑧ 처리결과별 조정 현황은 신청인 취하가 45.8%로 가장 많았다. 조정성립은 33.8%,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및 조정 불성립은 각각 7.4%였다. 취하 사건 가운데 3/4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취하였다. 이는 신청인이 조정과정에서 피신청인과 정정보도, 반론보도, 사과, 기사게재, 손해배상 등의 방법을 통해 피해 구제를 약속받거나 피해구제방안이 이행됐을 경우이다. 취하의 경우에 합의를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은 경우와 아예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⑨ 초상권 관련 조정 사례 7건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단순 과실로 인해 일어난 것이다. 이는 한국의 언론인들이 초상권 보호와 관련해 어떤 ‘분명한’ 인식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동의 받지 않고’ 사용하는 초상이 당사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⑩ 언론인, 언론 관행, 언론제도 및 언론환경 측면에서 원인을 진단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언론인의 문제. 우리 언론인들은 취재 보도와 관련한 법적 문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학습할 기회가 많지 않다.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선배들로부터 도제식으로 배운다. 언론인 훈련 과정은 여전히 전근대적이다. 취재보도와 관련한 기초 법지식이 취약하다. 대

학의 언론정보학과 등에서 언론법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런 전공 수업은 입사 후에는 큰 도움이 되겠지만, 기자로 뽑히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된다. 따라서 초상권 같은 문제는 저널리스트가 된 다음에 현장에서 부딪치며 배우는 것이 우리의 언론 현실이다. 취재보도와 관련한 법적 쟁점들을 연수나 강의 기회를 통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언론 관행의 문제. 언론 관행은 언론인들이 저널리즘과 관련해 어떤 판단이나 결정을 할 때 중요한 준거기준이 된다. 초상권과 관련해, 법적 자문을 구하기보다는 “그동안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었다. 동료나 타사 기자도 다 이렇게 하는데 큰 문제 있을까”하는 관행이 작동하고 있다. 뉴스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기사는 거두절미하고 보도한다. 어떤 사물과 이슈가 갖는 복잡한 특성도 고려하겠지만, 가급적 업계 내의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에 따라 단순화시켜 관성적으로 보도한다. 세상은 21세기로 넘어온 지 오래됐는데, 부끄럽게도 우리 언론의 취재 제작 관행은 20세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관행은 보수나 진보 언론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 또 방송도 신문에 못지않다.

셋째, 언론 제도·환경의 문제(언론 매체의 증가, 언론의 경영상 압박, 시민의 권리의식 강화). 인터넷과 모바일의 확산으로 언론 매체가 늘어나고 있다. 동시에 단편적이고 감성적인 영상물도 많아지고 있다. 초상권 같은 저널리즘의 ABC를 진지하게 고민할 겨를이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 뉴스 정보가 너무 많다고 보니, 저널리즘 원칙을 지킨 뉴스가 시장에서 별로 대접받지 못한다. 예전만 못해졌다. 매체의 증가는 개별 언론사에게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작동한다. 경영상 압박은 제작비 절감으로 이어지고 또 저널리스트를 ‘저널리즘 원리를 이해하는 비즈니스맨’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경영 압박을 받는 언론사일수록 언론인의 문제, 언론 관행의 문제를 찬찬히 살펴볼 여유가 없다.

과거 뉴스 소비자였던 일반 시민들은 권리의식을 강화해 더 엄격한 잣대로 언론을 평가하고 있다.

언론인의 문제, 언론 관행의 문제, 언론 제도·환경의 문제는 상호 부정적인 부머랭 효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품격 있는 저널리즘’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노력은 잘 보이지 않는다.

⑪ 다시 서론에서 논의한 나주 성폭행 사건 보도로 돌아가 보자. 오보로 판명난 최초의 그 젊은이가 조선 일보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로 문제제기하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라면 명백한 오보이기에 적절한 피해 배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의자 고모씨가 자신의 사진을 게재한 언론사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 그는 반사회적 행위를 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초상권 침해에 대해 적극적인 구제를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만의 하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심리를 요청해 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다.

참고문헌

- 문재완 (2008). 언론법. 서울: 늘봄.
- 박정신 (2008). “순수한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은 가치인가, 규범인가”. 『창작과 권리』, 51, p.4.
- 유일상 (2000). 언론법제론, 박영사.
- 이승선, 김연식 (2009). 범죄보도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와 문제점. 『사회과학연구』, 19, p.65~94.
- 언론중재위원회 2005년 연간보고서 <http://www.pac.or.kr/html/about/ab_report_list.asp>
- 언론중재위원회 2006년 연간보고서 <http://www.pac.or.kr/html/about/ab_report_list.asp>

asp>

- 언론중재위원회 2007년 연간보고서<http://www.pac.or.kr/html/about/ab_report_list.asp>
- 언론중재위원회 2008년 연간보고서<http://www.pac.or.kr/html/about/ab_report_list.asp>
- 언론중재위원회 2009년 연간보고서<http://www.pac.or.kr/html/about/ab_report_list.asp>
- 언론중재위원회 2010년 연간보고서<http://www.pac.or.kr/html/about/ab_report_list.asp>
- 언론중재위원회 2011년 연간보고서<http://www.pac.or.kr/html/about/ab_report_list.asp>
- 언론중재위원회 30년사 (2012)<http://www.pac.or.kr/html/data/dt_30y.asp>
- 미디어오늘 2012년 9월 12일자, “성폭행 사건 언론 사별 보도준칙 만들어야”
- 조선일보 2012년 9월 1일자, “병든 사회가 아이를 범했다”
- 노컷뉴스 2012년 9월 1일자, “무고한 시민 얼굴을 고종석으로... 조선일보 대형오보”

제1주제 지정토론

■ 한은경 (서울제2중재부 중재위원,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초상권에 대한 논의가 처음 시작된 사건이 1991년 11월 뉴스위크지에 실린 사진으로 알고 있습니다. 뉴스위크지에 ‘돈의 노예: 이화여대생들’이라는 설명과 함께 5명의 여대생 모습이 실렸습니다. 사실 5명의 여대생들이 졸업사진을 찍기 위해서 정장을 한 것인데, 이것을 놓고 한국의 과소비 문화라고 보도한 것이 문제가 되었고, 이로 인해 서울민사지법 항소2부에서 뉴스위크에게 6천만 원 손해배상을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초상권에 대한 논의가 촉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진이 의사소통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고, 페이스북에 하루 70억장의 사진이 올라오고, 프라이버시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자신의 사진을 무분별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상권 문제가 제기되니까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자신이 페이스북에 올리는 사진과 기자가 찍어서 올리는 사진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아이덴티티의 자기결정권’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사진은 비주얼 아이덴티티인데, 이 아이덴티티는 개인이 정할 수도 있고, 기자가 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자가 이 아이덴티티를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 때문에 초상권에 대한 시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국민의 알권리, 언론이 알릴 권리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개인의 인권을 더 소중한 가치로 인정하는 것이 현행법의 정신인 것 같습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보호되지 않는 초상권의 범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공인의 경우는 초상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과 일반인의 기준을 어떻게 매겨야 하는가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 신세계 정용진 회장과 디스패치 간에 여러 가지 분쟁이 있었는데 정용진 회장의 손을 들어줬고, 1,500만 원의 손배를 판결했습니다. 정용진 회장이 공인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손해배상 처리한 이 사건을 보고 공인과 일반인의 기준을 어떤 범위 내에 두어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피의자의 경우 개인의 인격권을 존중해서 마스크와 모자를 씌워서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특히 최근 어린이 성폭행과 관련된 피의자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는 공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논란에 대해서도 한 번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언론사의 재원 확보의 문제가 있고, 종편 이후에 경쟁이 너무 치열해져서 전문기자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오히려 계약직,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 초상권의 문제가 앞으로 더욱 야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언론의 조직적인 문제, 재원의 문제 등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조속하게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 배재만 (한국사진기자협회 부회장, 연합뉴스 사진부 차장)

손영준 교수님께서 언론인 재교육이 제대로 안돼서 문제의 출발이 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입니다. 저 역시도 입사한 지 18년이 됐지만 재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해 본 것이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언론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더군다나 2000년 이전 필름을 쓰던 시절, 거의 인터넷이 안 되던 언론환경에서는 초상권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손영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선배들의 도제식 교육의 바탕이 사실 거기서부터 있습니다. 예전에는 신문에 난 자기 사진을 보고 해당 신문사에 전화를 해서 항의해도 ‘아니 이거 뭐야?’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언론중재위원회가 2005년 조정, 중재를 시작한 이후로 초상권에 대해 언론사, 신문사 스스로가 조심하고 있어 그 수가 현저하게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데스크가 매번 언론중재위에 나가서 생각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생각과는 다른 중재금액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현실이 현장에 나가는 일선 취재기자들에겐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제가 있는 연합뉴스 같은 경우도 그전에는 신문에만 저희 사진이 나갔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인터넷이 시작되고 난 다음부터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다 전송이 돼서 그 사진들이 신문에 쓰이던 안 쓰이던 인터넷에 계속 남아있으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가 초상권 항의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초상권 문제로 인해 언론중재위원회를 다녀오신 부장들 입장에서는 일선기자들에게 두 가지 사항을 요구하게 됩니다. 현장에 나가서 적당한 그림을 만들어 오길 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초상권에 저촉 받지 않도록 하는 것. 짧은 시간 안에 찍고 다른 현장으로 넘어가야 되는 악순환이 되다보니 현장기자는 나름 억울한 점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

초상권 문제가 개인의 인격권 보호와 국민의 알권

리를 내세우는 언론사의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중재위에 갔다 오신 여러 신문 사진부장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사실 올려 먹자 먹기 식으로 갔다 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초상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건 충분히 공감했는데, 어떤 경중을 논하기 전에 신청이 있으면 일단 중재를 권고하시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제가 성대 축제현장에 취재간 적이 있습니다. 성대에서 축제를 한다는 보도자료를 내서 기자가 성대 홍보실 직원과 함께 축제현장에 가서 마이크를 가지고 모여 있는 학생들에게 고지를 했습니다. “저희 연합뉴스에서 취재를 와있고 취재된 사진이 네이버 등에 실릴 수 있다.”고 고지했습니다. 현장에는 50~6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었고 편치볼 게임을 하는 장면을 취재하여 전송했는데 공교롭게도 편치볼 치던 여학생의 머리가 훑날리면서 좀 여성적이지 않게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언론중재위에 갔다 왔는데, 사실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대학축제하면 흥겹고, 힘 있고 이런 젊은이들의 모습이 신문에 실릴 것을 예상했는데 중재위원님들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 여자의 얼굴이 잘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본인이 싫다고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봅니다. 그런 시각의 차이가 매번 있습니다.

저희가 바람스케치를 나가서 두꺼운 옷을 입고 가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가급적 내지 않으려고 해도, 본인이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다고 요구를 하면 그것도 걸린다고 합니다. 또 태풍스케치를 나가서 저희는 사람이 떠밀려나가는 정도의 바람을 사진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바람에 중점을 두고 찍은 사진인데, 그것을 바라보는 중재위원님들의 시각은 바람을 보지 않고 밀려가는 사람의 표정을 본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충분히 초상권에 대해 이해하려 해도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중재위원님들이 보통의 경우'이 정도면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여기서 합의가 안 되면 민사로 가야되는데 민사로 가면 기본적으로 0이 하나 더 붙는다' 이런 말들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사실 민사로 가서 정식 재판 절차를 밟게 되면 그것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부장이 불러다니고, 당사자가 불러다니고, 편집국장까지 불러다니는 것보다 적게는 30~40만 원, 많게는 200~300만 원에서 해결보고 말지 하는 식의 자괴감어린 인식을 갖게 된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한, 초상권 자체가 정식으로 보호받고 언론사에 의해서 심도 깊게 논의가 되려면 적절하고 구체적인 기준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비슷한 경우였는데 어떤 경우에는 중재금액이 30만 원 밖에 안 나왔는데 다른 경우에는 200만 원이 나오고 하는 식의 차등이 생기기도 하고 사건별로 보면 개인의 발언 그 자체만으로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저희는 아무리 봐도 표정이 이상한 것도 아닌데 단순히 자기가 신문에 공표되는 게 싫다거나 누가 봐도 얼굴도 제대로 안보일 정도의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또 돈으로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돈이 아까워서 아니라 젊은 기자일수록 예전의 선배들보다는 '초상권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더 강하게 가지고 있는데, 정해진 규약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인위적으로 정도를 정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예를 들면 동아일보의 경우 2009년 6월에 6·10항쟁 기념 몇 주년일 때 집회현장인 서울광장에서 어떤 참가자가 경찰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사자가 동아일보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했습니다. 언론중재위에서는 '그 사람의 요구대로 200만원으로 합의를 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아일보에서는 '집회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우리가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너무 말이 안 되지 않느냐'면서 회사 차원에서 대응을 해

서 정식 재판으로 갔습니다. 민사에 갔는데 그 사람이 '인근에 직장이 있고, 퇴근하는 길에 어쩌다보니 휩쓸렸고, 내가 갈 길 가려는데 경찰이 막아서 항의하는 과정에 순간 포착된 사진이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매체를 통해서 확인된 결과 그 사람이 처음부터 집회에 참가했었고 그 전에도 집시법 위반혐의로 잠깐 구류를 산 경우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소위 '시위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결국 동아일보가 승소했습니다. 전 아주 좋은 판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개된 집회현장에서의 초상권이 과연 보호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몇 년 전에 언론재단에서 초상권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 사진기자는 저 뿐이었습니다. 2시간씩 이틀에 걸쳐 총 4시간을 했는데, 강사 중의 한 분은 전 중재위원이셨던 변호사님이었고, 다른 한 분은 현 중재위원이신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그나마 현 중재위원이신 변호사님은 방송기자 출신이어서 좀 이해를 많이 해주시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중재위원이셨던 그 분은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분에게 시청광장에서 2002년 월드컵 때처럼 대규모로 많은 사람들이 붉은 옷 입고 응원을 하고 있는 전경을 찍었을 때 그 중에 정말 깨알같이 보이는 사람이 '이 사람이 나다'라고 할 때도 초상권 침해냐고 물었더니 그렇다는 겁니다. 그 말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현 중재위원님께서 '그건 정도의 차이가 있고 상황을 봐서 그 손해배상액은 1/n 형식으로 할 수도 있다. 그것은 정도의 경중을 따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중재위원님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편차가 심하다는 겁니다. 일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인위적으로 갖다 붙이는 형식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중재위에 초상권 외에도 너무 많은 일들이 오기 때문에 사소하다고 생각하고 쉽게 '30~40만 원에', '100만 원에', '이

건 싼 건 줄 아세요' 식의 생각이 베어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성대 그 여학생에게 담당부장이 "어떻게 해서 100만원을 요구했냐"고 물었더니 언론중재위에 전화해서 상담해주는 분께 "얼마정도 신청하면 되요?"했더니 "한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신청하면 될 겁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신청하면 그 정도 받고 끝날 겁니다'하는 식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005년 이후면 6~7년 정도 된 셈인데 처음 의욕과 달리 초상권 기준의 모호함이 언론사에게 '그래도 이나마 이 정도의 금액으로 해결되면 다행이지'하는 생각을 안겨주신 것은 아닌지, 혹은 중재위원 스스로도 딱히 적용시킬 규정이 없어서 그러시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도의 차이, 시각의 차이를 조금 더 면밀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은 비주얼한 지면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진이 필수불가결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문 산업이 많이 후퇴하다 보니까 사진기자 신입사원 채용을 하지 않아 사실 젊은 기자들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사진기자 숫자는 줄어드는데 면수는 그대로 유지되다 보니 10년 전에는 하루에 1~2건 하던 것을 요즘은 5~6건을 해야 됩니다. 사진기자는 물리적으로 현장을 가야되기 때문에 이동하는 시간, 전송하는 시간을 합치면 엄청나게 일에 부담을 느낍니다. 이런 와중에 언론기자들이 조금 더 좋은 앵글이면서도 초상권에 저촉 받지 않는 것들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어서 안타까운 생각도 많이 듭니다. 초상권 부분을 언론중재위원회가 계속해서 연구, 정리하여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상권 침해를 어떻게 안할 수 있냐는 질문에 동의 절차를 제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한 두 사람을 대상으로 찍었다 하면 당연히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의 절차라는 게 촬영을 하겠다는 동의, 배포를 하겠다는 동의, 배포를 어떻게 하겠다는 동의까지 받아야 완성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벚꽃 사진 스케치를 나가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모습을 찍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일일이 가서 동의를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서너명만 있어도 '사진 좀 찍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 흔쾌히 허락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촬영을 허락하는 사인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혹시라도 다른 게 있나 싶어서 안 합니다. 그래서 동의 절차를 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이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중재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요즘 젊은 기자들은 초상권 부분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제식이 아닌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갔다 왔던' 그런 예를 들어가면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신문사들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언론보도에 의한 초상권 침해에 관한 법적 검토

김재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법학대학원 교수

I. 서론

1. ‘한 장의 사진’이 글로는 표현할 수 없는 생생한 인상과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1972년 베트남전쟁 당시 9살의 베트남 소녀가 폭격으로 화상을 입고 벌거벗은 채 울부짖으며 도로 한복판을 달리는 장면을 찍은 유명한 사진이 있다. 이 사진을 찍은 AP통신 기사는 폴리처상을 받기도 했는데, 베트남전의 참상과 비극을 가장 사실적으로 전달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위 사진이 나온 지 40주년이 되어 이를 회고하는 기사가 나왔다.¹⁾ 사진 속의 소녀는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기자와 소녀가 당시를 회상하며 인터뷰를 한 내용을 읽으면서 조금은 안도감이 느껴졌다. 위 사진으로 베트남전

의 참혹한 모습을 알렸다는 점에서 기자가 칭송을 받았지만,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초상권 문제는 어떻게 될까 하는 의문도 생긴다.

사진이나 영상이 없는 신문이나 방송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신문과 방송에서 사진이나 영상은 필수불가결한 위치를 차지한다.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 서비스가 발달하면서 사진이나 영상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초상권에 관한 분쟁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2. 초상권은 인격권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으로, 인격권이라는 용어가 대법원 판결에서 처음 등장한 것은 1980년이다.²⁾ 그리고 하급심 법원에서 초상권에 기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게재해서는 안 된다는

* 이 글은 언론중재위원회가 2012년 10월 25일 “영상·사진 보도와 초상권”라는 주제로 개최한 정기세미나에서 “초상권 침해에 대한 법적 검토 및 올바른 보도방법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PPT 파일을 이용하여 발표한 내용을 녹취하여 수정·보완한 것이다. 대부분의 청중이 언론중재위원과 기자, PD 등 언론기관 종사자이기 때문에, 초상권에 관하여 긴급적 쉽게 설명하려고 하였는데, 나중에 문헌과 판례를 추가하는 등 수정을 하였다.

1) 연합뉴스 2012. 6. 1.자 “베트남전 ‘네이팜 소녀 사진’ 탄생 40주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5633712>).

2)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883 판결(공 1980, 12586).

판단을 한 것은 1982년이다.³⁾ 따라서 1980년대에 비로소 초상권이 법적 권리로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광고에 의하여 초상권이 침해되는 경우 초상권 또는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법원의 판결에서 퍼블리시티권이란 용어는 1995년에 처음 사용되었다.⁴⁾

2000년대에 들어와 10여년 동안 법원의 판결에서 초상권에 관한 분쟁이 빈번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유명한 가수그룹 ‘FT아일랜드(FTisland)’에 속한 가수들의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 4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⁵⁾이 나왔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명예훼손에 관한 분쟁 다음으로 많이 문제되는 것이 초상권에 관한 분쟁이다. 초상권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규율되다가,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피해구제법’이라 한다)에서 초상에 대한 권리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게 되었다.

3. 언론보도가 사람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초상권을 보호해야 할 것인지 문제된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두 개의 중요한 권리, 즉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법원의 재판이나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에서 중요한 문제로 등장한다. 이것은 결국 ‘이익형량(利益衡量)’을 통해 해결하고 있는데, 보도의 필요성이 더 큰가 아니면 인격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큰가를 저울질하여 어느 쪽이 무겁고 어느 쪽이 가벼운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 결론에 따라 어떤 경우는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책임을 인정하고, 어떤 경우는 초상권 침해로 인한 책임을 부정하기도 한다.

실제 사건에서 이익형량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예를 들어 이른바 흉악범에 관한 보도를 생각해 보자. 예전에는 흉악범이라고 하더라도 그의 얼굴을 가리기 위해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한 상태로 보도하는 관행이 있었다. 요즘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인지 흉악범의 얼굴을 신문과 방송에서 공개하는 추세이다.⁶⁾ 이와 같이 언론에서 범인의 모자와 마스크를 씌운 상태에서 보도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얼굴을 그대로 공개하기로 입장을 바꾼 것 자체가 언론에 의한 초상권 침해에 관한 이익형량의 기준을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흉악범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는 방식이 언론사별로 차이가 있는 것을 보면, 이 문제가 아직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의 몸은 다 보여주면서 얼굴만을 가리고 보도하면 언론사는 면책되는가와 같은 문제도 있다.

4. 여기에서는 초상권의 개념, 위법성, 구제수단 등에 관하여 법원의 판결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바람직한 보도방법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 세미나에는 언론중재위원과 기자, PD 등 언론기관 종사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초상권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자 한다. 따라서 초상권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나 광고 등에 의한 초상권 또는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 등에 관해서는 관

3) 서울민사지방법원 1982. 7. 21. 자 82가9263 결정(국내외 언론관계 판례집 157면). 이 결정은 ‘서울은 지금 몇 시인가 - 신선호와 울산드라마’라는 책에 신창인 신선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록한 사진을 삭제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4) 서울지방법원 1995. 6. 23. 선고 94가합9230 판결(하집 1995-1, 323). 당시 필자는 서울지방법원 판사로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와 ‘소설 이휘소’에 대한 출판금지가처분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작성하였는데, 그 판결에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5) 원고들은 ‘FTisland’의 멤버들로서 A회사와 광고출연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회사가 원고들이 모델로 출연한 광고물을 국내에서만 한정하여 사용하기로 한 약정에 반하여 광고물을 말레이시아에 수출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9. 선고 2012가합15515 판결은 원고들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이 글에서 판결의 출처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공간되지 않은 것이다).

6) 얼마 전에 한 언론사에서 흉악범의 사진을 잘못 내보내 정정보도를 하기도 하였다.

련되는 한도에서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⁷⁾

II. 초상권의 개념과 근거

1. 초상권의 개념

가. 초상권(肖像權)은 초상에 대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초상’에 ‘권(權)’이라는 글자를 붙여서 초상권이 라고 한 것이므로, 초상을 권리로 보호한다는 뜻이다. 초상은 “사진, 그림 따위에 나타낸 사람의 얼굴이나 모습”을 말한다.⁸⁾ 따라서 초상권은 사진 등에 나타난 사람의 얼굴이나 모습을 권리로 보호하는 것이다. 사람한테서 재산을 빼앗는 경우, 법은 그 재산을 보호해준다. 이와 같이 재산을 보호해주는 권리를 재산권이라고 한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침해한다든지, 생명을 박탈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신체에 관한 권리 또는 생명에 관한 권리를 법적인 권리로 보호해왔다. 인격권은 인격적 이익을 법적인 권리로 보호하는 것인데, 초상권은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서 초상에 대한 이익을 법적인 권리로 보호하는 것이다.

언론피해구제법에서는 인격권에 관하여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인격권은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 초상, 성명, 음성, 대화 등에 관한 권리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이와 같은 인격권(Persönlichkeitsrecht) 개념은 독일법에서 형성된 것을 우리나라에서 수용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인격권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프라이버시권’이나 ‘명예훼손’으로 해결한다. 미국에서는 ‘프라이버시

권’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그 중에서 초상권이 나 성명권을 보호하는 것이 하나의 유형으로 되어 있다.⁹⁾

독일에서 일반적 인격권이 승인된 것은 1950년대이다. 이때 ‘인격’은 일반적인 용어와는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보통 인격이 훌륭하다느니 그렇지 않다느니 하는 말을 하는데, 이 경우에 인격은 훌륭한 품성을 뜻하는 말이다. 그러나 인격권이라고 할 때에는 사람이 사람으로서 가진 권리를 통칭하는 의미를 갖는다. 모든 사람은 인격권을 가진다. 흉악범이나 사형수라고 하더라도 인격권을 가진다. 그 사람이 좋은 품성을 가졌는지 나쁜 마음씨를 가졌는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사람이 자기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이익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인격권이다.

나. 얼굴 등 사람의 모습은 당연히 초상권으로 보호받는다. 몽타주, 소묘, 풍자화, 만화, 인형 등도 초상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1997년 TV 드라마 ‘임궏정’의 주인공 정홍채의 모습과 비슷한 이미지를 광고에서 무단으로 사용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정홍채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였다.¹⁰⁾ 그리고 독일에서 축구선수의 뒷모습도 초상권에 의하여 보호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¹¹⁾ 반드시 얼굴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의 외관상의 특색을 드러내는 경우라면 초상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이와 달리 피해자와 비슷한 모델을 이용한 사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진이 피해자라고 오인할 만큼 유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¹²⁾

초상권을 법적으로 보호받으려면 초상을 통해 인물

7) 초상권에 관한 이론이나 판결에 관해서는 정경석, “국내 초상권 이론 및 사례의 전개,” 변호사 제38집(2008. 1), 서울지방변호사회, 96면 이하에서 시기를 구분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8)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9) Prosser, “Privacy,” 48 *California Law Review*, 383, 389 (1960); The American Law Institute, *Second Restatement of Torts*, 1977, § 652A.

10) 서울지방법원 1997. 8. 1. 선고 97가합16508 판결.

11) BGH NJW 1979, 2205.

12) BGH NJW 1979, 2205.

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평소에 그 인물을 알고 있는 주위사람들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또한, 피해자의 얼굴을 전혀 알아볼 수 없는 경우라도 사진에 대한 설명 등을 통해서 피해자를 알 수 있으면 충분하다.¹³⁾ 실제로 얼굴의 윤곽이 방영된 것에 대해 초상권 침해를 인정한 판결이 있다. 방송에서 원고의 성명 대신 가명을 사용하고 화면은 원고의 우측에서 조명을 투사하여 벽(셋팅)에 나타나는 그림자를 방영하였으나 그 그림자에 원고의 우측 옆모습, 즉 눈, 코, 입 모양과 머리 모양이 섬세하게 나타나고, 목소리는 변성 처리하지 않고 원고의 육성을 그대로 내보냈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및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하였다.¹⁴⁾ 따라서 얼굴이 그대로 나와야만 초상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라고 인식할 수 있는 모습이 나오면 초상권에 의하여 넓게 보호된다고 볼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인격권으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TV 등 언론매체에 대하여 자신의 사생활과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경우에도 본인이 예상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방송된 경우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의 침해가 인정된다. 초상권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2. 초상권의 근거

초상권의 근거는 우선 헌법 제10조를 들 수 있다. 이 규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생명권, 명예권, 성명권 등을 포괄하는 인격권을 의미한다.¹⁵⁾ 따라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¹⁶⁾라고 할 수 있다.

민법은 제750조에서 불법행위에 관한 일반 규정을 두고, 제751조 제1항에서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여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초상권이 불법행위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또한 언론피해구제법 제5조 1항에서 “... 타인의 생명·자유·신체·건강·명예·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초상·성명·음성·대화·저작물 및 사적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라고 규정함으로써 초상에 관한 권리를 인격권 개념으로 포섭하고 있다. 따라서 초상권은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9. 선고 2012가단64664 판결은 광고에 관한 것으로 “피고가 게재한 광고의 모델이 원고라고 오인할 만큼 유사하다고 보이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광고모델이라고 오인하도록 연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사 원고와 혼동할 가능성이 높은 모델을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

13) 박용상, 명예훼손법, 현암사, 2008, 525면.

14) 서울고등법원 1996. 2. 2. 선고 95나25819 판결(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4집, 243면), 대판 1998. 9. 4. 96다11327(공 1998, 2377)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지지하였는데, 초상권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사생활의 비밀을 무단 공개한 것이라고 하였다.

15) 인격권에 관한 논의에서 일반적 인격권과 개별적 인격권을 구분하고,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별적인 인격권이 포함된다고 설명한다. 일반적 인격권과 개별적 인격권의 구분은 독일법에서 유래한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용어를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독일에서는 성명권이나 초상권 등에 관하여 법률에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개별적 인격권이라고 지칭한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관한 개별적인 법률이 없어 독일과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16)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집 54-2, 민 37);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39277 판결.

이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III. 초상권의 내용과 보호범위

초상권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¹⁷⁾ 첫 번째는 ‘촬영·작성 거절권’으로,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를 말한다. 두 번째는 ‘공표거절권’으로,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아니할 권리이다. 피촬영자가 승낙을 하여 촬영된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함부로 공표하는 행위, 일단 공표된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초상권의 내용인 공표거절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세 번째는 ‘초상영리권’으로,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로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¹⁸⁾

대법원 판결에서 초상권에 관하여 상세히 판단을 한 것은 2006년이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¹⁹⁾의 사안은 다음과 같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보험회사 직원이 위 피해자들의 장해 정도에 관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일상생활을 촬영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피해자들이 보험회사 직원의 위와 같은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다. 대법

원은 보험회사 직원이 위 피해자들의 일상생활을 촬영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 초상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 또한, 헌법 제10조는 헌법 제17조와 함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데, 이에 따라 개인은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가진다. 그러므로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한편 유명인 등 개인의 이름이나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할 것인지 문제되고 있다. 이를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라고 한다. 위 이휘소 사건에서 소설에 이휘소의 사진을 게재한 것이 문제되었는데, 퍼블리시티권의 개념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²⁰⁾ 그 후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판결이 많이 나왔다. 퍼블리시티권을 부정하는 판결도 있으나,²¹⁾ 이를 긍정하는 판결들이 많다.²²⁾ 이에 관한 법

17) 배병일, “초상권에 관한 연구,” 재산법연구 제9권 1호(1992. 12), 119면 이하; 한위수, “사진의 무단촬영·사용과 민사책임 - 초상권의 침해 -,”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8권, 1994, 213면 이하; 엄동섭, “언론보도와 초상권침해,” 민사판례연구(X XI), 1999, 754면.

18) 한위수(주 17), 215면 이하; 배병일(주 17), 120면 이하. 그러나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의 관계에 관해서는 논란이 많다. 우선 초상영리권과 퍼블리시티권을 별개의 권리로 보는 견해도 있다. 함석천, “초상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법리 전개,” 법조 제603호(2006. 12), 212면 이하.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초상권 개념으로 충분하고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 정경석, “초상권의 침해요건과 구제방법,” 저스티스 제98호(2007. 6), 122면 이하.

19) 주 16.

20) 서울지방법원 1995. 6. 23. 선고 94가합9230 판결(주 4).

21) 서울고등법원 2002. 4. 16. 선고 2000나42061 판결(하집 2002-1, 28).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27. 선고 2004가단235324 판결(각공 2006, 18);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12. 21. 선고 2006가합6780 판결(각공 2007, 507).

적 규율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해석론적 차원뿐만 아니라, 입법론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되어 있다.²³⁾ 다만 퍼블리시티권은 주로 광고에서 문제되는 것이고, 언론보도로 인한 퍼블리시티권의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IV.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

1. 개설

초상권 침해가 어떠한 경우에 허용되고 어떠한 경우에 허용되지 않는지가 중요한 문제이다. 이것이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 문제이다.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에 관해서는 세 가지로 구분하여 다루고자 한다. 첫 번째는 피해자가 동의를 한 경우에 촬영이나 공개 등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하면 초상권 침해가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공적 인물의 문제로서 정치인 등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촬영이나 보도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초상권자의 동의²⁴⁾

가. 언론사는 초상권자의 동의를 얻어 그의 사진을 촬영하여 보도할 수 있다. 언론피해구제법은 제5조에서 언론 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사유 중의 하나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하여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를 들고 있다. 따라서 초상권자가 동의를 한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²⁵⁾ 그러나 초상권자의 동의에는 한계가 있는데, 그 동의가 사회상규에 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재판례를 보면, 피해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는 사례들이 다수 있다. 이를 분류해보면, ①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하여 보도한 경우, ② 독자적으로 입수한 사진을 동의 없이 게재한 경우, ③ 촬영에 동의한 경우라도 본인의 예상과 다른 방법으로 사진이 공표되는 경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나. 언론에서 사진을 보도한 경우 피해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초상권 침해를 인정한 판결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판결은 198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하였다. 한 여성잡지가 미스코리아 출신인 연예인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기사를 게재하면서 원고가 선전용으로 배포, 판매한 사진영상집의 사진 중 비교적 선정적으로 보이는 2매의 사진을 무단으로 함께 게재했다. 법원은 독자들이 이 사진을 기사의 일부로 인식하여 원고의 행실이 좋지 못하다는 강한 인상을 받을 수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²⁶⁾ 법원은 독자들이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하여 보도하거나 광고를 한 경우에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들은 최근까지 꾸준히 나

23) 이에 관하여 저작권법에 규정하지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는데, 필자는 저작권법에 이를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고 민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상세한 것은 김재형, 언론과 인격권, 박영사, 2012, 456면 이하.

24) 초상권 등 인격권 침해에 대한 동의 문제에 관해서는 김재형(주 23), 118면 이하 참조.

25) 포괄적으로 초상권의 사용을 허락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령 포토라이브러리용 사진은 사용처나 사용용도를 미리 특정하여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컷의 사진을 미리 촬영해 두었다가 이후에 수요자가 나타나면 이를 양도하거나 이용을 허락하기 위한 목적으로 촬영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진을 촬영한 사람이 직접 상업적, 비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사진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 양도하여 그 제3자로 하여금 사진을 이용할 수 있게 허락할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21. 선고 2008가합126326 판결.

26)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 7. 25. 선고 88가합31161 판결(법률신문 1989. 9. 21자, 8면).

오고 있다.²⁷⁾ 촬영을 하여 보도한 뒤 촬영한 방송자료를 폐기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위반하여 다시 방송한 경우에도 동의가 없는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즉,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5. 19. 선고 2009가합311 판결(각공 2009, 1007)에서는 피고 방송사가 행동장애를 가진 초등학생을 촬영한 방송자료를 폐기하기로 약정하였는데도 이를 위반하여 피촬영자 측의 동의 없이 뉴스 프로그램 등에서 촬영분을 다시 방송한 것(제목: “못된 아이 매인가? 치료인가?”)이 문제되었다. 법원은 “피고는 원고들의 모습이 담긴 (명칭 1 생략) 방송자료를 폐기하기로 한 원고 1 및 소외인과 사이에 체결한 약정을 위반하였고, 더구나 원고들의 동의 없이 (명칭 3 생략) 등 3개 프로그램에서 원고들의 촬영분을 다시 방송함으로써 위 원고들의 초상권, 명예 및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경우에는 원고들이 위와 같은 약정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 초상권 침해가 문제된 유명한 사건은 이른바 ‘돈의 노예들’ 사건이다. 1991년에 뉴스위크 잡지가 “너무 빨리 부자가 되다(Too Rich Too Soon)”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이대 정문 앞에서 여대생 5명이 걸어 나오는 천연색 사진을 삽입하였다. 그 사진 아래에는 “돈의 노예들 :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 (‘Slaves to Money’: Students at Ewha Women’s University)”이라는 부제를 붙였다. 이에 대하여 위 사진에 나오는 3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을 인

정하여 1인당 3천만 원씩, 총 9천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인정하였다.²⁸⁾ 먼저 초상권 침해에 관해서는 피고가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원고들의 얼굴 사진을 찍고 이를 잡지에 게재하여 배포함으로써 원고들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명예훼손에 관해서는 “돈의 노예들”이라는 부제까지 달아 놓아, 그 사진 속에 나오는 사람들이 최소한 그 기사에서 나오는 부정적 측면 또는 위 부제에서 의미하는 내용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러한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였다. 그 후 2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손해배상액을 1천만 원씩 줄여서 1인당 2천만 원씩, 총 6천만 원을 인정하였다.²⁹⁾ 이 사건에서 초상권과 함께 명예훼손이 인정된 것이지만, 당시의 손해배상실무를 감안할 경우 위자료 액수가 상당히 많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원고들이 미국에서 소를 제기했으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어 훨씬 많은 손해배상액이 인정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³⁰⁾

이 사건에서 사진을 촬영한 장소가 대학교로서 공공장소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공공장소에서 촬영을 하여 사진을 보도하는 경우에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는지 문제된다. 공공장소에서도 원칙적으로 초상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³¹⁾ 그러나 개인의 사적인 공간에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지만,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사진을 촬영하여 보도하는 경우에는 초상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이익을 형량하는 과정을 통

27) 언론보도에 관한 것으로는 서울고등법원 2012. 3. 9. 선고 2011나89080 판결이 있고, 광고에 관한 것으로는 서울고등법원 2010. 12. 22. 선고 2010나58188 판결이 있다.

28)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7. 8. 선고 92가단57989 판결.

29)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3. 30. 선고 93나31886 판결(국내언론관계판례집 제3집, 180면).

30) 이 판결은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있는데, 돈의 노예들이라는 표현이 명예훼손인지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 이것은 사실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의견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하위의 보도에 대해서만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공중에 게 잘못된 인상을 주는 경우를 프라이버시 침해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프라이버시권 침해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31) 한위수(주 17), 227면.

하여 위법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다.³²⁾ 또 한 집회나 시위를 주도하는 사람은 사진 촬영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 사진을 촬영하여 보도하는 것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³³⁾

라.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을 한 경우에도 동의의 조건을 어기고 보도한 것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가령 서울고등법원 1996. 6. 18. 선고 96나282 판결³⁴⁾에서는 호화 웨딩드레스 대여업자들의 횡포를 고발하는 뉴스에 그와 무관한 사람(임수경)의 결혼식 장면을 자료화면으로 방송한 것에 대하여 명예훼손, 명예감정 손상 및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1997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은 이른바 ‘공포의 통과의례’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피해자의 동의 문제에 관하여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이 판결은 기자가 피촬영자들로부터 사진의 촬영에 동의를 받았으나 방송의 조건을 지키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³⁵⁾ 사안은 다음과 같다. 연대 성악과 학생인 원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의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에 자신들이 식당에서 한 여흥장면과 식사장면을 방송하는 것을 승낙하였다. 당시 원고들은 신세대 대학생들이 신입생 환영회에서 생기발랄하고 재미있고 즐겁게 노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방송할 것을 조건으로 승낙하였다. 피고회사의 기자인 피고 B도 이를 약속하였다. 그런데도 피고 B는 1997. 3. 16. 원고들을 취재한 장면을 방송하면서 대학생이 신입생 환영회에서 술을 많이 마셔 숨졌다든 사실, 고대 경영학과 학생들의 막걸리 사발식 장면, 나이트클럽의 무대장면, 술에

취한 학생들이 길바닥에 쓰러지거나 여관으로 업혀가는 장면, 신촌의 유흥가 밀집장면, 지방대학 학생들의 철야음주행태, 신입생 환영회에서 숨진 학생과 관련된 고소장 등과 편집하여 ‘공포의 통과의례’라는 제목으로 방송하였다. 그리하여 원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과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 기자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원고 1인당 200만 원에서 6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위 방송은 시청자로 하여금 원고들을 포함한 연대 성악과 학생들이 마치 퇴폐적인 유흥에 물든 신입생 환영회를 하는 것처럼 인식하게 하였으며, ② 피고 C는 원고들 중 일부가 나이트클럽 화장실에서 대화하는 장면을 그들의 동의 없이 촬영하고 피고 B가 그들의 모습 및 음성을 그대로 방송함으로써 이 사건 방송을 시청한 원고들의 주위사람들이 쉽게 원고들을 알아볼 수 있게 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및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의 결론은 타당하지만, 위 ① 부분은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및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공중에게 잘못된 인상을 주는 행위에 해당할 것이다.

초상권에 관하여 직접 판단한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327 판결³⁶⁾에서는 유방확대수술을 받고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원고가 방송사에 대하여 인터뷰를 하면서 촬영을 함으로써 방송에 동의하였으나, 원고가 예상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방송을 한 경우에 사생활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다. 이 판결은 사생활 침해에 대하여 판단한 것으로, 이 판결의 논리는 초상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32) 이와 유사한 견해로는 엄동섭, “초상권 보호의 한계,” 민사법학 제38호(2007. 9), 189면 참조.

33) 한편 공공장소에서 통상 예상한 방법으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함석천(주 18), 201면 이하 참조.

34) 국내언론관계판례집 제5집, 157면.

35)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7. 8. 7. 선고 97가합8022 판결(언론중재 1997년 가을호, 165면).

36) 공 1998, 2377.

언론매체에 대하여 자신의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경우에도 당시 예정한 방법과 달리 또는 방송사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상태로 방송된 경우에는 초상권의 침해가 인정된다.³⁷⁾ 특히 누드사진과 같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초상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사진을 제공받아 이를 게재할 때에는 초상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적어도 사진의 출처 내지 촬영경위를 확인하여 사진이 공표되어도 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³⁸⁾

3.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관한 보도

언론피해구제법 제5조 제2항은 ‘언론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것은 명예훼손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초상권 침해의 경우에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면책된다 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본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327 판결³⁹⁾에서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닌 한,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하고, 이를 부당하게 공개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사생활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더라도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것은 사생활 침해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초상권 침해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위법성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개인의 사진을 촬영하여 보도함으로써 초상권과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에 이익형량을 통하여 위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즉,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 그리고 일단 권리의 보호영역을 침범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⁴⁰⁾

4. 공적 인물의 문제

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29. 선고 2006가합36290 판결(각공 2007, 141) 참조. 의정부지방법원 2011. 10. 20. 선고 2011나6848 판결(각공 2011, 1479)은 “원고가 이 사건 제보 당시 자신의 신분 노출을 극도로 꺼렸으므로 설령 피고가 원고의 사전 승낙을 받아 취재 및 방송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기자와 인터뷰하는 장면을 취재하여 방송하는 경우 음성변조나 모자이크 처리를 제대로 하여 원고 주위의 사람들이나 브로커 일당이 원고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고, “위 방송 당시 원고의 음성이 변조되지 않았으며 원고의 뒷모습이 완전하게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는 등 이를 게을리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방송을 본 원고의 주위사람들이나 위 브로커 일당이 인터뷰 대상이 원고임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여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3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1. 13. 선고 2008가단76436 판결.

39) 주 36.

40) 보험회사 직원의 사진촬영행위에 관한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집 54-2, 민 37) 참조. 언론보도에 관한 판결로는 부산지방법원 2010. 3. 26. 선고 2009나18455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10. 20. 선고 2011나6848 판결(각공 2011, 1479), 서울고등법원 2012. 3. 9. 선고 2011나89080 판결이 있다. 또한 구청 직원의 촬영행위에 관해서는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11993 판결 참조.

공인, 즉 공적 인물(public figure)⁴¹⁾의 경우에는 그 사진이나 영상을 보도하더라도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법성이 없다고 한다. 공적 인물은 ① 공개를 원했거나 공개에 동의했다는 점, ② 그의 존재나 직업이 이미 공적 성격을 띤다는 점, ③ 언론은 대중에게 공익에 관한 정당한 관심사항으로 된 것을 알릴 특권을 헌법상 보장받는다라는 점을 이유로 프라이버시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다.⁴²⁾

고위직 공무원, 영화배우, 스포츠 스타 등을 공적 인물이라고 한다. 홍약범의 사진을 보도할 수 있는지 논란이 많다. 공인 이론은 미국에서 유래한 것인데, 고위직 공무원 등을 자발적 공적 인물이라고 하고, 홍약범 등을 비자발적 공적 인물이라고 구분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인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심지어 범죄사건의 피해자가 공적 인물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하급심 판결에서 정치인이나 고위직 공무원이 아닌데도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초상권 침해를 부정한 사례들이 있다. 1995년 서울지방법원 판결에서 이휘소는 뛰어난 물리학자로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많은 귀감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공적 인물이 되었고 이휘소가 사망한 지 이미 18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휘소를 모델로 하여 이휘소라는 실명을 사용하여 창작된 소설에서 이휘소의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위 소설이 이휘소에 대한 명예를 훼손시키는 내용이 아닌 한 허용된다고 판단하였다.⁴³⁾ 또한 대우그룹 회장인 김우중 평전 사건에서 김우중이 뛰어

난 기업인으로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많은 귀감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이미 우리 사회의 공적 인물이 되었다고 할 것인데, 공적 인물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 사람은 자신의 사진, 성명, 가족들의 생활상이 공표되는 것을 어느 정도 수인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⁴⁴⁾ 최근에도 국내 유명 재벌그룹의 경영인으로 우리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는 사람을 이른바 ‘공적 인물’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⁴⁵⁾

공인이나 유명인의 경우에는 언론에서 그 사진이나 영상을 공개하는 것이 넓게 허용된다. 그러나 이는 언론 보도에 적용되는 것이고, 광고의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의 침해 문제가 발생하여 전혀 다른 논리가 전개된다.

한편 공인이나 유명인의 경우에도 사생활을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최근 프랑스 잡지에서 영국 왕세손비인 케이트 미들턴에 관한 사진을 보도한 것이 논란이 되었다. 영국 왕실은 사진의 공개를 금지하는 청구를 하였는데, 프랑스 낭테르 법원은 2012년 9월 18일 프랑스 잡지 ‘클로제’ 측에 노출 사진의 추가 보도와 배포를 금지하고, 24시간 내에 모든 사진 파일을 왕실에 돌려주는 한편 2000유로(약 290만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잡지사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하루에 1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라고 판결했다.⁴⁶⁾ 공인이나 유명인이라고 할지라도 본인의 사적인 모습, 특히 아주 내밀한 모습을 찍어서 보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41) 공인이라는 용어에 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인의 사전적 의미는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뜻한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따라서 고위직 공무원,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공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유명 연예인을 공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다. 따라서 공인이라는 표현보다는 유명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한편 홍약범에 대해서도 공인에 대한 언론보도에 관한 법리를 적용할 것인지 논란이 있다. 가령 홍약범이 어떻게 공인이 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홍약범을 공인에 속한다고 본다면 일상용어와 법률용어가 서로 다른 의미를 갖게 될 것이고, 홍약범을 공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법에 맞지 않는다. 물론 공인은 법률용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상용어와 달리 이해할 수도 있으나, 가급적 일반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42) Prosser/Keeton, *The Law of Torts*, 5th ed., 1984, p. 862; 김재형(주 23), 132면.

43) 서울지방법원 1995. 6. 23. 선고 94가합9230 판결(하집 1995-1, 323).

44) 서울지방법원 1995. 9. 26.자 85가합3438 결정(법률신문 제2453호 13면).

45) 서울고등법원 2012. 3. 9. 선고 2011나89080 판결.

V. 초상권에 대한 구제수단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가. 책임의 발생근거

1) 일반불법행위책임

초상권 침해에 대하여 여러 가지 구제수단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다.⁴⁷⁾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언론피해구제법 제30조 제1항은 “언론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것은 언론피해의 경우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민법 제750조에서 도출되는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일한 취지이다. 따라서 언론에 의한 초상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근거로는 언론피해구제법 제30조와 민법 제750조, 제751조를 들 수 있다.

2) 사용자책임과 공동불법행위책임

기자나 PD가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여 보도한 경우에 언론사와 기자나 PD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민법 제756조는 사용자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제1항 본문에서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사용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언론사의 직원인 기자가 취재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언론사는 사용자책임을 진다.⁴⁸⁾

그리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민법 제760조에 따라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가령 초상권을 침해하는 기사가 신문에 보도된 경우에 기사를 공동으로 작성한 기자들, 사진기자들, 신문의 발행인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⁴⁹⁾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59912 판결⁵⁰⁾에서는 외주제작사가 무단촬영한 장면에 관하여 방송사업자가 피촬영자의 방송 승낙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피촬영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별도의 화면조작 없이 그대로 방송한 경우, 피촬영자의 초상권 침해에 대하여 외주제작사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 판결의 사안을 간략하게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원고 2는 2005. 8. 2. 건국대학교병원(이하 ‘건대 병원’이라 한다)에서 임신 29주 만에 원고 1 등 세쌍둥이 미숙아를 출산하였는데, 그중 2명은 출생 직후 사망하고, 원고 1만이 생존하여 2005. 9. 말경까지 위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요양을 받았다. 원고 3은 원고 2의 남편이자 원고 1의 아버지이다. ② 피고 학교법인 건국대학교(이하 ‘피고 건대’라 한다)는 건대 병

46) 연합뉴스 2012. 9. 18.자(“佛법원, 케이트 노출사진 추가보도 · 재판매 금지”).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new_search/YIBW_showSearchArticle_New.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c%bc%80%ec%9d%b4%ed%8a%b8+%eb%85%b8%ec%b6%9c%ec%82%ac%ec%a7%84+%ed%8c%90%ea%b2%b0&contents_id=AKR20120918210500081).

47) 물론 사진촬영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48) 의정부지방법원 2011. 10. 20. 선고 2011나6848 판결(각공 2011. 1479).

49) 가령 서울고등법원 2012. 3. 9. 선고 2011나89080 판결 참조.

50) 공 2008. 215.

원을 경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2는 건대 병원의 홍보 팀장이다. 피고 한국방송공사(KBS)는 텔레비전 방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매주 화요일 자정에 ‘병원 24시’라는 프로그램(이하 ‘병원 24시’라 한다)을 방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4는 피고 한국방송공사의 직원으로서 병원 24시의 프로듀서(연출자)이다. 피고 주식회사 제이알엔(이하 ‘피고 제이알엔’이라 한다)은 방송 프로그램 등을 제작·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 6은 피고 제이알엔의 직원으로서 ‘병원 24시’ 중 ‘1,000g 아가들의 전쟁 - 세쌍둥이 미숙아’ 편(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제작에 있어 촬영 및 연출을 담당한 사람이다. ③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2005. 7. 1. 피고 제이알엔과 사이에 위 피고로부터 병원 24시를 편당 18,264,000원에 제작·납품받기로 하는 내용의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제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④ 피고 제이알엔은 “세쌍둥이 미숙아의 삶에 대한 본능과 그들을 온전히 성장시키기 위한 젊은 부부 및 의료진의 노력 등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해 본다.”라는 기획의도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로 결정하고, 피고 2 등의 협조 아래 피고 6으로 하여금 2005. 9. 16. 이후 2005. 9. 30.까지 보름 동안 건대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세쌍둥이 미숙아와 그 부모 등에 대해 촬영을 하도록 하였다. ⑤ 피고 한국방송공사가 매주 화요일 방송한 이 사건 프로그램은 세쌍둥이 미숙아의 출산과 약 보름 동안 위 미숙아들이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겪게 되는 여러 상황 및 그 부모의 생활모습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심판결⁵¹⁾ 중 초상권 침해에 관한 판단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 “피고 6은 원고 1의 친권자인 원고 2, 3의 동의 없이 제1, 2장면을, 원고 2의 동의 없이 제3장면을 각 촬영하여 텔레비전을 통해 방영되게 함으로써

원고 1, 2의 초상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6과 그 사용자인 피고 제이알엔은 각자 이로 인하여 원고 1, 2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이 사건 제작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피고 제이알엔의 제작현장에 수시로 입회하는 등 병원 24시의 제작에 관여할 수 있고, 제작이 완료된 병원 24시를 검수하여 불충분한 사항에 대해서는 피고 제이알엔에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병원 24시에 대한 방송권자 내지 방송의 주체로서 병원 24시에 대한 최종적인 편집권한이 있으므로, 피고 4로서는 병원 24시의 프로듀서로서 병원 24시를 통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영하게 된 이상 이 사건 프로그램이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제작계약에 의하면 병원 24시와 관련하여 피고 제이알엔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피고 제이알엔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 한국방송공사 및 피고 제이알엔의 내부적인 구상관계를 정해 둔 데 불과하다). 이에 위반하여 만연히 이 사건 장면이 포함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영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 4와 그 사용자인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이로 인한 위 원고들의 초상권 침해에 대하여 피고 제이알엔, 피고 6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③ 이 사건 프로그램이 공익목적에 지향하여 제작·방영한 것이라 하여도,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이 사건 프로그램 중에 위 원고들의 초상을 넣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필연성이나 그 초상을 촬영함에 있어 미리 위 원고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생략·배제해도 용인될 만큼의 무슨 긴급성도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전혀 공적인 존재가 아닌 위 원고들에 대하여 단지 프로그램의 공익성만을 내세워 그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④ 위

51) 서울고등법원 2007. 7. 25. 선고 2006나80294 판결.

피고들이 배상할 위자료에 관해서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영 목적이 주로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등 공익을 위한 것이고, 이 사건 장면이 비교적 단시간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내용 역시 부정적인 면을 포함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그 촬영에 앞서 원고 3이 원고들을 대표하여 이 사건 장면의 촬영을 담당한 피고 6에게 원고들이 처한 사정을 설명하면서 이 사건 장면의 촬영을 거절하는 뜻을 분명히 밝힌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할 때, 원고 1, 2에 대하여 각 7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피고 한국방송공사 외 2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지지하면서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 또는 각하하였다.

“방송법 제7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외주제작 방송 프로그램 편성이 방송사업자에게 강제되고 이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외주제작사에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의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외주제작사와 체결한 제작계약에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권이 방송사업자에게 귀속하고 납품된 방송프로그램의 최종적인 편집권한이 방송사업자에게 유보된 사정 아래에서 방송사업자가 제작과정에서 외주제작사에 의하여 무단촬영된 장면에 관하여 피촬영자로부터 그 방송의 승낙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촬영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별도의 화면조작(이른바 모자이크 처리 등) 없이 그대로 방송하게 되면 외주제작사와 공동하여 피촬영자의 초상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방송사업자의 책임은 그가 방송의 주체로서 자신의 독립적 판단하여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이 납품된 상태 그대로 방송한 데 기초한 것이므로 그 제작과 관련하여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사이의 법률관계가 민법상의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인지 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인지 여하에 따라 그 책임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 판결은 외주제작계약에 따라 제작된 프로그램에 대하여 방송사의 책임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선례로서 의미가 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외주제작계약에 따라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피고 제이알엔의 제작현장에 수시로 입회하는 등 “병원 24시” 프로그램의 제작에 관여할 수 있고 제작이 완료된 “병원 24시” 프로그램을 검수하여 불충분한 사항에 대해서는 피고 제이알엔에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병원 24시”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권자 내지 방송의 주체로서 “병원 24시” 프로그램에 대한 최종적인 편집권한이 있고, 피고 4로서는 “병원 24시” 프로그램의 프로듀서로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영하게 된 이상 그 프로그램이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에 위반하여 만연히 원심 판시 제1, 2, 3장면이 포함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영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피고 4와 그 사용자인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이로 인한 원고 1, 2의 초상권 침해에 대하여 피고 제이알엔 및 피고 6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대법원은 피고 4가 피고 한국방송공사의 피용자로서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송과 관련하여 피촬영자의 승낙 등 초상권 침해 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위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이러한 과실책임은 피촬영자의 승낙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면 편집권에 기하여 문제될 수 있는 장면을 삭제하거나 피촬영자의 동일성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화면조작 등으로 초상권 침해의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피고 한국방송공사에게 부여되어 있음을 전제한 것으로서 피고 4에게 이행이 불가능한 수준의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방송사업자에게 일정 비율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을 규정한 방송법 제72조 제1항의 취

지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은 외주제작사가 무단촬영한 장면에 관하여 방송사업자가 피촬영자의 방송 승낙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피촬영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별도의 화면 조작 없이 그대로 방송한 경우, 피촬영자의 초상권 침해에 대하여 외주제작사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된다고 하였다.⁵²⁾ 방송사가 외주제작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외주제작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방송사는 지지 않는다고 약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방송사와 외주제작사의 내부관계에서 적용되는 것이고, 이는 피해자가 방송사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책임

인터넷에 의한 초상권 침해가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인터넷에 다른 사람의 사진을 무단으로 올린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가령 다른 사람의 사진을 무단으로 복사하여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경우에 초상권 침해를 인정한 하급심 판결들이 있다.⁵³⁾ 그런데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위와 같은 초상권 침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지 문제된다.

명예훼손에 관한 것이긴 하지만,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 판결⁵⁴⁾은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기준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 자살을 한 여자의 어머니가 인터넷에 딸의 남자친구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은 많은 반향을 일으켰다. 네이버 등에 이에 관한 기사 및 댓글이 게재되었다. 피해자가 네이버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

하였다. 이 사건은 이른바 포털이 언론인가 하는 논의를 촉발시켰는데, 대법원은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자신의 컴퓨터에 보도매체의 기사를 보관하면서 스스로 그 기사의 일부를 선별하여 게시한 경우, 그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된 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판결하였다. 보도매체로부터 기사를 전송받아 자신의 자료저장 컴퓨터 설비에 보관하면서 스스로 그 기사 가운데 일부를 선별하여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뉴스 게시공간에 게재하였고 그 게재된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는 단순히 보도매체의 기사에 대한 검색·접근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와는 달리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가 보도매체의 특정한 명예훼손적 기사 내용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선택하여 전파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댓글에 관해서는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했다. 즉, ①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② 위 사업자가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③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 위 사업자가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주의의무가 발생한다고 했다.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위 사업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피해자가 삭제요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위 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위 판결이 제시한 판단기준은 초상권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초상권을 침

52)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5. 29. 선고 2007나9003 판결도 위 판결과 동일하게 판결하였다.

53) 수원지방법원 2012. 7. 25. 선고 2012나7974 판결.

54) 공 2009, 626. 이 판결에 관해서는 김재형(주 23), 362면 이하 참조.

해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선별하여 게시하는 경우에는 언론과 마찬가지로 초상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질 것이다. 또한 일반인들이 인터넷에 사진을 올려 초상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위 사업자가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위 사업자가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주의의무가 발생할 것이다. 아직 이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지는 않지만 이 문제는 조만간 중요한 문제로 등장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와 손해배상액의 산정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에는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가 있다. 언론보도에 의한 초상권 침해의 경우에는 주로 정신적 손해가 문제된다. 대법원은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침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다.⁵⁵⁾

정신적 손해의 배상은 위자료로 나타난다.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계량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여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이 위자료이다.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해서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

다.⁵⁶⁾ 법원의 판결에서 위자료를 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로는 당사자 쌍방의 사회적 지위, 직업, 자산상 태, 가해의 동기, 가해자의 고의·과실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초상권 침해의 경우에 재산적 손해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언론피해구제법 제30조 제2항은 손해액의 산정에 관하여 법원은 언론 등에 의한 인격권 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판례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한 법리를 인정하고 있다.⁵⁷⁾ 따라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⁵⁸⁾

언론에서 원고에 대해 성로비 의혹을 제기하면서 원고의 알몸 뒷면을 담은 컬러 사진을 일간신문에 게재한 사건에서 명예훼손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였다.⁵⁹⁾ 그러나 단순한 초상권 침해의 경우에는 100만 원 정도의 낮은 금액이 손해액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초상권에 관한 사례를 모아 유형별로 분류하여 손해배상액이 얼마나 인정되었는지를 정리하여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야 할 것인지 문제된다. 언론피해구제법을 제정할 당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필자는 징벌적 손해

55)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39277 판결.

56)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57 판결(공 1988, 573);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판결(공 1999, 998);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공 2003, 211);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47014, 47021, 47038 판결(공 2006, 313).

57)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공 2004, 1201);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4다48508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1880 판결(공 2006, 1662);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51120, 51137, 51144, 51151 판결(공 2009, 1516).

58) 김재형(주 23), 422면; 김재형,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민법론 III, 박영사, 2007, 389면 이하.

5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17. 선고 2007가합96787 판결. 그 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손해배상액을 8천만 원으로 조정결정하였다.

배상을 도입하는 것에 반대하였다.⁶⁰⁾ 우리나라에서는 언론피해에 대하여 금지청구, 반론보도청구, 정정보도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다양한 구제수단이 있다. 이에 반하여 미국에서는 금지청구나 반론보도청구는 미국 연방 수정헌법 제1조에서 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해서 인정되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는 언론피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손해배상은 여러 구제수단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여러 구제수단이 있는 상태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가적으로 도입하면 표현의 자유를 좀 더 심각하게 침해하게 될 것이다.

2. 금지청구권

초상권 침해에 대하여 금지청구권이 인정된다. 판례는 인격권에 기한 금지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⁶¹⁾ 언론피해구제법 제30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자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론사등[언론사·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가리킨다]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명백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언론사등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30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손해배상은 인격권이 침해된 후의 구제수단이라면, 금지청구권은 인격권의 침해를 미리 예방하는 사전적 구제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금지청구의 상대방은 침해행위를 정지 또는 예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언론사 등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언론피해구제법은 금지청구권의 상대방을 언론사 등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기자 등이 침해행위를 정지 또는 금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인격권에 기하여 기자 등을 상대로 금지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초상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그 상태를 제거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초상권 침해의 경우에 침해행위의 정지 등은 초상권을 침해하는 사진을 삭제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피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제 또는 검열제도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대한 금지청구권이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것인지 문제되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부정한다.⁶²⁾

그러나 금지청구권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은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 억제는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또한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금지가 허용된다. 그와 같은 표현행위는 그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에 우월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고, 또 그에 대한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의 필요성도 인정되기 때문이다.⁶³⁾

언론보도로 초상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그것이 공공

60) 상세한 것은 김재형(주 23), 463면 이하 참조.

61)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공 1996, 1486).

62) 헌법재판소 1996. 10. 4. 선고 93헌가3, 91헌바10 결정(헌집 8-2, 212); 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2000헌바36 결정.

63) 대법원 2005. 1. 17.자 2003마1477 결정(공 2005, 391).

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보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금지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언론평해구제법은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정정보도는 언론의 보도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이고(제2조 제16호), 반론보도는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이며(제2조 제17호), 추후보도는 언론 등에서 범죄혐의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는 보도나 공표가 있는 후 추가적인 보도를 하는 것이다.⁶⁴⁾ 이러한 구제수단은 허위의 보도를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많이 이용되지만, 초상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이용될 수 있다. 가령 사진을 실으면서 엉뚱한 내용의 기사를 쓴 경우에 그 사진이나 기사에 관하여 반론보도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VI. 결론 – 올바른 보도 방법

1. 그렇다면 언론의 올바른 보도 방법은 무엇인가? 이에 관해서는 필자가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것은 언론인이 찾아야 할 내용이다. 법적 관점에서 선불리 올바른 보도 방법을 제한할 경우에 생생한 사진이나 영상을 보도하는 데 장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위에서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초상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차원에서

간략한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언론보도에 의한 초상권 침해여부를 판단할 때 사진이나 영상을 보도할 필요성이 얼마나 큰 것인지와 초상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얼마나 큰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법원에서는 결국 사진 등의 보도의 이익과 초상권 보호의 이익을 형량하는 방식으로 초상권 침해여부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진 등을 보도할 필요성이 큰 것인지, 초상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큰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진기자나 편집부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언론사에서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이다.

그리하여 언론사나 기자의 입장에서는 피촬영자의 동의를 얻고 동의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동의를 얻을 수도 있지만, 사진 등을 촬영한 이후에 동의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매순간 동의를 얻은 다음에 촬영을 한다면 생생한 사진이나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동의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명시적, 묵시적 동의 이외에 피촬영자가 실제로 동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추정적 동의라고 한다.

실제 언론 현장에서는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공적 인물이나 유명인에 관한 보도의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이 부정될 수 있다. 또한 공적 인물이 아닌 사인의 사진 등을 보도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관한 보도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부정될 수 있다. 그러나 유명인에 관한 보도도 지나치게 내밀한 사생활에 해당하는 장면을 보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결국 사진이나 영

64) 김재형(주 23), 258면 이하.

상을 보도할 필요성이 큰 것인지, 아니면 초상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큰 것인지를 판단하면서 보도를 해야 할 것이다.

2. 언론이 사법부의 법적 판단에 대하여 비판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언론보도도 법적인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은 모두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지난 30년 동안 어떤 경우에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가 인정되고 어떤 경우에 인정되지 않는지에 관하여 판례가 축적되어 왔다. 언론피해구제법에서는 판례를 수용하여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 문제에 관하여 상세한 규범을 규정화하였다. 이제 인격권은 우리의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기초적인 권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따라서 언론도 인격권을 인식하면서 취재나 보도 관행을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인격권은 언론에 대한 하나의 도전일 수 있지만, 그 가치를 인정하면서 슬기롭게 대응한다면 우리 언론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제2주제 지정토론

■ 김정탁 (서울제6중재부 중재위원,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요즘 우리 언론에서 ‘홍악범의 초상을 보호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이고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호해야 된다’는 조항과 헌법 제21조 ‘언론자유와 출판 자유를 보장한다’는 두 원칙이 서로 충돌하는데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제21조를 강조하면 홍악범, 심지어 일반범죄자라 할지라도 얼굴을 공개해야 하고, 만약 제10조를 강조하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이 판단은 재판관의 의식과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의회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떤 법도 제정할 수 없다’라는 것과 수정헌법 제6조의 ‘피고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 항상 대법원에서 논란이 되고, 이 중 어느 쪽에 비중을 둘 것인가가 미국 언론학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미국의 재판을 보면 사진을 못 찍고 스케치 처리하는 것은 수정헌법 1조보다는 수정헌법 6조에 무게를 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상황에 따라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어떤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런데, 예전 자유당 시절의 박인수 사건이라는 대단히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 법대생을 사칭하고,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를 사칭하여 수많은 여대생을 농락한 사건입니다. 당시에 최대의 관심사였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정기석 씨의 ‘자유부인’이라는 소설도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권순영 판사는 판결에서 ‘법은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정조만을 보호한다’며 박인수 피고인을 무죄 석방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도 ‘정조’를 ‘인격’으로 바꾸어 ‘법은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인격만을 보호한다’고 말하면 이것이 나름대로 현직 언론인들이 홍악범의 사진을 공개할 건가 말건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도윤 (CJ E&M 법무팀 부장)

‘초상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려면 초상을 통하여 인물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 주위 사람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초창기엔 제작진들이 얼굴을 가리는 것도 많이 부담스러워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는 것이 방송영상의 퀄리티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법무팀에서는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얼굴뿐만 아니라 상반신, 하반신까지도 모자이크를 하도록 계도를 하였는데, 제작진도 처음에는 거부감을 나타내다가 분쟁 건이 다수 발생하다 보니 지금은 많이 이해하고 가이드라인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 저희 프로그램 중에서 정선 카지노 도박 중독으로 인해 집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노숙자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취재를 하게 되었는데 사우나 탁자에 있는 사람의 상반신을 가리고 하반신이 노출되었습니다. 같이 노숙 생활을 하고 있던 옆 사람이 그 방송을 보고 언론중재위에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손

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을 하여 그 사람이 구제받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조언했던 사람도 또 다시 조정 신청을 했던 경우가 있는데, 주위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특정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것이 불명확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연예인이라든지 유명인에 대한 핫이슈가 터졌을 때, 취재진들은 특종에 대한 욕심이 강합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지상파나 종편, 보도PP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뉴스 보도를 하지는 않지만 E뉴스나 와이드연예뉴스 같은 프로그램에서 많은 연예 정보를 다루고 있고 오락 교양물에서도 관련 내용을 방송하게 될 경우 초상권, 성명권 등 인격권 침해 이슈가 나올 수 있는데, 해당 인물의 성명을 영문 이니셜이나 두(頭)문자로 표현하는 경우 요즘은 예를 들어 ‘안’씨 성(姓)의 연예인이 화제가 되었다면 ‘A’라고 표현할 때 ‘안’씨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아예 ‘X’ 등으로 표기하도록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표거절권’과 관련해서는 일반인들이 촬영을 허락하고 나서 실제 방송을 할 무렵에 마음을 바꾸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연예인들은 정상적인 출연료 등을 받고 출연 용역을 제공하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관련 약정을 위반하지 않는데, 일반인들은 짧은 약식 동의서를 쓰기도 하지만 방송 실무 관행 및 여러 여건상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소정의 거마비 목적의 출연료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녹화를 다 하고 나서 나중에 그 분들이 본인의 초상이나 인터뷰 내용을 내보내지 말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그 동안에 기획하고 취재하고 편집했던 것들이 고스란히 사장(死藏)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자기 이야기와 초상이 나가서는 안 된다고 뒤늦게 요구를 해 올 경우,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방송사로는 고스란히 인적, 물적 비용으로 남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혹은 지급했을 때,

약정이 있을 때 혹은 없을 때에 관해 발제하신 김재형 교수님이 최근에 쓰신 책 ‘언론과 인격권’ 안에 ‘무상동의’, ‘호의동의’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미담기사의 경우, 저희들은 미담이기 때문에 문제를 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본인들은 그런 미담조차도 프라이버시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일반인 출연자들이 제공해주는 사진 중에 자기만 나오는 사진은 본인이 추후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없겠습니다만, 문제는 본인이 다른 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제공해주는 경우에 함께 찍은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초상 노출에 대한 허락을 받는 게 원칙이겠지만, 여러 가지 제작 여건상 출연자에게 다른 분들의 초상 사용허락을 받았냐고 물었을 때 출연자가 괜찮다고 해서 그냥 노출했을 경우 문제가 되어서 실제 중재위에 분쟁조정신청을 당했던 경험도 있어 유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현행 민법상 미성년자가 만20세 미만이고 내년 7월 1일부터는 만19세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미성년자가 자기 사진을 제출하여 방송사가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부분도 방송사들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공적 인물의 범위와 공적 인물들이 하는 행위 중 허용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실무상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또한 범죄 관련 프로그램에서 피의자 신분 공개와 관련해서 과연 ‘익명보도를 해야 하는가, 실명보도를 할 수 있느냐’하는 것들이 실제 제작현장에 많이 고민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가 방송한 여성 대상 프로그램에서 요즘 흉악 범죄, 특히 성폭행 범죄가 많다 보니까 관련 아이টে를 다룬 적이 있었는데 청주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다가 야산에서 목을 매서 자살한 사건이 내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수사망이 좁혀지자 자살했기 때문에 관련 범죄의 가해자인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지명 수배전단에 나온 사진과 성명을 과연 방송에서 노출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용의자가 자살은 했지만 아직 정식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유족들이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을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성명도 가리고 얼굴도 모자이크를 하자는 의견을 법무팀에서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편, 사생활에 관한 보도문제에서 연예인들이 과연 공인이냐, 그리고 공인이라면 그들의 어떤 영역까지 언론이 보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결혼적령기에 있는 인기 여자 연예인이 남자와 몰래데이트를 하게 되면 누구나 관심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게 과연 공공의 이익, 공적인 관심사 이런 것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관련 판례의 태도는 성문제라든지, 건강에 대한 문제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연예인들이 공인이라고 할지라도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언론분쟁조정 절차에서의 손해배상 조정액과 관련하여, 제가 알기로 중재위원회에서도 손해배상 산정액 기준표 또는 가감표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표를 통해서 적정하게 어떤 사유들이 조정시 참작되고 가중, 감경되는지에 대한 것을 미리 알 수 있다는 건 아주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인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분쟁조정 신청 건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청구 금액도 높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부합해서 조정액이 높아진다고 하면 각 방송사업자나 신문사업자 등 언론사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을 좀 헤아려주셨으면 좋겠고, 또 조정이나 중재의 취지가 정식 재판절차에 가지 않고 원만하게 합의

를 하자는 취지니까 그런 점에서도 언론기관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서 조정을 권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공동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교수님께서 발제하셨는데, 저희들이 자체 제작도 하지만 외주제작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지상파나 PP사업자도 관련 외주제작 계약의 내용이 도급일수도 있고 위임일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납품받은 방송 테이프를 최종적으로 철저히 검수를 하고 제반 위법 요소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잘 아시다시피 제작 여건이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모니터링하고 검수, 편집해서 최종적으로 시정하기에는 시간이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여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종합정보제공사업자의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 글의 삭제의무 이슈는 워낙 다수의견, 소수의견, 별개의견으로 법적 논란이 많았던 이슈여서 제가 쉽게 논평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반인 출연자들에 대한 비방 글들을 채널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내려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될 경우 게시판에 글을 쓸 수 있는 것은 대부분 회원으로 로그인한 분들이므로 이용약관상 명예훼손 우려가 있는 글들은 제작진에서 임의 삭제가 가능하긴 하지만 그런 게시글들을 삭제하다 보면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해 이슈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사례와 같은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임의 삭제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기관도 사진이나 UCC 등 동영상을 게시판에 게시해서 뽑는 프로모션 행사 등을 할 때 유의해야 할 부분이 그 분들이 올린 사진이나 동영상이 타인의 초상권 등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점입니다.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례 중에 재미있었던 것이 부산에서 명절 귀성차량 행렬을 방송하면서 톨게이트 요금소 직원의 얼굴이 노출되어 그 분이 초상권 침해로 소송을 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최근 일반인들의 초상권 등 인격권에 대한 권리 의식이 점점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언론사들도 이런 추세를 인식하여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하겠고, 언론중재 위에서도 일반인들의 권리 구제와 언론사의 표현의 자유 제고가 조화롭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재형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

홍악법 보도의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에 관해 말씀하셨는데, 매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진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좋느냐 아니냐 하는 것인데 그게 아주 끔찍한 범행이고 사회적으로도 큰 논란을 일으켰다든지 하는 경우라면, 사진을 보도하더라도 문제 삼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전세계적으로 보도하기도 합니다. 그것에 반해서 청소년이 폭행한 것 등이 문제가 된 경우라면 대체로 얼굴까지 내보낼 필요가 있느냐, 또는 학교라든지 이름을 내보내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똑같은 범죄라 할지라도 그게 홍악범이냐 또는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성인이냐 아니면 10대 청소년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오히려 일률적인 기준을 만드는 것이 위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은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얼굴이라든지 이름을 내보내서는 안 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청소년은 자라고 있는 학생이고 이후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성장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을

돌봐줘야 된다’는 생각이 더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에 비해서 홍악범죄라고 한다면 ‘그와 같은 피의자나 홍악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인격적 이익은 고려를 덜 해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독일에서 유명한 판결이 있습니다. ‘네바하’라는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에서는 아주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것에 관해서 보도가 다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20년쯤 지나서 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출소할 무렵에 언론에서 ‘네바하’사건에 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독일연방 헌법재판소에서 ‘범죄를 막 저질렀을 때 보도하는 것은 괜찮지만 시간이 많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그 사람이 사회에 복귀할 필요성, 사회에 복귀할 이익이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방송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사건에 직면해서 여러 사건에서 어떤 방식으로 형량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하나하나 해결을 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얼굴을 가려야 된다’라는 점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만 어떤 범죄인지에 따라서 다른 양상을 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도윤 부장님 말씀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위사람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면 제작하는 쪽에서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유방확대 수술을 받은 사람이 ‘자기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해달라’고 하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인터뷰에 동의했다라도 주위사람들이 정말 모르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1998년 상황입니다. 1998년에는 ‘유방확대수술을 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 경우에 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될 것이다’ 혹은 ‘그 사람의 사생활이 침해될 것이다’라고 보통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여년이 지난 현재는 아마 똑같은 유방확대수술이라고 할지라도 다르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 뒷부분에서 성적인 부분 등에 대해 이야기해주셨습시다만 그런 부분은 여전히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보호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밀영역 혹은 비밀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좀 더 크게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사진을 촬영한다든지 인터뷰한 것에 동의를 했는데 나중에 변심한 경우 어떻게 되느냐’ 혹은 ‘인터뷰와 사진 찍는 것을 다 허용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진이 잘 안 나왔을 경우 철회를 할 수 있느냐’하는 것은 철회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른바 대가를 받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크게 좌우되고, 계약형태로 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른바 ‘무상동의’, ‘호의동의’라고 하는 것, ‘아무런 대가 없이 사진을 찍어도 좋다’고 한 경우라면 대체로 인터뷰 끝난 다음에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쉽게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계약 취소 사유가 있어야 하며 쉽게 철회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내보내서는 안 되고 법정대리인에 해당하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성년자인데 나체사진을 찍어서 내보내는 것에 아이가 동의를 했는데 그런 경우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에 관해서 독일에서 많이 논의된 적이 있습니다.

공인과 관련된 것은 연예인과 같은 경우에 논란이 많이 있는 것인데 대체로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연예인의 경우에는 공인 또는 공적 인물이라고 봐서 책임을 면해주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건강이나 성적인 문제 등은 보도나 방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경우에도 동의를 받으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트하는 정도까지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은 애매

한 부분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어느 정도 해야 될지는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기준표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준표를 작성하더라도 그것이 판사를 완전히 구속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준표들은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점점 만들어가고 수정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형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양형에 관해 기준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도가니 같은 사건이 있으면 양형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어떻게 하고, 또 강간사건 등 성범죄에 관해서 양형기준이 높아지고 하는 것들이 괜찮은가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만, 손해배상기준표에 있어서도 많은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만드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동불법행위에 관해서는 결국 외주사업자가 문제가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는 그런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방송사 입장에서 외주사업자를 통제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피해자는 외주사업자 뿐만 아니라 방송국에 대해서도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라는 것이 기본적이며, 그런 경우에 방송국에서 외주사업자에 대해서 다시 피해를 회복하는 것, 이른바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구상권에 관해서 분담 부분은 애매하기 때문에 외주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당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구상권을 행사한다든지, 손해를 분담할 것인지에 관해서도 세밀한 기준을 정해서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합토론

■ 박헌채 (서울제5중재부 중재위원)

제가 중재위원을 1년 남짓 해오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초상권 침해입니다. 배재만 부회장님도 ‘중재위에서 하는 기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김재형 교수께서 법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현 시점에서 가장 바람직하고 합리적이고 보편타당성 있는 기준을 제시해주셨다고 봅니다. 미국, 독일, 한국의 판례들을 인용해가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그 기준을 익히셔서 거기에 맞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전부는 아닙니다. 실제로 제소 혹은 신청된 사례에는 특이한 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2002년도 월드컵 응원사진을 찍었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왜 내 사진을 찍었느냐’하는 경우도 있고, 단풍 시즌에 TV에서 헬기를 가지고 영상을 찍었는데, 헬기에 있는 사람이 가서 ‘내가 당신 사진을 찍겠소’할 수도 없고, 만약 자기 와이프가 아닌 다른 사람하고 손 잡고 가는 장면이 촬영되어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손해배상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매우 특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인 기준을 만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언론이 사진을 잘못 찍어 초상권을 침해했다면 물론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흉악법들을 많이 찍기도 하고 보도도 많이 합니다. 흉악법의

경우에 우리나라는 경찰에서 사진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무죄가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잡힌 사람이 흉악범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확인 없이 언론에서 써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여론재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과연 그 사람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법이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또 하나는 기자와 성직자는 약자를 보호하고, 인격권에 대해 사람을 보호해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는 공익적 이익을 위해 왜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구조적인 원인을 찾으려고 사진도 찍고 증거도 찾다 보니 초상권 침해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재위원님들께서도 기자들의 탐사 보도에 대해서는 고려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편, 과거 불량만두 보도로 인해 사장이 죽었습니다. 사실 사진만 봐서는 불량만두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없는데, 그냥 불량만두라고 하니까 기자들이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무죄판결이 났을 때 그 사장은 이미 죽었는데 언론사가 책임질 것도 아니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 김재형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

법원과 중재위원회의 손해배상 액수가 차이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찌 보면 사안이 가벼우면 중재단계에서 끝날 수도 있는데 법원에 가서 소를 제기하고 변호사 선임할 정도면 사건이 중대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액수가 커질 수

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하면 변호사 선임비용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손해배상 액수가 정해질 수 있는 점도 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평균적으로 천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된다 하여 그와 똑같이 중재위원회에서도 평균 천만 원 정도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통계수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준 차이가 너무 크다면 손영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 번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철관 회장님께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 사진 같은 것을 보도하느냐 마느냐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경찰에서 발표를 하더라도 그게 정말 믿을 만한 것인지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발표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자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피해자 등에게 확인을 한다든지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 전화를 해보면 그 회사가 쉽게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할 수 있었는데 아예 전화도 해보지 않았다면 책임을 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불량만두 사건에 관해서는 공익에 관한 보도는 단순히 허위라고 해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라 하더라도 언론기관 입장에서 그런 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언론기관의 책임을 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판단을 해야 되고 그런 경우에는 사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익명보도원칙에 관해 대법원에서 99년에 아주 중요한 판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익명으로 보도를 하라, 특히 사인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라’는 것인데, 공인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이름을 보도할 필요성이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내용이 달라질 수 있

을 것 같습니다.

■ 김정숙 (대구중재부 중재위원, 영남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제가 묻고 싶은 부분은 초상권의 경우에 면책 기간이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이 지나면 인용을 해도 괜찮다거나 책에 쓸 때 30년 전 사진 또는 50년 전 6·25 때 아이의 사진을 썼는데 나중에 와서 ‘그게 자기 사진이다’라고 주장할 때 기간적인 측면에서 면책 기준은 없는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또 초상권 손배의 경우, 일면에 실렸는지,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등도 고려해야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김재형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

오래 전에 찍었다 하더라도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초상권은 여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한 경우에도 사자의 인격권이라고 해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너무 오래 지났다면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죽은 지 60년이 지났다면, 30년이 지났다면 그러면 현재로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광고에 쓴다면, 예를 들어 제임스 딘의 사진을 광고에 이용한다면 등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관해서는 이른바 ‘퍼블리시티권 침해’라고 해서 따로 보호를 받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없고, 지방법원 판결에서 이런 저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호기간에 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30년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견해도 있고, 50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고, 70년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현재는 대체로 기간에 대해서는 살아 있는 경우라면 계속 보호를 받고 사자의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서 또

는 언론에 의한 보도나 광고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될 수 있으면 사진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일면에 있느냐 뒷면에 있느냐 등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정하는데 내용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 박도윤 (CJ E&M 법무팀 부장)

제가 경험했던 케이스 중에 뉴욕에 소재하는 콜롬비아대학교 내에서 촬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학교 측에서 캠퍼스 내에 촬영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촬영된 영상에 잡히는 사람들에게 다 허락을 받은 영문품을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영상을 보고 그 초상을 허락한 품의 수를 다 매칭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허락한 것이 맞느냐, 허락하지 않았으면 삭제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물론 콜롬비아대학교가 유별나게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트렌드가 우리나라에도 도래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 오동명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사진특위위원장)

대선과 관련해서 특정 후보자의 표정이 안 좋게 나온 사진에 대해 비서관 등이 언론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편집권을 인정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손영준 (서울제3중재부 중재위원,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

나주 성폭행 피의자 고모씨의 경우, 법원의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흉악범이 공적 인물이라는 이유로 그 사람의 초상권이 사인과 상당 부분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면 재판은 왜 있는지, 언론이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 한 번 고려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구조적인 맥락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정보과잉의 시대냐, 정보부족의 시대냐 하는 논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과잉의 시대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보라고 하는 모든 것이 정보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공적인 이익과 관련된 정보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 알 권리라든가 관점에서 초상권이 침해되는 영역을 넓힌다고 했을 때 누가 현실적으로 이익을 보느냐, 이익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독자냐, 신청인이냐 아니면 언론이냐 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그리고 이것과 관련되는 논의는 누가 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이런 논의를 누가 정해야 하느냐, 어떤 통치시스템이냐에 관한 부분입니다. 결국은 논란이 되긴 합니다만, 고모씨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상당부분 소외된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들어 질문을 드립니다.

■ 김재형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

대선 후보에 관한 보도는 어떤 사진을 올려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선후보 정도 되면 그야말로 공적인물 중에서도 공적인물, 대선 후보로 나섰으면 모든 부분에 관해서 검증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현재 방송이나 신문에서 보도하는 사진이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대선후보에 대한 아주 내밀한 부분,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겠지만 그 이외의 것은 사진이 사실이라면 그 부분에 관해 책임지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관해서 공정성 시비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언론사가 한 후보는 찡그리는 모습을 하고, 한 후보는 활짝 웃는 모습이었던이라도 악의적이거나 그런

부분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정하지 않다’라는 공격을 받아서 문제가 될 순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나주 성폭행 피의자 고모씨의 경우 오보로 판명된 사람이라면 당연히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언론사 입장에서 방어할 수 있는 게 아예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게 공인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방어할 수 있기에 모든 증거가 나왔을 때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피의자라고 지목된 사람이 나중에 무죄를 받았을 경우에도 비슷한 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재판이 왜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재판이 3심까지 가면 현실적으로 1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경우에 따라서는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고, 중간에 혹시 위증한 사람이 있어서 재심이 들어온다면 또 시간이 지날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92년에 형사재판 때 판결 쓴 것이 재심 들어와서 7~8년 후에 보도한 적이 있는데, 그때 보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범죄 사건에 관한 보도에서 언론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아주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보도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을 것입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흉악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어떤 이익이 있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독자나 시청자, 넓게는 국민의 이익이 아닌지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알 권리’라는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은 알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독자들이 알아야 되는지, 그로 인해서 공적인 논의를 촉발시키는 것이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이정우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부회장, 투데이코리아 편집국장)

지명수배를 당했던 사람이 검거가 돼서 실형을 살고 자기의 수배전단이 신문에 나왔던 것을 내려달라고 민사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중도에 포기해서 결과를 알 순 없었지만, 만약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됐더라면 어떻게 되었을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 임병렬 (서울제4중재부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앞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기사삭제청구까지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자기 신변에 관한 불이익한 정보를 삭제해달라는 요청인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법이 개정된다면 길이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대오 (오마이스타 국장대우)

제가 몸담고 있는 연예계에서는 과연 연예인이 공인이냐, 아니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이름이 알려진 유명인이냐 하는 판단이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제가 언론중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형사와 민사사건으로 연루되었던 사건이 이른바 ‘장자연 문건 공개’건으로 검찰로부터 무혐의를 받았었습니다. 또 연예인 사건은 아니었지만 전 국회의원이었던 박기동 의원이 술집에서 여종업원을 추행하는 동영상을 공개한 건으로 민사 1억하고 형사까지 소를 받았다가 결국 박기동 의원이 소 취하를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박기동 의원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공인이었고, 몰래카메라로 영

상이 제작되었다는 점이 있었지만, 제가 몸담고 있던 회사에 자문을 해주시는 변호사가 그것은 명백히 명예훼손이고 초상권 침해이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옳다고 조언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성 보도였다,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반론보도를 제공했다는 것으로 결국 박기동 의원이 소 취하를 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 연예계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파파라치식 취재에 의한 사생활 침해’입니다. 연예인의 공적 영역, 사적 영역, 대부분의 연예인 같은 경우는 파파라치식 취재를 당하는 경우가 사건·사고라기 보단 연애를 하는 장면과 같은 형태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적 영역은 연예인이더라도 보호를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중재위에 신청된 사건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파파라치식 취재에 의해서 언론중재위에 오는 것은 정용진 신세계 회장 외에는 단 한 건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연예인이 자신을 공인이라 여기기 때문에 언론중재위나 명예훼손과 관련된 소송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다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파파라치식 취재를 지양할 수 있는 제도든 홍보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예인이 공인이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유명인이나에 관한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 김재형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

2002년 가수 비가 인기 있었을 무렵인데, 대학원 학생들에게 ‘가수 비는 공인인가?’ 하는 질문을 했더니, ‘공인이 아니다’는 대답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학기에 ‘언론·인터넷·인격권’이라는 로스쿨 강의에서 ‘유명가수가 공인인가?’하는 질문에서 ‘공인이다’고

답변하는 학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건 아마 언론과 관련된 법에 관해 알려지기도 했고, 대법원 판결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관념하고는 맞지 않는 표현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인은 공무원 중에서도 장관이나 국회의원 같이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예인을 공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공인’ 용어와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잘 지적해 주었는데, 유명인이라는 표현이 좀 더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미국 뉴욕타임스 사건에서 공인이 고위직 공무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출발했는데, 그 후 언론의 면책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고위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유명인으로 넓혀가면서 공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 미국법 이론이 우리나라에 수입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공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사실 미국에서도 공인의 기준에 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공인이라는 것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미국에서도 유명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이 공인인지 유명인인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이것에 따라서 결론이 크게 차이가 있진 않을 것입니다. 유명인이라 하더라도 그것에 관해 알아야 될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 대해 보도하는 것에 대해 똑같이 언론사가 면책되는 범위가 일반 사인에 대해서 보도하는 것보다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파파라치는 유명인이나 공인인 경우에만 따라다니지, 일반인을 따라다니며 취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면책 범위가 넓겠지만, 취재방법이 문제가 있다든지, 미행을 했다면 책임이 쉽게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호텔에 낫선 남자와 들어가는 모습 등은 쉽게 보도를 해서는 안 될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길거리를 돌아다닌다든지 레스토랑 정도

들어가는 것을 보도했다고 책임을 추궁 당하진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적인 영역이라도, 일반인의 사적인 영역이라면 그 자체로 보호가 되고 동의 없이는 보도를 하거나 사진을 찍어서 내보내서는 안 되겠지만 유명인이라면 그 범위가 그 보다는 넓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 배재만 (한국사진기자협회 부회장, 연합뉴스 사진부 차장)

초상권 범위가 광범위해서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기준을 정하자고 한 것은 건별 문제에서 그저 신청했다고 해서 분위기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판단할 때 기준은 좀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예를 들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중재위에 신청했을 때, 아까 초상권 뒷모습 같은 경우, ‘윤곽이 나왔을 때 옆에 사람이 알아볼 수 있을 경우’ 같은 조건이 있듯이 중재위원들 다섯 분 중에 ‘이거 가지고 그렇게 하긴 뭐하다’라는 식의 그런 ‘판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준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 흉악범 이야기가 나와서 여쭙보고 싶은 것이 네이버에서 신문의 자료사진을 가지고 DB화를 해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신문들도 다 볼 수가 있는데 그것과 연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에서 20년 후에 출소 시에 보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연관지어 말씀드리면 누군가 자신의 죄에 맞게 20~30년 형을 살고 나와서 지금 와서 20~30년 전의 신문을 네이버에서 보고 그 신문에 난 내 사진을 지워달라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에 자문을 구해 봤는데, 2009년 개정된 조항에 의해서 보도된 지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고, 인지한 지 3개월 이

내에 신청해야지만 받아들여진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대해서 초상권을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라고 물었더니 그것은 언론중재위의 소관사항이 아니라 법원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런 부분이 법원으로 가게 되면 판결은 어떤 식으로 날 가능성이 있겠는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하나 더 여쭙보면, ‘동의’라는 부분입니다. 초상권 저촉을 받지 않으려면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찾아보니가 인격권 같은 경우에 침해 언론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보면 ‘명시적 동의’, ‘묵시적 동의’, ‘추정적 동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명시적 동의’는 문서나 구두로 촬영을 승낙하는 경우고, ‘묵시적 동의’는 명시적으로 승낙하지 않더라도 카메라와 마이크 앞에서 호의적인 미소를 지으면서 질문에 답하거나 촬영에 협조한 경우, 크리스마스 저녁에 애인과 팔짱을 끼고 명동대로를 활보하다가 뉴스카메라에 촬영되었거나 공원에서 애인과 데이트하다 찍힌 경우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추정적 동의’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부재중이거나 본인에게 의식이 없어서 필요할 때에 승낙을 받을 수 없었지만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승낙이 확실히 기대되는 경우입니다. 추정적 동의라는 것은 플로리다 퍼블리싱 회사 대 플레처(Florida Publishing Co. v. Fletcher) 사건에서 ‘사진기자가 소방관의 뒤를 따라 화재로 파괴된 주택에 들어가 촬영한 경우, 법원은 뉴스매체에 관례에 근거한 추정적 승낙을 인정해서 기자의 책임을 부인함’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언론중재위에서 앞으로 중재하실 때 적용시킬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기준’이란 부분과 연관해서 판단해주실 수는 없는지 여쭙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건의하고 싶습니다.

■ 오광건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

언론중재위원회는 손해배상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미 내부적으로 ‘손해배상액 산정표’와 ‘손해배상액 산정가감표’를 마련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중재위원 워크숍을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중재부 간에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배재만 부회장님께서 신청인이 위원회 측에 손해배상액을 문의했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회 상담팀은 법무 업무에 능통한 전문 상담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법원 판례, 언론중재위의 사례 등을 토대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상담원이 ‘100만원 신청해라, 200만원 신청해라’ 식으로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해주는 경우는 없으며, 다만 상담자가 잘 모르니까 유사 사례에 대해 물어보는 경우에 법원 판례 혹은 언론위의 사례 등 객관적인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는 합니다.

또, 손해배상의 일관성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중재위는 현직 부장판사, 전직 언론인 등 법조인과 언론인들이 한 중재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합리적이면서도 언론사의 입장을 반영한 합의 방안을 제시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저한 증거조사를 통해 양 당사자들이 사안에 대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재위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김재형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

20년 지난 과거 사건을 올리는 것은 새로운 문제로 앞으로 연구를 해야 할 좋은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동의와 관련해서는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묵시적 동의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TV 카메라에 친근하게 웃는 경우, 동의했다고 하진 않았지만 그 행동

에서 동의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묵시적 동의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비행기에서 여배우가 내리면서 슬쩍 포즈를 취하면서 솔을 벗었는데 너무 많이 벗은 모습이 실린 적이 있었는데, 그것에 관해서도 동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명시적 동의나 묵시적 동의가 아니더라도 여러 상황을 봐서 ‘동의를 했을 것이다’라고 인정되면 추정적 동의가 인정됩니다. 어려운 개념입니다만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 한박무 (대전중재부 중재위원)

사회적 문제를 촉발시키거나 공분을 일으킨 홍악범이 누군지 알고 싶어 하는 건 국민 대다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론은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알려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상 언론이 국민을 짓누르는 권력기관을 자처하던 시절에는 ‘피의사실공표죄’가 있었으나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에서 마구 피의사실을 공표했지만 누구 하나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에 국민 소득이 높아지고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지고 사회참여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점점 더 법이 만들어 놓은 권리를 향유하겠다는 국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초상권 침해다, 명예훼손이다’라는 문제가 차차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기자들이 초상권 문제 때문에 크게 곤욕을 당하고 있고, 이런 경향은 앞으로 더해질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인인 경우,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이여야만 보도가 가능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재형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

피해자가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어떤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언론사가 책임을 면한다는 것입니다.

■ 임병렬 (서울제4중재부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 자리가 초상권 침해와 관련하여 서로의 이해가 상충되는 자리로 현직에 계신 분들은 ‘구체적이고 자세한 기준을 제시해주면 일하기 편하겠다’라는 심정에서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회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수확공식에 대입해서 결론을 내듯이 규율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의 상식과 규범, 법률들이 기준이 돼서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느냐 안하느냐를 판단해나가는 것이겠죠. 단지 우리가 이런 자리를 빌어서 우리 입장에서 ‘그냥 평범한 사진 가지고 왜 시비를 하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사진에 찍힌 상대방이었다면 어떠했을까’라고 한 번 더 생각해본다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구논문

인터넷 뉴스 소비 시대의 오보 지수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성폭력 관련 보도특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PAC

인터넷 뉴스 소비 시대의 오보 지수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주영기

한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

I. 서론

뉴스 정보가 ‘홍수’라는 단어를 떠올릴 만큼 넘쳐나고 있다. 인터넷, 스마트폰, SNS 등 뉴스 콘텐츠 전달 매체의 다양화를 통한 뉴스 복제, 재생산 및 소비 활동 증가에 따른 결과이다. 게다가, 인터넷신문사의 신규 등록이 늘면서 뉴스 콘텐츠 자체가 급속히 증가해 뉴스 정보 범람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6월 11일 ‘인터넷신문 유희광고 실태’를 공개하면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2년 현재 문화부에 등록된 인터넷신문은 3,216개사에 달한다. 이는 1년 전의 2,438개사보다 778개사가 늘어난 것으로, 한 업종에서 1년새 무려 31.9%의 업체 증가가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일반인의 뉴스 소비 형태도 TV, 신문의 순으로 이어지던 전통 매체 중심의 소비 패턴을 탈피했다. 인터넷 뉴스 소비가 TV방송에 이어 두 번째로 빈번한 뉴스 소비 방식으로 부상한 것이다. 한국광고주협회가 지난 2010년 발표한 ‘2009년 미디어 리서

치’에 따르면 뉴스를 보기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한 매체는 TV(57.7%)였고, 인터넷이 19.8%로 두 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 언론 매체인 신문은 14.8%로 3위를 차지했다.

이 같은 경향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10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팀이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위험인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민 1,000명을 상대로 ‘평소 어떤 경로를 통해 뉴스를 접하는 지’를 물은 결과, TV를 1순위로 답한 사람이 70.2%였고 ‘인터넷 뉴스나 카페’를 1순위 뉴스 이용 경로로 응답한 사람이 24.2%로 2위를 차지했다. 종이 신문은 이전 결과와 마찬가지로 3위를 차지했는데 특이한 점은 1순위로 이용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3.2%에 불과해 인터넷 이용자와 격차가 현격히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같은 추세는 2순위로 이용한다는 응답자까지를 감안하더라도 TV 이용자(91.1%)에 이어, 인터넷(51.3%)과 신문(25.3%) 이용자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명순 외, 2012). 이는 다시 말해 인터넷을 이용

한 뉴스 소비자의 급증을 알리는 변화이다.

이 같은 뉴스 공급 및 소비 행태의 지각변동은 새로운 뉴스 현상과 이에 따른 다양한 뉴스 효과의 사회적 출현을 암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특히, 인터넷을 통한 뉴스 소통 증가를 통해 저널리즘의 전통적 이슈의 하나인 ‘오보’의 문제가 새로운 차원에서 대두되고 있음에 주목한다. 언론중재위원회(2011)에 따르면, 인터넷뉴스서비스와 인터넷신문 등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뉴스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사례는 전체 조정 건수의 약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네이버나 다음 등 인터넷 포털 뉴스 서비스의 경우 841건을 기록해 전년(181건)보다 무려 4.6배나 증가했다. 이같은 중재 대상 기사의 증가는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기사의 총체적 부실함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부실함의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논하기 위해, 바람직한 언론 보도가 갖추어야 할 전형을 제시한 메릴(Merrill, 1997)의 TUFF 모델을 언급해 볼 수 있다. 미국의 대표적 언론 윤리학자인 메릴에 따르면 이상적인 언론 보도는 진실함(Truthful), 불편부당함(Unbiased), 포괄적임(Full), 공정함(Fair)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상적 기사의 필수 요건이 이런 네 가지 속성을 충족해야 한다면 역으로 부실한 기사들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런 요건들이 미비한 기사라는 관점을 활용해볼 수 있다. 특히, 진실되지 못하거나, 일정 정도의 편견이 기사 작성에 작용한 뉴스 보도, 부분적인 사실에 과도한 집중을 하고 사안의 전체적인 의미와 관련 사실들을 도외시하는 기사, 어느 한편의 목소리가 불공평하게 많이 담긴 기사는 관련 당사자나 그룹의 공분을 살 수 있고 이것이 언론중재위 제소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언론중재 대상 기사의 증가에서 짐작되는 인터넷 유통 뉴스의 부실성 증가는 TUFF의 결함을 암시하고 있고 이 TUFF의 결점들은

결국, ‘오보성’의 여부와 정도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판단의 근거는 오보의 개념 자체가 사실의 잘못된 전달을 의미하는 객관적 오보(objective error)뿐 아니라 해당 사실의 의미의 잘못된 전달을 뜻하는 주관적 오보(subjective error)까지 포함하고 있는 데에 기반한다(Nemeth & Sanders, 2001; Berry, 1967; Charnley, 1936). 다시 말해, 사실이 아닌 객관적 오보뿐 아니라 편파적이고, 부분적이며, 불공평한 주관적 오보가 오래 전부터 저널리즘의 질을 좌우하는 요소들로 인식되어왔다면, 이 객관적/주관적 오보의 판단 기준을 토대로 한 오보성의 여부와 정도는 인터넷 유통 뉴스의 질을 평가하는 포괄적인 척도의 출발점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중재 대상 인터넷 유통 기사의 증가가 암시하는 온라인 저널리즘의 질 저하가 사회 여론 형성 메커니즘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 *객/주관적 오보의 여부와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지수 개발을 위한 이론적 고찰과 실증적 탐색을 시도하기로 한다. 이는 정보와 의견의 투명한 사회적 소통을 방해하는 문제에 대한 진단 메커니즘의 구축, 혹은 도구의 개발 및 활용이, 보다 건강한 사회 소통 구조 모색을 위한 선결과제라는 판단에 입각한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비교적 빠른 시기인 1930년대부터 시작된 미국의 오보 연구의 결과물, 즉 오보 개념과 주요 발견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는 오보 연구에 반영됐던 소통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과 그에 따른 실증 연구의 결과로 축적된 이론적 토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어, 오보 지수 개발을 위해 국내외 각종 기자회견에서 정확한 보도를 위해 설정, 운용하고 있는 취재 및 기사 작성상의 준칙/가이드라인 등을 점검해보고 이들 중에서 TUFF모델의 네 가지 주요원칙과 관련되는 지침들을 간추려 봄으로써 이들을 중심으로 오보지수 항목들을 구성해보기로 한다. 또한, 이런 항목들의 실제 적용 가능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2012

년 12월 현재 진행 중인 18대 대통령 선거 보도와 관련한 샘플 기사를 선정해, 구성된 오보 지수 평가 항목을 적용해 보기로 한다. 이같이 실제 평가를 진행해보고, 그 텍스트분석적 과정과 결과에 대한 기술을 하면서 오보 지수의 개발 및 사회적 활용 가능성에 대해 논의해보기로 한다.

II. 오보의 개념적 고찰

1. 오보 개념의 다면성

맞다, 틀리다의 개념 자체는 본질적으로 이분법적 사고에 의존하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의 오보의 개념을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1930년대 미국 언론 오보 연구의 대표적 초기 성과물인 Charnley(1936)의 연구가 발표될 때부터 오보는 ‘기술적(mechanical)’ 혹은 ‘오타로 인한 오보(typographical errors)’, ‘사실에 기반한 오보(fact-based errors)’, ‘의미상의 오보(errors of meaning)’ 등과 같이 유형별로 나누어져 분석되었다.

여기서 기술적 오보는 사실 자체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이 사실을 기사화해 지면, 방송, 혹은 웹사이트를 통해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타와 같은 제작상의 실수로 발생하는 것들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사실에 기반한 오보는 이름, 직책, 나이, 주소, 시간, 장소, 날짜 등 객관적 사실을 잘못 파악함으로써 보도가 잘못 나가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의미상의 오보에 대해 Charnley는 잘못된(wrong) 인상을 주거나, 잘못된 사실을 시사하거나(giving a wrong implication), 특정 측면에 대해 너무 많거나 적은 강조를 하는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다.

오보를 유형별로 나누어 분석하려는 시도는 이후

연구에서도 지속적으로 발견된다. 1960년대 지방신문의 오보를 연구한 베리(Berry, 1967)는 오보를 객관적 오보(objective error)와 주관적 오보(subjective errors)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객관적인 오보는 Charnley(1936)의 사실에 기반한 오보와 기술적 오보를 합친 것으로, 오탈자, 이름, 직책, 나이, 주소, 숫자, 날짜, 장소 정보의 잘못된 인용(misquotes)을 포함한다. 이에 반해 주관적 오보는 기사의 호도하는 제목(mis-leading headlines)이나, 기사 텍스트내의 지나친 강조(over-emphasis) 혹은 충분치 못한 강조(under-emphasis)의 경우를 의미한다. 베리는 이 두 가지 종류의 기사 오보 중 전자는 돌발(breaking) 뉴스의 경우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반면, 주관적 오보는 기획성(budgeted, or planned) 기사에서 더 자주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객관/주관적 오보의 구분을 토대로 한 오보 연구는 이후 1970, 80년대에 활발한 조사 발표가 이어지다(Marshall, 1977; Ryan & Owen, 1977; Tichenor, Olien, Harrison, & Donohue, 1970; Tillinghast, 1983; Burriss, 1985) 90년대에는 소강상태를 보였고 2000년대에 들어 다시 활성화되는 추세다(Hanson & Wearden, 2004; Maier, 2002; 2005; Mensing & Oliver, 2005).

특히, 1980년대에 진행된 톨링게스트의 연구에서, 연구자는 오보를 ‘불일치’의 차원에서 바라보는데 객관적 오보의 경우 사실과의 불일치이고 주관적 오보는 뉴스 소스의 인식과 기사와의 불일치라고 해석했다. 이는 기존 연구들이 뉴스 기사의 취재원들을 대상으로 해당 기사의 정확성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던 점이 반영된 구분이라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재개된 오보 연구 중의 하나인 멘싱과 올리버(Mensing & Oliver, 2005)의 연구에서는 300개 지역 신문사 데스크급 기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 “사실상의 실수(mistakes of fact)”나 “의

미상의 실수(mistakes of meaning)” 정도에 대한 에디터들의 인식을 연구하기도 하였다.

상대적으로 오랜 역사를 가진 해외의 언론 오보 연구에 비해 국내에서는 늦은 시기인 90년대에 들어 초기 오보 연구의 모습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 연구들 역시, 언론오보의 개념을 객관적 오보와 주관적 오보로 나누어 접근하고 있다(김창룡, 1994; 우병동, 2002; 임병국, 1990; 한정호, 1997)¹⁾.

앞에서 살펴본 국내의 오보 연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오보는 명목적으로는 현실 혹은 실제와의 일치성 여부라는 하나의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 개념이지만 현실과 일치한다는 것, 혹은 다르다는 것을 구성하는 요인들은 다양한 차원에서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런 의미에서 오보는 개념적으로 다면성을 띠다 할 수 있다. 특히, 객관적 오보와 함께 주관적 오보를 상정함은, 언론 오보가 일상에서 언론이 흔히 좁은 지면 안에 이름, 날짜, 장소 등의 오류를 수정하는 정정보도의 수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역이 기사의 질을 판단하는 포괄적인 범위로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본 연구는 이 언론 오보의 다면성, 특히 ‘주관적 오보’ 개념을 토대로 기사의 질 평가용 지표 개발이라는, 오보 연구의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해보기로 한다.

2. TUFF 모델과 주관적 오보

지난 9월 타계한 미국의 저명한 언론 윤리학자인 메릴(Merrill, 1997)은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바람직한 언론 보도를 위해 진실함(Truthful), 불편부당함(Unbiased), 포괄적임(Full), 공정함(Fair)이 기사의 요건으로 갖추어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TUFF 모델로 알려진 이 이상적 기사 요건은 물론, 기사의 질을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데 필요충분조건이라고 간주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

일례로, 쏜슨(Thorson, 2003)은 신문 내용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뉴스의 정확성 이외에도 지역뉴스 기사 양, 배경 지식의 전달과 같은 심층 보도 여부, 탐사 보도, 이슈 중심의 보도를 들고 있다. 이런 요소들은 언론 보도의 질을 평가하는 데 있어 TUFF 이외에 다양한 차원의 기준을 고려할 수 있음을 예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부분은 불편부당성, 포괄성, 공정성은 기사 질을 구성하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특정한 편견에 좌우되거나, 부분적인 사실 보도에 국한하거나, 어느 한쪽에 공평하지 못한 보도를 함으로써 “지나친 강조(over-emphasis)” 혹은 “충분치 못한 강조(under-emphasis)”라는 주관적 오보(Berry, 1967)로 이어질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잘못된 인상(wrong impression)”을 주거나, “잘못된 사실을 시사(giving a wrong implication)” 하거나, “특정 측면에 대해 너무 많거나 적은 강조”(Charnley, 1936)를 하게 될 수도 있다.

결국, 이를 달리 표현하면 TUFF 차원에서 질이 낮은 기사는 주관적 오보를 범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반대로 주관적 오보는 낮은 기사의 질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 하나 여기서 눈여겨 볼만한 점은 TUFF에서 T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요소가 주관적 오보와 관련이 있다고 할 때 그 오보는 단순히 오보다, 아니다의 이분법적 카테고리 구분할 수 있기보다 편파적이고 부분적이며 불공평함의 조합에 따라 다양한 정도의 오보 스펙트럼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1) 최창섭(1985)의 연구에서 교황 요한바오로 12세의 당시 언론의 보도 사례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나 이는 국내 언론의 직접적인 취재 보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로이터통신의 오보를 국내에서 받아 쓴 것을 다룬 연구이다.

1. 오보 지수를 위한 주요 항목들-TUFF

지속적으로 반복 적용이 가능한 평가항목을 개발하기 위해 고려해볼 수 있는 대안은 누구나 활용 가능한 내용분석의 코딩 항목 개발이다. 해당 기사의 보도 대상과 관계된 인물로 하여금 해당 기사의 객관적·주관적 오보 여부와 정도를 평가토록 하는 것이 아니라, 설정된 기준으로만 기사 내용을 코딩함으로써 그 결과에 따라 오보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분석 기준 리스트를 구성해보는 것이다.

본 연구는 여기서 주관적 오보의 정도를 가늠하는 주요 영역은 메릴(1997)이 제시한 TUFF 모델의 네 가지 항목들을 기준으로 삼기로 한다. 사실성, 불편부당성, 포괄성, 공정성이 훼손된 기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객관적, 주관적 오보를 양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사실성이 부족한 기사는 객관적 오보로 이어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정한 편견이 기사 내용에 반영된 경우에는 중립적인 시각에서 해당 사안의 전모를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주관적 오보를 범하게 된다. 전체성이 상실된 기사는 해당 사안을 전후 맥락 속에서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사안의 부분적인 측면에만 관심을 집중시킴으로써 역시 주관적 오보를 만들어내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공정성이 결여된 기사는 특정 그룹이나 입장에 불공평하게 많은 지면, 방송시간 등을 배정하고 기타 그룹이나 입장 등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주관적 오보를 낳아 경쟁하는 사상, 입장, 정책, 인물 등이 그 내용적 우월성이 아니라 미디어의 불공평한 보도로 불균형적으로 형성된 여론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부연할 사항은 사실성을 지칭하는 T와 관련된 것이다. 사실성의 경우, 본 연구에서 1차적으로 한 기사에 담긴 정보들이 사실이나, 아니냐를 확인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항목을

분석 대상으로 유지하기로 한다. 이는 기사의 사실성, 혹은 진실성은 시간, 장소, 날짜, 인원수, 금액 등의 수치로 제시되는 1차적인 팩트의 사실 여부 만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대표사실, 혹은 명제가 얼마나 충분한 증거 팩트들에 의해 뒷받침이 되는가 하는 것도 또 다른 차원의 사실성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하반기 경제가 악화되었다’고 하는 대표 사실이 전달된 기사에서 얼마나 많은 증거 팩트들이 제공되는가의 양적인 측면은 경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분석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2. 뉴스 정확성을 위한 가이드라인들

다음으로 고려할 사안은 개별 기사의 주관적 오보 정도를 코딩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코더 간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실성, 불편부당성, 포괄성, 공정성을 대변하는 명료한 세부 코딩 항목을 설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에서 기자들이 취재 활동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는 지침들이 그 취재 활동의 결과물로서의 기사의 오보성을 측정하는 데에도 역시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미국 기자들이 취재 활동에 이용하도록 마련된 다수의 정확성 점검 리스트(accuracy check list)들을 살펴보고 이중 TUFF 개념에 적용할 수 있는 지침들을 중심으로 코딩 항목들을 구성하는 전략을 시도했다.

가. 새너제이 머큐리 뉴스의 정확성 점검 리스트

이 과정에서 주요 정확성 점검 리스트로 적용 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우선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의 새너제이에서 발행되는 ‘새너제이 머큐리’가 미국에디터 협회(American Society of News Editors, ASNE)의 ‘저널리즘 신뢰도 프로젝트(Journalism Credibility Project)’의 일환으로 지난 1999년 작성한 정확성 점검

리스트이다. 이 리스트는 그 해부터 다음해까지 8개월 간 일선 기자들을 상대로 활용케 해 이 리스트를 취재 활동에 사용하지 않은 그룹보다 오보율이 10%가량 떨어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된 이 리스트에는 그러나 '기사에 거론된 이름, 직책, 장소를 두 번 확인했는가'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활용이 불가능한 항목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현장 기자들만이 확인할 수 있는 항목들을 제외하고 본 연구에서 이용 가능한 항목들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 ▷리드문장은 충분히 지원되는가? (Is the lead sufficiently supported?)
- ▷스토리는 공평한가? (Is the story fair?)
- ▷모든 이해관계 그룹들이 기사 속에 등장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기사에 반영될 기회가 주어졌는가? (Were all the stakeholders identified, called and given a chance to talk?)
- ▷이 기사로 인해 신경을 거슬리게 되고 화를 낼 그룹이 누구인가? 왜? 그렇게 되어도 문제는 없는가? (Who will be annoyed/angry with this story tomorrow? Why? Are we OK with that?)
- ▷기사가 어느 한 쪽만 편을 드는 것은 아닌가? (Did we pick sides?)
- ▷(기사 속에서) 우리가 바라는 결과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지는 않았는가? (Did we make value judgments about outcomes we want?)
- ▷누군가 이 기사를 보고 정도 이상으로 좋아하게 되지는 않을 것인가? (Will some people like this story more than they should?)
- ▷기사에서 누락된 것은 무엇인가?(What's missing from the story?)
- ▷기사 스토리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 배경 정보가

요구되는 것은 아닌가? (Is the background material required to understand the story complete?)

나. 전문기자협회(Society of Professional Journalists)의 정확성 점검 리스트

- ▷모든 정보들이 출처(인물 혹은 근거 자료)가 제시되었는가? (Have you attributed or documented all facts?)
- ▷인용구는 적절한 맥락 하에 공평하게 제시되는가? (Are the quotes in your story presented fairly, in context?)
- ▷익명의 취재원을 사용하는가? 왜 사용하는가? 그런 익명의 소스를 사용하는 것의 정당성을 대중에 설득할 수 있는가? (Are you quoting anonymous sources? Why are you using those. Are you prepared to defend publicly the use of those sources?)
- ▷익명의 취재원이 제공한 자료나 사진을 사용하는가, 왜?(Are you using any material documents or pictures provided by anonymous sources? Why?)
- ▷사람, 소수그룹, 인종, 문화, 국가, 사업가·베트남인·치어리더와 같은 특정 사회 집단을 스테레오타입이 개입된 수식어를 사용해 묘사하는가? 그런 묘사는 주어진 맥락에서 정확하고 의미가 있는가? (Have you described persons, minority groups, races, cultures, nations, or segments of society—e.g. business people, Viet Nam veterans, cheerleaders — using stereotypical adjectives? Are such descriptions accurate and meaningful in the context presented?)

- ▷자료의 타당성에 대해 어느 정도 자신하는가?
이 자료를 사용하는 것의 정당성에 대해 대중
에 뉘뉘뉘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 (What is your
level of confidence about the validity of
this material? Are you prepared to defend
publicly the use of that material?)
- ▷제목은 기사 내용을 적절히 반영하는가? (Do
your headlines (or broadcast promos or
teases) accurately present the facts and
context of the story to which they are
referring?)

3. 지수 항목 개발

위에서 간추린 정확성 점검 리스트 항목은 그대로
코딩 과정에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예를 들
어, ‘자료의 타당성에 대해 어느 정도 자신하는가? 이
자료를 사용하는 것의 정당성에 대해 대중에 뉘뉘
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하는 질문은 기사의 오보성 평
가 작업에 참여한 코더가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적절
치 못한 것이다. 이 점검 항목의 요지는 자료의 타당성
을 다룬 것이므로 ‘자료의 타당성’이라는 항목으로 조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 유목 분석 과정에서는 출
처가 안 밝혀진 경우, 밝혀졌는데 상식적으로 해당 맥

락에서 적절해 보이지 않는 경우, 언급된 출처가 적절
함에 의문이 생기지 않는 경우 등으로 나누어 분류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스토리는 공평한가’와 같은 항목은 원 영역인
‘공평성’에서 한걸음 더 구체화된 내용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점검 항목 리스트에서 제외되었다.
위에서 소개된 두 가지 종류의 정확성 점검 리스트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조정 과정을 거쳐 TUFF의 네 가
지 영역 중 관련되는 그룹에 배치되었다.

제목의 적합성과 익명 취재원의 사용, 자료의 타당
성의 경우, 부적절한 제목, 익명 취재원, 부적절한 자
료의 사용이 기사의 사실성을 해칠 수도 있고 기사의
선입견을 반영하거나, 혹은 부분에만 치우친 보도의
성격을 반영할 수도 있으므로 기타 항목으로 둔다. 각
영역은 두 가지 점검 항목으로 구성되며 세 가지 기타
항목은 기사별로 관련 되는 영역에 포함시킨다.

IV. 샘플 기사를 이용한 코딩 사례

본 연구에서는 메릴(1997)의 TUFF 모델에서 제시
하는 이상적 기사 요건과 주관적 오보의 내용적 유사
성에 착안해 오보 지수 측정 도구를 개발했고 그 과정
에서 취재기자들의 정확성 점검 리스트가 활용되었

〈표 1〉 오보지수 측정 도구 (=TUFF 영역별 오보 점검 항목 리스트)

영역	오보 점검 항목
사실성	▷리드문장에 대한 팩트 지원의 충분함 ▷정보 출처(인물 혹은 근거 자료)의 제시
불편부당성	▷가치판단 여부 ▷스테레오타입형 수식어 사용
포괄성	▷기사에서 누락된 것 ▷배경정보의 필요성
공평성	▷모든 이해 그룹의 등장 및 목소리의 공평한 반영 ▷이 기사로 호불호의 감정을 가질 그룹은 누구이며 그런 감정도발에도 불구하고 이 기사는 정당한가
기타	▷제목의 적합성 ▷익명 취재원(혹은 그가 제공한 자료)의 사용 ▷자료의 타당성

다. 이 측정 도구를 활용해 실제 기사를 대상으로 오보 지수 측정 작업을 실시해 보았다.

안철수, 갑자기 태도 돌변한 이유 알고 봤더니...

文-安, '지분권·후계권' 놓고 밀약했다?

文측, 사실상 권력 나눠먹기 시인 "거국내각 공동정부"

여의도가 뒤숭숭하다.

느닷없이 발표된 안철수 전 대선후보의 '적극지원 결정' 때문이다. '문재인-안철수' 두 인사는 6일 갑작스럽게 이뤄진 회동에서 '대선 후 긴밀 협의'를 약속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안철수 전 후보 캠프 내부에선 갈등, 분열이 그 어느 때보다 심화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급보가 날아들었다. 아무 조건 없이 문재인 후보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문재인-안철수' 두 인사가 향후 권력을 나누는 공동정부 구성방안에 대해 교감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놨다. 일각에선 '이면합의설'도 제기됐다.

1. 안철수를 19대 대통령으로 밀어 준다. 2. 총리직을 비롯한 정부 주요 요직 인사에 대해 협의한다. 3. 이해찬 대표를 포함한 친노 세력은 퇴진한다. 4. 문재인 후보는 의원직을 사퇴하고 대선 패배시 정계를 은퇴한다.

안철수 전 후보가 진흥당 단일화 과정에서 "영혼은 팔지 않았다", "이념적 차이를 느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가 손바닥 뒤집듯 마음을 돌린 상황을 곱씹게 하는 대목이다.

'권력 나눠먹기' 밀약설을 놓고 정치권이 들쭉이자 다음날인 7일 새누리당은 "심히 거북하고 민망한 내용들까지 나돌고 있다"며 쓴소리를 던졌다.

박선규 중앙선대위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이다. "문재인-안철수 두 분의 모습을 보며 걱정되는 것이 많다. 벌써부터 함께 한 세력들 간의 지분 얘기와 자리 얘기가 흘러나온다."

"어제 저녁부터는 두 사람 사이에 밀약설까지 나돌고 있다. 그 내용들을 보면 문재인 후보 의원직 사퇴, 패배시 정계은퇴, 이해찬 대표 배제, 총리를 포함한 인사권 보장 등이다."

"듣기 거북하고 심히 민망한 내용들이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많은 국민은 이미 당연히 그랬을 것이라 읽어내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구태 아닌가? 본인들이 뭐라 설명하든 박근혜 후보를 이겨보겠다는 목적 하나로 명분도 약속도 다 팽개치고 이익만을 좇는 구시대정치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권력 나눠먹기' 밀약설이 SNS를 통해 확산되자 문재인 후보 측은 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권력 분점을 시인한 셈이다. 문재인 후보 측 우상호 공보단장은 '거국내각' 구상과 관련해 영등포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거국내각은 문재인 후보 진영뿐만 아니라 국민연대와 안철수 전 후보 진영, 합리적 보수까지를 포괄하는 국민통합형 정부 구상이다.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면 통합형 거국내각이 구성된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선택이 보다 분명해졌다." 결국 정부 주요 요직을 진영별로 나누겠다는 내용이었다.

새누리당은 "그러면 그렇지"란 반응을 보였다. 이정현 공보단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거국내각 구성은 전형적인 '권력 나눠먹기'이자 '자리 나눠먹기'라고 일침을 놔다.

"안철수씨가 민주당 대선후보 지원에 나서면서 가면이 벗겨졌다." "안씨가 실패한 노무현 정권 연장에 앞서는 것은 새 정치가 아니라 현 정치고 구태 정치인이다." "지금 안철수씨의 모습은 별 수 없는 정치꾼으로 그에게 필요한 것은 권력이고 명예고 안랩 주가 원상회복이다. 국가의 미래보다 안랩 주가의 미래가 더 걱정되는 사람이다." "문재인-안철수 두 분이 만나서 한 '이면합의'가 이런 것인지 선거 전에 유권자 앞에 밝히는 게 새 정치다."

문재인 후보를 겨냥한 공세 수위도 한층 높였다. "유세는 안철수와 같이하고 토론은 이정희 뒤에 숨는 문재인 후보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나. 정치 마마보이가 아니냐."

"문재인 후보는 안철수-이정희가 곁에 있어 마음이 든든할지 모르겠지만 이념연합, 권력연합을 지켜보는 국민은 국정혼란과 경제위기 앞에 불안한 후보일 뿐이다."

"야권은 좌파대연합의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것 같다. 더 좌파인 이정희, 덜 좌파인 심상정, 급진과격모험인 친노 핵심을 다 모았다." "쌀밥에 누 섞이듯, 까마귀 무리에 백로 섞이듯 이

질적인 사람 있으니 그제 안철수인데 요즘 행태 보면 겉 회고 속 검은 사람이 안철수 아닌가 싶다.”

이 기사는 2012년 12월 7일 인터넷신문인 뉴데일리에 게재된 기사다. 이 기사는 이름, 날짜 등 분명한 팩트가 틀려 눈에 띄기보다 틀릴만한 팩트 자체가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두드러진 기사라 할 수 있다. 확실성이 짐작되는 부분은 정치적 동기가 강하게 담긴 정당 관계자들과, 역시 정치적 입장을 강하게 드러낸 SNS의 목소리 정도이다. 이 기사의 보다 자세한 오보성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온라인 뉴스가 스마트폰·아이패드 등 신형 통신 기기를 통해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시기가 도래하면서 기사의 질이 향상되기보다 오히려 점점 하락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출발했다. 이 와중에 문제 현실

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시의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고 여론은 오보성이 강한 뉴스들의 무차별적 공격에 공략당하는 사태가 시시각각으로 벌어지고 있다.

독자들의 클릭을 유인하기 위해 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낚시 제목’이 인터넷으로 유통되는 기사들에 난무하는 것은 물론, 정체불명의 소스를 인용해 팩트를 가장한 미확인 사실들이 블로그 카페 SNS 등 곳곳의 채널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기도 한다. 뉴스 미디어간 취재 편집 관행이 서로 닮아가는 경향이 강한 국내 언론이 이런 다매체 시대 기사 질 하락 현상을 겪으며 국내 저널리즘 전체가 같이 퇴보하는 길을 걸을 수 있다. 일선 기자들의 취재력, 데스크의 책임 있는 기사 체크 및 조정 능력, 편집기자의 제목 기능 수행 등 저널리즘 현장 전반에 걸친 기능의 쇠퇴 현상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언론 산업이 전적으로 경제 논리에만 맡겨져 방치된다면 이 같은 변화는 심화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결국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언론의 기능에 대한 외부의 감시 기능의 강화이다. 이는 언론중재위원회와 같은 공식 기관의 활

〈표 2〉 오보성 분석 사례

오보 점검 항목	검토 결과
▷리드문장에 대한 팩트 지원의 충분함	-리드 문장의 메시지 자체가 불분명 ('뒤송송') -핵심 팩트인 4개항의 이면합의 출처 및 근거 전무
▷정보 출처(인물 혹은 근거 자료)의 제시	-무정형 주어: '정치권' '일각' -근거 없이 전하는 '설'을 그대로 전하기: 어제부터는 '밀약설'까지...
▷가치판단 여부	-사퇴후보의 타 후보 지원에 대한 기자의 해석: '손바닥 뒤집듯 마음을 돌린 상황'
▷스테레오타입형 수식어 사용	-“겉 회고 속 검은 사람”
▷기사에서 누락된 것	-밀약설에 대한 당사자의 입장
▷배경정보의 필요성	-사퇴후보가 타 후보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보도인데 양자간의 그동안의 협상, 협력 관계에 대한 맥락 정보 누락
▷모든 이해 그룹의 등장 및 목소리의 공평한 반영	-다양한 SNS의 목소리 중 한쪽 성향의 목소리만 반영
▷이 기사로 호불호의 감정을 가질 그룹은 누구이며 그런 감정도발에도 불구하고 이 기사는 정당한가	-팩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님. 정당한 알권리의 보장 기능 없음
▷제목의 적합성	-확인되지 않은 팩트를 제목으로 (文-安, '지분권'·후계권' 놓고 밀약했다?)
▷익명 취재원(혹은 그가 제공한 자료)의 사용	-무정형 주어: '정치권' '일각' -확인 안 된 이면합의 4개항
▷자료의 타당성	-타당성 부족: 확실한 팩트는 정치적 입장이 분명히 드러난 여당, SNS 목소리

등을 강화하는 전통적인 방식에 입각할 수도 있지만 달라진 매체 환경 속에서 이를 반영하려는 시도가 필요해 보인다. 달리 말해, 시민들의 뉴스를 비롯한 언론 생산물에 대한 감수성을 강화함으로써 ‘뉴스 리터러시’를 전 사회적으로 고양시키는 방향의 각종 프로그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주관적 오보를 중심으로 한 오보성 평가 도구의 개발을 시도하는 것도 이런 차원에서 학계 뿐 아니라 시민단체 등 일반 사회에서도 활용이 되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기자들이 취재 및 기사 작성시 활용하는 정확성 점검 리스트 중 이를테면 “기사 리드가 팩트들에 의해 충분히 지원이 되는가”와 같은 질문들이 공식적인 조사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뉴스 소비 과정에도 활용되는 사회적 변화가 바로 뉴스 리터러시의 향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장기적인 변화를 향한 한 움직임으로서 본 연구는 먼저, 우리보다 반세기 먼저 오보 연구를 시작한 미국의 연구 결과물, 즉 오보 개념과 주요 발견들을 살펴보고 이어, 오보 지수 개발을 위해 해외 기자들이 사용 중인 정확성 점검 리스트와 언론 윤리학자의 이상적인 기사 요건 모델(TUFF)을 활용해 국내 언론 보도의 오보성 지수 측정 도구의 기초적 틀을 구성하고 실제 기사 평가에 적용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온라인을 통한 뉴스 소비가 급증한 현실에서 오보는 단순한 ‘사실 오류’라는 카테고리적 개념을 넘어서 기사의 질을 가늠하는 연속적인 척도로 개념 전환이 필요하며 이와 일상의 뉴스 소비 과정에 뉴스 상품의 오보성을 수시로 점검하는 메커니즘과 문화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확산을 기대해본다. 이런 변화와 함께 본 연구에서의 오보성 측정 지수는 후속 연구와 함께 보다 정교하게 발전해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창룡 (1994). 보도의 진실, 진실의 오보. 서울: 나남출판.
- 우병동 (2002). 뉴스 보도의 정확성 연구. 언론과 사회, 11, 34-65.
- 유명순, 주영기, 손희정, 홍경진 (2012). 건강정보 문해력 측정을 통한 효과적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략마련 연구. 2012년 식품의약품안전청 프로젝트.
- 임병국 (1990). 한국 일간신문의 오보와 그 구제에 관한 연구. 커뮤니케이션연구, 7, 41-64.
- 최창섭 (1985). 교황 방한 취재보도에 따른 로이터 통신의 오보사례분석. 신문학보, 19(5), 75-86.
- 한정호 (1997). 기사 오보의 구조와 그 개선 방안. 한양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삼성언론재단.
- Berry, Jr., F. C. (1967). A study of accuracy in local news stories of three dailies. *Journalism Quarterly*, 44, 482-490.
- Burriss, L. L. (1985). Accuracy of news magazines as perceived by news sources.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62(4), 824-827.
- Charnley, M. V. (1936). Preliminary notes on a study of newspaper accuracy. *Journalism Quarterly*, 13, 397-398.
- Hanson, G., & Wearden, S. T. (2004). Measuring newscast accuracy: Applying a newspaper model to television.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81(3), 546-558.
- Maier, S. (2002). Getting it right? Not in 59 percent of stories. *Newspaper Research*

- Journal*, 23, 10–24.
- Maier, S. R. (2005). Accuracy matters: A cross-market assessment of newspaper error and credibility.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82(3), 533–551.
 - Marshall, H. (1977). Newspaper accuracy in Tucson. *Journalism Quarterly*, 54, 165–168.
 - Mensing, D., & Oliver, M. (2005). Editors at small newspapers say error problems serious. *Newspaper Research Journal*, 26, 6–21.
 - Merrill, J. C. (1997). *Journalism Ethics: Philosophical Foundations for News Media*. New York, St Martin's Press.
 - Nemeth, N., & Sanders, C. (2001). Meaningful discussion of performance missing. *Newspaper Research Journal*, 22, 54–57.
 - Ryan, M., & Owen, D. (1977). An accuracy survey of metropolitan newspaper coverage of social issues.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54(1), 27–32.
 - Thorson, E. (2003). What 35 years of academic research tells us. Poynteronline.com
 - http://www.poynter.org/content/content_print.asp?id=29033&custom=03. Accessed December 2012.
 - Tichenor, P. J., Olien, C., N., Harrison, A., & Donohue, G. (1970). Mass communication systems and communication accuracy in science news reporting.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47(4), 673–683.
 - Tillinghast, W. A. (1983). Source control and evaluation of newspaper. *Newspaper Research Journal*, 5, 13–24.

성폭력 관련 보도특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선남

원광대학교 정치·행정·언론학부 교수

I. 문제의 제기

최근에 발표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전체 범죄 건수는 175만2598건으로, 2010년의 178만5376건에 비해 3만2778건(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폭력이나 절도, 폭력 등 주요 범죄는 2010년에 비해 오히려 증가하였다. 특히 강간과 강제추행 등과 같은 성폭력은 2011년에 1만9489건이 발생하여 2010년 1만8256건에 비해 1233건(6.8%)이나 증가했다(문화일보, 2012. 8. 31). 정부가 2006년부터 성폭력을 5대 폭력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내세웠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이다. 특히 아동 관련 성폭력이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2006년에는 772건이었던 것이 2008년 1,005건, 2010년 1,105건 등 발생건수가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경향신문, 2009. 10. 2.).

나날이 흉악해지는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이를 사회문제로 부각시키는 과정에서 언론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언론은 사회의 ‘창문’ 혹은 ‘거

울’로서 뉴스를 선택하여 보도할 수 있는 기능을 갖기 때문에 그렇다. 나아가 언론은 뉴스를 단순하게 전달하는 ‘거울’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여론을 주도하고 그 이슈에 대해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현실구성체’ 역할도 수행한다(McQuail, 1987/1990). 즉, 수용자는 언론에 의지하여 특정이슈에 대한 사실적인 내용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특정한 입장을 갖게 된다.

실제로 언론은 성폭력 이슈를 집중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정부의 법적 및 제도적 장치 마련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예를 들면, <김부남> 사건에 대한 보도는 아동 성폭력이 얼마나 일상적으로 발생하는가를, <김보은> 사건에 대한 보도는 근친에 의한 성폭력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 등을 알림으로써, 성폭력을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시켰다(문경란, 1994, 37~38쪽). 최근 들어 <조두순>, <김길태> 사건 등에 대한 보도는 정부로 하여금 흉악법의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는데 기여하였다(동아일보, 2010. 4. 17.).

언론이 이와 같은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사건의 보도방식과 태도로 인하여 비판을 받고 있다. 먼저,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일명 ‘떼거리 저널리즘’ 혹은 ‘멤비 저널리즘’ 속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기자협회(2012. 9. 19.)에 의하면, 아동 성폭력의 심각성이 대두되기 전에는 아동 성폭력 관련 보도 건수(2007년)가 1년에 불과 100건~200건에 지나지 않았었다고 한다. 하지만 <김길태> 사건 이후(2009년)에 그 양이 10배나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특정한 기간에 성폭력 이슈를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사건 지향적인 특성과 무관치 않다. 다시 말해,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경찰발표, 즉 사실(fact)을 토대로 스트레이트기사로 처리하기 때문에 많은 건수를 다룸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원인을 분석하거나 파급효과, 대책 등을 심층적으로 다룰 수 없다. 이러한 보도 특성은 성폭력 사건을 가해자와 피해자 중심의 단순사건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서 문제가 된다. 즉, 성폭력 사건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중대범죄가 아니라 단순한 사건으로 탈색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서 이러한 보도 특성은 피상적 보도로 이어지기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연구자들(문경란, 1994; 유선영, 1999)은 기존의 성폭력 관련 보도가 심층적인 보도보다는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치중하여 성폭력 이슈를 단순사건으로 축소하여 왔다고 비판한 바 있다.

둘째, 성폭력 보도는 선정주의적 보도관행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정용국, 2012, 24쪽). 특히 선정적인 제목을 달거나 자극적인 내용을 담아냄으로써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김훈순, 2004; 김덕모, 2006).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기사표제로는 <악마들의 소굴마다 아동포르노 있었다>(국민일보, 2012. 9. 3.), <잔혹 여고생 남학생 앞에서 친구 성 학대... 사진 찍어 돌려봐>(동아일보, 2005. 4. 22.) 등이 있다.

이러한 선정적인 기사들은 성폭력 행위만을 묘사함

으로써 성폭력의 심각성을 희석시키고 성폭력을 사건 지향적인 이슈로 만들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장하경주, 2006, 126~127쪽). 언론보도가 성폭력 사건을 흥밋거리로 변질시킨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와 무관치 않다(김덕모, 2006). 성범죄 보도의 선정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이유는 대중의 주목과 관심을 끄는 데만 치중하느라고 사안의 본질이나 핵심내용과는 무관한 지엽적인 부분을 확대하거나 과장하기 때문이다(정용국, 2012, 25쪽).

셋째, 성폭력 관련 보도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보도의 신중성이 요구되지만 이를 간과한 경우가 적지 않다. 최근 일부 언론이 피해 아동의 일기장을 공개하고,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여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신중성이 문제가 되는 것은 매체간의 독자경쟁에서 비롯된 선정적인 보도와 무관치 않다. 하지만 보도 경쟁은 오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언론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조선일보가 성폭력사건을 보도할 때 피의자가 아닌 엉뚱한 시민의 사진을 올려서 물의를 일으킨 것도 바로 선정성 경쟁과 신중성 결여에서 야기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기자협회, 2012. 9. 19.).

성폭력 관련 보도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이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은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문제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보도쟁점 혹은 보도특성을 규명하는데 주로 초점을 맞추어 왔다. 물론 이러한 연구들은 성폭력 관련 보도의 일반적인 경향을 규명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보도의 문제점을 조명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제시하는데에는 미흡하였다(하종대, 1999; 김덕모, 2006; 김선남·장해순, 2011).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연구를 토대로 성폭력 보도의 특성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II. 기존문헌의 검토

지난 5년간 우리 사회는 무려 9만 여건의 성폭력사건을 기록하였다. 이는 하루 평균 52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로 엄청난 수치이다. 이를 인구비례로 살펴보면, 563명당 1명(0.18%)이 성폭력에 의해 희생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성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여 425명 중 1명(0.23%)이 피해를 당하였다. 그 뒤를 이어 광주 0.22%, 제주 0.2%, 부산 0.2% 등의 순서였다. 또한 성폭력 사건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 1만5970건이었던 것이 2011년 2만1912건으로 37%나 증가하였다. 특히 13~20세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2007년 3783명에서 2011년 6844명, 5년 동안 약 80%나 증가)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뉴시스, 2012. 10. 17.).

성폭력은 일상적이고 계획적이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2011)에 따르면, 성폭력 가운데 85.1%(980건)가 ‘아는 사람’에 의해서 발생하였다고 한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성폭력 범죄가 일부 일탈 행위자에 의한 범죄가 아니라 일상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폭력임을 확인할 수 있다. 성폭력 내용을 살펴보면, 성인여성(228건, 32.4%)의 경우는 직장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이 가장 많았던 반면, 유아(26건, 44.1%) 및 어린이(69건, 53.5%)의 경우는 친족에 의한 성폭력이 많았다. 이 사실을 통해서 성폭력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일상공간이나 생활공간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성폭력은 다른 범죄와 달리 우발적, 일회적 범죄가 아니라 일상적, 습관적 범죄인 것이다(유선영, 1999, 98쪽).

성폭력은 숨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희생자의

수가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유엔의 자료(한겨레, 2012. 8. 17.)는 한국에서 발생한 성폭력 건수를 2009년 현재 여성인구 10만 명당 33.7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낮은 성폭력 신고율(7~10% 안팎)을 고려하면 한국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건수는 유엔 통계보다 약 8배 높은 467.7명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성폭력 사건이 증가하면서 언론들도 이를 더 많이 보도하고 있다. 특히 ‘범죄’와 ‘여성’은 뉴스 가치(news value)가 높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최근 동종 및 이종매체간의 뉴스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범죄, 부패, 사고, 재해, 성, 인간적 흥미 등과 같은 연성뉴스(soft news)의 양이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김예란(2003, 17쪽)은 최근에 나타나는 언론의 특성을 “타블로이드화, 대중저널리즘화, 기사의 연성화”라고 규정한 바 있다. 또 한국인이 선호하고 주목하는 지면이 사회면이라는 특성(황용석, 1999; 조수선, 2004)을 고려한다면, 성폭력을 비롯한 성범죄는 언론보도의 주요 소재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성폭력 관련 보도는 여론형성의 기능, 사회적 통합의 기능이라는 순기능을 갖고 있지만 잘못 전달될 경우 여러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 정용국(2012)은 성폭력 보도의 역기능으로 ‘범죄의 성애화’, ‘2차 피해의 확산’, ‘왜곡된 성관념의 양산’, ‘실효성 없는 대책남발’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언론이 단순히 범죄결과나 범죄행위 그 자체에만 치중하게 되면 범죄의 배후에 존재하는 사회구조적 문제점을 은폐시켜 이를 사회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로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이진국, 2004, 40쪽). 이런 현상은 특히 성폭력 관련 보도가 피상적인 태도를 취할 때 나타날 수 있다(김선남·장해순, 2011; 유선영, 1999; 문경란, 1994).

뿐만 아니라 선정적인 기사는 수용자들에게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기보다는 모방범죄를 생산

할 가능성을 높여 준다(이진국, 2004, 50쪽). 또한 성폭력 관련 보도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사항들을 언급해야 하기 때문에 인권침해의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승선(2012, 28쪽)은 “섬세하고 엄밀한 취재가 없다면 차라리 성범죄 관련 보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제안하면서, 성폭력 보도가 인권보호에 초점을 둘 것을 주장한 바 있다.

특히 성폭력 보도가 선정적으로 흐르게 되면 성 고정관념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 성에 관한 잘못된 믿음을 재생산할 가능성이 있다(김덕모, 2006; 유선영, 1999 등). 다시 말해, 언론의 선정적이고 흥미 위주의 보도성향이 결과적으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김훈순, 2004; 김덕모, 2006; 하종대, 1999).

장하경주(2006)는 이러한 성폭력 보도의 역기능, 특히 선정성 및 피상성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주장을 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성폭력 기사는 대부분의 경우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표제를 사용하여 성폭력을 흥미 위주의 가십거리로 규정한다고 한다. <부자가 자취여중생 성폭력 인륜 파괴>(한겨레, 1996. 7. 9.), <이번엔 여교장이...>(한겨레, 1996. 7. 12.), <성폭행 여중생 또 출산>(조선일보, 1996. 7. 31.), <성폭행 당한 10대 자살/3-4명에 납치...“살기 싫다”유서>(조선일보, 1996. 7. 24.), <소녀 번갈아 성폭행/10대 2명 검거>(동아일보, 1996. 7. 10.), <낮에 학생 밤엔 조직폭력/무서운 고교생들>(동아일보, 1996. 7. 9.) 등이 이에 해당하는 예이다. 또한 그는 성폭력 보도는 사건을 심층적으로 다루기보다는 단신으로 처리하여 사건의 심각성을 희석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역기능은 성폭력 보도가 사실전달에 급급하기 때문에 발생한 당연한 결과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언론의 접근방식의 전환을 촉구하였다. 즉, 언론보도는 사실전달에 머물지 말고 배경 및 문제점 등을 심도 있게 다루어서 사회적 대책을 마련하는데 일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2006, 128~129쪽).

한편, 김덕모(2006, 96~100쪽)는 성폭력 보도를 인권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8가지 보도 유형 때문에 역기능이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 (1)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해 성범죄를 묘사함으로써 성범죄에 대한 왜곡된 편견을 심어주고 피해자를 선정적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는 보도
- (2) 성폭력 규정을 회피하거나 가해자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보도
- (3) 피해자의 주체성을 왜곡하는 보도
- (4) 선정적 묘사와 피해자 고통을 외면한 흥미 위주 보도
- (5) 본말 전도에 의한 왜곡보도
- (6) 사건의 원인을 사회분위기나 피해 여성에 등을 돌리는 듯한 보도
- (7) 언론보도에 의한 신원노출과 프라이버시 침해 보도
- (8) 인권문제인 성폭력 문제를 성윤리와 도덕문제로 다루어 본질을 왜곡하는 보도 등이다.

김덕모(2006, 100~101쪽)에 의하면, 성폭력 보도의 역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성폭력 보도지침을 만드는 것은 물론 수용자의 미디어 액세스권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고 한다.

성폭력 보도와 관련된 특성을 분석한 기존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성폭력 보도는 가해자 지향적인 뉴스방식을 취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난하는 관점(victim blaming approach)에서 벗어나지 못했다(유선영, 1999). 둘째, 성폭력 보도의 상당수(전체의 55.7%)가 단순나열식 보도, 즉 사건지향적이고 폭로적인 입장을 보였다(김선남, 1996). 셋째, 성폭력 보도는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보도방식의 특성을 보였다(장하경주, 2006). 기사의 표제에서 특히 이런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넷째, 성폭력 관련 보도는 여성의 순결을 부각시켜서 여성

차별 관념을 재생산하는 데 앞장섰다(김선남, 1996). 다섯째, 성폭력 보도는 사건들을 심층적으로 다루기 보다는 단신으로 처리하여 사건의 심각성을 희석시켰다(장하경주, 2006).

III.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폭력 관련 보도의 특성은 어떠한가?

본 연구는 성폭력 관련 보도가 심층성을 결여하여 성폭력 사실을 단순하게 기술하거나 고발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기존의 주장을 실증적으로 입증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심층성 여부는 보도유형, 보도형태, 보도의도, 대안유형 등을 통하여 판단하였다. 뉴스유형이 스트레이트기사일수록, 보도의도가 단순한 정보제공에 머물러 있을수록, 대안제시가 부재할수록 심층성이 낮은 것으로 규정하였다.

둘째, 성폭력 관련 보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의 원인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성폭력 보도와 관련된 문제점의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심층인터뷰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전문가 집단(언론계)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보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내용분석(content analysis)방법에 입각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내용분석방법을 활용한 이유는 이 방법이 미디어 내용을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수량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디어 내용의 흐름을 총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다.

본 연구는 2개 중앙일간지 <동아일보>, <한겨레>에서 2012. 9. 1.~9. 31.까지 보도한 성폭력 기사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¹⁾. 2개의 신문을 분석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논조가 보수와 진보의 양 극단에 위치하고 있어서 다양한 입장을 담아낼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 기준에 입각하여 최종적으로 수집된 성폭력 관련 기사는 <동아일보> 61건(50.4%), <한겨레> 60건(49.6%)이었다.

본 연구는 성폭력 보도의 시각을 규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유목을 설정하여 자료를 구분하였다. 첫째, 기사유형을 기준으로 성폭력 기사를 스트레이트 기사(사건·사고 기사), 해설기사(사설, 논평), 의견기사(전문가의 기고 및 투고), 인터뷰기사, 미담기사 등으로 분류하였다. 스트레이트기사일수록 심층적, 전문적이지 못한 반면, 해설·의견기사일수록 심층적, 전문적인 것으로 규정하였다.

둘째, 기사작성자를 기자, 전문가, 논설위원, 독자, 없음 등으로 구분하여 성폭력 관련 기사를 분류하였다. 기사가 기자에 의해 작성된 것일수록 심층성, 전문성이 수반되지 않았다고 본 반면, 전문가, 논설위원에 의해 작성된 기사일수록 심층성, 전문성이 수반되었다고 보았다.

셋째, 기사내용은 성폭력 사건·사고, 성폭력 관련 정책,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성폭력 관련 현황보고

1) 본 연구는 한국언론연구원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인 KINDS를 이용하여 “성폭력”이라는 검색어를 이용하여 자료를 입수하였다. 그러나 이 자료 가운데 성폭력과 무관하거나 해외 관련 보도는 편의상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신문의 한 기사 내의 표제 속에 한 명 혹은 두 명 이상의 기자에 의하여 보도된 건수는 하나의 기사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해진 유목에 따라서 두 명의 코더가 각기 독립적으로 전체 자료를 분류하였다. 코더간의 신뢰도를 계산한 결과 Holsti 계수가 .92로 나타났다.

등으로 분류하였다. 이 항목은 보도의 심층성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도가 성폭력 사건·사고, 정책, 현황을 등을 단순히 기술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건의 원인과 문제제기, 대안제시 등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설정되었다.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과 관련된 기사는 심층적인 것으로 보았던 반면, 성폭력 사건·사고 및 정책, 현황 등을 기술한 기사는 피상적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넷째, 보도의도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고발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얼마나 문제를 쟁점화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는가를 기준으로 유형화하였다. 일반적으로 보도의도는 단순정보, 행사 및 이벤트 공지, 성폭력과 관련된 문제의 제기(공통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이슈화), 발굴(예, 미담)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박명진, 1991). 보도의도는 기사가 단순한 정보 제공, 행사나 이벤트 공지 등에 해당하는 것일수록 피상적인 것으로, 문제제기에 해당하는 것일수록 심층적인 것으로 규정하였다.

다섯째, 성폭력 보도의 피해자를 계층별로 구분하

였다. 계층은 아동 및 청소년, 일반여성, 장애여성, 외국인여성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보도내용이 특정 계층에 치우칠수록 그 보도를 획일적인 것으로 규정하였다.

여섯째, 보도시각은 보도내용에 포함된 성폭력의 원인, 책임소재, 대안의 성격 등을 기준으로 '보수주의', '여성주의', '시각부재'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성폭력 기사의 시각이 성폭력의 원인과 책임을 여성 개인에게 돌리는 경우를 보수주의로, 법이나 제도의 개선, 개인의 의식변화, 성교육 강화, 성문화 모순 등으로 돌리는 경우를 여성주의로 분류하였다. 한편 기사내용이 성폭력의 원인, 책임소재, 대안 등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사실만을 단순히 기술하고 있으면 '시각부재'로 분류하였다.

3. 심층인터뷰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는 성폭력 관련 보도의 문제점과 원인을 살피기 위하여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가

〈표 1〉 심층인터뷰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순서	성별	나이	학력	지역
1	남	45	대졸	서울
2	남	37	대졸	전북
3	남	56	대학원졸	전북
4	여	30	대졸	전북
5	남	43	대졸	서울
6	여	42	대졸	전북
7	남	59	대학원졸	전북
8	남	41	대졸	서울
9	여	40	대졸	서울
10	여	40	대졸	서울
11	남	52	대학원졸	서울
12	남	44	대졸	서울
13	여	41	대졸	서울
14	남	41	대졸	전북
15	남	50	대학원졸	전북
16	여	51	대학원졸	전북
17	남	44	대학원졸	서울
18	여	32	대졸	서울
19	여	29	대졸	전북
20	여	31	대졸	전북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한 이유는 이 방법이 갖는 장점 때문이었다. 패튼(Patton, 2002)에 의하면, 심층인터뷰는 사람들의 경험, 인식, 지식 등에 대한 심층적 반응을 얻어내는데 유용한 방법이다 (김선남·최용준·이영원, 2007, 31쪽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 심층인터뷰는 언론종사자 2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 55%, 여자 45%, 지역별로는 서울 50%, 전북 50%, 연령별로는 20~30대 25%, 40대 50%, 50대 25% 등으로 구성되었다(〈표 1〉 참조). 일부 인터뷰는 연구자가 대상자를 직접 만나 30분가량 면담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나머지는 연구자가 이메일로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전달하고, 응답된 설문지를 전달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인터뷰는 성폭력 보도의 현황 및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주관식으로 묻고 답하게 하는 절차로 구성되었다. 인터뷰는 2012. 11. 8. ~ 11. 15. 까지 일주일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심층인터뷰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IV. 연구결과

1. 분석 결과 : 성폭력 보도의 특성

성폭력 관련 보도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보도유형, 보도작성자, 보도의도, 보도시각 등을 살펴보았다.

가. 스트레이트성 기사에 의존하는 성폭력 보도: 피상적 보도

성폭력 관련 보도 가운데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한 것은 스트레이트기사(62.0%)였다. 즉, 사건·사고 등과 같은 표면적인 현상만을 보도하는데 치중하였다. 반면 심층적 보도(해설기사, 의견기사)는 25.0%에 불과하였다. 이 결과를 통하여 우리는 성폭력 관련 보도는 대체로 사건사고의 고발 등 이슈의 표면적인 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성폭력 현상의 원인이나 대안 등을 심층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간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피상적 접근을 하는 기사들은 신문사별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지만(동아일보와 한겨레는 각각 62.3%, 61.7%), 동아일보는 해설기사(16.4%), 즉 사설이나 논평 등으로, 한겨레는 의견기사(15.0%), 즉 전문가의 기고 및 투고 등으로 피상성의 보완을 시도하였다. 이 자료에 의하면, 향후 언론은 성폭력과 관련된 보도하는데 있어서 현황보고나 기술 등에 그치는 단순한 정보제공자에서 벗어나 사회적 비판자, 감시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내·외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성폭력 이슈에 대한 심층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 기자취재에 의존하는 성폭력 보도 : 전문성 결여

성폭력 관련 보도는 주로 기자에 의하여 작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80.2%). 전문가에 의한 보도는 15.0%

〈표 2〉 보도 유형

단위 : 건수 (%)

유형	동아일보	한겨레	계
스트레이트	38 (62.3)	37 (61.7)	75 (62.0)
해설	10 (16.4)	7 (11.7)	17 (14.0)
의견	4 (6.6)	9 (15.0)	13 (10.7)
인터뷰	8 (13.1)	7 (11.7)	15 (12.4)
미답	1 (1.6)	0 (0.0)	1 (0.8)
계	61 (50.4)	60 (49.6)	121 (100.0)

미만에 불과하였다(관련 외부 전문가, 9.1%, 논설위원, 5.0%). 누가 기사를 작성했는지조차 밝히지 않은 출처 미상의 보도도 4.1%나 되었다. 이들에 대한 보도의 심층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동아일보는 사내 논설위원(8.8%)의 의존도가 높았던 반면, 한겨레는 사외 전문가(10.0%)의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향후 언론은 사내·외 전문가를 더 기용함으로써 성폭력 관련 주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접근하여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성폭력 관련 전문가 자체의 도입 및 활용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 사건·사고, 정책 및 현황 기술에 치우친 성폭력 보도 : 원인규명과 대안마련에 소홀

가장 많이 보도된 성폭력 기사는 사건·사고(46.3%)를 기술하는 것이었다.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고찰(22.3%), 성폭력 정책보고(20.7%), 현황기술(10.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대부분의 기사내용은 성폭력과 관련된 표면적인 현상을 다루었고(약 78%), 심층적인 기사는 단지 22%에 불과하였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향후 성폭력 관련 보도는 성폭력 문제를 사회적으로 이슈화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비판적인 시각에서 다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라. 단순사실 제공에 매몰된 성폭력 보도 : 심층성 결여

성폭력 기사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보도의도는 단순사실 제공과 관련된 것이었다(75건, 62.0%). 그 뒤를 이어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초점을 둔 기사(28건, 23.1%), 행사 및 이벤트를 고지(9건, 7.4%), 발굴 보도(9건, 7.4%) 등이 있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심층성이 다소 결여된 상태에서 성폭력 관련 기사가 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에는 문제를 제기

〈표 3〉 보도작성자

단위 : 건수 (%)

보도작성자	동아일보	한겨레	계
기자	50 (82.0)	47 (78.3)	97 (80.2)
사외 전문가	5 (8.2)	6 (10.0)	11 (9.1)
논설위원	5 (8.2)	1 (1.7)	6 (5.0)
독자	0 (0.0)	2 (3.3)	2 (1.7)
없음	1 (1.6)	4 (6.7)	5 (4.1)
계	61 (100.0)	60 (100.0)	121 (100.0)

〈표 4〉 보도내용

단위 : 건수 (%)

소재	동아일보	한겨레	계
성폭력 관련 사건 사고	29 (47.5)	27 (45.0)	56 (46.3)
성폭력 관련 정책 보고	11 (18.0)	14 (23.3)	25 (20.7)
성폭력 관련 현황 기술	8 (13.1)	5 (8.3)	13 (10.7)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고찰	13 (21.3)	14 (23.3)	27 (22.3)
계	61 (100.0)	60 (100.0)	121 (100.0)

〈표 5〉 보도의도

단위 : 건수 (%)

의도	동아일보	한겨레	계
단순한 사실 보도	38 (62.3)	37 (61.7)	75 (62.0)
행사이벤트 고지	12 (19.7)	16 (26.7)	9 (7.4)
발굴 보도	5 (8.2)	4 (5.0)	9 (7.4)
문제제기 보도	6 (9.8)	3 (6.7)	28 (23.1)
계	61 (100.0)	60 (100.0)	121 (100.0)

하는 보도가 더 많아져야 할 것이다.

마. 미성년자 이슈에 치중하는 성폭력 보도 : 획일성

성폭력 관련 보도 가운데 언론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것은 미성년자(아동, 10대)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었다(55.4%). 그 뒤를 이은 것이 성인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관련 기사였다(43.8%). 한편, 장애인 여성이 관련된 성폭력 사건의 보도는 1건(0.8%), 외국인 여성과 관련된 성폭력 사건의 보도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언론이 주로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폭력 사건의 보도에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보도소재의 획일성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언론에서는 다양한 계층과 관련된 성폭력 소재를 발굴하여 보도할 수 있도록 소재의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바. 수박 겉 핥기식 성폭력 보도 : 시각부재

상당수 성폭력 기사에서는 시각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78.5%). 또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대안을 제시한 여성주의 시각은 26건(21.5%)에 불과하였다. 다행스러운 것은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보수주의적 시각이 1건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성폭력 보도의 바람직한 변화 가운데 하나로 최근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적 분위가 언론에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여성주의 시각은 한겨레(25.0%)가 동아일보(18.0%)에서 보다 더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 개인의 의식변화와 법·제도의 강화에 초점 둔 성폭력 보도 : 미시적 접근

상당수의 성폭력 기사는 미시적인 대안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시적 차원의 변화(예, 개인

〈표 6〉 피해자 유형의 특성

단위 : 건수 (%)

유형	동아일보	한겨레	계
미성년자(아동, 10대)	30 (49.2)	37 (61.7)	67 (55.4)
성인 여성	31 (50.8)	22 (36.7)	53 (43.8)
장애인	—	1 (1.7)	1 (0.8)
외국인	—	—	—
계	61 (50.4)	60 (49.6)	121 (100.0)

〈표 7〉 보도시각

단위 : 건수 (%)

시각	동아일보	한겨레	계
보수주의	—	—	—
여성주의	11 (18.0)	15 (25.0)	26 (21.5)
시각부재	50 (82.0)	45 (75.0)	95 (78.5)
계	61 (100.0)	60 (100.0)	121 (100.0)

〈표 8〉 성폭력 해결방안

단위 : 건수 (%)

해결방안	계
개인의 의식변화	3 (1.1)
법·제도 강화	10 (38.4)
성교육 보강	5 (19.2)
성문화(이데올로기) 변혁	8 (30.7)
계	26 (100.0)

의 의식변화, 성교육의 보강)를 제시한 기사가 전체의 69.2%(18건)나 되었다. 성폭력은 구조적인 요소와 개인적인 요소가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라는 입장에서 볼 때, 개인적인 요소의 변화만으로는 성폭력을 예방하는 것은 역부족이다. 향후 성폭력 보도는 보다 구조적이고 거시적인 시각에 입각한 장기적인 대안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2. 심층인터뷰 결과 : 성폭력 보도 특성의 문제점과 원인

가. 보수적인 성문화

응답자들은 성폭력 관련 보도는 기자들의 여성차별의식 즉, 보수적인 성의식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이러한 보수적인 성의식은 ‘피해자 비난법(victim blaming approach)’에 익숙한 성역할 고정관념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여전히 성문제를 공론화하지 않으려는 의식이 팽배한 것 같아요.” (#6, 여)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보는 편견이 심해요.” (#15, 남)

이들에 의하면, 이러한 성역할 고정관념은 여성인권을 무시하거나 여성을 배려하지 않는 보도관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한다. 즉, 가해자 중심으로 접근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보도방식은 뿌리 깊은 여성차별의식, 여성의 인권경시 풍조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이들은 최근 성폭력 보도는 여성차별의식의 산물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인권을 운운하면서 가해자를 너무 보호하는 것 같아요.” (#1, 남)

“피해자와 가족의 인권이나 2차 피해에는 무심한 보도 관행이

그대로 있어요.” (#10, 여)

“피해자의 인권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것 같아요.” (#13, 여)

“인권이 존중되지 않고 약자를 가해하는 잘못된 의식이 팽배해요. 특히 일선기자들과 언론인들의 인권의식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16, 여)

응답자들은 성폭력 보도가 향후에는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피해자 특히 아동피해자의 경우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의 보도가 강력하게 요구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인권도 보호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사진보도에서 가해자가 현장범이 아닌 이상 범인으로 판명되기 전에는 얼굴사진 보도에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인권문제를 낳습니다.” (#16, 여)

“피해자의 인권을 경시하는 현상은 반드시 없어야 할 것입니다.” (#17, 남)

“인권경시현상은 인권에 대한 확고한 의식이 없어서 생긴 것이므로 인권보호를 위한 보도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18, 여)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성폭력 관련 보도는 언론인의 의식개혁, 즉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는 의식, 양성평등의식의 배양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나. 기자의 전문성 결여

응답자들은 성폭력 보도의 특성으로 심층성 결여를 강조하였다. 이들에 의하면, 이러한 심층성 결여는 기자들이 성폭력과 관련된 전문적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해서 비롯된다고 한다. 성폭력 보도의 제작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자의 전문성 결여에 대한 이들의 지적은 다음과 같다.

“전문가적 시야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방산의 일각으로 드러난 부분에만 관심을 쓰고 수면 아래 숨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3, 남)

“기자의 보도 접근 방식이 분석적이지 않고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하나의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보는 각도 - 예를 들면 교육적, 사회적, 심리적 - 에 따라서 다른데 오직 한 각도에서만 보는 것 같다. 그 이유는 기자가 이슈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서다. 이는 확실성을 낳는다.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7, 남)

“한국 성폭력 보도의 문제점은 무엇보다 담당기자의 훈련과 경력이 부족하며 전문기자의 부재가 낳은 것이다.” (#10, 여)

“무엇보다 보도의 전문성이 없기 때문이다. 전문교육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기자의 성폭력 사건보도는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자나 언론사는 인식해야 할 것이다.” (#14, 남)

“성폭력 관련 보도의 전문성은 정말 부족하다. 이러한 전문성 부족이 사건사고의 현상만을 소개하는데 그치게 한다.” (#15, 남)

응답자들은 기자들의 전문성 결여가 성폭력 관련 보도의 확실성, 즉 피상적 접근을 낳는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응답자들은 성폭력 관련 보도의 개선책으로 기자의 전문성 확보를 시급한 과제로 지적하였다.

“기자들은 우선 차분하고 냉정해야 한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나름의 전문성과 거시적 시야를 가져야 한다.” (#3, 남)

“성폭력 관련 보도는 전문성이 미흡하여 피상적인 상태로 일관되고 있다. 이는 언론사 자체 내에서의 예산 투자 등이 소홀하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언론의 환경감시기능과 사회통합기능들을 고려한다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인명살상으로 이어지는 성폭력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 분야의 전문기자나 관련분야 전문가 위원회 운영을 통한 언론사의 기능강화와 시각 설정이 필요하다...” (#11, 남)

“성폭력 관련 보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만 하다.” (#11, 남)

성폭력 관련 보도의 피상성이라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자의 전문성을 배양할 수 있는 체계적인 훈련과 재교육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그 대안으로 성폭력 전문기자제의 도입 및 활용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 언론사간 과당경쟁 : 시청률과 구독률에 얽매인 상업주의

응답자들은 성폭력 관련 보도가 시청률이나 구독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선정적인 표제, 사진, 내용을 담아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속성은 이윤추구의 극대화를 꾀하는 상업주의의 필연적인 산물이라는 것이다.

“언론사들이 난립하면서 인터넷 매체는 클릭수, 신문과 방송은 구독률이나 시청률을 올리는데 급급한 상황에 있다. 이는 경쟁 과열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2, 남)

“성폭력 관련 보도에는 상업주의가 깊이 침투해 있다. 지나친 취재 경쟁과 한건주의 탓이다. 이는 사회가 말초적 쾌락을 추구하는 성향과도 관련이 있다. 한건주의나 상업주의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3, 남)

“성폭력 관련 보도의 특성은 선정적이고 자극적이며 흥미를 유발하는데 있다. 또 후속 취재 위주의 경마식 반복 보도의 특성도 보인다. 이는 시청률과 구독률에 얽매인 상업주의, 타 언론사에 낙종하지 않으려는 지나친 경쟁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8, 남)

또한, 응답자들은 성폭력 보도가 언론사간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보도방식으로 흐르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최근의 성폭력 보도는 매우 자극적이고 선동적이다.” (#12, 남)
 “피해자의 성폭력 상황을 거침없고 매우 적나라하게 보도함으로써 모방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13, 여)

“언론은 속성상 시청률 구독률 때문에 기본을 지키지 않는 과열보도, 선정보도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피해자가 여성이고 또 ‘성’문제와 관련이 되다 보니까 성폭력 보도에서 더 과열보도, 선정보도 성향이 나타나는 것 같다.” (#6, 여)

“사안에 관계없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이슈 위주의 보도가 줄을 잇고 있으며 사건 발생 위주의 기사로 흐른다. 이것은 매체의 발달로 많아진 기사들이 깊이보다는 보다 빨리 보도해야 한다는 과열 경쟁에서 비롯된 것 같다.” (#4, 여)

“평이한 단어를 쓸 수 있음에도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단어 위주로 부각시켜 보도한다. 매체간 경쟁으로 문제예방책을 제시하는 보도보다는 사고 위주의 보도가 많다.” (#4, 여)

“신문의 경우 독자의 정서를 자극하는 지면 구성과 스토리 전개, 방송의 경우 피해자의 절규 등으로 시선을 사로잡으려는 편집이 선정성을 부추기고 있다. 이는 언론의 상업화와 시청률 경쟁 등이 낳는 병폐 중의 하나이다.” (#11, 남)

이러한 언론사의 과당경쟁은 ‘냄비 저널리즘’을 동반한다.

“냄비 저널리즘은 쉽게 말해 언론보도의 획일성 문제와 상통한다. 자극적인 제목 위주의 기사로 독자들의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기사를 우르르 일제히 보도하는 경향을 말한다.” (#4, 여)

“언론기관의 지나친 속보 경쟁은 냄비저널리즘을 낳는다.” (#10, 여성)

“성폭력 사건에 대해 진중하게 고민하지 않고 사회 이슈만 쫓아가려는 관념 때문인 것 같다.” (#13, 여)

응답자들은 언론사간 무한경쟁과 과당경쟁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성폭력 보도의 가이드라인 제작 및 활용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경쟁적 보도에 매몰되지 않기 위한 자성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한다.” (#5, 남)

“심층적인 독배기 저널리즘이 필요하다. 성범죄를 어떤 방식으로 저질렀다는 세부적인 범죄내용을 지양하고 여론형성 기관으로서 성폭력 범죄에 대해 단순하고 냉정하게 보도하는 입장이 필요하다.” (#2, 남)

“사건 발생 직후의 보도 성향은 마녀사냥식인 경우도 있다.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방안을 제시하는 저널리즘이 요구된다.” (#15, 남)

라. 열악한 보도제작 환경과 기자의 보도윤리의식 부재

응답자들은 성폭력 기사가 열악한 보도제작 환경에서, 그리고 기자들의 보도윤리 및 철학의 부재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하였다.

“취재 시간 비용 등의 여건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일단 기본만 확인하고 보도하는 취재관행이 문제이다.” (#2, 남)

“아직 보도 윤리가 제대로 서 있지 않고 데드라인에 쫓긴다. 이러한 성향은 국민성과도 관계가 있는데, 언론인들은 문제의식에 기초한 진실 접근보다는 뺄튀기 혹은 튀려는 성향을 강하게 보유한 것 같다.” (#3, 남)

“기자 개인들도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접근의식이 매우 부족한 것 같다.” (#5, 남)

“언론인은 공정성에 기반을 둔 철저한 취재기법을 익혀야 할 것이다.” (#7, 남)

“언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16, 여)

응답자들은 성폭력 보도의 개선을 위한 전제 조건의 하나로 언론사의 재정적 지원을 꼽았다. 이들에 의하면, 언론사의 재정적 지원이 있을 때 언론인의 의식변화는 물론이고 보도제작 환경의 개선이 가능하다고 한다.

“언론사는 기자들이 심층취재를 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3, 남)

또한, 이들은 기자들이 경쟁적 보도에 매몰되지 않기 위한 대안으로 성폭력 관련 보도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바람직한 성범죄 관련 보도 가이드라인 구축이 시급하다.” (#20, 여)

“언론사는 성폭력 관련 보도가이드라인을 확보하고, 정부도 이를 감시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7, 남).

“언론사는 성폭력 보도 매뉴얼을 작성하여 활용하는데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다.” (#10, 여)

“성폭력 보도의 바람직한 방향은 언론중재위원회, 인권위원회 등 제3의 기구에서 성폭력 보도 매뉴얼을 준수하는 언론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16, 여)

“기자협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피해자 인권을 중시하는 보도가 될 수 있는 관련 법령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17, 남)

응답자들은 정부를 비롯한 유관단체, 시민단체 등은 지속적으로 언론사의 성폭력 보도의 내용을 분석하고 감시하는 한편, 차등적 지원과 규제를 적용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야만 향후 성폭력 보도가 제 자리를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하였다.

V. 결론

본 연구는 성폭력 관련 보도의 특성을 규명하고 문제점 및 그것의 원인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는 성폭력 보도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신문기사를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하였고, 그것의 원인을 밝히고자 언론인의 심층인터뷰를 시도하였다.

가. 성폭력 관련 보도의 특성

1) 상당수 성폭력 관련 보도는 스트레이트기사 유형에 속하였다(62.0%). 향후 언론은 성폭력과 관련한 주제를 보도하는데 있어서 현황 보고나 소개에 그치는 단순한 정보제공자에서 벗어나 사회적 비판자, 감시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2) 상당수 성폭력 관련 보도는 주로 기자가 취재하여 제작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80.2%). 전문가(관련 외부 전문가 9.1%, 논설위원 5%)에 의한 심층보도는 15% 미만에 불과하였다. 향후 언론은 사내·외 전문가를 더 기용하여 성폭력 관련 주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3) 상당수 성폭력 관련 보도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표면적인 현상을 다루는데 그치고 있다(약 78%). 향후 성폭력 보도는 성폭력 문제를 사회적으로 이슈화하고, 원인을 규명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등 비판적인 시각에서 제작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4) 상당수 성폭력 관련 보도는 단순히 사실을 제공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62.0%). 향후 성폭력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기사가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5) 절반 이상의 성폭력 관련 보도는 미성년자(아동, 10대)와 관련된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것이었다(55.4%). 반면 장애인 여성이나 외국인 여성과 관련된 성폭력 사건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언론은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폭력 이슈에 집중하였던 것이다. 이는 소재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향후 언론은 다양한 계층과 관련된 성폭력 이슈를 발굴하여서 보도소재의 다양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6) 대다수 성폭력 관련 보도는 시각을 담아내지 못했다(78.5%). 즉 수박 겉 핥기식 보도가 주를 이루었다. 향후 성폭력 보도는 이슈의 현황 진단을 넘어서서 원인 분석, 대안 제시 등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시각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7) 상당수 성폭력 관련 보도는 미시적인 차원의 대안을 강조하였다(69.2%). 다시 말해, 이들이 제시한 대안은 기껏해야 개인의 의식 변화, 법·제도의 강화, 성교육의 보강 등이 전부였다. 향후 성폭력 관련보도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 성폭력 보도의 문제점과 그 원인

1) 보수적인 성문화 : 성폭력 관련 보도는 기자들의 여성차별의식, 즉 보수적인 성의식의 산물이다. 특히 이러한 보수적인 성의식은 ‘피해자 비난법(victim blaming approach)’에 익숙한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성역할 고정관념은 여성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할 필요가 있다. 향후 언론인은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는 의식, 양성평등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며, 피해자(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책임감을 지녀야 할 것이다.

2) 전문성 결여 : 성폭력 관련 보도의 심층성 부재는 기자들의 전문적 지식 및 관점의 부족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기자들의 전문성 부족이 성폭력 보도의 획일적 접근, 즉 피상적 접근을 낳는다. 이러한 틀에서 보면, 성폭력 관련 보도의 개선은 기자의 전문성의 확보와 직결되어 있다고 해도 틀림이 없을 것이다. 기자들의 전문성을 배양할 수 있는 체계적인 훈련 및 재교육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성폭력 전문 기자제도 도입도 하나의 보완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언론사간 과당경쟁 : 언론사간 과당경쟁은 성폭력 관련 언론보도의 선정성과 상업성을 낳는다. 이러한 언론사의 과당경쟁은 ‘냄비 저널리즘’을 동반하기도 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언론사간 무한경쟁과 과당경쟁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성폭력 보도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제작해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열악한 제작환경과 기자의 윤리의식 부재 : 성폭력 관련 보도의 문제점은 열악한 보도제작 환경과 기자들의 보도윤리 및 철학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 성폭력 관련 보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언론인의 의식 변화는 물론 언론사의 재정적 지원을 통한 보도제작 환경의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나아가 언론사는 기자가 경쟁적 보도에 매몰되지 않도록 성폭력 관련 보도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덕모 (2006). 성폭력 보도와 인격권. 『언론중재』, 여름호, 96~103.
- 김선남 · 장해순 (2011). 성폭력 관련 한국 신문보도의 특성에 관한 연구.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22호, 5~36.
- 김선남 · 최용준 · 이영원 (2007). 『지역문화와 지역신문』. 한국언론재단.
- 김선남 (1996). 사회문제가 아닌 개인적 성윤리로 규정-성폭력 관련 보도. 『신문과 방송』, 36~40.
- 김예란 (2003). 『경성뉴스와 연성뉴스, 그 효용의 실제』. 서울: 미디어연구소.
- 김훈순 (2004). 한국 언론의 젠더프레임-범지 뉴스와 여성. 『한국언론정보학보』, 35호,

- 63~91.
- 문경란 (1994). 성폭력과 언론보도. 세계 성폭력 추방기간 기념 심포지엄 발제논문, 36~43.
 - 박명진 (1991). 『한국 TV탐사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TV 사회고발 프로그램』, 서울: 한국언론재단.
 - 이승선 (2012). 섬세하고 엄밀한 취재 없다면 차라리 보도하지 말아야. 『신문과 방송』, 28~32.
 - 이진국 (2004). 모방범죄와 폭력적 충동 유발할 수도. 『신문과 방송』, 9~53.
 - 유선영 (1999). 성범죄보도가 구성하는 여성신화, 김명희·정기현 (편). 『대중매체와 성의 정치학』, 서울: 나남, 95~143.
 - 장하경주 (2006). 불안감만 부추기는 성폭력 보도. 『신문과 방송』, 125~129.
 - 정용국 (2012). 성범죄를 ‘이야깃거리’로 취급하는 언론, 시나브로 신뢰 잃는다. 『신문과 방송』, 24~27.
 - 조수선 (2003). 『다매체 환경과 뉴스 수용자의 미래: 신문과 인터넷 뉴스를 중심으로』, 서울: 미디어연구소.
 - 하종대 (1999). 한국 언론의 성범죄보도-문제점과 개선방향, 21세기 여성미디어네트워크, 제3차 월례논단 발제논문.
 - 황용석 (1999). 직장인의 경제기사 수용행태분석. 『IMF와 경제기사』, 서울: 한국언론재단.
 - McQuail, D (1987). Mass Communication Theory -An Introduction(2nd,ed). 오진환 역 (1990). 『매스커뮤니케이션이론』, 서울: 나남.
 - 경향신문, 2009. 10. 2.
 - 동아일보, 2010. 4. 17.
 - 기자협회보, 2012. 9. 19.
 - 한겨레, 2012. 8. 17.
 - <http://www.sisters.or.kr/index.php/subpage/pds/1>
 - 경향신문, 2009. 10. 2.
 - 동아일보, 2010. 4. 17.
 - 기자협회보, 2012. 9. 19.
 - 뉴시스, 2012. 10. 17.

나쁜 언론과 ‘반론보도닷컴’

이정림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홍보팀장

2012년이 특별한 이유, 반론보도닷컴

지난해 5월, 한국광고주협회의 ‘나쁜 언론 선정’ 기사를 접한 기업의 언론담당자라면 우선 논란의 진위 여부를 떠나 공통의 후련함을 느꼈을 것이다. 부정적인 기사를 작성하고 이를 미끼로 광고를 요구하거나 창간호나 특집호 제작을 위한 협찬을 요구하는 일들에 그간 많은 피로감을 느껴왔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을 좀 더 객관화 시켜 놓고 보면 이익 단체인 광고주협회가 직접 나쁜 언론을 지목하는 행위가 자칫 ‘언론 길들이기’가 될 수 있다는 점과 어떠한 선정방식을 통해 나쁜 언론을 선발한 것인지에 대해 명쾌하게 밝히지 않았다는 점은 논란이 있어 보인다. 더 나아가서는 협회가 영향력이 큰 언론사들은 건드리지 못한 채 일부 인터넷 언론을 대상으로 칼을 빼들

었다는 비판도 존재할 수 있다.

2012년 가을 한국광고주협회는 작년에 이어 반론보도닷컴이라는 공식사이트를 개설하고 사이버 언론과의 정면 승부에 나섰다. 광고주협회가 적극적이고 공식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이 취지다. 이익단체가 기존의 제도를 통하지 않고 직접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도 문제일 수 있지만 그렇게 만든 언론 환경이 더욱 큰 문제라는 점에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역으로 이를 계기로 언론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는 분수령의 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그 길이 그렇게 쉽게 찾아질 것 같지는 않다.

반론보도닷컴 개설 배경 및 과정

사이비 언론들로 기업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인터넷 언론의 문제와 함께 한국 인터넷 환경에서 막강한 힘을 갖게 된 인터넷 포털간의 트래픽 경쟁이 있다.

법적으로 인터넷 언론은 2명의 취재자와 1명의 편집기자를 상시 고용한다는 조건만 충족되면 누구나 등록해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요건마저 갖추지 않은 상당수의 인터넷 언론들이 활동하고 있다. 더욱이 종전의 오프라인 매체와는 다르게 운전시설과 종이 값, 방송 제작 시설과 송출 시설 등 막대한 초기 투자 없이도 IT 기술의 발달로 얼마든지 언론사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인터넷 언론의 수다. 2005년 300여 곳이 채 안되던 인터넷 언론이 2012년 6월을 기준으로 3,500여 곳에 이르고 있다. 엄청난 양적 팽창과 함께 사이비 언론의 수도 덩달아 늘어났다.

한편, 한국의 인터넷 환경에서 특정 인터넷 포털은 여론 형성의 주역으로서 막강한 권력주체로 성장해왔다. 사이비 언론들은 이러한 포털들을 뉴스의 유통 채널로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언론 매체의 수준과는 별개로 포털의 권력을 등에 업고 영향력을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었다. 또한 뉴스 유통업자로서의 포털은 기술 개발이나 콘텐츠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보다 광고 수주를 위한 트래픽 경쟁에 집중해 온 것이 현실이다. 콘텐츠 업체와의 제휴 시 해당 업체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 역시 부족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집계에 따르면 2010년도 매체 유형별 언론조정 신청건수는 인터넷뉴스서비스가 38.1%, 인터넷 신문이 25.7%, 신문은 24.5%, 방송 8.6%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인터넷뉴스서비스란 바로 인터넷 포털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서도 인터넷 포털들이 결코 '나쁜 언론'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매체 환경 속에서 광고주협회는 지난해 5월과

장이나 왜곡 보도로 피해를 본 기업 사례를 수집·분석하고 나쁜 언론 5곳을 발표한 바 있다. 그간 '나쁜 언론'에 시달린 경험이 있는 기업들 사이에서는 후련하다는 반응이었고 언론사들에서는 이것이 자칫 확대되어 언론 길들이기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언론 자체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는 자기반성적 주장이 나왔다. 광고주협회는 올해 들어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음해·왜곡보도에 대한 기업들의 반론과 해명을 다루는 반론보도닷컴을 9월초 개설하고 사이비 언론에 대한 사실상의 전면전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반론보도닷컴이 악의적인 인터넷 언론을 정조준 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지만 과연 그들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이비 인터넷 언론뿐인가 하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종전의 언론들도 경제 침체와 과도한 경쟁 속에서 '나쁜 언론'의 범주를 넘나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나쁜 언론의 피해, 그 상처는 깊다

언론이 실제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를 낳는지에 대해 여러 잘 알려진 사례들이 있지만 필자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의료계는 분쟁과 소송이 적지 않은 분야이다. 한편으로는 인간의 생명을 다룬다는 점에서 복잡한 규제에 의해 법의 제약을 받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다 보니 악의적인 시각으로 병원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문제를 삼을 만한 요소들이 상존한다.

몇 년 전 수술을 받은 환자가 폐색전증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 폐색전증은 외과계 수술 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보호자의 친인척들은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병원에서의 농성을 시작했고 이어 누군가가 동

영상을 촬영했다. 당시만 해도 인터넷 언론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을 때여서 현장을 지키던 직원들도 환자측에서 임의로 현장 증거를 남기는 것 정도로 여기고 넘어갔다. 농성은 길어졌으며 불법농성에 대해 검찰은 공권력을 동원하여 현장 해산에 나서게 되었다.

다음날 인터넷은 인터넷 언론에서 올린 기사와 동영상에 포털을 타고 유포되어 일파만파로 확대 재생산 단계에 들어갔다. 검찰에서 수사권을 발동시켜 현장을 정리했던 장면이 병원 측에서 고용한 경비업체 직원의 폭력행사로 보도되다 급기야는 공권력이 불법적으로 병원 측의 요구를 들어준 것으로 기사의 왜곡에 왜곡이 거듭되었다. 수술을 담당했던 교수의 신상이 털리고 이어 중앙언론사들의 집중 포화에 가까운 취재 경쟁이 진행되었다. 일정이 잡혀있던 수술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외래 환자수도 반토막이 났다. 그러나 정확한 진위를 확인하려는 움직임은 기성 언론이나 인터넷 언론이나 어느 쪽에서도 전혀 없었다. 인터넷상에 여론이 들끓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슈화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반론보도자료를 배포한 후 간신히 추가 취재의 후폭풍은 피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이미 병원의 명성과 신뢰는 땅으로 추락한 상태였다. 이후 병원의 경영실적이 사건 전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일 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야말로 언론재앙이 닥친 병원계에서는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이후 최근 까지도 당시의 사건에 대해 은근슬쩍 운을 띄우며 창간이나 특집 기사를 요청해오는 사이버 언론사가 여전히 있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나쁜 언론이 확대재생산해 내는 부정의 기운은 여전히 현장에 남아있다.

나쁜 언론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와 언론의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브랜드 가치를 평가하는 시대다.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은 물론이고 기업 자체, 심지어는 국가 브랜드 가치의 순위가 매겨지기도 한다. 현대인들은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의 가치가 주는 느낌을 소비한다. 이러한 브랜드 이미지는 어떻게 구축될 수 있는가?

오늘날 우리는 블로그나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 의사소통하며 온라인상에서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한다. 이러한 매체들은 과거 광고가 가졌던 영향력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다. 결국 기업이 광고나 홍보를 통해 고객들의 마음에 심고자 했던 브랜드 이미지를 인터넷 매체는 강화시키거나 혹은 악화시키고 때에 따라서는 재창조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브랜드 이미지 훼손에 따른 가장 치명적인 측면은 브랜드에 대한 신뢰 곧 기업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만든다는 데 있다. 따라서 '나쁜 언론'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는 경우에 따라서는 천문학적 숫자가 될 수 있다. 결국 '나쁜 언론'이 만들어 내는 가장 큰 피해는 브랜드 이미지의 훼손과 이에 따르는 신뢰성 상실에 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기업이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마케팅 비용을 과다 지출하는데 따른 손해일 것이다. 광고주협회가 최근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6.5%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기사나 강압적인 협찬과 광고에 의한 피해를 봤다고 한다. 결국 꼭 필요한 곳에 쓰였어야 할 기업의 마케팅 비용이 울며 겨자 먹기식의 의미 없는 비용으로 쓰이고 있다는 의미이다. 기업의 불필요한 광고비 지출은 결국 소비자에게 그러한 비용이 전가되고 나아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작용할 수 있다. 사이버 언론의 협박 속에서 기업들의 활발한 경영 활동은 보장받기 쉽지 않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 보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의 유포, 베껴 쓰기 기사의 양산, 내용이 부실한 자극적인 헤드라인 뉴스 등 나쁜 언론들이 보여주는

행태들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언론 전반의 신뢰도 추락을 가져올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사회적 공기로써 언론은 정확한 사실 보도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여론 형성, 가치 있는 정보의 제공이라는 기본 기능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언론은 소비되지 않는 무의미한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단순 생산자로 전락해버릴 것이다.

나쁜 언론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방안

일본 아사히신문에 김정운 사진으로 잘못 보도되어 피해를 보았던 남성이 얼마 전 한 토크쇼에 나와서 했던 말이 인상적이었다. “일본의 언론은 자발적으로 제게 정식의 사과와 보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언론은 너무도 대조적이었죠. 사실의 확인도 없이 단순히 일본 주요 매체에 실렸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보도하고 제 신상을 털더니 오보로 밝혀진 후로는 일체의 연락을 끊더군요. 제가 만약 일본에서 받은 것과 같이 우리나라 언론에게 공개 사과와 보상을 받았다면 아마도 벼락부자가 됐을 겁니다.” 무책임한 국내 언론의 보도 태도와 우리 언론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였다.

현실적으로 나쁜 언론만을 퇴출시킬 명확한 방법은 없어 보인다. 다만 허술한 언론제도의 보완, 공기로써 언론사와 인터넷 포털의 자정 노력, 광고주로서 기업 스스로의 노력이 함께 진행되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법이 될 것이다.

이들 중 나쁜 언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의 보완이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언론의 자유가 중요시되는 선진국가들조차 언론의 자유와 함께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엄중히 묻는 분위기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언론에 대해 매우 관대하고 지금의 언론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가 여

전히 존재하고 있다. 잘못된 언론 보도에 대해 공식반론을 제기하기 위해 기업이 취할 수 있는 현재로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언론중재위원회를 이용하는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조정은 14일, 직권 결정은 21일 이상이 소요된다. 물론 사안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가 노출되는 인터넷 환경에서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각인된 후의 언론조정이 과연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얼마나 유용할 것인지는 따져볼 일이다. 더욱이 민·형사상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최종 판결까지는 최소 1년 이상이 걸릴뿐더러 승소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은 500만원~1,000만원을 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사이버 언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솜방망이 처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 매체 환경에 맞지 않는 이러한 제도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대대적으로 손질되어야 하며 그 중심에 언론중재위나 언론진흥재단 등 기존의 언론 기구들의 적극적인 개선택 마련 활동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법적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통해 잘못된 보도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 ‘아님 말고’ 식의 막연한 보도 태도에 일침을 가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나쁜 언론이 다시는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쁜 언론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일종의 예방접종이기도 하다.

언론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진 감시견이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하나는 부단히 사회를 감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감시해야 한다는 뜻이다. 언론 본연의 기능인 정확한 보도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함께 언론으로서 자정 노력을 하는 것만이 뉴스 가치를 높이고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여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한다. 사회적 영향

력이 큰 매체가 된다면 어느 누구도 광고를 거부할 수 없을 것이다. 광고 효과에 따라 광고가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환경을 언론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정확하게 구분하자면 언론은 아니지만 인터넷 환경 속에서 여론형성이라는 권력을 갖게 된 인터넷 포털들은 그간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언론사들과의 제휴 관계를 통해 사이버 언론들이 살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온 것이 사실이다. 포털들은 뉴스 유통업자로서 개별 기사에 대한 책임은 각 인터넷 매체에서 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논리에 맞지 않다. 한 차원 높은 검색 서비스를 통해 소위 베끼기 기사를 근절시키는 것과 동시에 기술적 발전과 콘텐츠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인터넷 생태계는 끊임없이 진화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포털도 여기서 예외는 아닐 것이다.

끝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쥐고 있는 다른 한 축은 광고주 측 기업들이다. 상당수의 비리 언론들이 단골 메뉴로 거론하는 것이 기업의 오너 문제다. 오너들의 편법 상속, 비리, 오너 2,3세의 문제 등으로 기업 가치가 훼손되고 언론은 교묘하게 이 관계를 파고든다. 기업이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지 않는 한 언제든 언론의 먹잇감으로 비취질 수밖에 없다. 또한 언론을 광고로 길들이려는 관행을 광고주 차원에서 먼저 없애야 한다. 타협이 더 큰 부정을 부르기 때문이다. 광고효과에 따라 광고를 집행하지 못하는 것은 언론사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거꾸로 봤을 때 광고주로서 언론사에 압력을 가할 수 있도록 광고 효과가 없는 신문들에 광고를 주는 것은 언론을 구슬리고 압박하기 위한 보험성격의 한 방편이기도 했다. 광고주 자체에서도 나쁜 언론에 일종의 자양분을 공급했던 셈이다.

언론을 나쁘다, 좋다는 감정적인 언어로 표현해도 되는 것인지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또한 광고주협회가 운영하는 반론보도닷컴이 애초의 취지대로 과학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사이버 언론을 감시하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할 일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양한 목소리를 존중하고 무엇보다 양심적이고, 힘없는 이들을 대변한다는 명분하에 이뤄지는 사이버 언론의 행동양식은 분명 강력한 법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언론을 만들기는 쉬워도 사회적 공기로써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어렵게 하는 것 그리하여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 그것이 멀티미디어 시대를 맞이하여 올바른 매체 환경 조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언론을 위하여



AIPCE 국제컨퍼런스 참석보고서

언론중재위원회 정학철 부위원장, 대구중재부 김정숙 위원, 정책연구팀 이홍길은 2012. 10. 18. ~ 19. 벨기에 앤트워프 (Antwerp)에서 개최된 제14회 AIPCE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세계 각국의 언론평의회 활동 현황 등을 확인하고 전 세계적으로 고유한 언론피해구제제도인 우리나라 언론조정중재제도와 언론중재위원회를 소개했다.

이홍길

언론중재위원회 정책연구팀

■ AIPCE 개요

AIPCE(Alliance of Independent Press Councils of Europe)는 세계 각국의 언론평의회와 같은 언론의 독립적인 자율규제 기구의 네트워크로 공식적인 회원사가 있거나 사무처가 있는 것은 아니나, 결성 당시 대다수 유럽의 언론평의회가 주축이 되었기에 유럽 언론평의회 연합(AIPCE)이라 명명하게 되었다.

AIPCE는 언론에 대한 규제는 정부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신념¹⁾을 유지하기 위해 1999년 런던에서 결성되어 매년 1회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그간 영국(1999년), 독일(2000년), 아일랜드(2001년), 몰타(2002년), 스웨덴(2003년), 키프로스(2004년), 룩셈부르크(2005년), 불가리아(2006년), 스코틀랜드(2007년), 독일(2008년), 노르웨이(2009년), 네덜란드(2010년), 러시아(2011년), 벨기에(2012년)에서 개최되었으며, 2013년은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Tel Aviv)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AIPCE 초기 회의에는 대부분 유럽권 국가에서 참석하였으나, 비유럽권 국가의 참석이 빈번²⁾해짐에 따라, 올해 회의 중에는 AIPCE가 유럽 언론평의회

연합이라는 제한적 의미를 가지므로 명칭을 변경하자는 논의도 있었다. 결국 명칭은 유지하되, 아래 그림 <AIPCE 참석 국가>처럼 AIPCE 홈페이지 상 유럽권 국가와 비유럽권 국가로 구분하는 것으로 논의가 종료되었다.

■ 2012년 회의 주제 및 쟁점

올해 회의는 아래 표 <2012년 AIPCE 회의 주제>와 같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세계 각국 언론평의회에서 관심사와 회의 쟁점은 언론평의회와 실효성 강화 방안과 재정 위기 해결에 관한 것이었다. 영국의 PCC를 비롯한 대다수 언론평의회가 언론에 대한 현행 자율규제 방식의 한계점을 인정하고 그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었다. 또한 최근 유럽의 재정 위기 및 새로운 온라인 매체의 등장에 따른 기존 언론매체의 수익 감소와 그로 인한 언론평의회와 재정 불안정에 대해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우리나라의 언론조정중재제도와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발표를 들은 세계 각국의 참석자들은 위원회의 연간 사건처리건수 및

1) “언론윤리강령은 언론인과 발행인이 대중의 감정을 고려해 결정할 문제이지 국가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규제 시스템을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문화가 다른 만큼 각 국가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34개국이 참석한 올해 AIPCE 회의에는 비유럽권 국가로는 우리 언론중재위원회와 함께 스리랑카, 파키스탄 언론평의회가 처음으로 참석하였다.

사무처 규모에 대한 놀라움과 함께, 학술행사 등 다양한 사업을 위한 안정적 자원 및 위원회 결정이나 조정을 통한 합의 등이 이뤄진 경우 재판상 화해나 확정판결(중재결정) 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에 대해 집

중적인 관심과 부러움을 표시했다.

AIPCE 참석 국가

유럽권 국가(31개국)		비유럽권 국가(12개국)	
Armenia	Italy	Botswana	South Africa
Austria	Kosovo	Israel	South Korea
Azerbaijan	Luxembourg	Kyrgyzstan	Sri Lanka
Belgium (F)	Malta	New Zealand	Thailand
Belgium (W)	Moldova	Pakistan	Washington (USA)
Bosnia	Montenegro	Peru	Zambia
Bulgaria	Netherlands		
Croatia	Norway		
Cyprus	Russia		
Denmark	Serbia		
Estonia	Spain		
Finland	Sweden		
France	Switzerland		
Germany	UK		
Hungary	Ukraine		
Ireland			

출처 : AIPCE 홈페이지 <http://www.aipce.net> 초기화면

※ AIPCE 홈페이지에 접속해 우리나라를 클릭하면 언론중재위원회 (영문)홈페이지로 연결된다. 마찬가지로 위 그림의 해당 국가는 각국 언론평의회 홈페이지와 링크되어 있다.

2012년 AIPCE 회의 주제

주제
1. 세계 각국의 언론평의회 활동 현황
2.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윤리적 딜레마
2-1. 우도아섬 총기난사사건에 대한 보도 : Per Edgar Kokkvold (노르웨이 언론평의회 사무총장)
2-2. 어린이 희생자의 사진 : Dominique von Burg (스위스 언론평의회 위원장)
2-3. 리비아 독재자 카다피의 사망 사진 : Lutz Tillmanns (독일 언론평의회 사무총장)
3. 온라인 보도의 정정 : 공정한 정정보도 방법은 무엇인가? : Risto Uimonen (핀란드 언론평의회 위원장)
4. 미디어 규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언론평의회 의 실효성 강화 방안 검토
4-1. PCC와 레버슨 청문회 : Robert Pinker (前 PCC 임시 위원장, 前 런던정경대 사회학 교수)
4-2. 온라인 이슈 : John Horgan (아일랜드 언론평의회 위원장)
4-3. 언론윤리네트워크 : Aidan White (언론윤리네트워크 사무총장, 前 IFJ 사무총장)
4-4. 덴마크 - 법률에 의한 규제 : Sanne Godthaab Olesen (덴마크 언론평의회 디렉터)
5. 표현, 미디어의 자유와 언론의 책임-인격권에 대한 유럽인권재판소의 최근 변화 : Dirk Voorhoof (벨기에 겐트대 언론 · 저작권 · 언론윤리학 교수)

3)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AIPCE 회의에 참석한 경험이 있는 국가들이다. 2012년 회의에 참석한 비유럽권 국가는 우리 언론중재위원회와 이스라엘, 뉴질랜드, 파키스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리랑카 언론평의회이다.

1. 세계 각국의 언론평의회 활동 현황⁴⁾

■ 남아프리카공화국 방송불만처리위원회

(Broadcasting Complaints Commission of South Africa, BCCSA)

남아프리카는 1960년대부터 신문에 대해서는 언론평의회(Press Council)가, 광고에 대해서는 광고표준위원회(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 ASA)가 자율적으로 규제를 했다. 그러나 1993년 두 기관은 방송연맹(National Association of Broadcasters, NAB)에 의해 설립된 방송불만처리위원회(BCCSA)로 통합되었다. BCCSA는 이전의 언론평의회나 광고표준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언론의 문제점을 스스로 지적하지 않고, 단지 대중으로부터 접수된 불만신청만을 처리한다.

남아프리카에서는 매체에 대한 일부 통제가 국가안전보장법 등의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 영화 및 발행에 대한 정부기관(Films and Publications statutory Board)도 존재하고 있으나, 신문과 방송, 광고는 법률 등에서 제외되어 자율적인 규제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2009년 여당인 ANC(African National Congress)는 의회에 BCCSA의 옴부즈맨에 의한 자율규제 방식은 부적절한 것이며, 언론소청심사부(Media Appeals Tribunal)를 도입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러한 제안에 맞서 2011년 BCCSA가 중심이 된 언론계는 언론자유위원회(Press Freedom Commission)를 구성해 자율적인 규제시스템은 헌법적 권리인 신문의 자유에 최선이며, BCCSA의 업무처리 절차 중 가장 첫 단계인 옴부즈맨에 의한 결정은 항상 1인의 언론 전문가와 1인의 일반인과 함께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 등

의 선언문을 공표하였다. 또한 BCCSA는 윤리강령을 개정해 반론권과 보도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조사해야 하는 언론인의 의무를 강화하였고, 명예, 사생활, 존엄성에 대한 보호 내용을 추가하였다. 현재로서는 정치권이 이러한 BCCSA의 노력을 인정하고 더 이상 언론소청심사부의 도입을 주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BCCSA는 19년 동안 방송에 대한 불만도 처리해 왔으며 하나의 사건처리 시스템을 발전시켜 왔다. 이 시스템은 대중과 정부로부터 공정하다고 인정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평균 약 1,500건의 사건이 처리되며 그 중 10% 정도에 대해 BCCSA나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다. 또한 BCCSA는 벌금을 부과할 권한이 있으며, 벌금이 부과된 대부분의 경우는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존엄성과 관련한 사건이다. 일례로 올해 경찰이 한 살인사건 용의자에게 혐의 없음을 결정하였으나, 여러 라디오 방송국들은 그가 실제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보도함으로써 벌금을 부과하였다. 또한 검찰이 한 남성에 대해 기소를 결정하지 않았음에도 한 방송국이 그를 소아성애자라고 두 개의 프로그램에서 보도를 했기 때문에 벌금을 두 배로 부과한 사건도 있었다.

■ 노르웨이 언론평의회

(Norwegian Press Council, NPC)⁵⁾

1929년 설립된 NPC는 총 7명의 위원(노르웨이 언론인 연합이 지명하는 2명의 언론인, 편집인 협회에서 지명하는 2명의 편집인, 노르웨이 언론협회의 사무총장이 지명하는 일반인 3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항상 언론인이나 편집인 중 선출한다. NPC는 인쇄,

4) 해당 국가별 언론평의회 명칭은 대부분 모국어어를 사용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편의를 위해 가능한 영어로 표시하였으며 정확한 명칭은 AIPCE 홈페이지(www.aipce.net)에 접속해 해당 국가를 클릭하면 언론평의회 홈페이지로 연결되므로 그곳에서 확인 가능하다.

5) 계간지 「언론중재」 1986년 겨울호 '세계 각국의 언론평의회'와 2009년 가을호 '해외시찰보고서'에 노르웨이 언론평의회 관련 내용이 일부 수록되어 있다.

라디오, TV, 인터넷 매체 등 모든 유형의 언론에 대한 불만을 처리하며, 운영재원은 완전히 가입 회원사의 회비로 충당된다.

NPC는 2010년 284건을 처리했으며 2011년에는 역대 가장 많은 사건수인 354건을 접수, 151건의 사건에 대해 결정을 내렸다. 올해는 9월 첫 주까지 247건을 접수했는데,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사건수에 있어서 올해 새로운 기록이 수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NPC의 문서와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나 실질적으로 약 50%에 대해서만 공개가 이뤄진다. 또한 매 회의마다 논의한 여러 사건 중 3건을 노르웨이 언론인협회의 회지이자 홈페이지인 'Journalisten(www.Journalisten.no/video)'에 온라인으로 중계하는데, 그 이유는 NPC 업무에 대한 공공의 이해를 넓히고자 함이다.

한편, 반론권은 저널리즘의 중요한 원칙의 하나로 간주되며 비난을 받는 사람은 동시에 자신을 방어할 권리를 가진다. 이 원칙은 다른 많은 나라를 비롯해 노르웨이 언론의 윤리적인 기준이었으나, 윤리강령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다. 그간 반론권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많은 사건이 접수되었는데 접수된 사건의 거의 50%에 달했다. 이에 NPC는 2011년 “보도로 인해 강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적인 정보 확인차원에서 가능하다면 반론권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의 답변권을 명시한 윤리강령 4.14조를 제정하였다. 이와 함께 NPC는 그간의 선례와 업무에 기초해 윤리강령의 반론권 조항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준비해 왔다. 가이드라인은 비난의 당사자에게 반론할 확실한 기회를 언론이 부여하고, 비난은 있는 그대로 명확한 내용으로 해야 하며, 편집인은 반론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당사자와 접촉하기 위해 노력하고, 비난의 대상자에게 답변을 위한 합리적인 시간을 부여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금융가에게 퇴

근 직전인 오후 3:30에 전화를 해 여러 가지 복잡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반론을 다음날 출근 직전인 10시까지 요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기자는 몇 주 동안이나 해당 사건을 파헤친 반면, 당사자인 금융가는 퇴근 혹은 출장으로 자리를 비웠을 수 있고 답변을 위한 충분한 검토를 할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공공의 이익뿐 아니라 언론사의 이익을 위해 해당 가이드라인을 만든 당시, 이를 편집인들이 주의 깊게 읽어 본다면 앞으로 윤리강령 4.14조 위반은 없을 것이라 NPC는 단언했다. 그러나 이는 경솔한 발언이었고, 반론권을 부여하지 않음으로 인해 접수되는 사건이 여전히 많다. 다행스러운 것은 반론권 조항 위반이 그간 NPC에 접수되는 가장 많은 사건이었으나, 올해는 2위로 내려섰다는 점이다.

■ 뉴질랜드 언론평의회

(New Zealand Press Council, NZPC)⁸⁾

NZPC의 업무량은 그간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으며, 올해 9월에 이미 전년도 전체 사건과 유사한 수준의 사건을 처리했다. 많은 사건들이 NZPC 사무처 담당자에 의해 처리되는데, 이는 주로 온라인 기사에 대한 불만신청이다. 예를 들어 2011년 8월, 2개 신문사가 한 선생이 두 어린 학생들의 입을 테이프로 막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웹사이트에 시리즈로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두 학생과 그 엄마들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되었고, 기사에는 당사자인 선생이나 학교 이사회 및 학교장의 주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학교 교무위원 불만평가위원회에 의해 해당 사건이 명확하게 밝혀진 후 선생은 기사에 대해 2012년 7월 불만을 신청했다. 사실 이 사건의 기사 내용은 보도 당시에는 정

8) 계간지 「언론중재」 1987년 겨울호 '세계 각국의 언론평의회'와 2001년 겨울호 및 2007년 겨울호 '해외시찰보고서'에 뉴질랜드 언론평의회 관련 내용이 일부 수록되어 있다.

확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학교장 등 다른 관계자들도 보도에 앞서 기자의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인의 주장이 인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 그러나 NZPC 담당자는 결과적으로 보도 내용이 부정확하므로 원 기사에 정정내용을 주석으로 달 것을 제안하였고, 언론사가 이를 이행함에 따라 사건이 해결되었다.

2012년 9월 24일 뉴질랜드 언론평의회는 출범 40주년을 기념해 '전망, 회고, 변함없는 불변의 진실'이라는 공공 포럼을 개최하였다. 여기서 불변의 진실이란 언론 및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으로, 이는 현재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기술의 변화와 이에 따른 언론 환경의 변화와 무관한 것이다. 또한 기술 발전에 의해 여타 언론사가 잘못된 기사를 전제하거나 이를 참고해 기사를 작성할 여지가 커졌다. 만약 NZPC의 결정이 이뤄진 잘못된 원래 기사를 여타 언론사가 웹사이트에 다시 게재한다면, NZPC는 해당 언론사에 그 기사가 NZPC 결정 대상임을 표시하고 NZPC 웹사이트에 게재된 최초 결정 내용과 링크를 하도록 요청한다. 잘못된 원래 기사를 참조해 여타 인쇄 매체가 추가적으로 보도한 경우에는 앞서 기사를 게재한 인쇄매체가 공표한 사과문이나 정정보도 내용을 참고해 NZPC가 문안을 작성, 언론사에 제공하고 있다.

한편 뉴질랜드에는 두 개의 미디어 규제기관이 존재하고 있다. 1989년 법령에 근거한 BSA(Broadcasting Standards Authority)⁷⁾는 라디오와 TV 방송사를 승인하고 규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당시 법령은 온라인과 같은 전자적인 매체의 증가에 앞서 제정된 것이므로 라디오와 TV 방송사의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다. 반면 NZPC는 회원사인 신문과 잡지, 그리고 이들의 웹사이트 및 3개의 온라인 뉴스에 대

한 불만사항을 처리하고 있으며, 따라서 라디오와 TV 방송사의 웹사이트에 대한 불만처리 업무도 담당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뉴질랜드 법률위원회는 BSA와 NZPC의 통합을 검토하는 내용의 보고서 'News media meets New Media'를 공표했고, 이에 대한 논의에 NZPC는 큰 우려와 관심을 가지고 있다. NZPC의 가장 중요한 이념은 언론에 대한 자율규제가 유지되어야 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전자적인 매체도 이러한 자율규제 영역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자율규제 방식은 결국 정부가 법률위쳐서 규제하는 것보다 더 편리한 방법이다. 법률위원회의 최종 제안은 12월에 있을 전망이다.

■ 네덜란드 언론평의회

(Netherlands Press Council, NPC)⁸⁾

2011년 NPC는 78건의 불만신청과 13건의 검토요청을 접수했다. 취하된 사건은 6건이고, 21번의 회의를 통해 69건을 처리, 89건의 결정을 했다. 사건처리 건수와 결정건수가 다른 것은 각 사건에 대해 부분적으로 인용 혹은 부분 인용 및 기각할 수 있고, 하나의 사건이 2인 이상의 기자에 대한 것일 경우 또는 신청인이 하나의 사건에 대해 복수의 불만을 제기한 경우에는 NPC가 각각 다르게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89건의 결정은 54개 매체와 1권의 책에 대한 것으로, 이 중 45건은 완전 또는 일부 인용한 것이고 29건은 기각한 것이다. 다른 연도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불만신청 이유는 신청인과 관련한 심각한 비판 보도로 인한 것으로, 신청인들은 비판의 타당한 근거가 부족하고 기자가 취재를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지

7) 계간지 '언론중재', 2008년 겨울호 '해의시찰보고서'에 BSA 관련 내용이 일부 수록되어 있다.

8) 계간지 '언론중재', 1989년 봄호 '세계 각국의 언론평의회'에 네덜란드 언론평의회 관련 내용이 일부 수록되어 있다.

않았음을 주장했다. 또한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NPC가 결정을 한 사건도 다수 있는데, NPC 결정 이유를 분석한 결과, 부정확 혹은 악의적인 보도 약 68%, 일방적 주장 49%, 사생활 34% 등이었다(중복 산정).

올해는 9월까지 62건의 사건을 접수했으며, 최근 가장 높은 관심을 받은 사건은 신청인을 망명신청 접수처의 감독관으로 보도한 NOS 뉴스에 관한 것이었다. 신청인은 해당 보도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심각한 비난을 받고 있으며 사생활이 침해 당했다고 주장했다. 신청인은 해당 보도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심각한 비난을 받고 있으며 사생활이 침해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언론사는 신청인에게 반론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으나 신청인이 적절한 반응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PC는 언론사가 신청인에게 온라인 상으로 의견을 구한 것은 충분한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 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하였다. 반면 NPC는 보도내용에 사실과 주장, 의견이 명확히 구분되었기에 편향적인 보도가 아니며, 신청인의 업무 차량의 번호판이 잠시 보도된 것으로 인해 신청인의 사생활이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언론사는 신청인의 불만을 접수한 즉시 언론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독자들의 신청인에 대한 명예훼손적 내용이나 심각한 비판 내용의 의견(리플)을 삭제하는 등 NPC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기각하였다.

한편, 2012년 봄 NPC 홈페이지를 개편, 온라인으로 불만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용자들의 편의를 강화했다. 또한 NPC는 실효성을 강화하고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새로운 제안을 했는데, 이 제안이 NPC 이사회와 NPC 설립에 관련한 다른 외부 기관들에 의해 통과된다면 2013년 NPC는 새로운 이름과 업무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시작할 것이다.

■ 독일 언론평의회

(German Press Council, GPC)⁹⁾

GPC는 2011년 많은 사건이 접수되어 바쁜 한해를 보냈다. 2010년 1,661건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1년 신문, 잡지, 온라인 기사에 관해 1,323건을 처리했다. 2010년 사건이 유독 많았던 이유는 2개의 특정 사건에 대한 약 440건의 신청이 있었기 때문인데, 독일의 풍자 잡지인 TITANIC의 2010년 4월호 표지에 대한 약 200건의 신청과 2010년 7월 24일 독일 뒤스부르크에서 러브 퍼레이드(love parade) 행사 중 21명이 죽고 수백 명이 부상당한 사건 보도에 대해 약 240건의 불만이 있었다. 반면 2011년에는 단지 한 가지 사건에 대해 집단적인 신청이 있었는데, 2011년 10월 리비아 독재자 카다피의 사망에 관한 보도에 대해 약 50건의 불만이 제기되었다.

2012년에는 2개 매체에 대해 많은 사건이 접수되었다. 얼룩이 묻은 캐속(cassock, 성직자들이 입는 옷)을 입은 교황을 묘사한 TITANIC 7월호 표지와 독일의 주요 황색신문 BILD의 8월호에 게재된 동성 간 결혼을 다룬 칼럼인 “Post von Wagner(바그너의 편지)”에 대해 약 250건의 불만이 접수되었다. 이로 인해 2012년 연간 처리건수는 전년도와 비교해 조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GPC는 2012년 9월 18일 베를린에서 연간 컨퍼런스 개최해 몇몇 사항을 논의하였다. 먼저, 언론이 개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된 사진과 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이다. 최근 언론이 페이스북과 같은 SNS로부터 개인의 사진과 정보를 수집, 사용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자의 불만이 GPC에 많이 접수되고 있다. 비록 언론이 개인의 SNS에 접근해 거기에 기록된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9) 계간지 「언론중재」 2007년 겨울호 '해외실무연수보고서'와 2011년 겨울호 '해외시찰보고서'에 독일 언론평의회 관련 내용이 일부 수록되어 있다.

원칙상 SNS에 대한 자료조사는 언론인의 적법한 조사 방법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모든 정보를 언론이 공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SNS에 기록된 정보를 주의 깊게 다뤄야 한다는 것이 GPC의 입장이다. 나아가 언론이 SNS의 사적인 정보를 공표하는 것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공공의 알 권리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등을 비교형량해 신중하게 보도해야 하며, 이는 윤리강령 8조(개인의 권리)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과 삶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사적인 행위가 공공의 관심사와 교차된다면 개별적으로 다뤄져야 한다. 이 경우 정보의 공표가 공익과 무관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검토해야 한다. 언론은 정보의 독립성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고 데이터의 편집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다.

둘째,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독립적인 규제 조항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언론은 피해자에 대한 보도와 범죄자에 대한 보도는 서로 다르게 다루어야 한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언론의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지금까지 GPC의 원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부류 모두 동일하게 윤리강령 8.1항의 적용을 받았다. GPC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범죄자에 대한 보호와 분리된 규제방안을 모색 중이며, 현재 윤리강령 8조와 그에 따른 세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피해자가 익명성을 보장받을 권리는 수년간의 판례에서 약화되어 왔지만,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GPC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이슈임을 재차 확인했다.

■ 덴마크 언론평의회

(Danish Press Council, DPC)¹⁰⁾

DPC는 8명의 위원과 이들의 부재를 대비한 8명의 대리 위원, 그리고 4명(법률가 2명, 사무총장 1장, 법학 전공 학생 1명)의 사무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간 12회 개최되는 심리에는 대법관인 위원장 또는 변호사인 부위원장과 편집인, 언론인, 공익을 대변하는 위원 각 1인이 참석해야 한다.

2011년 DPC는 157건을 접수해 107건에 대해 심리를 개최했다. 완전 혹은 부분 인용한 사건은 37건이며 그 중 34건은 언론의 책임에 관한 법률(Media Liability Act) 제49조에 따라 DPC 결정 내용을 언론사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공표하도록 하기 위해 곧바로 언론사에 결정 사항을 송부하였다.

위원회가 결정을 내린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60일이며, 기각된 사건의 경우 평균 9일이 소요되었다. 기각 여부는 위원장의 권한이며, 2011년 접수된 157건 중 기각된 52건(50건은 심리전, 2건은 심리후 기각)의 주된 기각 사유는 신청인이 보도 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없거나 불만신청기간(보도된 날로부터 28일 이내)이 도과되었기 때문이다. 2012년에는 9월 말까지 75건에 대해 심리가 이뤄졌고, 51건을 기각했다.

DPC는 2011년 연간보고서에 ‘언론사는 피해구제 보도문이 눈에 잘 띄도록 위치나 편집을 정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등 게재 방법에 대해서도 강조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비록 원보도문이 1면에 게재된 것이라 할지라도 정정이나 사과문을 1면에 공표하라고 결정한 바는 없었다. DPC는 피해구제보도문의 게재 위치나 편집은 편집적인 관점에 따라 편집인이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뒤야 한다는 것이 주요 원칙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이에 대한 변화가 있었는데, 2012년 5월 7일 DPC는 정정보도를 1면에 게재할 것을 결정, 언론사에 요청하였다. 타블로이드지 Ekstra Bladet는 1면에 ‘끔찍한 의사들의 네트워크’라는 제목으로 보건

10) 계간지 「언론중재」 1988년 여름호 ‘세계 각국의 언론평의회’에 덴마크 언론평의회 관련 내용이 일부 수록되어 있다.

당국에 의해 적발된 6명의 성형외과 의사들의 실명과 사진을 게재하고, 그들의 수술 방법에 대해 비판함과 동시에 그들이 서로 환자를 소개해 왔다고 보도했다. 이들 6명 중 1명으로 보도된 신청인은 성형외과 의사가 아니고, 보건 당국에 의한 적발 사항도 성형수술이 아닌 다른 사안 때문이라며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DPC는 1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것을 신문에 요청했고, 신문사는 1면에 신청인의 사진과 정정된 이력사항을 함께 게재했다.

한편 2012년 2월 국회 법사위원회와 문화위원회는 공동으로 언론의 책임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정보도문과 DPC 결정문의 적절한 게재 방법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과 함께, DPC가 언론사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불만신청을 위한 시간적 제한(보도된 날로부터 28일)이 너무 짧은 것은 아닌지, 불만 접수를 위한 조건이 너무 제한적인 것은 아닌지, 불만신청이 없더라도 언론의 윤리강령 위반 여부에 대해 DPC가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원인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DPC와 언론사가 함께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2012년 5월 9일 이러한 제안에 대해 두 위원회 관계자와 DPC, 인쇄 및 전자매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 대표자들이 참석해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DPC 위원장은 실효성 강화를 위해 벌금이나 언론사에 피해를 주는 형태의 여타 강제적인 조치는 이미 1990년 DPC ‘언론의 책임에 관한 보고서’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명시했고, 그러한 조치는 법원이 결정할 사안이며 덴마크 헌법 제77조의 첫 문장(“사람은 누구나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지며, 이에 대한 구속은 법원의 책임이다”)에 명시된 것처럼 법원의 배타적 권한이라고 밝혔다.

또한 불만신청기간을 연장하는 문제는 언론계뿐 아니라 DPC도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을 중요한 이유가 없다고 본다.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의 경우 그 기간이 각각 3개월, 6개월인 것처럼 덴마크에서도 기간을 연

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덴마크에서는 전자적인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매체들에 대한 불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 언론의 책임에 관한 법률은 1992년에 제정, 1998년 개정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매체들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기 때문이다.

■ 러시아 언론평의회

(Russian Press Complaints Council, RPCC)

2005년 80개 이상의 언론사와 언론과 무관한 비정부 조직의 비공식적 동의에 따라 설립된 독립적 기구인 RPCC는 당국에 의해 승인받은 언론매체에 대한 자율규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RPCC는 2개의 위원회, 즉 독자위원회(Chamber of Media Audience)와 언론인위원회(Chamber of Media Society)로 구성되며 각 위원회는 25명으로 구성된다. RPCC는 설립 이후 올해 초까지 약 70번의 회의를 개최했고, 71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2012년에는 7건의 사건을 접수했다.

RPCC는 올해 초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RPCC의 역사, 구성, 규정, 업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언론 윤리 및 자율규제에 관해 특화된 전자 도서관을 구축하였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한 사건접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멀리서도 불만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AIPCE의 새로운 소식과 1991년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소련에 속해있던 공화국 중 12개국이 결성한 정치공동체인 독립국가연합(CIS)의 언론 자율규제기구인 대한 정보도 홈페이지에 반영했다.

■ 몰도바 언론평의회

(Press Council from Republic of Moldova, PCM)

PCM은 2009년 10월 1일 독립언론협회, 독립저널리즘센터, 언론인협회 등 6개의 언론 관련 비정부 기

관에 의해 설립된 전국적인 조직으로 언론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고 독자와 언론사 간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PCM은 임기 2년의 위원 9명으로 구성되는데 4명은 언론의 자유를 옹호하는 측에서, 다른 5명은 일반 대중의 권리를 옹호하는 측에서 공개경쟁을 통해 임명된다. PCM의 기본 임무는 언론 보도로 인한 분쟁을 조사하여 이를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고, 이와 함께 몰도바 언론인의 직업 규범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과 신뢰할 만한 저널리즘을 권장하는 캠페인 등을 시행하고 있다.

PCM은 설립 이후 2010년 12월까지 10건의 사건을 처리했으며, 2011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언론의 의무를 심각히 위반한 경우에 대해 PCM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사건을 포함해 총 36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이중 29건에 대해 언론인의 의무강령(Journalist's Deontology Code) 위반이 있었다고 결정하고, 언론사에 시정을 요구했다. 의무강령 위반 사례는 반론권을 부여하지 않은 채 비난 기사를 게재한 경우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표절 및 공표된 내용의 동의 없는 사용이 10건, 어린이와 희생자들에 대한 보호 위반 6건, 차별적 내용 보도 3건, 끔찍한 방송영상 보도 2건, 잘못된 정보 공표와 이익 분쟁에 언론인 연루 1건, 자료수집 과정에서 법률 위반 1건 등이었다.

동 기간 동안 PCM의 또 다른 주요 활동으로 언론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언론의 아동 보호, 언론과 무죄 추정의 원칙, 보도 시 관용과 차별철폐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제정했고, 홍보책자 “새로운 민주사회에서의 언론의 자율규제 규범”을 발행하였다.

한편, PCM은 2011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몰도바 동유럽 기금(East European Foundation from Moldova, EEFM), 덴마크 외무부, 미국 국제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등 여러 단체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았다. 또한 2011년 유럽위원회와 EU가 “

몰도바의 민주주의 구현”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행사에서 PCM은 참석한 언론사 대표자들에게 몰도바 언론인의 윤리강령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결국 2011년 5월 3일 새로운 윤리강령이 88개 언론사와 언론 유관기관으로부터 승인되었다.

■ 보스니아-헤르체고비아 언론평의회

(Press Council in Bosnia and Herzegovina, PC BiH)

PC BiH는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지면매체와 온라인 매체에 대한 198건의 사건을 접수했다. 접수된 사건의 대부분이 사생활 관련 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였다. 인용된 사건은 65건으로 그 중 윤리강령 제7조 ‘반론 기회(Opportunity to Reply)’를 부여하지 않은 것과 제3조 ‘선동(Incitement)’하는 내용의 기사에 대한 불만이 각각 17건이었다. 제4조 ‘차별(Discrimination)’ 조항과 제10조 ‘형사적 범죄로 기소된 사람(Persons Charged with Criminal Offences)’ 조항에 관련한 불만도 각각 6건이었다.

PC BiH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가 라디오 프로그램 “ZOOM ? Your Voice in the Media”에 참여한 것이다. 후원금을 통해 제작되는 이 프로그램은 PC BiH 직원, 젊은 저널리스트, 언론윤리 관련 수업이나 PC BiH가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 언론윤리, 언론법제, 언론의 자율규제, 언론의 자유와 책임, 언론 보도에 대한 시민의 권리, 언론에 대한 정치적 압력 등의 주제로 방송한다. 올해는 10월 15일까지 총 25회 방송되었고,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전역의 28개 방송사를 통해 방송되고 있다. 또한 PC BiH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청년 협회와 공동으로 전국 32개 도시에서 PC BiH 업무에 대한 홍보 및 언론의 자율규제와 관련한 2개의 공공 캠페인을 수행하였다. 청년 협회와 고등학생 협회의 각 지부는 해당

지역 언론사와 시청, 대학 언론학과를 방문하는 한편, 지역마다 정보 안내소를 설치해 언론의 자유와 언론인의 책임에 대한 자료를 배포하였다. 약 600명의 봉사자가 이 캠페인에 참여하였고, 이들의 노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정확한 언론보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PC BiH는 예비 언론인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전국의 언론학 전공 학생들에게 5일 간의 교육 과정을 통해 언론윤리와 언론의 자유, 언론윤리강령, 언론법제, 언론의 공적 이익과 인격권 등을 교육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PC BiH 내부 강사와 유럽 지역의 저명하고 전문적인 강사를 통해 집중적이고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2011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관련 EU 보고서’ 중 언론의 자유에 관한 부분에서 “PC BiH는 사법기관과 협력하며 그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언론의 윤리강령 위반에 대한 일반 시민에 의한 불만신청이 상당히 증가했는데, 이는 불공정하고 부정확한 언론보도에 대한 시민들의 법적인 권리의식이 증가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PC BiH의 재정과 인력의 부족은 언론의 윤리강령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자 하는 PC BiH의 노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PC BiH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EU의 긍정적인 평가는 다행스런 일이나,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PC BiH의 재정 불안정은 심각한 수준에 처해 있다. PC BiH뿐 아니라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크로아티아 등 서부 발칸 국가의 경우 다른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언론평의회의 강제력이 없고, 특히 언론평의회의 재정 상황이 열악하고 직원수 등 규모가 적어 현실적으로 현재의 자율규제 방식을 지속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벨기에 언론평의회 (Belgium Press Council)

벨기에는 민족 구성 및 인접 국가의 영향으로 지역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 플라망 족(族)이 대부분인 벨기에 북부 플레미시(flemish, 불어로는 플랑드르) 지역은 주로 네덜란드어와 독일어를 사용하고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에 소재한 언론은 독일어로 발행 또는 방송된다. 반면 왈론 족(族)이 대부분인 벨기에 남부 지역은 불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언론사도 불어로 발행 또는 방송된다. 이러한 이유로 벨기에 언론평의회는 두 곳으로 나뉘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① 벨기에 북부 지역

— Raad voor de Journalistiek (RvdJ)

2002년 설립된 RvdJ는 신문 발행인과 라디오, TV 등 방송사에 의한 50%와 언론인 협회로부터 50%의 기금을 받아 운영한다. 언론인 협회는 RvdJ 지원 비용을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다. RvdJ는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현재 위원장은 벨기에 최고 행정법원(Supreme Administrative Court) 법관이다. RvdJ를 실제로 운영하는 책임자이자 옴부즈맨인 사무총장은 불만이 제기되었을 때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데, 신청인과 관련 기자 및 언론사와 대화를 통해 ‘공식적 절차 외(out of council)’ 해결을 시도한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 사건이 해결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RvdJ 위원회에 회부된다. 위원회는 양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을 내리는데, 이 결정은 RvdJ 홈페이지와 잡지 ‘De Journalist’에 공표된다.

2011년 RvdJ는 2010년에 비해 50% 이상 증가한 75건을 처리했다. 이처럼 사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2010년 9월 새로이 공표된 윤리강령에 대한 언론의 보도와 논의 덕분에 일반 시민과 변호사, 중재인 등이 RvdJ의 존재 여부와 그 기능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접수된 사건 중 17건은 사무총장의 중재를 통해 당사자의 합의가 이뤄졌고, 사무처에서 해결되지 않은 사건 중 23건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동기

를 부여하는 선고(motivated adjudication)를 했고, 11건에 대해서는 인용 또는 부분 인용을 하였다. 인용하지 않은 사건은 12건이며, 일견하기에도 논의의 필요성이 없었던 10건은 기각했다. 접수된 사건의 대략 50%는 부정확한 보도가 신청 원인이었고, 35%는 사생활 또는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한 불만이였다.

2012년 상반기 처리건수는 40건으로 2011년과 다소 유사한 수준이다. 가장 논란이 된 사례는 2012년 3월 13일 스위스에서 발생한 버스사고로 희생된 벨기에 초등학교생들의 사진을 두개의 유력 신문사가 이들의 개인 홈페이지와 SNS에서 찾아 부모의 동의 없이 공표한 사건이었다. RvdJ는 신청인과 두 신문사의 편집인들과 회의를 진행했고, 눈에 잘 띄는 지면에 사과문을 공표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이 사건으로 올해 4월에 RvdJ는 언론이 개인의 홈페이지와 SNS 사이트 상 사진과 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표했다. 가장 흥미로웠던 사례는 모 지역신문사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유명한 법정 사건의 피고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사건이었다. 신청인은 여론조사 결과가 재판을 방해할 수 있고 배심원단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했다. RvdJ는 이를 인용했다.

한편 벨기에 미디어부(Minister of Media)는 2010년 9월 새로운 윤리강령을 공표하는 공식 석상에서 정부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 모든 언론매체는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RvdJ에 협력해야 함을 선언했다. 그리고 2012년 7월 플레미시 정부는 RvdJ에 협력하고 윤리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한 11개 지역 TV 방송국에 대해 재정적인 지원을 승인했다.

② 벨기에 남부 지역

— Conseil de Deontologie Journalistique (CDJ)

CDJ는 2011년 9월부터 2012년 8월까지 42건의 불만을 처리했다. 이것은 전년도 동기간에 비해 적은 수

치이나, 2012년 들어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42건 중 14건은 2012년 10월 현재까지도 계류 중이고, 17건에 대해서는 ‘견해(Avis)’ 결정을 했다. CDJ가 인용한 사건의 대부분은 언론인이 불공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획득한 것(9건)과 인간의 존엄성과 명예를 훼손한 사건(8건)이다. 간혹 반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불만을 제기한 사건도 있었다.

가장 논란이 많았던 사건은 한 장관이 자신이 성희롱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한 공영방송 RTBF를 상대로 한 신청이었다. 신청인은 비록 자신의 실명이 공개되진 않았으나 증인의 인터뷰 등 보도 내용을 통해 대중들이 관련 인물이 자신임을 유추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 CDJ는 논의를 통해 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했다.

2011년 10월 CDJ는 언론이 보도한 주요 이슈에 대해 독자들이 답글(리플) 등으로 의견을 남길 때와 같이 언론사가 토론의 장으로써 자사 홈페이지를 대중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인종차별과 같은 각종 차별적 내용이나 증오 및 폭력성을 자극하는 내용 등을 피하기 위해 언론사가 게시물에 대한 표현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CDJ의 이러한 권고사항에 대한 언론사의 준수 여부는 언론사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언론인의 직업적인 규범을 발표하고 정의하는 것이 CDJ의 중요한 업무 목표 중 하나이며, 그 일환으로 2012년 3월 기자의 취재원과 관계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저널리즘 및 광고, 선거 캠페인,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토론 등에 관한 규정을 수록한 지침서 “Les carnets de la deontologie(Notebooks of Ethics)”를 발행했다.

■ 스리랑카

(Press Complaints Commission of Sri Lanka,

PCCSL)

PCCSL은 1998년 언론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스리랑카 편집인협회 및 언론인협회, 세계신문협회(WAN), 국제언론인협회(IPI) 등이 콜롬보에서 개최한 국제 세미나인 ‘콜롬보(Colombo) 선언’의 결과로 설립되었다. 영국의 PCC, 스웨덴 및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언론평의회가 그 모델인 PCCSL은 스리랑카 신문에 대한 자율규제체이며, 1995년 제정된 중재법 11조에 의거해 언론 분쟁에 대한 조정과 중재 업무를 수행한다.

2011년 PCCSL은 142건의 불만을 처리했으며, 만약 신문사가 2개월마다 1회 개최되는 PCCSL 분쟁해결위원회(Dispute Resolution Council)의 결정을 공표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은 콜롬보 고등법원에 그 이행의 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신문사들이 PCCSL의 결정을 잘 이행하고 있다.

PCCSL은 스리랑카 언론협회(Sri Lanka Press Institute, SLPI)와 언론의 자율규제에 관한 주제로 2일 간의 컨퍼런스를 개최했고, 경찰 언론 대변인의 요청에 따른 공개 포럼 1회와 자살보도에 대한 주제로 편집인과 기자, 일반 대중을 위한 공익 포럼 1회를 개최했다. 또한 지역사회의 교육 책임자와 학교장, 선생들과 공립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PCCSL의 실무적인 업무 절차와 언론인의 직업태도, 윤리 등에 관한 내용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스리랑카의 새로운 교육 과정에서 PCCSL과 언론윤리강령에 대한 내용이 GCE O-Level (General Certificate of Education Ordinary Level, 스리랑카의 대학입학 시험인 A-Level 준비 과정) 및 A-Level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

한편 몰디브에 PCCSL과 같은 언론에 대한 자율규제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몰디브 기자회견을 대표해 3명의 몰디브 언론인이 PCCSL을 방문, PCCSL의 업무와 스리랑카 언론윤리강령을 교육받고 갔다.

■ 스웨덴 언론평의회

(Swedish Press Council, SPC)¹¹⁾

SPC는 2011년 약 300건을 처리했으며, 지난 몇 년간 처리건수가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다. 그러나 올해 4월에 온라인 불만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건수가 다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대중의 관심이 집중된 다수의 사건이 SPC에 접수되었다. 그 중 하나는 빅토리아 공주가 한 가십 매거진의 기사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사건으로, 해당 언론사는 당시 임신한 공주가 유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SPC는 이에 대해 부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심각한 언론윤리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또 다른 사례는 많은 논란과 해당 언론사에 대한 비난을 야기한 사건으로 한 신문사가 캠브리지 공작 부인의 상의를 탈의한 사진을 게재한 것이다. 이 보도로 해당 신문사는 다른 언론사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고, 심지어 TV 토크쇼에서도 이러한 사진의 게재가 정당한지를 두고 참석자들의 설전이 오고 갔다. 논란을 야기한 해당 신문사는 보도내용의 공익성을 주장했다. 대부분의 다른 언론사와 비평가들은 타당한 공익이 없다는 의견이었다.

현재 스웨덴에서는 언론의 이러한 사진 공표 행위에 대한 사생활 보호 관련 법안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

11) 계간지 「언론중재」 1986년 여름호 ‘세계 각국의 언론평의회’와 1993년 겨울호 ‘스웨덴 언론평의회 정관 및 옴부즈맨의 실무규정’으로 스웨덴 언론평의회 관련 내용이 일부 수록되어 있다.

번 사건으로 인해 많은 신문사들이 논평과 함께 관련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언론자유위원회(Freedom of Speech Committee)는 이 사안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했으나, 그러한 법안을 제정할 이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이유로 SPC의 존재 사실과 업무 활동을 언급했는데, SPC는 언론의 생활 침해 금지 등과 같은 언론윤리를 유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활동하고 있기에, 별도의 관련 법안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 스위스 언론평의회

(Swiss Press Council, SPC)¹²⁾

SPC는 2010년 81건, 2011년 82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82건 중 32건에 대해서는 완전 혹은 부분 인용을 결정했는데 인용된 사건의 대부분은 윤리강령 제3조(언론인은 출처가 불명확한 정보를 공표해서는 안 되며, 핵심적인 정보를 숨겨서는 안 된다) 위반이었다. 주목할 점은 제8조(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과 차별 금지)와 관련한 불만의 가파른 증가이다. 관련 조항의 위반은 2010년 9건에 불과했으나, 2011년 23건의 불만이 접수되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의 사건을 인용하지 않았는데, 표현의 자유는 가능한 폭넓게 보장되어야 하므로 위반 내용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SPC의 기본 입장이기 때문이다.

SPC는 기술 발전으로 인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연구해 왔고 2011년 2개의 보고서를 발행했다. 보고서는 인터넷 기사의 삭제 및 정정에 관한 것과 웹사이트 상 익명성에 관한 것으로, 후자의 경우 많은 논란이 있지만 SPC는 기사 내용과 관련한 독자

의 비판적인 의견을 온라인 상 익명으로 게재하는 것은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SPC는 지면과 온라인 매체에 대한 윤리적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간주하기에, 기사에 대한 비판을 온라인에 답글(리플)과 같은 형태로 게재할 때는 지면매체와 동일하게 사생활이나 취재원의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단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명으로 게재해야 한다. 단, 온라인 매체의 경우 단지 하나의 추가적인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데, 온라인 상 이뤄지는 공개토론과 같이 시스템적으로 신속성과 즉흥성이 요구되어 당사자의 신원확인을 요구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한편, 스위스 의회는 SPC에 정부의 언론매체에 대한 공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자문을 구했고, SPC는 언론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현재와 같은 신문 발송 우편비용의 경감이라는 간접적인 지원을 넘어 공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기금 마련과 같은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이러한 의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정부의 개입 없이 언론사 스스로 재정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향후 몇 년 간 더 추세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 스페인 카탈루냐 언론평의회

(Spanish Catalan Press Council, SCPC)¹³⁾

SCPC는 다른 국가의 언론평의회와 마찬가지로 언론매체가 자발적으로 채택한 윤리강령을 잘 이행하는지 감시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SCPC는 기자, 대학교수, 정보 전문가 등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사건이 접수되면 위원 중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1명이 사전에 조사를 진행하고 이러한 사건들을 모아 계간으로 개

12) 계간지 「언론중재」 1989년 여름호 '세계 각국의 언론평의회'와 2006년 겨울호 '해외시찰보고서'에 스위스 언론평의회 관련 내용이 일부 수록되어 있다.

13) 계간지 「언론중재」 2002년 겨울호 '해외시찰보고서'와 2010년 가을호 '해외실무연구보고서'에 스페인 카탈루냐 언론평의회 관련 내용이 일부 수록되어 있다.

최하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한다. 전원위원회는 윤리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 언론사에 책임을 권유한다.

SCPC의 운영재원은 정부와 회원 언론사가 각각 50%를 분담하는데, 올해 스페인과 언론사의 재정위기가 결과적으로 SCPC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카탈루냐 지역 정부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SCPC에 대한 올해 보조금을 아직도 결정하지 못했고, 신문과 라디오, TV 등 SCPC 회원사의 거의 절반이 올해 회비를 납부하지 못했거나 탈퇴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탈퇴한 언론사의 대부분이 소규모, 지역 매체이며 여전히 두 개의 전국적인 언론 그룹은 회원으로 남아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상태로는 2013년 말 이후 SCPC의 운영이 불투명하다. 언론사와 대중, 기자들에게 언론의 자율규제의 이점을 납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새로운 운영 재원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기도 하였으나, 현재 상황은 그다지 낙관적이지 못하다.

SCPC가 접수한 사건도 2011년 30건에서 올해는 17건에 불과하다. 이는 언론이 윤리강령을 잘 준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사람들이 언론의 윤리강령 위반을 경험하고도 불만을 신청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처리건수는 많이 줄었지만 정부와 정당, 공공기관이 신청한 사건은 증가했으며 스포츠 뉴스에 대한 불만이 증가했다는 것도 특이한 사항이다. 특히 성매매, 이민자, 범죄 등에 관한 보도에서 더욱 공격적이고 비윤리적인 사례가 빈번해 졌다. 한 신문사는 1면에 “공무원의 주장”이라는 제목으로 바르셀로나의 소매치기 대부분이 다른 국가에서 온 이민자라고 보도하면서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많은 독자들은 해당 기사가 이민자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제공한다고 하며 트위터 등을 통해 해당 언론사를 비판했다.

한편 온라인 기술의 발전은 언론의 새로운 윤리적 문제를 야기했다. 잘못된 정보가 인터넷이나 소셜미

디어를 통해 공표된 경우 이를 정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심지어 언론이 부적절한 정보에 대해 정정을 바란다고 하더라도 이미 너무 광범위하게 배포되어 일일이 찾아내 정정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나아가 언론인이 자신의 기사를 해외 매체에 공표할 수 있게 됨으로써, 만약 그 기사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SCPC는 일절 개입할 수 없다. 보도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여러 국가를 돌아 다녀야 할지도 모른다.

■ 아르메니아 언론윤리감시체 (Armenia Media Ethics Observatory, AMEO)

2007년 1월 9일, 아르메니아 수도인 예레반(Yerevan)의 언론 클럽(Press Club)은 언론인의 직업 윤리 기준을 만들어 일상 업무에서 준수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제안서를 아르메니아 언론계에 발표했다. 같은 해 2월 2일, 언론 클럽의 제안을 지지하는 언론사 대표자 회의에서 이러한 윤리강령을 만들기 위한 실무팀이 구성되었고, 같은 해 3월 10일 언론사 사장단과 언론인 협회 회의에서 윤리강령을 채택, 이에 따르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윤리강령을 준수하겠다고 서약한 언론사들은 언론 윤리감시체(AMEO)를 만들어 그 실행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언론사들은 AMEO가 언론의 윤리강령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강령의 개정을 공표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하였고, 자사의 보도내용에 대한 AMEO의 결정 사항을 기꺼이 공표할 것임을 서약했다. 당시 16개 TV 방송사, 19개 신문사, 2개 잡지사, 3개 통신사, 3개 온라인 매체, 1개 라디오 방송사 등 총 44개 언론사가 윤리강령에 서약했으나, 2012년 10월 현재까지 추가 서약한 언론사는 없다.

한편 2011년에는 AMEO의 조직과 구성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 2011년 12월 24일 언론사와 언론

인 협회 대표자 회의에서 융통성과 효율성을 위해 선출직인 AMEO 위원을 14명까지 늘리고 불만처리를 위한 위원 정족수를 7명으로 결정했다. AMEO 위원은 주로 3개 분야(변호사와 같은 전문가, 현직 언론인, 시민 대표자)에서 선출된다.

AMEO가 올해 처리한 주요 사례로 한 시민인 Anna Simonian이 사진 저널리스트인 Gagik Shamshian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이 있었다. 2012년 2월 8일 Anna는 예레반의 한 자살 사건에 대해 Gagik이 작성한 사진 기사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해당 기사는 AMEO에 가입된 신문사 중 하나인 'Aravot'의 홈페이지에 게재되었는데, 기자는 자살 사건에 대해 집요하게 추적해 희생자의 이름과 성, 나이 등을 특정했고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신청인은 이 기사로 인해 희생자의 가족, 특히 그 자녀에게 고통을 가중시켰음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AMEO는 언론인은 자살과 같은 비극적 사건을 취재할 때는 특히 주의를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하는 결정을 했고, Aravot 신문사는 AMEO의 결정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올해 AMEO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AMEO를 통해 법원의 소송 사건을 줄이는 한편, 대중에게 AMEO가 언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라는 점을 이해시키고 확대해 나가는 것이며, 더 많은 언론사가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취재활동을 전개하도록 AMEO의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 아일랜드 언론평의회

(Irish Press Council, IPC)¹⁴⁾

2011년 IPC가 공식적으로 처리한 사건은 77건이고,

비공식적으로 처리한 사건은 2010년과 유사한 수준인 266건이었다. 비공식적으로 처리한 사건 중 144건은 언론 보도내용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IPC 업무와 관련한 단순한 질의였고, 108건은 IPC 업무 영역을 벗어난 사건이었다. 공식적으로 처리한 사건 중 19건에 대해 제기된 불만 내용을 언론사가 수용해 합의가 이뤄졌고, 42건은 IPC 옴부즈맨에 의한 결정이 내려졌다. 옴부즈맨을 통해 해결되지 않아 위원회로 회부된 사건과 신청인이 철회한 사건은 각 1건에 불과했고, 7건은 법원에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한 내용이어서 분류 중에 있다.

2011년 불만신청 이유를 분석한 결과, 2010년에 비해 사생활과 관련한 사건은 감소하였고, 인종, 성별 등을 이유로 대중에게 증오감을 부추기거나 심각한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편견적 기사와 관련한 불만은 증가했다(그러나 증가 이유는 2개의 기사에 대해 64건이 접수되었기 때문이다).

IPC의 최근 몇 달 간의 주요 관심사는 영국의 레버슨 청문회, 영국 왕세손비 케이트 미들턴(Kate Middleton)의 사진 공표로 인한 논란 및 이로 인한 새로운 사생활 관련 법률의 필요성에 대한 것이었다.

레버슨 청문회는 IPC의 구성과 업무 처리방법에 대해 증언을 요구했고, IPC 위원장의 부재로 옴부즈맨이 대신 청문회에 참석했다. 아직 레버슨 청문회가 그 보고서를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아마도 몇몇 측면에서 IPC를 모델로 해 보고서를 작성할 가능성이 높다. IPC는 PCC를 대체할 새로운 영국의 언론불만처리기구인 법률에 의해 공인되거나 설립되어질 것이며 IPC나 기존 PCC 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지게 될 것이나, 정부와 언론 양쪽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만약 레버슨 보고서에 의한 영국의 새로운 언론불만처리기구의 설립과 구성이 IPC의

14) 계간지 「언론중재」 2009년 가을호 '해외시찰보고서'에 아일랜드 언론평의회 관련 내용이 일부 수록되어 있다.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아일랜드에서도 IPC의 ‘개혁’에 관한 논의가 불가피하게 확대될 것이다.

아일랜드의 한 타블로이드 신문이 상반신을 탈의한 영국의 왕세손비 케이트 미들턴의 사진을 게재했다. 이에 대해 언론의 사생활 침해라는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일부 독자들이 IPC에 불만을 신청했다. 그러나 IPC는 이들이 보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였기에 사진을 접수하지 않았다. IPC 규정에 의하면 제3자에 의한 신청은 그들이 해당 보도에 의해 개별적으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거나, 보도와 개별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은 IPC 규정에 중요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가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올해 3월 IPC 연간 컨퍼런스에서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다. 개정 내용은 신청인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제3자가 개인적으로 보도내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경우, 보도와 개별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도 IPC 옴부즈맨 결정에 대해 신청인이 직접 IPC 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그동안 옴부즈맨이 독단으로 제3자에 의한 신청을 거부할 수 있었으나, 이러한 사건도 항소를 통해 IPC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한 논란으로 아일랜드 법무부 장관은 새로운 사생활 관련 법률의 필요성을 다시 제기했다. 2011년 이전부터 새로운 사생활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아일랜드 상원에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해 언론계의 지대한 우려가 있었고 정부에서도 제정 의지가 그리 크지 않았다. 그러나 미들턴 사건을 비롯한 상당수 사건에서 언론이 개인의 사생활을 적절히 보호하지 않자, 정부 및 의회에서 이에 대한 경고로 새로운 법률의 입안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 아제르바이잔 언론평의회

(Azerbaijan Press Council, APC)

APC는 2012년 1월부터 9월까지 310건의 불만을 접수했다. 접수된 불만은 크게 사무처 조사(Examined at the Secretariat), 위원회 심리(Examined at the Commission), 이사회 결정(Examined at the Board)이라는 3단계를 거친다.

사건이 접수되면 사무처에서 가장 먼저 사건에 대한 초기 조사 등을 수행한다. 그리고 불만 내용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양당사자의 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신청인과 언론사측 대리인에게 APC 사무처로 출석할 것을 요청한다. 310건 중 235건이 사무처를 통해 불만이 해결되어 절차를 종료했다.

만약 접수된 사건이 법정에서 다루야 할 내용(올해 9월까지 접수한 310건 중 242건이 이에 해당함)이라면, 신청인은 APC 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을 보류하겠다는 확인서에 서명을 해야 한다.

한편 사무처는 이미 소송이 제기된 상태이거나 관련 사건에 대해 사법부 등 법률 집행 기관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 불만신청기간이 도과한 경우, 신청이 익명으로 이뤄진 경우에는 사건을 기각한다.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사건 중 22건이 이러한 이유로 기각되었는데, 대부분이 이미 소송이 제기된 상태였거나 관련 조사가 법률 집행 기관에 의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무처에서 해결되지 않은 사건(310건 중 75건)은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매달 2번의 회의를 개최하는 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된다. 먼저 위원회는 신청서 사본을 신문사에 송부하고, 이에 대한 신문사의 답변서는 신청인에게 송부한다. 만약 이때 신문사가 적절한 해결안을 제시하여 신청인과 화해가 이뤄지면 사건은 종결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일정과 장소를 통지하고 심리를 개최하는데, 심리에는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이 참석 가능하다. 심리 중 합의가 이뤄지면 사건은 종결된다.

마지막 단계는 이사회 결정이다. 위원회에서 해결되지 않은 사건은 중국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하는데 올해 9월까지 9번의 회의를 통해 총 34건의 결정이 이뤄졌다. 이사회 결정은 공개 투표를 통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이뤄지는데, 만약 이사회에 참석한 위원이 해당 불만이 제기된 신문사 소속이라면 이사회 참석 자격을 잃게 된다. 이사회는 사건을 완전 인용, 부분 인용, 기각할 수 있고(올해 34건 중 완전 인용 24건, 부분 인용 3건, 기각 7건), 신문사는 APC 결정 내용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일간지의 경우 3일 이내) 게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APC 결정은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며 APC는 단지 신문사가 자발적으로 결정 내용을 발표하도록 권유할 뿐이다. 2012년 상반기까지 APC 결정을 신문사가 게재한 경우는 25건이었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2건이 있었다.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 함은 APC 결정을 신문사가 아예 게재하지 않거나 APC가 작성한 결정 내용을 왜곡해 게재한 경우를 뜻한다. 전자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문사에 이행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APC는 자체적으로 결정 내용을 공용 도메인(Public Domain)에 공개한다. 후자의 경우 APC는 신문사가 게재한 내용을 검토하고, 왜곡이 발견되면 최초 결정에 기초해 다시 문안을 작성하여 이를 게재할 것을 신문사에 권유한다.

한편 APC는 우편이나 팩스로 결정문을 신청인과 신문사 측에 송부하는데, 이는 신문사가 그 결정을 공표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조금이라도 더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이다. APC 결정은 분기별 정보 게시판과 APC가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매스미디어에 공

표되고, APC 연간 보고서에 수록된다. 모든 결정내용은 APC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다.

■ 오스트리아 언론평의회 (Austrian Press Council, APC)¹⁵⁾

APC는 2010년 중반 재설립 되었고, 같은 해 11월 업무를 재개한 이후 2011년 한 해 동안 78건의 불만을 처리했다. 올해는 9월까지 이미 102건의 사건을 처리했는데, 전년도 동 기간 53건과 비교할 때 96% 정도 증가한 수치다.

2012년에는 기존 9개 조항의 윤리강령에 제10조와 제11조, 2개 조항을 추가하였다. 제10조는 신문사에 고용된 사람과 언론인의 사적인 이익이 기사 내용에 영향을 끼치는 안 된다는 것으로, 특히 금융과 경제 관련 기사에서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제11조는 APC가 주재한 2011년 12월 회의에서 자살 사건 취재와 관련해 논의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오스트리아 언론사는 지하철역 등에서 발생하는 자살 사건에 대해 보도하지 않겠다고 대중교통 사업자와 신사협정을 체결해 왔다. 해당 신사협정으로 인해 대중교통 장소에서 발생한 자살사건은 거의 보도가 되지 않았고, 과학적인 연구 결과 비슷한 유형의 추가적인 자살사건이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최근 몇 달간 다양한 타블로이드 신문에 의해 이러한 협정이 위반되었고, 이에 APC는 자살이나 자해사건 및 그러한 시도에 대해 언론은 보도를 억제해야 한다는 것을 윤리강령 제11조에 명시하였다.

다른 여러 국가와 마찬가지로 재정적 위기에 처한 APC는 현재의 언론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개편하기 위한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는데, APC의 안정적 재원

15) 계간지 '언론중재', 1988년 가을호 '세계 각국의 언론평의회'와 2006년 겨울호 '해외시찰보고서', 2007년 겨울호 '해외실무연수보고서'에 오스트리아 언론평의회 관련 내용이 일부 수록되어 있다.

확보를 위해서는 언론사에 대한 보조금 개편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에스토니아 언론평의회

(Estonian Press Council, EPC)

EPC는 신문, 방송, 온라인 미디어 등 모든 매체에 대한 불만사항을 처리한다. EPC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6명은 언론인, 4명은 언론 외 분야)되며, 이들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또한 한 명의 임시직 사무총장이 있는데, 그의 본래 소속은 에스토니아 신문협회이다.

EPC는 가입 언론사의 회비로 운영되며, 2012년에는 상업 라디오 방송 Kuku가 신규 회원으로 가입했다. 비록 EPC 회원으로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EPC의 불만처리 절차에 동의한 언론사에 대한 불만 사항도 간혹 처리한다. 이러한 언론사들은 보통 규모가 영세한 곳으로 EPC 회비를 납부하기 어려워 회원으로 가입하지 못한 곳이다.

그러나 EPC는 궁극적으로 언론사가 사내 옴부즈맨과 같이 가능한 자체적인 규제 시스템을 가지길 바란다. 현재 에스토니아에서 옴부즈맨을 보유한 언론사는 공영방송 ERR이 유일한데, 만약 신청인이 옴부즈맨의 결정에 만족하지 못하면 EPC에 불만을 신청하게 된다.

2011년 EPC는 67건의 사건을 접수했는데, 이는 2010년에 비해 다소 증가한 수치이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9월까지 접수된 사건이 30건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비록 EPC가 온라인 매체에 대한 불만도 처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그 사건수가 많지 않은데, 신문사들이 EPC에 불만이 접수된 사실을 안 즉시 그들의 홈페이지 상 기사를 수정 또는 정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몇몇 사건에 있어서 신청인은 EPC에 온라인 상 기사 삭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EPC는 일반

적으로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검색의 용이성으로 인해 자신에게 문제를 야기하거나 비호의적인 기사에 대해서는 직접 언론사에 기사의 완전 혹은 부분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아마도 이것이 올해 사건수 감소의 한 원인일지도 모른다. 한편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안을 보도하면서 상대방에게 반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음으로 인한 불만신청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법조인들이 이전에 비해 불만신청을 많이 하고 있어 몇몇 사건은 매우 상세하고 법률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11년 처리한 사건 중 아주 드문 사례가 있었는데, 에스토니아 수상 Andrus Ansip이 주간지 Eesti Ekspress를 상대로 불만을 제기한 사건이었다. 통상 유명 정치인들은 보도내용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신청인은 자신에게 비판적인 기사를 게재하면서 당사자인 자신의 의견을 밝힐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EPC는 언론사가 심각한 비판을 게재하면서 당사자에게 답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윤리강령 위반이라고 결정하였다.

대중의 많은 관심을 받은 사건도 있었는데, 한 방송사 프로그램에서 교통사고로 장애를 갖게 된 학생을 위한 모금액을 한 지역 의회가 착복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시의회 의장은 보도된 내용의 혐의를 부인했고 방송사가 자신의 주장을 밝힐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불만을 신청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해당 프로그램의 PD가 지역 독자와 사업가들에게 학생의 가족에게 기부를 하라고 협박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많은 언론사들이 본 사건 방송, 즉 신청인 시의회가 모금액을 착복했다는 내용을 인용 보도했는데 신청인은 이들 언론사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부분 언론사는 문제는 잘못된 보도를 한 최초 방송사

에 있고, 자신들은 이를 재공표한 것뿐이라며 책임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EPC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건에 대해 보도할 때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영했어야 한 다며 이러한 언론사에 대해서도 정정보도할 것을 결정했다.

작년 한 해 동안 EPC의 지위와 언론윤리강령은 변화가 없지만, 온라인 미디어의 역할 증가로 인해 이를 반영한 윤리강령의 개정 여부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간혹 문화부를 비롯한 몇몇 정치인들은 현재의 자율규제 시스템이 지나치게 언론사의 의사에 따라 결정됨을 비판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에스토니아 사회에서는 EPC가 접수된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다.

■ 이스라엘 언론평의회 (Israel Press Council, IPC)

이스라엘의 언론사는 현재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한 민영 TV 방송사와 두 개 주요 일간지의 중단 기적 생존이 점점 더 불확실한데, 이스라엘에서 단지 3개뿐인 전국적인 TV 방송 중 하나인 Channel-10은 현 정부의 정책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 채 긴급구제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Maariv와 Haaretz daily 두 주요 일간지는 편집담당 직원의 상당수에 대해 정리해고를 결정했다. 언론사의 이러한 위기 상황은 결과적으로 IPC에 심각한 재정적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IPC와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의 언론평의회도 운영 재원에 대한 위기 의식이 높다고 알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유럽의 모든 언론평의회가 결속해 UNESCO와 같은 국제적인 도움을 통해 미래의 자금 지원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IPC에 접수되는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IPC 활동에 대한 대중의 인지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주요 공적 인물과 공공기관이 보도내용에 대한 불만 처리를 위해 다른 법률적인 절차보다 신속한 IPC 절차를 선택함으로써 IPC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IPC는 언론의 자유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한 사건을 주목하고 있다. 예루살렘 대법원은 경찰에 자료 제공을 거부한 기자에 대한 소송사건의 상고심을 진행하고 있는데, 해당 기자는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인 웨스트뱅크에서 정착민에게 적대적인 것으로 간주된 한 고위 군인을 우파 극단주의자들이 공격했던 사건을 보도했다. 이에 경찰은 가해자를 확인하기 위해 기자에게 당시 촬영한 사진을 요구했으나, 기자는 언론인의 비밀 특권이 업무 과정에서 획득한 자료에까지 확대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경찰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해당 주(州)는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하급심에서는 원고 패소, 즉 기자는 경찰에 자료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한편 IPC는 그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데, 다른 많은 국가의 언론평의회와 마찬가지로 IPC도 레버슨 청문회로부터 제시될 새로운 미디어 규제 방안을 기대하고 있다.

■ 조지아 언론평의회 (Georgian Council of Charter, GCC)

3년 전 조지아 언론윤리헌장(Georgian Charter for Journalistic Ethics)의 제정과 동시에 GCC가 생겨났으며,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약 200명의 언론인이 언론윤리헌장을 주수하겠다고 서약했다. GCC는 9명의 위원(지역 언론사 대표자들 중 6인, 전국적인 언론사 대표자들 중 3인)으로 구성되어 언론윤리헌장에서 약한 언론인에 대한 불만사항을 처리하고 있다.

GCC는 올해 총 9건의 사건을 접수했고, 이 중 5건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졌다. 나머지 4개 사건은 서

약하지 않은 언론인에 대한 불만이었으므로 GCC의 처리 권한이 없었다. 또한 불만신청기간(보도가 있을 날로부터 3개월) 도과로 인해 접수하지 않은 사건도 1건 있었다.

GCC가 논의한 5건 모두 인터넷 매체에 대한 신청이며, 대부분 신청 이유가 사실의 정확성에 관한 윤리헌장 제1조(언론인은 국민의 정확한 정보를 받을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와 제11조(고의로 사실을 훼손하는 것은 언론인의 가장 심각한 직업적 범죄이다) 위반에 관한 것이었다. 또한 제3조(언론인은 확실한 정보에 의한 사실에 의거해 보도해야 한다. 언론인은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숨겨선 안 되고, 문서와 정보를 위조해선 안 된다)와 제10조(언론인은 특별한 공익이 없는 한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도해선 안 된다)와 관련한 불만도 있었다.

한편 올해 조지아 총선이 있었는데, 총선 기간 동안 GCC는 “Memo 98”이라는 단체와 함께 TV 채널의 선거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GCC는 3개월 동안 11개 TV 방송사의 뉴스와 토크쇼에서 선거 보도에 대해 얼마나 많은 언론윤리헌장 위반이 있었는지 모니터링을 했다(TV에 대해서만 실시한 것은 설문조사 결과, 92%의 조지아 국민이 TV 방송을 통해 선거 진행과정과 정보를 얻는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선거운동 기간 중 언론에 의한 비밀 시청각 자료의 사용이 많았다. 정부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수감자들이 고문을 당하는 비디오를 언론에 공개했는데,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고 정치 관련 연구자들은 이 비디오가 선거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러한 비디오를 확산시킨 TV 방송국 등 몇몇 언론사가 폭력과 고문의 피해자인 수감자들을 비공개로 처리하지 않았고, 그 결과 그들이 친척과 이웃에 의해 특정되었다는 것이다. 해당 사건을 보도하면서 수감자들을 그대로 공개한 것은 언론이 수감자들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준수되지

않은 것이며 명예훼손적 요소가 많았다. GCC는 모든 언론사와 언론인들에게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 보도할 경우, 반드시 윤리헌장을 준수할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성명서를 공표했다.

■ 코소보 언론평의회

(Press Council of Kosobo, PCK)

PCK는 2005년 9월 유럽안보협력기구(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SCE) 코소보 파견단의 협력으로 설립, 그 해 11월부터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그간 PCK에 가입한 지면 매체에 대한 불만신청만을 처리했으나, 2009년 9월 정관을 개정해 온라인 매체도 PCK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금까지 일부 주간지와 월간지를 포함해 코소보에서 발행되는 모든 일간지의 90%를 회원사로 수용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PCK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25건의 사건을 접수했고, 6번의 회의를 통해 20건을 해결했다. 올해 사건 뿐 아니라 그간 PCK가 처리한 사건에 대한 모든 결정은 PCK 홈페이지(www.presscouncil-ks.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문사와 온라인 매체, 그리고 일부 정기간행물을 대표하는 17명의 위원과 언론계와 독립적인 1명의 위원장 및 2명의 부위원장으로서 구성된 PCK는 언론이 윤리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며, 장기적으로는 입법, 사법, 행정과 함께 언론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4번째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믿음 하에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전문성과 편견 없는 언론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아가 많은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PCK는 그 절차적인 규정을 준수하고 사건에 대한 투명한 결정을 핵심적인 가치로 삼는다. 사안의 복잡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모든 불만을 절차와 규정에 따라 가장 전문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고, 이로 인해 지

금까지 어떤 신청인도 PCK의 업무와 결정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또한 PCK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왔다. 비록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코소보의 일부 언론이 기업이나 정당으로부터 통제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코소보를 비롯해 남동 유럽 일부 지역의 많은 언론이 여전히 정치적 집단이나 기업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의 견해와 직접적인 이익을 위한 기사를 게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보에 대한 고의적인 조작과 거짓 뉴스를 통해 대중의 권익이 쉽게 침해될 우려가 크며, 대중의 전체 언론인에 대한 불신과 언론 및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PCK는 성명서와 다른 형태의 수단을 통해 언론사와 일반 대중, 특히 정당과 기업에 직업성과 윤리성을 유지하도록 요구해 왔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경우에는 이를 비판하는 보도 자료를 공표해 왔다.

한편 올해 명예훼손과 인신공격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코소보 법률에서 제외됨에 따라 PCK의 역할과 언론계의 자율규제 원칙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었다. 그러나 현재 코소보의 불안정한 경제적, 정치적 상황이 언론사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결과적으로 회원사의 연간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PCK 운영 재원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 키프로스 언론불만위원회

(Cyprus Media Complaints Commission, CMCC)

CRTA(Cyprus Radio and Television Authority)의 지위를 규정하는 법률에는 CRTA의 일부 조치 사항에 대해 CMCC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조항은 비록 CRTA가 라디오, 방송에 관한 허가 및 규제 업무를 담당하나 CMCC의

서면 요청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이들 매체의 윤리강령 위반에 대한 불만 사건을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신문과 같은 인쇄 매체와 마찬가지로 라디오, 방송 등을 비롯한 전자·통신기술을 이용한 전자적 미디어에 대한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CMCC의 배타적인 권한을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CMCC의 위상이 기로에 서 있다. 지난 2년간 CMCC의 효율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고, 일부 영향력 있는 정책 입안자는 현재의 자율규제 시스템 하에서 일부 매체들이 CMCC의 결정을 공표해야 하는 의무와 잘못된 보도에 대해 대중에게 사과를 해야 하는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등 CMCC가 원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언론사의 명단을 공표해 창피를 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지만 벌금을 부과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CRTA는 CMCC의 권한을 명시한 해당 법률 조항과 정책 입안자들의 인식을 토대로 CMCC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도입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CMCC는 이에 협력해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도입하는 것이 오히려 언론의 자율규제 시스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CMCC는 현재 관련 법안의 초안을 준비했으며, 이를 토대로 현행 자율규제 시스템의 개선을 주장하는 의회 구성원들과 향후 몇 개월 간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새로운 법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피해를 당한 당사자에게 적절한 사과를 하지 않은 언론사와 CMCC 결정을 공표하지 않은 언론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CMCC는 윤리강령 그 자체를 위반한 언론사가 아니라 그에 따른 적절한 사과와 CMCC 결정을 공표하지 않은 언론사를 일반인들에게 공개할 수 있고, 벌금과 같은 형태의 패널티를 부과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CMCC는 이러한 법안에 부합하도록 신문 발행인

과 TV 및 라디오 운영자, 언론인들에 의해 제정되고, 일부 온라인 뉴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윤리강령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CMCC는 새로운 법률 하에서도 기존의 CMCC 기능에는 어떠한 변화가 없고, 언론계와 키프로스 사회에서 CMCC의 존재와 기능에 대한 직접적인 인식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

■ 파키스탄 언론평의회

(Press Council of Pakistan, PCP)

파키스탄의 경우 1954년 처음 설립, 1958년 재편성된 언론위원회(Press Commission)가 있었다. 그러나 언론위원회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자 정부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언론 규제기구의 필요성을 인식해 왔고, ‘PCP 법령 2002(Press Council of Pakistan Ordinance 2002)’에 따라 2002년 10월 26일 PCP가 설립되었다. PCP는 언론이 직업적, 윤리적 규범을 준수하도록 노력하며, 언론의 윤리강령 위반에 대한 불만을 처리한다. 또한 국내외 신문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한편 책임 있는 언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PCP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기구이나 정부는 PCP 운영을 위한 자금을 할당할 의무가 있고, PCP는 재원 조성을 위해 신문과 다른 언론매체에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국내외로부터 보조금과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PCP는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30건의 사건을 접수했다. 이 중 8건에 대해 결정이 이뤄졌고, 나머지는 계류 중이다. 또한 PCP는 ‘PCP 법령 2002’ 제9조에 따라 언론의 자유 및 독립성에 관한 문제 혹은 뉴스의 배포를 제한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Suo Moto(독립적인 의사에 따라를 뜻하는 라틴어)”를 결정하고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데, 같은 기간 동안 언론인과 기자에 대해 위해를 가하는 6건의 사건에 대해 ‘Suo Moto’ 결정이 이뤄졌다.

PCP는 은퇴한 고법 판사나 그와 동일한 자격이 있는 1인의 위원장과 변호사 위원회(Pakistan Bar Council, PBC)에서 지명하는 부위원장 1인, 그리고 17명의 위원(국회가 지명하는 2인, 파키스탄 신문협회, 파키스탄 신문편집인 위원회, 파키스탄 언론인협회가 지명하는 각 4인,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국가 위원회, 고등교육위원회가 지명하는 각 1인, PCP가 지명하는 언론학자 1인)으로 구성된다. 또한 PCP는 조사위원회, 항소위원회, 임명위원회, 재정위원회, 학술위원회 등 6개의 위원회로 구성되며, 접수된 불만을 조사하고 결정하는 주된 업무는 조사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PCP는 당사자나 참고인의 출석을 강제할 수 있고 증거 수집과 증인 조사를 위한 소환장을 발부할 권한 및 윤리강령을 위반한 언론사에 대해 신속히 기사를 정정하거나 사과문 공표를 요청할 권한이 있다. 또한 경고(warning), 훈계(admonish), 견책(reprimand), 거부(disapprove)를 결정할 수 있고, 해당 언론사가 PCP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신문사에 그 결정을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신문사가 PCP 결정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계 당국에 해당 신문사에 대한 허가 취소나 발행횟수 기준으로 7회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발행 중단을 권유할 수 있다. 또한 PCP는 Rs 10,000(원화로 약 150,00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결정할 수 있다.

파키스탄의 언론윤리강령은 언론사, 언론 유관기관, 언론 전문가 등의 논의 및 심의를 통해 제정된 17개의 조항으로 구성되며, 언론의 윤리성과 책임감을 장려하고 확고히 하기 위해 ‘PCP 법령 2002’ 법령의 일부로 공표되었다.

〈파키스탄 언론윤리강령〉

- 제1조 - 언론은 비방적이고 명예훼손적인 내용의 보도를 피하고, 도덕규범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2조 - 언론은 공정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 제3조 - 언론은 편견적이고 증명되지 않은 보도를 지양해야 한다.
- 제4조 -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사적인 가정사에 대해 침범하지 않아야 한다.
- 제5조 - 언론은 소문 혹은 확실하지 않은 내용의 보도를 지양하고, 부득이하게 보도할 경우에는 소문, 확실하지 않은 보도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 제6조 - 사진을 포함한 정보는 진실하고 정확해야 한다.
- 제7조 - 언론은 인종, 출신지 등으로 인해 차별과 증오를 야기할 수 있는 정보를 공표하거나 배포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 제8조 - 언론은 범죄를 영웅적인 행동으로, 범죄자를 영웅으로 묘사하는 보도를 지양해야 한다.
- 제9조 - 언론은 국가와 국민의 자주권과 통합을 저해할 수 있는 자료의 인쇄, 출판, 배포를 피해야 한다.
- 제10조 - 언론은 파키스탄 헌법 제19조를 위반하는 자료의 출판과 배포를 지양해야 한다.
- 제11조 - 언론은 유해하고 잘못된 보도를 신속히 정정해야 한다.

제12조 - 의료 문제에 대해서는 선정성을 피하기 위해 주의깊이 보도해야 한다.

제13조 - 언론은 폭력과 잔혹적인 내용을 피해야 한다. 또한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기소자에 대한 보도는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유죄로 인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14조 - 어린이와 청소년, 여성에 대한 성범죄 사건에 대한 보도 시에는 그 이름과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진을 공표해선 안 된다.

제15조 - 언론은 취재 시 동의한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16조 - 언론은 여론조사 내용을 보도할 때 조사에 참여한 사람의 수와 그들의 거주지를 함께 보도해야 한다.

제17조 - 언론은 금전 혹은 다른 이권의 분쟁을 야기하거나, 언론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훼손하는 등 언론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권이나 유인책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 핀란드 언론평의회

(Finnish Media Council, FMC)¹⁶⁾

핀란드에서는 FMC에 대한 언론인과 일반 대중의 신뢰도가 높으며, 많은 언론사가 FMC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고 있다. 또한 신문 구독료에 대해 핀란드 정부가 올해 부과한 VAT(부가가치세) 9%는 걱정할 만큼의 신문 발행(유통) 부수 감소를 야기하지 않았으며, 유럽과 핀란드의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FMC의

16) 계간지 「언론중재」 1988년 겨울호 '세계 각국의 언론평의회'에 핀란드 언론평의회 관련 내용이 일부 수록되어 있다.

재원은 안정적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FMC는 2011년 약 320건을 처리했으며, 올해 9월까지 235건의 사건을 접수했다. 이는 2000년대 중반까지 FMC가 매해 100~140건을 처리했던 점으로 볼 때 상당히 증가한 편이다. 다만 2008년 처음으로 연간 처리건수가 200건을 넘어섰고 점차 사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건 처리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은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또한 올해 법무부가 FMC의 예산 부담을 24%나 줄임으로써, 결과적으로 언론사와 언론인 협회의 부담이 증가되었다.

한편 핀란드에서는 비록 기존의 신문, 방송 등 전통적인 매체들의 지위가 서유럽보다 여전히 강하긴 하지만, 온라인 기술 발전에 따른 언론 환경의 변화가 기존 언론매체들뿐 아니라 FMC에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온라인으로 인해 언론에 대한 언론인과 대중의 태도가 변화되었고, 온라인 매체 기자들이 충분한 확인 시간을 가지지 않고 심지어 사실 확인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조차 가지지 않고 있어 언론윤리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 헝가리 독립저널리즘센터

(Hungarian Center for Independent Journalism, HCIJ)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HCIJ는 2007년 언론자유 규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호지부지되다가 2010년 새로운 엄격한 언론법이 제정되면서 큰 진척을 보이게 되었다. 이 법률은 제정 당시 국내뿐 아니라 EU, 국경없는 기자회, IFJ 등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는 등 국제적인 논의를 야기했으며, 2011년 12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일부 조항이 위헌으로 판결된 후 현재의 법률로 개정되었다. 한편 2011년 여름, 언론정보통신국(National Media and Infocommunications Authority)의 미디어 위

원회는 4개 언론 전문기구와 협력규제 방안을 채택했으나, 이는 소수자에 대한 보호라는 제한성과 복잡한 처리절차로 인해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

2011년 9월 HCIJ는 언론의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윤리강령의 초안을 채택하기 위해 언론사 편집인 회의를 소집하였고, 올해는 헝가리 언론의 자율규제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한 수년간의 노력에 돌파구를 마련한 의미 있는 해가 되었다. 언론사의 결속과 윤리강령에 대한 동의를 위한 그간 노력의 결과로 2012년 2월 18일 지면, TV, 라디오, 온라인 등 모든 매체를 아울러, 총 33개사가 참여해 편집인 포럼(Editors' Forum)을 설립하였고, 긴 논의 끝에 제정된 윤리강령은 공정성, 정확성, 정보의 수집과 보도에 관한 규정, 이익이 충돌하는 보도의 금지, 기자의 의견과 광고의 명확한 구분 등 양심적인 저널리즘을 반영하고 있다. 이들 언론사는 제정한 윤리강령을 자사의 매체를 통해 공표하고 독자 및 시청자들에게 이를 준수할 것임을 알렸다.

또한, HCIJ는 언론윤리 교육의 장려 및 지원, 대중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윤리적 저널리즘의 개념 전파, 자율규제 불만 처리절차의 완성, 언론윤리 문제에 대한 언론사 상담, 언론학 교수 및 학생을 대상으로 윤리적 문제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실시, 외국 판례 및 권고 등 사례 연구, 외국 전문 기관과 협력 등을 주요 활동으로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2.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 : 윤리적 딜레마

2-1. 우토야섬 총기난사사건에 대한 보도

Per Edgar Kokkvold
노르웨이 언론평의회 사무총장

2011년 7월 22일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 인근 우토야(Utoya)섬에서 극우 테러리스트인 안드레스 베링 브레이빅의 총기 난사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노동당 청년캠프에 참가한 학생 77명이 살해되고 242명 이상이 부상당함으로써 그 유족의 친구와 친척, 많은 국민들이 깊은 슬픔에 빠졌고, 2012년 8월 판사가 브레이빅에게 종신형을 선고함으로써 이 사건이 종료되었다. 브레이빅은 스스로 심각하고 반사회적인 정신분열증과 강박적인 인격 장애를 가진 극우 극단주의자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법원은 그가 자신의 테러 행위를 심각한 범죄임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정신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그는 체포된 순간부터 자신의 범죄를 인정했으나 반성의 기미가 없었고, 미래에는 대중으로부터 다문화 사회를 지지해온 모든 “반역자, 다문화주의자, 마르크스주의자”들에 대한 수비 차원의 행동을 한 것으로 칭송될 것이라 믿고 있었다.

노르웨이 언론계와 노르웨이 언론평의회는 이 사건으로 강한 압박을 받았으며, 특히 언론의 취재 및 보도행태가 준엄한 시험대에 올려졌다. 대중들은 이 끔찍한 사건을 목격하고 명백히 트라우마에 빠진 젊은이들을 언론이 경쟁적으로 인터뷰하지 않을까 우려했다. 그러나 여론 조사에 의하면 대다수 사람들은 언론이 시험을 무사히 통과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관련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언론은 유족들에 대해 많은 배려를 했고, 희생자들의 고통스러운 장면이 담긴 잔혹한 사진이나 영상을 뚜렷하게 노출시키지 않음으로써 독자들과 시청자를 보호했다. 피가 흥건

한 장면이나 패닉 상태인 젊은이들, 총에 맞아 숨진 시체들을 언론에서 볼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윤리의 위반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도 있었다. 예상보다는 적으나 이 사건과 관련해 노르웨이 언론평의회는 2012년 9월 첫 주까지 총 62건의 불만을 접수했다. 이중 45건은 처리가 되었고, 6건은 아직 계류 중이다. 처리된 사건은 인용 6건, 거부 11건이며, 5건은 양당사자의 합의로 문제가 해결되었다. 윤리강령의 위반이 명백히 아닌 13건은 언론평의회 사무처에 의해 기각되었고, 제3자인 신청인이 보도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동의를 구하지 않은 사건들은 언론평의회 위원회의 검토 후 기각하였다.

2-2. 어린이 희생자의 사진

Dominique von Burg
스위스 언론평의회 위원장

스위스 알프스로 스키 여행을 떠났던 벨기에 초등학생들이 탑승한 관광버스가 터널 벽을 들이받아 28명이 숨진 스위스 사상 최악의 버스 사고가 2012년 3월 13일 발생했다. 사망자의 대부분(22명)이 12살 어린이들이었고, 24명의 어린이가 부상당했다.

이 사고에 대해 독일, 벨기에, 스위스의 일부 언론사들은 사망 어린이들의 사진을 개인 홈페이지와 SNS에서 찾아서 부모의 동의 없이 보도하였고, 이에 대해 다수의 불만이 제기되었다. 벨기에의 경우에는 한 가족이 벨기에 언론평의회에 불만을 제기하였고, 언론사와 합의가 이뤄졌다. 벨기에 신문사 2곳은 사과문을 게재했고, “인터넷으로부터 개인의 정보와 사진은 공공의 이익이나 허가 없이 언론이 사용할 수 없다”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을 보도한 독일의 두 신문에 대해서도 불만이 제기되었고, 독일의 언론평의회는 Berliner Kurier에

대한 불만은 인용한 반면, Bild에 대해 제기된 불만에 대해서는 인용하지 않았다.

Bild의 경우 해당 사진이 사망한 어린이의 출신지인 롬멜스(Lommels)시 시청 임시 영안실에 게재된 것으로, 신문사는 이 사진의 사용 허가권을 가진 2명의 공무원에게 허락을 얻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 Berliner Kurier는 어린이들이 사망 직전에 스키장에서 스키 모자와 고글 등을 착용하고 촬영한 사진을 게재했다. Berliner Kurier는 대부분 어린이들이 모자와 고글, 스카프를 착용해 일반 대중이 거의 분간하기 어렵고, 주된 배포처가 베를린인 Berliner Kurier의 특성상 독자들에게 벨기에가 출신지인 사망 어린이들이 특정되지 않음을 주장했다. 그러나 독일 언론평의회는 어린이들이 스키장에서 웃으며 행복해 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은 그 유족과 친구들에게 더 큰 슬픔을 줄 수 있다며 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했다. 또한 독일 언론평의회는 사망한 어린이들이 개인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 사적인 일기내용을 Berliner Kurier가 사진과 함께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행위라며 비판했다.

스위스에서도 관련 사건이 접수되었으나 아직 스위스 언론평의회는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어린이들을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한 의도에서 초상을 공표한 것이라는 언론사의 주장이 과연 정당한지, SNS에 게재한 개인의 일기와 같은 글(텍스트)을 보도하는 것이 SNS 상 사진을 보도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사생활 침해라 볼 수 있는지, 개인이 웹사이트에 게재한 내용을 언론이 자유롭게 공표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많은 논의를 야기하였다.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인터넷은 대중에게 공개된 공간이므로 인터넷에 게재된 정보 역시 공개 정보라 할 수 있기에 이를 보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과 사망 어린이들의 사진을 공개하는 것은 공익에 해당되지 않으며 언론 윤리강령에 따

르면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수준의 주의를 요구하므로 사진을 공표한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앞서 말한 바와 아직까지 스위스 언론평의회가 이번 사건에 대해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나, 개인적으로는 언론이 어린이들의 페이스북 등에서 자료를 찾아 보도하는 행위는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인터넷에는 잘못된 정보가 많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언론의 자료 조사는 많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10년 전 스웨덴 수상이 스톡홀름에서 칼에 찔린 사건이 있었는데, 인터넷에는 그가 사망했다는 유언비어가 돌았고 이를 근거로 많은 언론이 오보를 한 사건이 있다. 또한 개인의 SNS는 누구에게나 공개가 허락된 공간이 아니며 어린이의 초상 사용은 특별히 주의 깊게 다뤄져야 하고 그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2-3. 리비아 독재자 카다피의 사망 사진

Lutz Tillmanns
독일 언론평의회 사무총장

약 42년 동안 리비아를 통치했던 리비아 대통령 카다피가 반정부 민주화 시위로 인해 2011년 10월 사망했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도 수많은 언론매체가 카다피의 죽음을 보도하면서 그의 사망 사진(카다피가 피를 흘리며 누워 있는 장면의 사진으로 사실 사진이 촬영된 순간에 그가 사망한 것인지는 불확실하다)을 게재했다. 이러한 보도에 대해 독일 언론평의회는 총 52건의 불만을 접수했으며, 2011년 12월 8일 결정을 내렸다.

먼저, 카다피의 참혹한 사체를 보도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신청한 2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독일의 윤리강령 제11조(선정적인 보도와 청소년의 보호)는 “언론은 폭력과 잔혹성, 고통 등 선정적인 보도를 삼가야 하고, 청

소년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 언론평의회는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언론이 카다피의 참혹한 사체를 보도한 것은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지만, 독재자인 카다피의 죽음은 공적인 관심사이므로 영상 혹은 사진과 같은 이미지로 기록될 수 있고 ‘죽음’ 그 자체도 언론 보도 시 금기시 되는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해 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하지 않았다. 이 외에 많은 신청인들이 카다피의 사체를 보도한 것은 그에 대한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했으나, 마찬가지로 이유로 독일 언론평의회는 신청인들의 주장을 인용하지 않았다.

독일 언론평의회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 물론 다수의 이의 제기가 있었다. 사진의 경우에는 게재 위치와 크기가 중요한데, 1면에 잔혹한 사진을 게재함으로써 비단 청소년 뿐 아니라 많은 국민에게 충격을 준 것이 사실이다. 비록 독일 언론평의회가 신청을 인용하지 않았으나 참혹한 장면의 사진을 게재할 경우에는 언론의 세밀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카다피의 사망 시점이 불확실한 상황(해당 사진이 촬영된 시점에 비록 카다피가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가 아직 생존해 있었을 가능성도 있었다)에서 언론이 사망했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신청한 사건에 대해서도 근거 없음을 이유로, 근거가 부족한 14건에 대해서는 언론평의회 위원회를 통해 기각, 명백히 근거 없는 3건에 대해서는 사무처에서 기각했다. 언론평의회는 불만신청인과 해당 언론인을 대상으로 주로 전화, 면담 등을 통한 구두 방법으로 사건을 조사하는데 카다피의 사망 시점은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3. 온라인 보도의 정정 : 공정한 정정보도 방법은 무엇인가?

현재 윤리강령과 실무 가이드라인이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받은 신청인의 피해구제를 위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 과연 잘못된 보도라는 언론의 실수에 대한 책임있는 행동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핀란드 언론평의회는 언론사에 가능한 빠르게 정정보도를 게재할 것을 요구한다. 언론은 잘못된 정보의 확산에 책임을 가져야 하고 지면 매체의 경우 원칙상 다음호(일간지는 보도된 그 다음날, 주간지는 다음주, 월간지는 다음월)에, 인터넷과 온라인 서비스는 즉시 정정보도를 공표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실수를 하므로 언론사 역시 정정보도를 하는 것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실수를 인정하고 빠르게 정정하는 것은 언론이 책임감이 있다는 것을 대중에게 알게 하는 길이며, 책임감은 곧 언론에 대한 신뢰감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핀란드에서는 최근 언론 윤리강령 제20조 “부정확한 정보는 즉시 정정되어야 한다. 또한 언론사 웹사이트와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정보도는 영구적으로 게시되어야 한다”를 신설하였다.

2012년 9월 4일 핀란드 일간지 HS(Helsingin Sanomat)는 “광대버섯이 당신 건강에 위협할 수 있다”는 제목으로 광대버섯 사진과 함께 “광대버섯은 독성을 지닌 핀란드에서 가장 흔한 버섯이다”라는 캡션을 달았다. 그러나 최초 보도 내용으로는 광대버섯의 위험성이 잘 부각되지 않아, 그 다음날인 9월 5일 “HS가 화요일 2면에 게재한 캡션 내용은 실수가 있었다. 광대버섯은 치명적인 중독을 야기할 수 있기에 절대로 먹어선 안된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게재하였다. 또한 잘못된 온라인 기사는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것으로 바로 잡을 수 없고 반드시 정정보도가 이뤄져야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잘못된 정보가 영원히 남을 수 있고, 언제든 다시 검색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정정

기사를 원 기사와 반드시 링크해 두어야 한다.

언론이 큰 실수(중대한 오보)를 했을 때 이에 대한 정정보도를 조그맣게 게재한다면 이는 대중의 언론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키는 것이고 비웃음을 사게 된다. 오랜 기간 동안 올바른 정정보도 방법은 언론의 신뢰성과 관련한 주요 관심사였고, 핀란드 언론평의회는 부족한 분량 및 내용, 눈에 잘 띄지 않는 위치 등 제대로 된 정정보도를 게재하지 않거나, 정정보도를 하면서 그 반대 의견을 함께 게재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다시 제대로 된 정정보도를 게재하라고 결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통상 6~7개월)되므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는 장기간 지속된다. 따라서 최선의 방법은 언론사가 윤리성에 기초해 자발적으로, 신속하게 제대로 된 정정보도를 이행하는 것이다.

원 보도가 1면에 게재되었으나, 이에 대한 정정보도를 6면에 게재해 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례가 코소보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해 코소보 언론평의회는 1면에 다시 정정보도를 게재할 것을 권유했으나 언론사가 이를 거부했다. 이와 같이 언론사의 윤리성에만 의존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현재 대다수 언론평의회가 실효성이 부족해 제대로 된 정정보도의 이행을 강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언론윤리강령에 정정보도 게재방법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게재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이나 스리랑카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관련 조항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고 발표를 통해 들었다. 반면 대부분 유럽 국가의 경우, 모든 사항을 언론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므로 정정보도 게재방법에 대해서도 언론계

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윤리강령으로 제정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언론 보도로 인해 큰 피해가 야기된 경우 이에 대한 피해 구제는 필수적이다. 최근 일부 유럽 국가의 판례를 볼 때, 몇 면에 게재할지, 정정보도 크기는 어떻게 할지 등 정정보도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추세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윤리규정에 새로운 조항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4. 미디어 규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언론평의회 실효성 강화 방안 검토

4-1. PCC와 레버슨 청문회¹⁷⁾

Robert Pinker
前 PCC 임시 위원장

2011년 6월 News of the World 기사에 의한 폰 해킹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레버슨 판사가 위원장으로 임명된 청문회가 2011년 7월부터 진행되었다. 청문회에 참석한 수많은 증인 중 일부 전·현직 언론인들은 그간 언론계의 비윤리적 행위를 폭로함으로써 영국 사회에 큰 충격을 가져왔다. 그 결과 PCC가 언론에 대한 규제기구로서 그간 제 기능을 수행해 오지 못했다는 비난론이 대두하였다.

PCC는 사건이 접수되면, 윤리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언론사 편집인에게 통보를 한다. 사실 관계에 대한 자체적인 조사는 하지 않고 오로지 편집인의 자발적 판단에 따라 정정이나 사과보도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폰 해킹 사건과 레버슨 청문회로 인해 영국 사회에서는 지금과 같은 언론의 자율규제 방식

17) 영국 PCC 관련 내용은 계간지 「언론중재」 1986년 가을호 '세계 각국의 언론평의회', 1993년 여름호 특집논문 '언론자율규제기구의 전망 - 영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1999년 및 2005년 겨울호 '해외시찰보고서', 2010년 가을호 '해외실무연수보고서' 등에 수차례 기재되어 있다. 한국시각으로 2012년 5월 9일 PCC 폐지가 최종 결정되었고, 영국에서는 올해 11월 말 레버슨 보고서에 기초해 새로운 언론규제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2012년 봄~겨울호 '해외통신원 보고' 참조). 특히 영국 언론피해구제제도의 역사 및 최신 동향에 대해 올 연말 위원회가 「가칭」영국의 언론피해구제제도 관련 최신 동향 연구」 보고서를 제작할 예정이다.

은 실효성이 없다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윤리강령을 고의적으로 위반한 언론사에 대한 조사 권한과 필요하다면 벌금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기관을 설립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문제는 기관의 설립 방식에 있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것인데 정치권에서는 강력한 법적 규제기관 설립을 주장하는 반면, 언론계는 정부에 의한 법적 규제는 언론의 자유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와 언론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이고 가입이 자유로운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되 가입한 회원사들에게 정부의 간접적인 몇몇 우대조치를 하자는 것이다. 2011년 10월 PCC 위원장에 임명된 헛트 경(Lord Hunt)은 2012년 1월 레버스 청문회에 이러한 양측의 의견에 대한 타협안을 제시했다. 즉 새로운 기관은 정부에 의한 법적 규제기관은 아니지만, 중대하고 조직적인 규약 위반을 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벌금 부과 등 경제적 제재를 포함해 사건에 대한 일부 조사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하자는 것이다.

헛트 경의 제안에 의하면, 발행인은 계약서 내용을 준수하겠다는 동의하에 새로운 규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계약은 민법으로 강제될 것이다. 또한 발행인은 심각한 규정 위반 시 공식에 의해 정해진 비율의 재정적 제재(벌금)를 수용하겠다는 계약 조항에도 동의를 해야 한다. 물론 벌금의 비율을 정하는 것과 심각한 규정 위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관과 발행인 간에 향후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수준의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나는 현재 영국의 새로운 언론불만처리절차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에 무조건적으로 헛트 경의 제안에 대해 찬동하는 것은 아니나, 개인적으로 매우 우수한 제안이라 생각한다. 헛트 경의 제안은 영국 사회에서 논의 중인 새로운 언론불만처리 시스템을 법률로 정할 것인지, 여전히 언론의 자

율에 맡길 것인지 극단적인 선택의 갈림길에서 신뢰할 만하고 성공의 가능성이 높은 중도를 제공한다. 헛트 경의 제안에 개인적 의견을 첨언하자면 언론에 대한 새로운 규제 시스템은 명예훼손과 사생활 관련 법률의 향후 개정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하고, 법률과 연계해 현재 PCC와 같이 자유롭게 불만처리절차와 윤리강령을 개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새로운 기관과 개별 언론사의 상업적 계약에 따라 심각하고 조직적으로 규정을 위반한 언론사에 대해 재정적인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공익’에 대한 법률 조항, 즉 ‘표현의 자유 그 자체에 공익이 있다’는 것과 같이 언론의 무조건적인 권리 행사 또한 몇몇 단서를 붙여야 하며, ‘심각하고 조직적인 규정 위반(serious or systemic breakdowns in standards)’ 등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PCC와 나는 새로운 언론불만처리 시스템이 언론의 자유와 책임감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다. 새로운 시스템은 현재 PCC가 제공하는 가치 있는 언론불만처리 기능을 유지하는 한편, PCC와 같은 자율규제기구들은 실효성이 낮다는 대중적 비판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2. 온라인 이슈

John Horgan
아일랜드 언론평의회 위원장

온라인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많이 생겨났고 인터넷,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매체들로 인해 기존의 신문 등은 독자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신문의 수익이 악화되고, 결과적으로 신문평의회의 재정도 불안정하게 되었다. 아일랜드 뿐 아니라 현재 많은 국가의 언론평의회가 이를 체감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까운 미래에 신문과 방송과 같은 전통 매

체들의 어려움이 더 커질 것이라 생각한다.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과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 질 것이며, 새로운 언론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모바일을 통한 뉴스 제공 등 새로운 기술과 융합을 시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도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기술 발전으로 언론에 의한 개인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초상권 침해 등의 여지가 커졌다. 언론이 잘못된 정보나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보도를 할 경우 인터넷의 막강한 전파력으로 인해 해당 내용이 확대 재생산되어 당사자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언론사에 대한 소송의 증가도 가장 우려되는 문제 중 하나이다. 최근에는 언론이 보도를 위해 온라인 상 뉴스 콘텐츠 혹은 페이스북과 같은 개인의 SNS 상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관련한 소송이나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기사가 다른 언론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를 그대로 보도하거나 다른 사람이 온라인에 올린 자료를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저작권 분쟁 소송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이는 곧 언론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기자의 저작권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언론사가 자체적인 모니터 직원을 두는 것도 좋은 방안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직원 고용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최선의 방안은 기자의 윤리의식을 강화하는 것이지만 윤리성에만 의존하기에는 위험부담이 크다.

페이스북과 같은 개인의 SNS 상 정보 이용에 대해서는 앞서 ‘어린이 희생자의 사진’이나 독일 언론평의회가 발표한 내용과 일부 유사하다. SNS 상 정보는 누구에게나 공개된 것이므로 언론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주장과 친구 등 허락을 받은 특정인만이 접근할 수 있으므로 사적 영역이라는 주장이 있다. 최근 많은 국가의 언론평의회가 페이스북과 같은 SNS로부터 언론이 개인의 사진과 정보를 수집, 보도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자의 불만을 많이 접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관련한 문제는 국가마다 혹은 사안별로 판단을 달리 하겠지만 기술의 발전에 따른 온라인 상의 중요한 이슈임이 분명하다.

인터넷 등 기술의 발전은 인류에게 큰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개인 또는 집단 간 커뮤니케이션 및 여론형성 등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의 발전과 함께 언론 및 언론인의 윤리의식이 성숙되지 않는다면 위에서 지적한 문제들로 인해 언론의 위기가 더욱 가중될 것이다.

4-3. 언론윤리네트워크

Aidan White

언론윤리네트워크 사무총장, 前 IFJ 사무총장

언론윤리네트워크(Journalism Ethical Network)는 언론에 대한 공공의 신뢰 구축을 위한 언론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새로운 기준 마련 및 언론사의 정당한 경영, 언론인의 윤리적 행위 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언론인, 편집인 및 미디어 소유자를 결속, 공동 행동을 촉구하는 하나의 캠페인이다.

나는 영국 가디언 기자와 국제기자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Journalists, IFJ) 사무총장으로 약 25년을 일했다. 오랜 시간 동안 언론분야에 종사하면서 언론의 자유와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필수적인 요건으로서 대부분 국가가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나 권력기관이 언론을 통제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를 무제한 보호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언론은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정부나 대중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그렇다면 언론의 책임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제시할 수 있는가. 특히 오늘날 기술 발전에 따라 언론 환경도 급속히 변하고 있는데, 언론의 책임 의식이나 자

올적인 규제 방식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 기술의 발전으로 과거와 달리 하나의 기사가 수없이 많은 경로로 확산되고 이로 인해 개인의 피해나 언론윤리를 위반한 보도가 확산되는데, 언론은 과연 과거에 비해 더 많은 주의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언론은 공익이란 이유로 언론의 자유를 강조해 오고 있는데 과연 언론의 모든 행동이 공익이라는 정당성을 가지는가.

대부분 언론평의회가 실효성 강화를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영국 PCC에 대한 논의를 비롯해 유럽 국가의 많은 언론인과 대중들이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임을 망각하고 더 강력한 규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개탄스런 일이다. 그러나 나는 언론과 관련한 모든 문제는 언론이 자체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최선이라 믿고 있다. 오히려 언론인들은 정책 입안자와 의회 등에 언론 자율규제의 중요성을 더욱 설득함으로써 이들이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 세계 언론계가 네트워크를 구성해 언론의 윤리적 문제를 검토하고 언론윤리 위반사례 및 개선책 등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최선의 방안을 모색, 자정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만약 앞으로 정부 기관과 법률에 의한 언론규제 방안이 마련된다면 현재와 같은 자율규제 방식으로서의 회귀가 쉽지 않을 것이다.

언론인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 중요성과 영향력을 볼 때 가장 높은 수준의 윤리식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언론평의회가 사건에 대한 조사권이 없어 언론사에 강력하게 정정 등 자율규제를 강요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일부 언론평의회와 언론인들은 나의 주장이 이론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반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언론윤리네트워크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언론윤리네트워크는 유럽을 넘어 전 세계 언론계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올해 회의에 처음 참석한 한국을 비롯해

파키스탄과 스리랑카에서도 이 캠페인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지와 의견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

4-4. 덴마크 - 법률에 의한 규제

Sanne Godthaab Olesen
덴마크 언론평의회 디렉터

덴마크 언론평의회는 언론의 책임에 관한 법률(Media liability Act, 이하 'Act') 제 11조에 그 설립 근거와 구성이 규정되어 있다. 총 8명으로 구성된 언론평의회 위원은 덴마크 법무부가 지명하는데, 위원장은 덴마크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부위원장은 덴마크 변호사 협회가 소속 변호사 중 추천한다. 나머지 위원 6명은 덴마크 언론인 협회의 추천에 의한 현직 언론인 2인과 언론사 편집인 중 2인, 문화교육 위원회(Council for Adult Education)에서 추천한 공익 대표자 2인으로 지명된다.

Act 제1조는 국내에서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인쇄매체와 당국에 의해 승인되고 등록된 덴마크 라디오와 TV, 이들 인쇄매체와 라디오, TV와 동일한 형태로 정기적으로 대중에게 뉴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등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명시(제8조에서는 인쇄매체와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덴마크 언론평의회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하고 있다. 또한 제 42조는 언론평의회 회의 성립과 진행방법을 명시하고 있는데, 언론평의회 회의에는 위원장 혹은 부위원장 중 1인과 언론인, 편집인, 공익 대표자 중 각 1인이 참석해야 하며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Act 제43조는 언론평의회 회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는데, 언론평의회는 연간 2회 이상 발행되지 않는 지면매체, 덴마크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라디오와 TV, 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웹사이트와 명백히 근거가 없거나 신청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사건은 접수하지 않는다. 또한 신청인은 보도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연

론평의회에 신청하거나 언론사에 직접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 언론사와 협의가 결렬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언론평의회에 불만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언론평의회는 Act 제49조에 따라 그 결정내용을 편집인에게 직접 보낼 수 있는데 이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언론사가 언론평의회 결정내용을 공표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이때 언론사는 그 결정내용이 불합리하다거나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게재해서는 안된다.

가장 강력한 조항인 Act 제53조 제2항은 만약 언론평의회 결정내용을 언론사가 공표하지 않는다면, 언론사에 대한 벌금이나 편집인을 최대 4개월간 구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언론사에 대한 법원의 판례는 벌금형이었다.

5. 표현, 미디어의 자유와 언론의 책임 - 인격권에 대한 유럽인권재판소의 최근 변화

Dirk Voorhoof

벨기에 겐트대 언론·저작권·언론윤리학 교수

한국의 언론중재위원회는 앞서 발표에서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의 보호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우 감명 깊게 발표를 들었으며 지금 내가 발표할 내용도 이와 관련이 있다.

현재 47개국이 가입한 유럽회의(Council of Europe)는 1949년 범유럽의 정치, 사회, 문화 및 법적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유럽연합(EU)의 후원 하에 정치·경제·사회·법률 분야에서 많은 협약들을 채택하였다. 그 중 하나는 유럽회의 산하 기관인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가 국경을 넘어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사건을 판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950년 유럽회의가 채택한 유럽인권조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ECHR)은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필수적 요소임을 확고히 하였고, 모든 유럽회의의 참여국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에 기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ECHR 제10조는 “공공 당국에 의한 간섭 없는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 without interferences by public authorities)”를 강조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최우선시 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유럽인권재판소는 1979년 Sunday Times가 영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등 많은 판례에서 대중의 알권리와 공익적인 사안에 대한 언론의 보도권을 옹호해 왔다. 1986년 정치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오스트리아 기자 Lingens에 대해서도 오스트리아 정부가 그를 기소한 것은 ECHR 제10조 위반이며, “사실과 사실적 주장에 대한 가치판단은 입증하기 어렵고, 사실에 근거한 정치적 비판은 언론인의 선한 신념에 따른 언론의 공익 감시자(Public Watchdog)로서의 역할이다”고 판시하였다. 2010년 아제르바이잔의 기자 Fattulayev가 국가의 국방 정책을 반대하고 정부를 비난하는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구속되자, 국가를 상대로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석방할 것을 판결했다. 또한 1996년 영국의 기자 Goodwin이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취재원을 공개하는 것을 거부했다가 기소되자,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취재원을 밝히는 것이 더 큰 공익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재원에 대한 보호는 언론의 자유에 핵심적인 사안이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1999년 프랑스 기자 Fressoz와 Roire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정부의 납세 장부를 보도함으로써 기소되었다. 그러나 유럽인권재판소는 “원칙상 언론인은 법률 위에 군림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보도 과정에서 일부 법률 위반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들

에 대한 형사 처벌이 보도를 통한 공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없다”며 비록 불법적으로 획득한 정보를 사용하고 직업적인 비밀 유지 의무에 대한 언론의 윤리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기소하는 것은 ECHR 제10조 위반이라 결정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2006년 슬로바키아의 Radio Twist의 기자들이 한 주요 보험사를 민영화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는 두 정치인들 간의 대화를 불법적으로 녹음한 테이프를 방송한 사건에 대해서도 유럽인권재판소는 “기자들이 악의적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기자들은 공익을 위한 필요로 해당 사안을 녹음, 방송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정부가 이들을 기소한 것은 ECHR 제10조를 위반한 것이라 결정했다.

이처럼 다수의 사례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보도 방법 및 언론의 의견 표명은 언론인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지 해당 국가의 법원이나 유럽인권재판소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고 결정(즉, ECHR 제10조는 사건에 대한 본질뿐 아니라 보도된 방법까지도 보호하고 있다)해 왔으며, 취재나 보도 과정에서 언론인에 의한 일부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있다면 면책된다고 판결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옹호해 왔다.

한편 영국의 폰 해킹 사건이나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큰 사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인 사진 등을 무단으로 공표한 사건 등은 위법한 동시에 언론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다. 반면 언론윤리강령의 위반이 반드시 위법한 행위는 아니다. 재정적,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편견적인 보도를 한 경우, 사진의 왜곡 및 조작, 사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구하지 않은 경우(반론권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등은 언론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나 이를 이유로 법률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 또한 언론인의 위법한 행동이 반드시 언론윤리강령의 위반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나 당국에 취재원 공개를 거부하는 것 혹은 비밀 정보를 공표하는 것은 위법

한 행동이나 언론윤리강령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그간 유럽인권재판소는 사건에 대한 판결 시 해당 국가의 정부와 언론평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유럽인권재판소의 많은 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데, 유럽인권재판소는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에 따른 위험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또한 과거와 달리 해당 국가의 정부와 언론평의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결정에 반영하고 있다. 2007년 스위스 기자 Stoll이 스위스 대사 Jagmetti에 대한 비밀 정보를 공개해 정부로부터 기소된 사건에 대해 유럽인권재판소는 ECHR 제10조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스위스 언론평의회의 의견을 참조해 기사의 주된 목적이 대중의 일반적 관심사에 대한 사안을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Jagmetti에 대한 불필요한 스캔들을 보도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2008년 몰도바의 한 신문사가 익명의 편지와 소문을 근거로 학교장이 학교를 잘 운영하고 있지 못하며 부정을 저지른 혐의가 있다고 보도하였고 이에 대해 몰도바 법원이 신문사가 학교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 결정한 사건에 대해서도 ECHR 제10조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기자가 교장에 대해 비난하는 기사를 게재하면서 교장의 의견을 듣거나 다른 사실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언론인의 책임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독일 Bild지 기자인 Axel Springer AG가 독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의 기자는 상습적으로 마약을 사용한 한 유명 TV 배우가 체포, 기소되었다고 보도하면서 그를 특정했다. 독일 법원은 배우의 인격권이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 대중이 알 권리보다 우월하며 심지어 보도 내용의 사실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다며 기자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이

사건에 대해 2012년 2월 7일 유럽인권재판소 최고재판소(Grand Chamber)는 과연 대중의 일반적인 관심이 무엇인지, 보도된 사람이 얼마나 잘 알려진 사람인지, 보도의 주제나 주된 취지가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한 기사의 공표에 앞서 당사자의 대응 정도, 언론의 정보 획득 방법과 진실성, 의문을 제기한 기사의 내용 및 형태와 결과, 언론에 대한 해당 국가의 법원 제재와 개입의 정도 등에 관해 많은 시사점이 담긴 판결을 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원고는 전문적인 기자로 사생활 보호에 관한 독일 언론평의회의 윤리규정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것은 명백히 위법하다”며 해당 기자의 배우에 대한 사생활 침해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2012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이용만족도조사

편집자 주 - 본조사 주요 결과만을 발췌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전체 내용은 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 '정보자료실(각종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조정(중재) 신청인/피신청인 이용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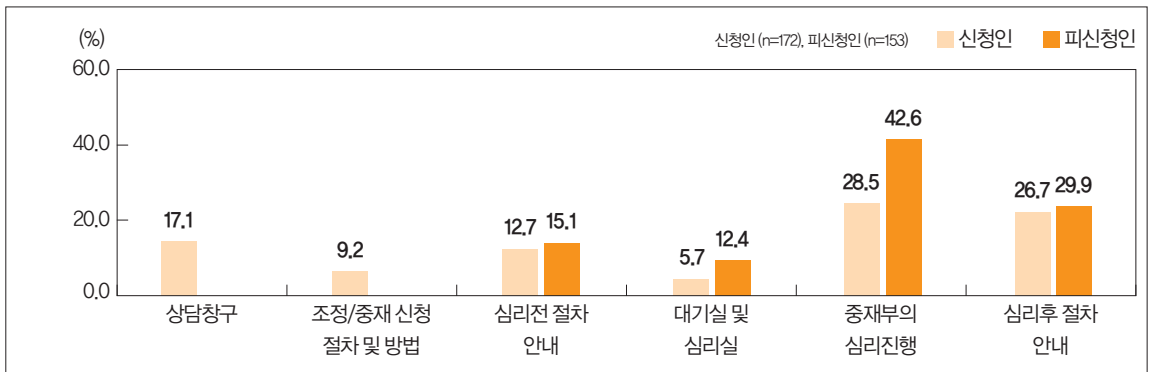
2. 차원별 만족도

1. 종합만족도

- 신청인의 종합만족도는 85.9점으로 2011년 대비 1.9점 상승, 피신청인은 전년대비 5.7점 상승한 74.8점임
- 종합만족도에 미치는 차원별 중요도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이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중재부의 심리진행 차원의 영향력이 가장 크며, 그 다음이 심리후 절차안내 차원임

- 조정(중재) 차원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신청인의 만족 수준이 피신청인에 비해 모두 전반적으로 높은 편임
- 신청인의 차원별 만족도는 상담창구(90.5점) > 심리전 절차안내(90.2점) > 대기실 및 심리실(87.3점) > 심리후 절차안내(86.0점) > 조정/중재 신청절차 및 방법(83.7점) > 중재부의 심리진행(82.3점) 순이며, 피신청인의 차원별 만족도는 심리전 절차안내(80.1점) > 대기실 및 심리실(79.5점) > 심리후 절차안내(76.5점) > 중재부의 심리진행(70.5점) 순임

차원별 중요도 (가중치)



3. 항목별 만족도

• 신청인의 경우 각 차원별로 가장 만족도가 높은 항목은 상담창구 차원에서는 ‘상담원의 친절성’(92.3점), 신청절차 및 방법 차원에서는 ‘담당직원의 능숙한 업무처리’(89.7점), 심리전 절차안내 차원에서는 ‘지참물에 대한 안내’(92.9점), 대기실 및 심리실 차원에서는 ‘담당직원의 복장 단정성’(90.1점), 중재부의 심리진행 차원에서는 ‘심리진행의 적극성’(83.3점), 심

리후 절차안내 차원에서는 ‘담당직원과의 접촉 용이성’(86.6점) 항목임

• 피신청인의 경우 각 차원별로 가장 만족도가 높은 항목은 심리전 절차안내 차원에서는 ‘심리 기일의 신속한 통보’(85.4점), 대기실 및 심리실 차원에서는 ‘담당직원의 복장 단정성’(83.2점), 중재부의 심리진행 차원에서는 ‘심리진행의 적극성’(77.0점), 심리후 절차안내 차원에서는 ‘조정조서, 결정서 등 신속한 송부’(79.6점) 항목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항목별 만족도

(단위 : 점)

		신청인			신청인		
		2011년	2012년	증감률	2011년	2012년	증감률
상담창구	사례수	(53)	(115)		-	-	
	상담원의 친절성	90.6	92.3	+1.7	-	-	-
	상담원의 경청자세	89.8	91.7	+1.9	-	-	-
	신속한 상담	89.1	89.2	+0.1	-	-	-
	적극적인 상담	89.1	89.9	+0.8	-	-	-
	상담내용의 신뢰성	-	90.4	-	-	-	-
	문제 해결에 도움	-	88.5	-	-	-	-
신청절차 및 방법	사례수	(158)	(172)		-	-	
	신청서 양식에 대한 용이한 접근	-	83.3	-	-	-	-
	신청서 작성의 간편성	81.7	78.7	-3.0	-	-	-
	간단한 구비서류	81.6	80.8	-0.8	-	-	-
	신청서 접수의 용이성	-	86.2	-	-	-	-
	담당직원의 능숙한 업무처리	-	89.7	-	-	-	-
심리전 절차안내	사례수	(152)	(172)		(124)	(153)	
	심리 기일의 신속한 통보	-	92.0	-	-	85.4	-
	지참물에 대한 안내	-	92.9	-	-	85.2	-
	심리진행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	83.2	87.3	+4.1	73.7	73.8	+0.1
	담당직원과의 접촉 용이성	-	89.1	-	-	79.7	-
대기실 및 심리실	사례수	(152)	(172)		(124)	(153)	
	청결함	83.9	87.1	+3.2	76.0	80.8	+4.8
	편의시설 구비	77.1	82.7	+5.6	65.0	75.4	+10.4
	소음 없이 조용함	83.6	87.3	+3.7	74.8	81.1	+6.3
	담당직원의 친절성	-	89.2	-	-	82.4	-
	담당직원의 복장 단정성	-	90.1	-	-	83.2	-
중재부의 심리진행	사례수	(152)	(172)		(124)	(153)	
	심리진행의 적극성	81.2	83.3	+2.1	73.9	77.0	+3.1
	심리진행의 공정성	79.5	81.3	+1.8	72.1	70.7	-1.4
	심리진행의 전문성	80.9	82.2	+1.3	68.9	68.9	0.0
	당사자 의견 경청	81.4	82.4	+1.0	70.8	71.1	+0.3
심리후 절차안내	사례수	(152)	(172)		(124)	(153)	
	심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	-	86.0	-	-	76.2	-
	향후 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	80.3	85.1	+4.8	72.1	74.0	+1.9
	조정조서, 결정서 등 신속한 송부	-	86.2	-	-	79.6	-
	담당직원과의 접촉 용이성	-	86.6	-	-	78.7	-

4. 기타

- 피해구제 방법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보도문의 게재시기(합의서나 결정서 상 게재시기 기준)’ 항목의 만족도가 신청인(77.6점), 피신청인(70.9점)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손해배상 금액(신청인 56.3점, 피신청인 61.5점) 및 합의서나 결정서 상 손해배상금 지급시기(신청인 62.2점, 피신청인 63.5점), 구두/서면 사과(신청인 61.6점, 피신청인 63.1점)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언론중재위원회의 전반적인 이미지에 대하여 신청인 75.6%, 피신청인 56.2%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11년 대비 긍정적 응답비율이 신청인 12.9%, 피신청인 10.5% 증가함. 신청인의 경우 2011년 대비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전반적 이미지와 함께 믿음(신뢰감), 공정성 및 투명성 등 모든 항목의 점수가 상승하였으며, 특히 ‘언론중재위원회가 공익적/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항목은 가장 큰 폭(+7.5점)으로 상승함. 피신청인의 경우 전반적 이미지는 향상되었으나 일부 세부 항목에서 점수가 하락하였고, 특히 ‘믿음(신뢰감)’ 항목(-3.7점)이 가장 크게 하락함
- 언론중재위원회 전자조정중재시스템에 대한 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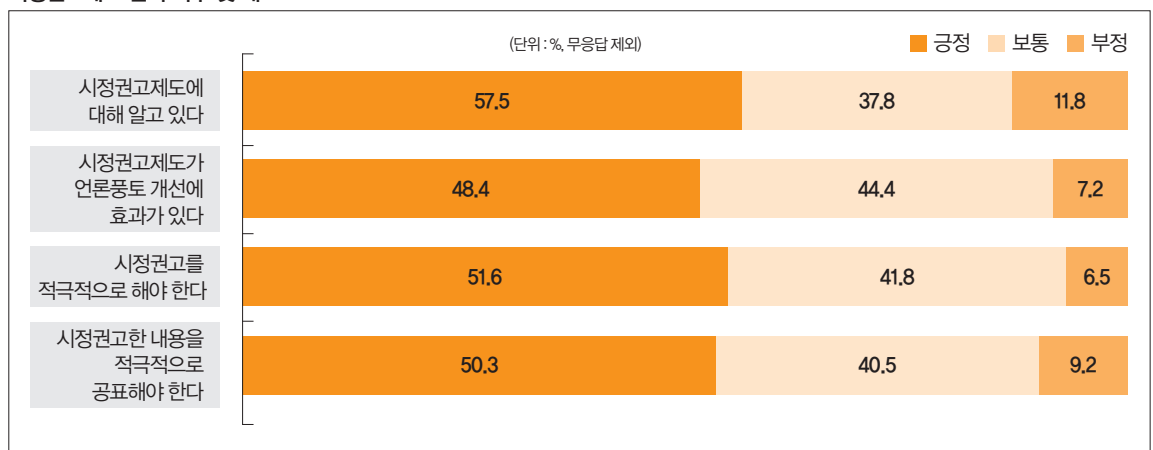
여부를 확인한 결과 신청인의 63.4%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12.8%에 불과. 알고 있다고 응답한 신청인만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확인해 본 결과, ‘간편한 회원가입절차’ 만족도는 81.0점, ‘신청서 작성 편리성’은 77.5점임

- 시정권고제도에 대한 피신청인(언론인)의 인식 조사 결과는 아래 그림과 같음
- 무료변론서비스에 대해 대부분의 신청인(92.4%)과 피신청인(86.9%)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필요성 정도에는 차이(‘매우 그렇다’를 기준으로 신청인 62.8%, 피신청인 40.5%)가 있음. 또한 신청인(83.1%)과 피신청인(73.9%) 모두 무료변론서비스 이용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용 의향의 정도에는 차이(‘매우 그렇다’를 기준으로 신청인 51.7%, 피신청인 41.8%)가 있음

II. 상담이용자 이용만족도

- 언론중재위원회 상담이용자의 종합만족도는 89.5점으로, 2011년(89.2점) 대비 0.3점 상승함
- 상담이용자의 항목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상담원

시정권고제도 인지 여부 및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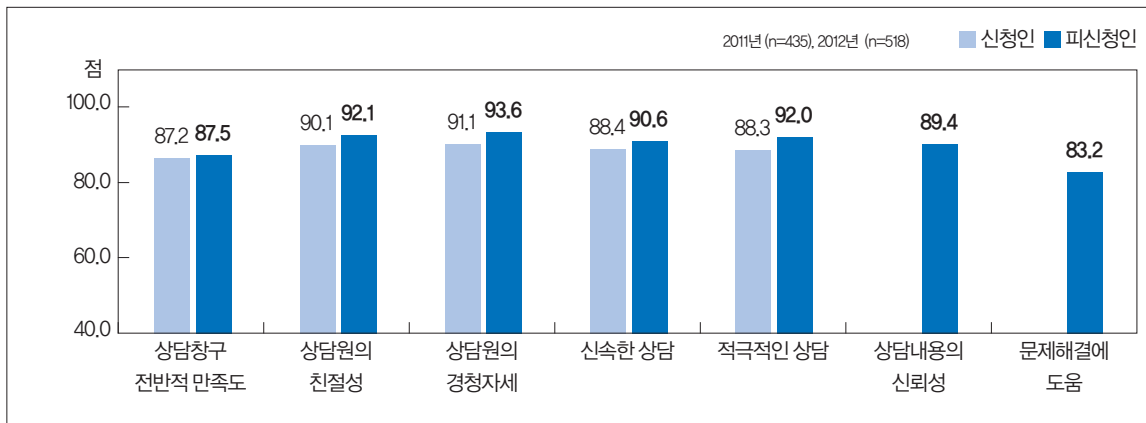
의 경청자세(93.6점) > 상담원의 친절성(92.1점) > 적극적인 상담(92.0점) > 신속한 상담(90.6점) > 상담내용의 신뢰성(89.4점) > 문제 해결에 도움(83.2점) 순으로 나타남

- 2011년 대비 모든 항목의 만족도가 상승(상담내용의 신뢰성, 문제 해결에 도움 항목은 2012년 신규 조사 항목임)하였고, '적극적인 상담' 만족도가 가장 큰 폭(+3.7점)으로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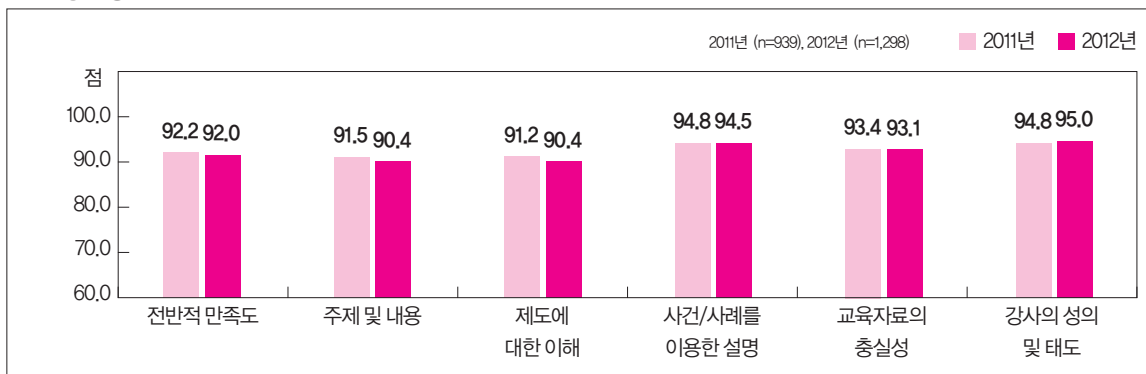
Ⅲ. 교육수강자 이용만족도

- 언론중재위원회 교육수강자의 종합만족도는 92.5점으로, 2011년(93.0점) 대비 0.5점 하락함
- 일반인 교육수강자의 종합만족도는 92.7점, 언론인은 92.1점으로, 일반인이 언론인보다 0.6점 높음
- 교육수강자의 항목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강사의 성의 및 태도(95.0점) > 사건/사례를 이용한 설명(94.5점) > 교육자료의 충실성(93.1점) > 주제 및 내용 = 제도에 대한 이해(각 90.4점) 순임
- 2011년 대비 '주제 및 내용'(-1.1점)과 '제도에 대한 이해'(-0.8점) 항목의 만족도가 다소 하락함

상담이용자 항목별 만족도



교육수강자 항목별 만족도



언론과 법

국내동향
해외동향
해외통신원 보고

13AC

● ● 국내동향 ● ●

서울남부지법, PD수첩 광우병 보도 관련 사과방송한 MBC에 대해 정정보도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5부(재판장 유승룡 부장판사)는 11월 1일, MBC 'PD수첩' 프로그램의 책임 프로듀서인 조능희 PD, 시사교양 부국장 겸 진행자였던 송일준 PD 등 제작진 4명이 자신들의 회사인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2011가합23621)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2008년 4월 29일 23시에 방영된 PD수첩 '진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방송 후, 해당 방송은 허위보도라며 농림수산 식품부로부터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당했다. 또한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기소되기도 하였다. 이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MBC가 2011년 9월 15일, MBC 뉴스 데스크에서 대법원 판결 내용을 인용해 「MBC, 'PD수첩' 책임 통감... 재발 방지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사과방송을 내보내자 PD수첩 제작진은 판결 내용과 다른 사과방송을 했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MBC 측은 “이 사건 사과보도의 중점은 대법원에서 이 사건 광우병 방송 내용 중 일부 사실을 허위로 판단하였다는 점이 아니라 피고 스스로 취재 오류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작 지침 등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다짐과 사과의사를 표시한 데 있다. 따라서 이는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하므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며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이 허위였는지는 논쟁적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논쟁의 여지가 심한 사항에 대하여 대법원이 심판 또는 심리 대상으로 삼지 않았음에도 대법원이 특정 방향으로 판단하였다고 보도하는 것은 오히려

여론의 왜곡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원고 승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의 이 사건 사과보도는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의 보도가 허위임을 인정하였다고 보도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로서 피고가 그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등의 이유를 들어 손해배상청구 등은 기각했다.

KBS 논평에 대한 비판기사, 정정보도 대상 아니다

대법원 형사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1월 15일, KBS 논평을 비판한 미디어오늘의 기사를 이유로 KBS가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11다86782)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0년 8월 KBS의 '뉴스해설' 프로그램에서 한 해설위원이 당시 국무총리 등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 관해 '공정성·친서민이 관건'이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했다. 그러자 미디어오늘은 'KBS 해설위원들의 엉뚱하고 경박한 논평 진행'이라는 제목 하에 해당 논평을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에 대해 KBS와 해설위원 측은 미디어오늘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대법원 재판부는 “언론사는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어 그만큼 비판의 수인 범위도 넓어야 한다. 언론사는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해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

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서는 안 된다”며 원고 패소 이유를 밝혔다.

또한 “‘KBS 해설위원들의 엉뚱하고 경박한 논평 진행’이라는 제목은 단순한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한 것에 불과해 정정보도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본문의 내용도 전체적인 논평의 흐름을 볼 때 미디어오늘이 KBS의 논평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순 없다. 적시된 전제사실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미디어오늘의 기사 내용은 공직후보자들에게 대한 도덕성 검증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는데 있기에 기사가 전제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덧붙였다.

인터넷언론사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한 대한항공, 일부 승소

대한항공이 회사에 관한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48건의 기사로 인해 명예와 신용이 훼손됐으며 인터넷언론사인 프라임경제 외 소속 직원 7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프라임경제는 2010년 12월 9일부터 2011년 10월 26일까지 대한항공에 관해 총 48건의 기사를 게재했다. 재판부는 이 중 45건의 기사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기자수첩] 운항지연, 대한항공 고객들만 연락 못 받았다”, “대한항공이 ‘나쁜 언론’ 기획한 이유는?”, “재벌의 언론 재갈물리기 ‘이제 그만’” 등 3건의 기사에 관하여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일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며 명예훼손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회사 직원들에게 광고료 또는 협찬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원고에게 불리한 기사

를 게재하여 피해를 줄 것처럼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위 원고회사 직원들이 정신적 고통을 느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법인인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고 볼 수는 없고, 위 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별도의 무형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해당 취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했다.

성폭력 사건 보도, 2차 피해 유의해야

성폭력 사건에 관한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 등으로 인해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더욱 심각한 상처를 안길 수 있다며 언론의 자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1월 15일 ‘피해자 권리로서의 성폭력 2차 피해 예방’을 주제로 제주YWCA 강당 3층에서 열린 2012 성폭력 추방 주간 토론회에서 고명희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상담소장은 성폭력 2차 피해에 관해 ‘성폭력 사건 발생 후 피해자에 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받는 것을 통틀어서 말한다’고 정의하며, ‘언론의 자극적이고 호기심을 유발하는 보도행태로 인해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이 큰 피해를 보고 있으며, 기사에서 강간 등을 ‘몸쓸짓’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범죄를 희석화하여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것 같은 죄책감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11월 29일 여성가족부 주최로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심포지엄’에서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다운)는 언론이 피해자가 특정 될 수 있는 인적사항 공개, 사건의 핵심을 벗어난 선정적 표현 등을 사용하여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재련 변호사는 8월 발생했던 나주 여아 납치·성폭행 사건을 예로 들며 언론의 지나친 관심으

로 인한 자세한 묘사, 피해자가 작성한 일기 등 사건의 핵심을 벗어난 내용까지 무분별하게 보도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더욱 가중시켰다고 주장하며 언론보도 시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 등을 강조했다.

성범죄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짐과 함께 언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기에 특종을 향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나친 언론의 관심은 어쩌면 당연하다. 하지만 해당 보도로 인해 자칫 성폭력 피해자에게 더욱 큰 피해를 안긴다는 점을 인식하여 취재를 담당하는 일선 기자들에게 자중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언론중재위원회, 성균관대 로스쿨과 공동토론회 개최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는 11월 9일 성균관대 법학관에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과 ‘공인 보도와 언론조정중재’라는 주제로 공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의 진행은 구율화 언론중재위원회 기획팀장(변호사)이 맡았다. 1부 토론회는 ‘공인 가족에 대한 실명보도, 정당인가?’를 주제로 공인의 범위, 혐의보도와 정정보도, 공인의 초상권 등에 관한 자유 토론으로 진행됐다.

공인의 가족도 공인으로 봐야할 것인가에 대해 “공인의 가족에 관한 사항이 공인의 사회적 평가와 연결될 정도의 사건·사고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국민의 알권리가 인정되므로, 사인의 프라이버시 영역이 아니라 ‘공적 연관성’을 갖는 공적 영역으로 봐야 한다”며 공인의 가족도 공인으로 봐야한다는 의견과 “우리나라 판례는 정치인과 같은 공직자의 경우에는 공인이라고 보고 있으나, 그 외에는 공인으로 판단한 적이 거의 없다. 이처럼 공인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고 있기

에 단지 공인의 아버지라는 이유로 범죄혐의 보도 시 그 신원을 공개하는 것을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순 없다”며 공인의 가족은 공인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한편 2부 토론에서는 ‘공인 관련 사생활,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나?’를 주제로 공적 관심사의 범위, 과거 공인의 현재적 공인성 등의 쟁점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15년 전에 퇴역하여 지금까지 일반인으로서 살아온 사람이, 그러한 과거의 지위에 근거하여 아직도 공적 인물이라고 판단되어야 하는지는 의심스럽다”며 과거에 공인이었다 하더라도 현재 공인이라 볼 수 없다면 그에 관한 사진 게재는 초상권 침해라는 의견과 “고위공직자는 현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각종 예우를 받으며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재직 당시의 경력을 바탕으로 퇴임 후에도 정치인, 기업체 임원, 대학 교원 등 사회 각 분야의 중요한 직책을 언제든지 맡을 수 있는 잠재적 후보군에 있다는 점을 들어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공인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반대 의견도 제시되었다.

1부와 2부에 걸친 열띤 토론이 끝난 후 정재황 성균관대 로스쿨 부원장은 강평을 통해 “학생들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왜 조정중재제도가 필요한가를 알았으면 한다. 언론조정중재제도는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모범적인 제도로 자리를 잡았고, 비용이 적고 절차가 신속하다는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ADR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러한 우수한 제도를 나라 안팎으로 더 널리 소개하고 개선점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과 같은 토론회가 더욱 많이 개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소 과장된 부정적 이용후기, 명예훼손 아니다

다소 과장된 내용이 포함된 비판적 이용후기를 인터넷에 게재했더라도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에 근

거하여 작성하였다면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1월 2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2012도10392)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피고인은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의 육아 정보 관련 인터넷 카페에 9회에 걸쳐 자신이 출산 후인 2011년 12월 14일부터 2주 동안 머물렀던 산후조리원 및 원장에 관한 불만 사항을 담은 이용후기를 게재했다. 이에 산후조리원 측은 산후조리원과 원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산후조리원에 대한 이용후기를 객관적으로 볼 때 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며 명예훼손을 인정,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산후조리원을 직접 이용한 소비자로서 자신이 직접 겪은 일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담아 이용후기를 작성하였고,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지만, 피고인이 지적한 주요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점, 산후조리원에 관한 정보는 임신부들에게 관심과 이익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동기나 목적은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며 비록 산후조리원 이용대금의 환불과 같은 사익에 관한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긴 어렵다”고 파기 환송 이유를 밝혔다.

● ● 일본동향 ● ●

번역 : 한동원(전 한국언론연구원장)

도쿄고법, 취재원의 정보만을 근거로 잘못된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 손해배상명령

프리저널리스트인 쿠로야부 테츠야(黒薙哲哉)가 웹사이트에 올린 기사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요미우리(讀賣)신문 세이부본사와 사원 3명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환송항소심공판에서 도쿄고등법원은 2012년 8월 29일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 최소한의 취재조차 하지 않고 진실에 반하는 기사를 작성하여 사원들은 큰 고통을 받았다. 기업의 손해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 쿠로야부에게 총 110만엔의 지불을 명했다.

신문협회보 2012년 9월 18일자 보도에 의하면, 쿠로야부는 지난 2008년 자신의 웹사이트에 ‘요미우리신문 세이부본사의 사원 3명이 다음날 조간에 넣을 광고전단지를 신문판매소에서 무단으로 들고 나갔다. 절도에 해당하며 형사고소의 대상이 된다’는 등의 기사를 올렸다. 그러나 실제로 광고전단지는 판매소장의 양해 하에 반출되었다고 한다.

요미우리신문 세이부본사는 인터넷에서 기사가 확산되어 사원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으며, 정신적 고통과 함께 회사의 신용이 실추되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쿠로야부씨는 기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며 웹사이트에 반론문을 게재할 기회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기사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후 “인터넷상의 정보는 불특정 다수가 순간적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한 번 손상된 명예의 회복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소송은 최고재판소가 2012년 3월 세이부본사 패소의 1, 2심 판결을 파기, 배상액을 결정하기 위해 도쿄고법에 심리를 환송했다.

최고재판소, 무기징역 수형자 범행보도에 대해 명예훼손인정

외국인 여성에 대한 준강간치사죄로 무기징역 판결이 확정된 오리하라 쇼지(織原城二)가 요미우리(讀賣)신문 도쿄본사의 기사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최고재판소는 2012년 9월 19일 양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신문사 측에 33만엔의 배상을 명한 2012년 2월의 도쿄고법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신문협회보 2012년 9월 25일자에 의하면, 도쿄고법은 오리하라 자택에서 여성을 폭행하는 비디오 테이프 약 4,800개가 압수되었다는 등의 4월 8일자 조간기사에 관해서 “증거를 입증할 수 있는 취재가 필요했다”고 지적, 명예훼손을 인정했으며 오리하라가 사망한 여성과 약혼을 위장했다는 등의 2001년 1월 28일자 조간기사에 관해서는 “대체적으로 진실”이라고 판단했다.

1심 도쿄지법은 2010년 10월 모든 기사에 관해 진실을 인정하지 않고 55만엔의 배상을 명했다.

오사카고법, 기사의 주요부분이 진실에 부합한다며 손해청구 기각

상해죄로 기소되었다가 무죄가 확정된 한 남성이 경찰의 발표와 신문사의 기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오사카부(大阪府)와 아사히(朝日)신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오사카고법은 2012년 9월 20일 이 남성의 청구를 기각, 아사히신문에 22만엔의 손해배상을 명한 2012년 4월의 1심 오사카지법 판결을 파기했다.

신문협회보 2012년 10월 2일자에 의하면, 오사카경찰은 2008년 12월 오사카부 이바라키시에서 발생한

괴한습격사건의 살인미수 용의자로 이 남성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아사히신문은 수사과 등을 상대로 취재하여 당시 시내에서 발생하고 있던 유사사건을 염두에 두고 12월 6일자 조간에서 ‘오사카경찰은 유사사건과의 관련을 조사한다’, ‘현장의 CCTV에 촬영된 남성과 유사하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이 남성은 해당 발표와 기사에 대해 해당 사건과 유사한 사건까지도 자신이 범인이라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급된 CCTV의 위치도 현장이 아닌 자신의 자택부근에 있어 해당 내용들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사히신문 측은 CCTV는 맥락상 중요한 부분이 아니며 기사는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오사카고법 재판부는 “남성이 체포되어 오사카경찰이 유사사건과의 관련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한 기사의 주요부분은 진실이며, CCTV는 보충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한다”라고 손해배상청구 기각사유를 밝혔다.

●●미국동향●●

탐 크루즈, 자신이 딸을 버렸다고 보도한 잡지사 고소

L.A. Times 10월 25일자 보도에 따르면, 헐리우드 인기스타인 탐 크루즈(Tom Cruise)가 10월 24일, 케이티 홈즈(Katie Holmes)와의 이혼이 공식화 된 이후 둘 사이의 딸인 6살 된 수리 크루즈(Suri Cruise)에 대해 “아빠로부터 버려졌다(ABANDONED BY HER DAD)”고 보도한 것을 두고 명예훼손이라며 위클리 라이프 앤 스타일(Weekly Life & Style) 지를 소유하고 있는 바우어 퍼블리싱(Bauer Publishing Co.)을 상대로 5천만 달러를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탐의 변호사들은 그의 딸인 수리가 울고 있는 사진에 “아빠로부터 버려졌다”는 타이틀을 달고 메인표지에 실어 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소 두 번씩이나 탐의 대리인들이 그 이야기가 잡지에 실리기 전에 “진실 여부”를 제공함으로써 내용을 수정하려고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탐의 변호사들은 해당 잡지사의 7월 30일자 판매본을 7월 18일에 입수했다. 변호사들은 해당 기사를 읽어본 후 내용 중 수리를 버렸다고 할 만한 어떠한 근거도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탐이 영화를 찍고 있었지만 수리와 정기적으로 통화를 했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탐의 변호사 중 한 명인 버트 필드(Bert Fields)는 해당 잡지사의 편집자에게 게재 철회를 요청하는 편지를 썼지만 그 요청은 거부되었다.

버트 필드는 L.A. Times와의 인터뷰에서 “탐은 수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다정한 아버지다. 그가 딸을 ‘버렸다’고 말하는 것은 악의적인 거짓말이며 지나치게 화려한 헤드라인에 눈물이 가득한 수리의 사진과

함께 그런 글을 게재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버트 필드는 “탐은 특하면 소송을 거는 남자가 아니다. 그 기사가 너무 멀리 가 버렸기 때문에 이 소송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추악한 마약판매원 같은 이들이 탐과 수리의 관계에 대한 역겨운 거짓말로 돈을 벌려고 한다면 당연히 그들은 명예훼손 판결로 죄 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탐과 케이티는 지난 여름 결별했으며 대중 연예신문과 연예 전문매체들에 의해 집중 보도되면서 갑작스럽게 이혼했다.

구조는 외면한 채 촬영에만 몰두한 뉴욕 포스트 기자에 대한 비난여론 확산

폰 해킹 사건으로 영국 언론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루퍼드 머독의 뉴스코퍼레이션이 또 한 번 구설수에 오르게 됐다. 이번엔 뉴스코퍼레이션이 소유한 뉴욕 포스트(New York Post)의 커버페이지의 사진 한 장이 문제가 됐고 비난여론은 점차 확산되었다.

뉴욕 포스트는 12월 5일자 신문 커버페이지에 지하 철역에서 열차와 부딪치기 직전의 한 남성의 모습을 담은 사진에 ‘this man is about to die, DOOMED’(이사람은 곧 죽는다, 운이 다했다)는 제목을 함께 게재하였다. 이에 대해 많은 언론매체는 구조는 생각하지 않은 채 촬영에만 몰두한 사진기자과 이를 게재한 뉴욕 포스트를 비난했다.

이 사진은 12월 3일 오후 12시 30분 쯤 맨하탄 49스트리트역 플랫폼에서 다른 승객을 괴롭히던 20대 흑인 남성과 이를 말리던 퀸즈의 엘름허스트(Elmhurst)에 거주하는 한기석(58세) 씨 사이에 시비가 붙던 중, 흑인 남성이 한 씨를 선로로 밀어 떨어뜨려 한 씨가 열차에 치여 숨지기 직전의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당시 현장에 있었으며 이 문제의 사진을 촬영한 뉴욕 포스트의 프리랜서 기자인 R.우마르 아바시(R. Umar Abbasi)는 뉴욕 타임즈(New York Times)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것이 너무 순식간에 벌어졌다(It all happened so fast)”고 말하며 억울한 심정을 전했다. 자신은 열차의 기관사에게 위협을 전하기 위해 계속하여 플래시를 터트렸다면 당시 자신의 상황에 대해 항변했다.

그러나 그런 변명에도 불구하고 뉴욕 타임즈의 한 기자는 ‘그 사진의 게재는 보기 역겨운 도덕과 상업 사이의 계산에 의한 것’이라는 비판을 내놓았다. 또한 기자는 이번 사건이 비단 그 사진을 찍은 R.우마르 아바시만을 비난할 문제는 아니라며 최근의 현실을 꼬집었다. 기사에서는 “이 남자가 전세계에서 가장 사람이 많고 복잡한 도시에서 홀로 선로 위에 서 있었던 것은, 우리가 나쁜 일들이 일어날 때 홀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을 상기시킨다. 사진기자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구조하려 하지 않았고, 플랫폼의 그 누구도 행동에 옮기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 이런 다른 이들의 고통과 위협에 대한 무관심은 그 플랫폼에 제한되지 않았고, 도시, 국가에 대해서도 제한되지 않았다. 이것이 세계의 많은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는 추악한 현실이다”라 게재하며 무관심한 현재의 세태에 대해 꼬집었다.

●●영국동향●●

오보 낸 언론사, 발 빠른 대응으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감액

프레스가제트(PressGazette) 10월 31일자 기사에 따르면, 영국의 항소법원은 한 남성을 강간범으로 잘못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한 트리니티 미러(Trinity Mirror) 그룹의 더 피플(The People) 지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75,000유로에서 50,000유로로 감액했다.

더 피플 지는 2010년 9월 10일, 2007년에 발생해 널리 알려졌던 Baby P(피터 코넬리; Peter Connolly) 살인사건에 관한 뒷이야기에 관해 보도하면서 잘못된 사실을 게재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해당 기사에서는 피터의 아버지(실명이 공개되지 않음)가 14세의 여자 아이를 강간한 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기술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피터의 아버지는 해당 사건과 무관했으며, 명백한 오보였음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2012년 3월, 1심 법원은 오보로 인한 명예훼손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75,000유로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그러나 10월 31일 항소법원(수석재판관 Neuberger)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이보다 25,000유로 감액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다.

수석재판관 Neuberger는 “훌륭한 성품을 가진 남성에 대해 어린 여자 아이를 강간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한 것에 대한 기존의 손해배상액이 과장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점, 발 빠르게 해당 보도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기사를 정정했으며 원고에게 유감을 표한 점, 빠른 정정으로 인해 오보를 읽거나 들었던 사람의 수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손해배상은 차감되어야 한다”며 손해배상액 감액 이유를 밝혔다.

BBC, Newsnight 오보관련 보고서 발표

Herald Scotland 11월 13일자 기사에 따르면,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의 Newsnight 프로그램 오보와 관련한 보고서가 BBC 스코틀랜드 디렉터인 켄 맥쿼리(Ken MacQuarrie)에 의해서 발표되었다.

Newsnight 프로그램은 11월 2일, 익명의 보수당의 고위급 인사가 80년대 성적학대를 자행했다는 보도를 내보냈으며, 보도 후, 언급된 익명의 보수당의 고위급 인사는 대처 진영의 전직 보수당 재무담당자인 맥알파인(McAlpine)이었음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드러났다. 이에 대해 맥알파인 측이 이를 공개적으로 전면 부인하고, 성적학대의 피해자인 스티브 메샴(Steve Messham) 또한 그가 자신을 성적학대한 사람이 아니라고 인정하면서 BBC의 보도가 오보였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다.

해당 오보에 관해 조사를 담당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켄 맥쿼리 디렉터는 보고서에서 회사의 주력 뉴스 프로그램이 기본적인 저널리즘의 확인사항을 제대로 완료하지 못했었다고 주장했다. 보도를 내기 전 스티브 메샴에게 맥알파인의 사진도 보여준 바 없으며, 최신의 검증된 사실을 제공하기 위한 두 번째 희생자의 추적도 불가능했음을 지적했다. 또한 오래되고 복잡한 내용에 관해 취재하면서 취재 시작 4일 만에 보도가 된 점,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맥알파인에게 어떠한 해명의 기회도 주지 않은 점 역시 문제가 있었다고 기술했다.

당시 최종 편집본의 방송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자가 누구였는지에 관해서도 혼란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전(前) 편집책임자인 피터 리폰(Peter Rippon)이 'Top of the Pops' 프로그램 사회자인 고(古) 지미 세빌(Jimmy Savile)의 소아성애자 행위에 관한 보도를 지연시킨 후,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고 그의 대리인의 부재로 인해 편집 관리 구조가 심각하게 약화되어 있

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오보에 대한 책임을 지고 10일 사임한 조지 엔트위슬(George Entwistle) 사장의 대행 역할을 맡고 있는 팀 데이비(Tim Davie)는 뉴스 중계를 위한 편집 관리 구조는 다시금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BBC는 이외에도 54일 동안 사장으로 재직했던 엔트위슬 前 사장의 45만 유로에 달하는 1년 연봉을 모두 지급하는 것에 대해 의회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등 끊이지 않는 논란으로 위기를 겪고 있다.

● ● 프랑스동향 ● ●

김이정(서강대 프랑스문화학 강사)

칸 IMF 전 총재, 여자친구와 있는 사진 게재한 잡지사들 상대 손해소송 승소

성추문 사건으로 몰락했던 IMF 전 총재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Dominique Strauss Kahn)이 미행 등과 같은 자신을 향한 언론의 과도한 관심에 참을 수 없다는 뜻을 드러냈다.

프랑스 뉴스사이트인 melty.fr 10월 16일자 기사에 따르면 칸 전 총재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자신에 대한 매체들의 태도를 ‘진짜 인간 사냥’이라 규정하기도 했다. 그의 입장에서는 극심한 염증을 표현하는 수위 높은 표현이다. 칸 전 총재는 또한 “사람들이 나의 사생활을 조롱하기 위해, 그리고 진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교훈적인 투명성이라는 애매모호한 핑계로 그것을 산산조각 내어 사방에 폭로하기 위해 나의 상황과 법정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자기 멋대로 부당하게 악용하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제발 나를 내버려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칸 전 총재는 더 이상 방해받고 싶지 않은 심정을 소송을 통해 매체들에게 이해시키고 싶은 것으로 보인다.

10월 16일, 칸 전 총재가 <클로제>와 <VSD>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9월초 자신이 한 여성의 어깨를 감싼 채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사진들을 게재하고 ‘스트로스 칸이 새 여자친구를 사귀는 것으로 보인다. 칸은 남의 눈을 신경쓰지 않고 대중 앞에 나서길 좋아한다’고 게재한 <클로제>와 <VSD>에 대해 칸 전 총재는 자신의 일반인 여자친구인 ‘미리암 라우피르’와 함께 총 13만유로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의 변호사는 그 잡지사들이 “모든 것에 대해 모든 것을 알 권리가 있다는, 스탈린주의적인 보도관”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10월 31일, 파리 지방법원은 <VSD>는 두 사람에게 2만3천유로(칸에게 8천유로, 미리암에게 1만5천유로)를 지불하고, 다른 주간지 <클로제>는 1만5천유로(칸에게 5천유로, 미리암에게 1만유로)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같은 사진을 게재한 잡지사 <Voici>에 대해서도 11월 27일, 원고들에게 2만유로(칸에게 5천유로, 미리암에게 1만5천유로)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파리 지방법원의 판결로 이 세 잡지가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라는 사유로 원고들에게 지불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은 모두 58,000유로에 달한다.

판결 때마다 법원은 미리암 라우피르가 그때까지는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녀는 이 사진들이 게재됨으로써 3주 동안 노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원고들의 사진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케이트 미들턴 가슴 노출 사진 게재한 클로제, 사생활 침해로 피소

영국의 윌리엄 왕세손과 그의 아내 케이트 미들턴은 9월 14일에 프랑스 잡지인 <클로제>가 케이트의 가슴을 드러낸 사진들을 발표한 것에 격분하여 자신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17일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정보는 낭테르(오 드 센 지방) 검사실에 의해 확인됐다.

프랑스 일간지 르파리지앵(Le Parisien) 9월 17일자 기사에 따르면, <클로제>에 발코니에서 상반신을 벗은 케이트의 사진들이 실린 후, 왕실은 사진들의 대규모 확산을 막고자 분주히 움직이고 있지만 그것을 저지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15일 아일랜드 잡지 <아이리시 데일리 스타>가 <클로제>의 기사를 다시 실은 데 이어 17일 이탈리아 잡지 <치>가 ‘왕실 스

캔들 : 여왕이 벗었다'라는 제목의 38쪽짜리 특집 기사에서 사진들을 다시 실었기 때문이다. 이 잡지는 1997년 파리에서 파파라치들에게 쫓기던 중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다이아나의 사진들을 2006년에 발표함으로써 이미 유명해진 바 있다.

〈클로제〉와 〈치〉를 소유한 몬다도리 출판사는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사의 결정을 옹호했다. 몬다도리 출판사의 사장인 마리나 베를루스코니는 몬다도리는 “언론의 자유를 가능한 한 최선의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번에도 언론사로서의 직무에 충실한 것 뿐”이라고 평가했다. 그녀는 이탈리아의 전총리 실비오 베를루스코니의 딸이다.

이러한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윌리엄과 케이트는 동요되지 않은 모습으로 왕세손의 할머니 엘리자베스 2세의 즉위 6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아시아 태평양을 순회했다.

이 왕족 부부의 법적 조치에 대해 언론 소송 전문인 크리스토프 비고 변호사는 “출처의 비밀을 지켜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칙적으로 급속심리판사는 〈클로제〉에 출처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는 기자들의 출처를 보호하고자 하는 프랑스 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고 덧붙혔다. 그는 ‘원칙적’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때로는 이 법이 제멋대로 사용된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기” 때문이며, “(단독으로 결정을 내리는) 급속 심리판사는 자신의 권한에 대해 극단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윌리엄 왕세손의 비서실은 “소송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긴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히고 단호한 법적대응 의지를 밝혔으나, 9월 20일 덴마크 잡지 ‘세오그 호르’가 케이트의 하반신 노출 사진을 게재하는 등 그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프랑스 언론재벌 비방디 그룹의 카날 플뤼스, 디렉트 8과 디렉트 스타 채널 인수

레지프레스 9월호에 따르면, 프랑스의 경쟁촉진위원회(Autorité de la concurrence)가 언론재벌인 비방디 그룹(Vivendi)의 자회사인 카날 플뤼스(Canal+)가 조건부로 TNT(전국 디지털 텔레비전) 채널들 중에서 디렉트 8(Direct 8)과 디렉트 스타(Direct Star)를 사들이는 것을 인가했다.

경쟁촉진위원회가 크게 염려한 주된 위험요소들은 카날 플뤼스가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영향력으로 인한 권리 획득과 관계된 것이었다. 따라서 카날 플뤼스는 자신들이 보유한 유료, 무료 채널들에서 동시에 방영할 미국 영화나 미국 원어판 시리즈물들을 여섯 개의 미국 대형 스튜디오(유니버설, 파라마운트, 워너, 소니, 폭스, 디즈니) 중 단 한 곳에서만 구매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카날 플뤼스는 영화가 개봉되는 해와 동일한 해에 영화에 대한 유료 방송과 지상파 방송 방영권을 인수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마찬가지로 당사자인 비방디와 카날 플뤼스는 그들의 투자의 대부분을 중간 예산 영화에 할애해야 하며, 대규모 예산이 드는 영화에 대한 배급권도 제한된 편 수 안에서만 선택권으로 획득할 수 있다(최대 1500만 유로 이상 예산의 영화는 두 편, 1000만에서 1500만 유로 사이 예산이 드는 영화는 세 편, 700만에서 1000만 유로 사이의 예산이 드는 영화는 다섯 편). 이 두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들은 별개의 회사에 속한 특별팀을 통해 최신 영화와 시리즈들에 대한 유무료 방영권을 각자 따로 협상하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디렉트 8과 디렉트 스타 인수 이전에 이 두 채널이 카날 플뤼스 소유의 영화 제작사 겸 배급사인 스튜디오 카날과 체결한 프랑스 영화 구매 권은 제한하기로 약속했다. 스튜디오 카날은 경쟁하는 무료 채널들보다 좋은 조건을 디렉트 8과 디렉트 스타에 부여할 수 없을 것이다. 카날 플뤼스

는 관련된 모든 배급사들에 대해 차별 없고 투명한 경쟁을 실천한다는 의미에서 그들이 중요한 스포츠 이벤트들에 대해 가지고 있던 중계권을 양도할 것을 약속했다. 5년마다 갱신할 수 있는 이 모든 약속사항들은 경쟁촉진위원회의 철저한 감독을 받을 것이다. 이 제는 시청각최고심의회(CSA, Conseil superieur de l'audiovisuel)가 이 인수에 대한 최종 의견을 제시할 차례다. 이 약속사항들은 채널에 관한 협약의 추가조항의 대상이 될 것이며 협약에 관해서는 시청각최고심의회(CSA)와 카날 플뤼스가 함께 협상할 것이다.

● ● 해외통신원 보고 ● ●

송동현 통신원
(런던 Goldsmiths College Media & Communications 박사)

레버슨 청문회 최종보고서 발표

지난 11월 29일 2,000페이지 분량의 레버슨 청문회 최종보고서가 발표되었다. 보고서에서 레버슨 판사는 언론규제를 위한 새로운 독립적 기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법률기반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청문회 시작 이후 언론계가 제시한 새로운 기구와 관련한 제안서는 언론의 독립성을 확립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레버슨 청문회 최종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문회 결과

보고서에서 가장 비판받은 부분은 바로 일부 언론의 비윤리성이었다. 레버슨 판사는 기자들과 편집인들의 행동에 대해 '전반적인 언론계의 윤리와 행동을 탈선으로 규정할 수 없으나, 언론계 중 어느 부분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기본적 윤리의식을 가지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무고한 시민의 삶을 황폐화 시켰다'고 청문회 조사결과에 대해 언급하였다. 더불어, 그는 '일반시민들이 이러한 불행한 사건에 연루되었으며, 이와 관련한 언론의 행위는 터무니없는 불법적 행위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고 언론의 비윤리성을 비판하였다. 이러한 비판의 강도는 폰 해킹 사건에 대한 언급에서 그 수위가 높아지는데, 레버슨 판사는 폰 해킹과 관련된 뉴스오브더월드 발간인들에 대하여 '대부분의 기업은 직원이 기업의 비즈니스를 위해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오싹한 느낌이 들 것이다. 그러나 뉴스오브더월드는 그렇지 않았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할 때, 그들은 신문사 직원의 반발에 휘둘렸다'고 조사결

과를 언급하였다. 그는 단순히 뉴스오브더월드의 사례만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언론계의 비윤리성을 비판하며: “너무 많은 신문사들이 결과에 대한 책임감 없이 개인의 삶이 연루된 기사를 쉽게 유폐하고 있어 많은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언론계의 나태함을 비판하고 규제해야 할 PCC는 두말할 것 없이 ‘기관의 임무를 다 하지 못했고, 이에 새로운 대체기관이 필요하다’라는 비판을 담은 최종 보고서에서는 PCC의 근본적인 문제는 자신들을 자율 기관이라고 칭함으로 공중의 기대에 부합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결론짓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레버슨 판사는 실질적으로 PCC는 불만처리기관으로 봐야한다고 결론지었다. 그 원인으로 PCC의 체계적인 구조결핍과 언론사로부터의 비독립성이 지적되었는데, 그 사례로 레버슨 판사는 편집인 강령위원회(The Editors' Code Committee)는 규정을 만들어 편집인을 규율했어야 하는데 현직 언론 편집인으로 구성되며 PCC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재정이사회(The Press Standard Board of Finance, PressBoF)에 의해 임명된 이사들은 전직 언론업계 종사자들이었으며 PCC의 회계 및 의장 선출은 이들의 지대한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었음을 지적하였다. 이와 더불어 소수의 임원 및 권력집중과 더불어 레버슨 판사는 PCC가 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적은 예산으로 운영되었던 점이 PCC가 수행해야 할 보편적 범주를 축소시켰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서 레버슨 판사는 사건에 대한 효과적 조사 진행과 관련한 PCC의 무능은 불만접수자의 사건 해결 의지와는 반대로 처리되곤 하였음을 밝혀냈다고 언급한다. 예를 들어 자율 규제기관으로서 PCC는 우선시해야 하는 인권법(s12 Human Right Act 1998)

과 데이터보호법(s55 Data Protection Act 1998)에 근거하여 사건을 조사할 때에 언론의 비난을 최소화하는데 신경을 썼기 때문이다. 뉴스오브더월드의 폰 해킹 사건과 관련한 PCC의 조사는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며 따라서 신용을 잃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는 비단 폰 해킹 사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반적 사건과 관련한 불만이 받아들여졌더라도 그 해결 방안은 언론사를 설득하여 기사를 수정하는 방식을 취했던 것을 발견하였으며 이는 매우 부적절했다며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해 볼 때 실질적으로 PCC는 언론의 이익집단이었다고 보고서는 결론을 내린다.

공무원에 대한 레버슨 청문회 결과에 대한 언급도 눈여겨볼 만한 사항인데, 레버슨 판사는 보고서에서 만연한 경찰의 부패를 확인할 증거는 없었으나 전 경찰청 청장 비서관이었던 존 야테스(John Yates)와 뉴스오브더월드의 관계는 비판받아야 한다고 서술하였다. 그는 또한 모든 정당의 정치인들이 공공의 이익과는 관련이 없는 방식으로 언론과 관계를 맺고 있었고, 지난 30년간 정치인들과 언론 사이의 관계는 공적 문제의 인식에 커다란 손실을 입혔음을 비판했다. 그러나 그는 청문회 중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였던 폰 해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루퍼드 머독과의 연루 혐의를 받았던 전 문화부 장관 제레미 헌트와 데이비드 카메론에 대해선 증거 부족에 따라서 혐의 없음을 공표하였다.

— 법령에 기반을 둔 새로운 규율기관 설립 제안

이러한 비판과 함께, 영국 미디어의 이슈와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적절한 규율기관 설립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레버슨 판사가 제시한 새로운 규율기관은 자율기관의 근본은 지키면서 법적인 지지 아래 언론기관들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앞에서 서술하였듯 레버슨 판사가 새로운 기구는 공공의 이익을 대변해야할 뿐 아니라 언론계로부터의 충분한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프레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언론(기사)의 피해자가 법정에 가기 전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재시스템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레버슨 최종보고서에서 제안한 새로운 규율기구의 시스템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새로운 기구의 처리 흐름이 현 PCC의 그것과는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 PCC의 시스템은

1. 불만신고 · 접수
2. 불만해결을 위한 조사
3. 처벌로써 신문사 정정보도 명령
4. 신문사가 PCC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사건은 법정으로 이동

이라는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레버슨 판사가 제안한 새로운 기관은

1. 불만신고 접수 및 신문사의 윤리적 행동 감시
2. 불만 해결을 위한 조사
3. 기준법 위반 시 처벌 · 불만신고와 관련한 개선책 마련
4. 피해자의 법정수속과 관련한 중재서비스로의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최종보고서를 통해 레버슨 판사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관은 언론사의 규율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규율기관 설립에 관련한 기준법은 언론계에 종사하고 있는 구성원과 업계에서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구성된 규율위원회의 합의에 의해 구성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기준법은 특히, 자료의 획득 과정에서 자료와 관련된 인물에 대한 취급과 관련한 행동규정, 공공의 관심으로 정당화될 수 없을 경우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적절한 대처, 허위사실 유포를 지양하기 위한 정확성과 관련한 사항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즉,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법적 의무를 정확히 헌법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설기구의 법적 효력 중 흥미로운 사항은 언론사의 기준법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만드는 사항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PCC의 최대 처벌 방법은 문제시된 신문사의 이름을 언급하며 비판적 정정을 요구하는 것이 전부였다면, 최종보고서에서 제시된 신설기구는 적절한 처벌을 가할 권리가 부여되는데, 이 권한에는 최대 1백만파운드까지 매출의 1% 한도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른 처벌의 권한은 법령에 의한 정정보도의 요구권이 있다.

새로 신설될 기구는 언론사들, 정부, 산업적 이해관계에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 인사나 국회의원, 현업에 종사하는 기자들은 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비윤리적 행동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기자들을 위해 내부 고발자를 위한 핫라인은 설치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흥미로운 제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법령에 의한 독립성과 능동성은 인력 · 재원 확보 및 구성안에서도 잘 드러난다. 보고서는 규율기관은 독립위원회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며, 기관, 위원장 및 위원회 구성원들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나 언론계의 영향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임명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즉, 구성원의 임명과 관련한 독립성은 현업에 종사하는 언론인을 포함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PCC가 10명의 대중감시단(public member)과 7인의 업계 편집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면, 보고서에 제시된 새로운 규율기관의 임원선정에서, 언론계 전 · 현직 편집인, 국회의원, 국회관료는 제외시킨다는 것이 큰 차이로 하겠다. 이러한 인력 구조는 규율기관의 의미에 충실할 수 있으며 독립기관이 언론계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전제로, 언론계와 독립기관 사이의 합의에 의해 정해져야 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재원에 관련한 합의는 재원소

요 4-5년 이전에 협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에는 새로운 규율기구는 기준법의 위반에 대한 적절한 개선책을 지도할 권한, 예를 들어 기사로 인해 야기된 개인에 관한 부당한 기록들을 언론사에게 정정하도록 요구하는 법적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물론, 레버슨은 이러한 사항이 표현의 자유를 위협해서는 안된다고 재차 확인하는데,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Ofcom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규제기관이 새로운 기관의 평가기관으로서 위치하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기구에 참여를 거부하는 신문사들은 미디어 규제기관인 Ofcom의 직접규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신설기관의 법제화의 위험을 막기 위한 또 다른 사항으로, 보고서는 새로운 기구는 언론계의 편집인에게 출간물에 대한 조언을 할 수는 있으나, 출간을 막을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또한 관심 깊게 봐야 할 사항이다.

－ 최종보고서에 대한 각계의 반응

규율기관으로서 보다 강력하고 능동적인 기구의 설립 안을 담고 있는 레버슨 최종보고서 출간 이후에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기 전 카메론 정부는 바로 레버슨 판사가 지적한 기관설립과 관련한 법제화가 언론개혁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라면서, 이러한 법제화는 언론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성명서를 내면서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카메론 정부의 입장은 레버슨이 주장하듯 새로운 기구설립을 위한 관련법의 재개정은 거부하되, 벌금과 관련한 다른 사항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카메론 수상은 새로운 규제기관의 법제화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 언론계를 향해 빠른 시간 내에 레버슨 최종보고서의 법제화와 관련된 문제를 제외한 다른 사항에 부합하는 제안서를 제출할

것을 주문하였다. 카메론 정부와는 반대로, 노동당과 자유민주당은 이러한 법제화를 지지하며 규율기구 법제화를 위한 초안을 작성하며 카메론 내각과 강한 대립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카메론 정부의 지지에 힘입어, 영국언론계는 자율규제의 틀 안에서 레버슨 최종보고서에 부합하는 방식을 고안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언론계는 어떻게 레버슨 최종보고서에 포함된 계획을 실행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에 제출하기로 공식 발표를 하는 동시에, 언론기관의 임원들은 법제화에 근거한 기구 설립에 대한 압력을 불식시키며 여론에 상응할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모임을 가지고 있다.

레버슨 최종보고서에 대한 정부여당과 언론계의 반응은 결국 레버슨 판사가 최종보고서를 통해 전달한 언론개혁에 대한 의견들이 관철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냉소론 및 폰 해킹 피해자들의 분노를 증가시켰다. 현재 레버슨 최종보고서와 관련된 현재 쟁점은 새로운 언론분쟁해결기구가 정부주도, 법제화 안에서 탄생할 것인가, 아니면 현 자율규제의 틀은 유지하되 언론계 스스로의 변혁을 도모할 것인가의 프레임으로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PCC, 프라이버시 관련 편집인 행동규정 발표

PCC는 사생활과 관련한 새로운 편집인 행동규정을 11월 15일 발표하였다. 편집인과 저널리스트들에게 실용가이드를 제시한다는 명목으로 발표된 이 문서는, 완전히 새로운 규정을 제시했다기보다는 과거의 사건 케이스들을 소개하며 PCC가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한 사건을 조사할 때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편집인 행동규정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본인 허

락 없이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기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원칙은 제삼자 및 비-언론인이 생산하는 모든 편집된 콘텐츠에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된 가이드라인의 특이사항은 단순하고 용이하게 취득된 온라인 정보를 대중의 관심 충족이라는 목적으로 재생산하는 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정된 편집인 행동규정은 총 7개의 범주로 세분되어 있다:

1. 정보의 질은 어떠한가? (얼마나 개인신상 정보를 다루고 있는가?)
2. 개인의 신상과 관련하여 이전 자료에서 무엇이 드러나 있었는가?
3. 만약 자료출처가 온라인이라면 누가 처음으로 그 자료를 온라인에 게시하였는가?
4. 개인이 정보를 개인적 용도로 게시하진 않았는가?
5. 어떻게 자료가 소개되는가? (자료의 공개가 개인에게 굴욕을 주는가?)
6. 새로운 자료의 출간이 이미 공개되어진 유사하거나 관련된 정보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정당한가?
7. 기사출간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잠정적인 프라이버시 침해의 요소보다 출간을 통한 대중의 관심 충족이 더 중요했는가?

개정된 행동규정과 PCC가 제시한 관련사례 중 흥미로운 부분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행동규정 개정사항 중 ‘정보의 본질’과 관련하여 PCC는 2010년 바스커빌(Baskerville)이 데일리 메일(Daily Mail)과 인디펜던트(The Independent)를 상대로 낸 불만접수 건을 예로 들었다. 관련 사건은 공무원이었던 바스커빌이 자신의 부서(교통부)와 관련된 사항을 올렸던 자신의 트윗글이 두 신문에 게재된 것

에 불만을 접수하였다. 이론적으로 어떤 사람이라도 그 글에 접근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팔로워만을 위해 글을 썼다는 주장에 근거를 두고 불만을 접수했다. PCC는 정보의 질과 어떻게 글이 신문 출간을 위해 이용되었는지에 판단근거를 두었다. 문제가 된 글은 게시자의 공무원 직업과 관련한 직접적인 내용이었고, 신문사는 이와 관련하여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사용하는 공무원에 대한 심한 우려를 주제로 하여 글을 쓴 것이다. PCC는 바스커빌이 백여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었고, 프라이버시 세팅을 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였다. 그로인해 PCC는 신문사에 의해서 배포된 자료들은 부당한 프라이버시 침해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바스커빌의 불만사항을 기각하였다.

PCC가 ‘이전 출간물들의 범위(The extent of previous publications)’와 관련하여 행동규정의 예로 2010년도 연예인 데니 미노그(Dannii Minogue)가 데일리 미러를 상대로 제기한 불만에 주목했다. 데니 미노그는 PCC에 그녀의 임신사실이 그녀의 임신에 대한 공식입장이 나오기 전에 데일리 미러에 의해 기사화 된 것에 대해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불만을 표명하였고 PCC는 이를 인정하였다. 하지만 데일리 미러는 공인의 12주 임신초음파 검사 이전에 허락 없이 이와 같은 정보를 배포하는 것이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데니 미노그와 관련한 정보는 이미 대중에게 알려져 있었고 블로그와 호주 신문 웹사이트에 전날 게재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사의 지면에 이 정보를 게재하는 것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해명을 하였다. 그러나 PCC는 데일리 미러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데니 미노그의 불만사항을 인정하였다. 그 이유는 데일리 미러가 주장한 블로그나 웹사이트의 정보 성격이 사실 확인적인 글이 아니라 추측성 글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이다. 즉, PCC는 온라인 상에 존재하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했다는 이유·근거가 신문기사의 당위성

및 프라이버시 침해의 타당성을 뒤받침 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PCC는 편집인들은 이미 개인용으로 출간되어진 원본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주의를 요한다고 밝혔다. 이 항목은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자료들을 이용할 때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하여 2010년 한 여성이 로디드(Loaded) 잡지를 상대로 제기한 불만 내용을 예로 들었다. 한 여성이 몇 년 전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사진들이 로디드 잡지의 ‘공개수배 : 커다란 가슴을 가진 여성’이란 제목의 기사에 무단으로 사용되었고, 그 후 그녀의 사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퍼져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PCC는 이 여성의 불만신고를 받아들였는데, 이유는 어떠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불만신고자가 공인이 아니며, 18세 소녀로서 그러한 사생활 침해를 당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PCC는 이번 개정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달되어지는 무분별한 신문보도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히고 갱신된 새로운 행동규정은 지난 8월에 해리 왕자의 나체사진이 더 썬(The Sun) 지로 인해 퍼진 사건으로 인한 것이며, 사건과 관련하여 왕실이 PCC에 정식으로 수사를 요청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행동규정 개정의 배경이 되었다는데 모든 언론이 이의를 달지 않고 있다.

코미디언 프랭키 보일, 데일리 미러 상대 손해소 승소

BBC쇼 ‘Mock the Week’을 진행하는 프랭키 보일(Frankie Boyle)이 지난 10월 23일 데일리 미러(Daily Mirror)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하였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데일리 미러는 7월 19일자 신문에 ‘인종차별주의자 코미디언

프랭키 보일’이라는 제목으로 그가 진행하는 BBC쇼 ‘Mock the Week’에서 흑인들을 웃음거리로 이용했으며, 이로 인하여 그가 진행하는 쇼에서 물러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는 기사를 기재했다. 보일은 이에 모욕죄를 근거로 데일리 미러를 고소하였다.

그는 자신은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고 반-인종차별주의자라고 반박하였으며, BBC에서 사퇴압박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데일리 미러가 자신과 관련한 잘못된 기사로 자신을 모욕했다고 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한편, 데일리 미러를 발간하는 MGN(Mirror Group Newspapers)은 인종차별과 관련된 보일에 대한 기사는 사실이거나 공익과 관련된 충실한 의견이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또한 MGN은 기사에 언급한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라는 표현은 보일이 해고(Sack)되었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MGN은 이와 관련, 보일이 아나운서 흥내를 내며 아프카니스탄 전쟁을 희화한 사례를 배심원에게 예로 들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늘 칸다하르 지역에서 폭탄이 터져 두 명의 영국 군인, 세 명의 유엔 구조대원 그리고 다수의 파키(Pakis: 파키스탄인을 표현하는 부정적 은어)가 숨졌습니다.’ 이에 보일의 변호사는 법정에서, 이러한 예는 보일이 인종차별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인종차별을 비판하기 위해 이러한 개그를 만드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결국 10월 23일 대법원은 데일리 미러의 기사에 명예훼손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결론을 내리며 보일의 손을 들어주었다. 결국 대법원은 MGN이 주장한 기사 게재의 정당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승소로 인해 보일은 인종차별과 관련한 내용으로 인해 54,000파운드(한화 약 1억원)를, 사퇴압박과 관련한 내용으로 인해 4,250파운드(한화 약 8백5십만원)를, 법정비용으로 100,000파운드(한화 약 2억원)를 받게 되었다.

데일리 메일과 데일리 미러, 법정모욕죄로 벌금형

런던 고등법원은 지난 10월 22일 데일리 메일(Daily Mail)과 데일리 미러(Daily Mirror)가 2011년 6월 게재한 레비 벨필드(Levi Bellfield)의 밀리 도울러(Milly Dowler) 유괴 살인사건에 대한 기사와 관련 법정모욕죄로 각각 10,000파운드(한화 약 2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두 신문은 벨필드의 밀리 도울러 유괴 살인사건에 대한 기사를 유죄판결이 있기 전에 게재하였다. 기사에는 벨필드와 그의 전처 및 전 애인, 장애아를 폭행, 강간한 전력과 관련한 내용이 상세히 담겨있었다. 문제가 된 사안은 기사가 배포되었던 당시에 배심원들은 그가 저지른 다른 범죄에 대해서 혐의 중이었다는 것이었고, 그 기사의 내용들은 배심원들이 법정에서 보고받은 정보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두 신문의 기사가 문제가 된 것은 2011년 6월 법정에서 벨필드의 유죄판결을 내려지는데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판사에게 보고되어졌기 때문이다. 두 신문은 그들의 기사가 심각한 편견을 심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위험을 야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장관인 도미니크 그리브(Dominic Grieve)는 두 신문사의 관련 기사는 심각한 편견을 야기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판결과 더불어, 그리브 법무장관은 ‘이번 사건은 왜 미디어들이 법정모욕죄를 조심해야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 사건’이라고 언급하며 판결의 당위성을 재차 확인하였다.

자료

언론조정 · 중재 신청사례
국내언론관계판결
외국언론관계판결
외국신문평의회사례
언론법제관련문헌

PAC

언론조정 · 중재 신청사례

편집자 주 - 본 사례는 연구자료이므로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위해 인용할 때는 당사자의 신원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수술장비 절도 혐의를 부인했음에도
경찰에 관련 혐의를 인정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12부산조정22, 23 (병합) 각 손배청구
신청인 : 이○○
피신청인 : (주)국제신문
중재부 : 부산중재부
종결일 : 2012. 9. 4.
처리결과 : 조정성립 (250만원)

■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신청인이 구속된 아버지의 공탁금을 마련하기 위해 병원 수술장비를 절도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고 범행 사실을 경찰에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절도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찰에 혐의를 인정한 사실이 없고 사전구속영장 또한 신청되지 않았으며 자신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마치 혐의를 인정한 범죄자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했다며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백5십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국제신문 : 「빛나간 효심 아들,父공탁금 마련하려 절도」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3일자 사회면 6면)

내용 : 부산 사하경찰서는 12일 휴업 중인 병원에서 의료장비를 훔친 이모(27)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씨는 지난 1월 27일 오후 2시께 사하구 한 병원에 들어가 엑스레이 촬영기기 등 수술장비 8종류 시가 1억2000만원 상당을 훔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병원을 운영하던 자신의 아버지(51)가 건강보험공단 급여 6700만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되자 법원에 낼 공탁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금 30,000,000원을 지급한다.

■ 사건 처리결과 : 조정성립 (250만원)

〈합의내용〉

1. 피신청인은 조정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2,500,000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 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신청인은 본 건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대하여 더 이상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 후 사업실패사례 보도에 불필요하게 신청인 프랜차이즈 업체의 브랜드를 노출시켜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12서울조정1345 · 1346, 1347 · 1348(병합)

각 반론 · 손배청구

신청인 : (주)서린푸드시스템

피신청인 : (주)문화방송

중재부 : 서울제3중재부

종결일 : 2012. 10. 5.

처리결과 : PR보도

■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퇴직 후 살아가는 모습들을 소개하면서 치킨 프랜차이즈사업에 실패한 남성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신청인 업체의 브랜드를 노출시켰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사례에 소개된 남성의 사업 실패와 보도내용은 신청인의 업체와 무관한데 수차례 브랜드를 노출하여 브랜드 이미지와 명예가 훼손됐으며 반론보도와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PR보도를 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MBC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7백만 베이비부머..제2의 삶은?” 제하의 보도 (2012년 9월 12일 21:00)

내용 : [앵커] 오늘 뉴스플러스는 베이비부머, 그러니까 한국전쟁 직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고민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무려 700만명에 이르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경제부 기자들이, 베이비붐 세대의 애환을 듣고 제2의 인생 성공의 열쇠를 찾아봤습니다.

[기자1] 한국전쟁 직후인 1955년부터 63년 사이에 태어난, 50세부터 58세 국민이 베이비 붐 세대입니다.

모두 7백만 명 정도로, 바로 평범한 우리 아버지들이 해당됩니다.

한달에 평균 303만원을 벌지만 자녀 교육비 등에 220만원을 쓰고 있어서 노후를 위해 저축하기는 빠듯합니다.

모아놓은 재산은 부동산을 포함해 평균 3억2600만원 뿐인데 이 돈을 밑천으로 자녀 결혼도 시키고 앞으로 3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2010년부터 이들의 집단 퇴직이 시작됐고, 앞으로 매년 30만 명에서 40만 명이 남은 30년의 출발선에 섭니다.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베이비부머들을 이○○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중략)

[기자1] 베이비부머들이 노년에도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생활하려면 월 225만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평균 수명을 고려하면 자녀 결혼 비용을 빼고도 노후자금으로 5억4천만원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퇴직금으로 가게라도 해볼까 생각하게 되지만, 베이비부머들이 주로 뛰어드는 숙박업소, 음식점의 경우 열 곳 중 여섯 곳이 3년 안에 망합니다.

앞서 보셨듯이 재취업도 녹록치 않은데 이 험난한 현실을 뚫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송○○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2] 닭이 차 있어야 할 냉장고가 텅 비었습니다.

하루 5마리 팔기도 힘들다 보니 치킨집을 연 지 1년 5개월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61년생 베이비부머 정○○ 씨에게는 벌써 두 번째 창업 실패.

10년 전 중견 무역업체를 그만두고 PC방을 열었지만 실패, 다시 치킨 프랜차이즈에 도전한 결과 빚만 1억원 쌓였습니다.

[정○○] “애 교육비 많이 들어가죠. 걱정이죠 뭐 앞으로...내가 원래 빚 없이 살던 사람이었는데...”

퇴직금을 투자해 창업에 뛰어들기 쉽지만 준비가 부족할 경우 실패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한 대기업의 창업교육 프로그램.

아이템을 정하는 것부터 가게 운영 방법까지 초보 창업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꼼꼼히 가르칩니다.

석 달 짜리 과정이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듣는 직원도 많습니다.

(후략)

■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아래의 반론보도문을 MBC-TV <9시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반론보도문〉

가. 제 목 : ‘치킨프랜차이즈에 도전한 결과 빚만 1억 쌓였습니다’란 보도를 하면서 사용한 배경화면인 ‘치킨히어로’ 브랜드 관련 반론보도문

나.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9월 12일 9시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7백만 베이비부머..제2이 삶은?’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하면서, 정○○씨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치킨프랜차이즈에 도전한 결과 빚만 1억 쌓였습니다”란 보도를 하면서 ‘치킨히어로’ 브랜드를 수차례 노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노출된 ‘치킨히어로’ 브랜드와 관련하여, 해당 가맹사업자는 보도내용과 ‘치킨히어로’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금 30,000,000원을 지급한다.

■ 사건 처리결과 : PR보도

〈합의내용〉

1. 피신청인 (주)문화방송은 2012년 12월 5일까지 <뉴스투데이> 프로그램에 신청인 (주)서린푸드시스템에 관련해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하는 뉴스를 제작하여 방송한다.

• 뉴스의 주 내용 : 창업아이템 관련 사례 또는 프랜차이즈 관련 긍정적인 보도로 소개

• 브랜드(치킨히어로) 노출 : 15초 전후

2. 피신청인 (주)아이엠비씨는 (주)문화방송이 위 1항

을 이행한 후 2일 이내에, 이행한 보도내용을 아이엠비씨(<http://imnews.imbc.com>)에 게재하고,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3. 피신청인들이 위 제1항~제2항과 동일하게 보도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이 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 피신청인들이 위 제1항~제2항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법원에서 무혐의 확정판결을 받았던 과거 사건에 대해 마치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던 것처럼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12서울중재43
 신청인 : 문정수
 피신청인 : (주)조선뉴스프레스
 중재부 : 서울제4중재부
 결정일 : 2012. 10. 15.
 처리결과 : 중재결정 (정정보도)

■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중재대상기사에서 1997년에 발생했던 한보건설의 뇌물살포사건에 관해 설명하면서 신청인이 뇌물 사전수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수뢰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처럼 보도하여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이 사건에 대한 1차 조정기일 심리전에 당사자가 이 사건 분쟁에 관하여 중재절차에 따라 중국적으로 해결하기로 하는

중재합의를 하였다.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피신청인이 정정보도를 게재하도록 중재결정했다.

■ 중재대상보도

월간조선 : 「국민검사 심재륜의 수사일지⑨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김현철 사건③ 국회의원들은 칼만 안 들었지 다 강도(정태수)」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일자 382면)

내용 : 한보 ‘정치인리스트’에 대한 검찰수사로 국민의 눈길이 연일 서초동 대검찰청 ‘현관’에 쏠리던 1997년 4월 16일, 아침 일찍 김찬진(金贊鎭) 변호사가 대검 중수부장실로 전화를 걸어왔다. 내게는 대학 및 검찰 선배인 그는 일찍이 검사 시절 능력을 인정받아 경제기획원으로 자리를 옮긴 경력의 인물이다. 그 무렵엔 여당인 신한국당의 전국구 승계후보 상위 순번에 올라 있기도 했다.

(중략)

“소환대상자 안 만난다”

내가 그토록 보안에 신경을 썼던 이유는, 수사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면 그것은 반드시 외압을 초래하기 때문이었다. 정치인 한 사람을 수사한대도 모쳐 혹은 도처에서 ‘연락’이 오게 마련이다. 하물며 30여 명의 정치인을 피의자 자격으로 검찰에서 조사하는데 외압이 없다면 거짓말이다. 전화로 직접, 신문방송 등 미디어를 통해, 지인을 통해, 기사를 통해, 검찰 내부인사를 통해 등등, 그 경로도 다양하다. 그러나 누가 됐든 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든 나는 외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차단하려 했다.

당장 검찰에 소환되는 인사들과 얼굴조차 마주하지 않았다. 정당의 고위인사, 대통령 측근, 정치권 실세 등 거물급 인사들은 그 지위나 ‘얼굴’ 자체가 외압이 될 수 있다. 나와 평소 친분이 있던 법조계 출신들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 까닭에 나는 아예 그들과 대면

조차 하지 않으려 했다.

거물 정치인들이 검찰에 들어오기 전 그들을 대신 한 몇몇 변호사들은 내게 전화를 걸어 와 “누구누구는 심 부장의 앞날에도 크게 도움이 될 터이니 친분도 좀 쌓아 둘 겸 중수부장실에서 먼저 면담하고 차라도 한 잔 하는 등 예우를 갖춰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그런 부탁마저도 분명히 거절했다. 그런 전화가 몇 차례 있고 나서는 아예 공개적으로 “소환 대상자는 예외 없이 검찰청사 현관에서 조사실로 곧 바로 모실 것”이라고 못 박았다. ‘국민이 맡겨 준 지금 중수부장이 검사의 끝’이라 믿던 나는 ‘앞날’ 따위는 생각지도 않았다.

심지어 내가 모시던 검찰총장 그리고 나와 절친한 검사 동기가 인간적인 부탁을 했을 때도 나는 외압 차단에 대한 소신과 원칙을 무너뜨리지 않았다.

정치인 수사 과정에 문정수(文正秀) 부산시장이 지역개발 건과 관련해 2억원대를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다. 돈을 받던 당시 문 시장은 부산시장에 취임하기 전이었다. (당선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먼저 돈을 받고 나서 실제 당선 및 취임 이후 한보건설에 특혜를 준 것이었다. 즉 사전수뢰(事前收賄)에 해당한다. 게다가 그때는 마침 부산에서 중대한 국제 체육행사인 동아시아대회가 개최되기 직전이기도 했다. 이래저래 문 시장에 대해서는 불구속할 만한 배경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 저간의 사정들을 배경으로 먼저 김진세(金鎭世) 부산지검장이 “부산 사람들의 현지 의견”이라면서 불구속 이야기를 전해 왔다. 사법시험 동기의 부탁이었지만 나는 “액수로 보나 죄질로 보나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거꾸로 그를 설득했다. 문 시장과 절친한 김 총장도 내게 대놓고 불구속 의견을 냈다.

“심 부장, 문시장하고 내가 고등학교 동기인 거 알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학 동기라는 것도?”

—예, 그것도 압니다.

“그런데도...(구속할 거냐?)”

거듭 묻는 김 총장에게 나는 “그렇습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물론 겉으로야 단호하게 말했지만 속으로 그 미안함이야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문 시장은 결국 불구속기소 됐다.

(후략)

■ 중재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월간조선 11월호의 “국민검사 심재륜의 수사일지” 첫 면(연재가 없을 경우에는 목차 첫 면)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월간조선 9월호의 “국민검사 심재륜의 수사일지⑨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김현철 사건③ 국회의원들은 칼만 안 들었지 다 강도(정태수)”의 제목 중 “국회의원들은 칼만 안 들었지 다 강도(정태수)”와 같은 크기로 하여 [] 안에 표시하고, 아래의 정정보도문 본문을 이어서 게재하되 위 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한다.

〈정정보도문〉

1. 제 목 : “문정수 전 부산시장의 사전수뢰 관련 정정보도문”

2. 내 용 : 본 월간 조선은 지난 9월호의 “국민검사 심재륜의 수사일지” 기사에서 “국회의원들은 칼만 안 들었지 다 강도(정태수)”라는 제목하에 “정치인 수사 과정에 문정수 부산시장이 지역개발건과 관련해 2억원대를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다. (중략) 먼저 돈을 받고 나서 실제 당선 및 취임 이후 한보건설에 특혜를 준 것이었다. 즉 사전수뢰에 해당했다. (후략)”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정수 전 부산시장의 위 사건에 관한 법원

의 판결(서울지법 97고합436, 서울고법98노193, 대법원 99도 2569)에 따르면 문정수 전 부산시장은 구체적인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한보건설에 특혜를 준 사실도 인정되지 않아 3심 모두 무죄판결이 났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위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사건 처리결과 : 중재결정 (정정보도)

〈결정내용〉

1. 피신청인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고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월간조선 2012년 11월호의 목차에 [별지1] 정정보도문의 제목(문정수 전 부산시장의 사전수뢰' 관련 정정보도문)을 []안에 표시해 게시한다.

2. 피신청인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고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월간조선 2012년 11월호 300페이지~400페이지 사이에 [별지1]의 정정보도문을 보도하되, 제목 활자 크기는 중재대상기사의 부제목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김현철 사건”과 같은 크기로 하고, 본문 활자 크기는 중재대상기사의 본문 크기와 같게 한다.

[별지1]

〈정정보도문〉

가. 제 목 : ‘문정수 전 부산시장의 사전수뢰’ 관련 정정보도문

나. 내 용 : 월간조선은 지난 9월호 ‘국민검사 심재륜의 수사일지’ 기사에서 “정치인 수사과정에 문정수 부산시장이 지역개발건과 관련해 한보건설로부터 2억 원대를 뇌물을 수수해 사전수뢰에 해당돼 불구속수사를 했다”는 내용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대법원은 문정수 전 부산시장이 구체적인 청탁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한보건설에 특혜를 준 사실도 인정되지 않아 무죄 확정판결을 내린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에 따른 것입니다.

신청인의 화랑이 과거 정치인 친척의 도움으로 급부상했고 현재 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12서울조정1485 · 1486, 1487 · 1488(병합)

각 정정 · 손배청구

신청인 : (주)박○○화랑

피신청인 : (주)문화방송

중재부 : 서울제4중재부

종결일 : 2012. 10. 29.

처리결과 : 조정성립 (기사삭제 및 100만원)

■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조간신문의 주요기사들에 대해 소개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초기 실세 정치인들의 친인척 화랑들이 입지가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활발한 경영활동 중인 화랑에 대해서 사실 확인도 없이 친척관계인 정치인을 연관하여 언급하며 신청인의 사업장이 마치 정치적인 배경으로 둘러싸여 경영위기를 맞은 것처럼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정보도와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 관련 기사를 삭제하고 1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MBC :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아침신문보기] 술병 수천 개 널린 경포 백사장…취객들은 밤바다 뛰어 들어 外” 제하의 보도 (2012년 7월 12일 06:00)

내 용 : [앵커] 이번에는 아침신문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먼저 보겠습니다.

올해부터 강릉 경포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음주가 전면 금지된다는 내용입니다.

경찰이 경포해수욕장에서의 음주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젊은 층들이 저녁 8시쯤부터 백사장에서 술판을 벌이면서, 음주에 따른 폭력과 성범죄가 빈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매년 휴가철마다 피서객들이 버리고 간 소주병 등 쓰레기들로 해수욕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는데요.

이에 따라 경찰은 내일 경포해수욕장 개장 때부터 해수욕장의 술 반입과 음주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국민일보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초기 실세 3인방인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과 박형준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박진 전 의원은 공통점은 가족이 갤러리를 운영한다는 것이라는데요.

정 의원의 부인 이화익 씨와 박 전 수석의 부인 조현 씨, 박 전 의원의 사촌누나 박○○ 씨 모두 자신의 이름을 내건 화랑의 대표라고 합니다.

하지만 세 정치인들의 입지가 위기에 처하면서 세 갤러리의 위상도 추락하는 모양새라는데요.

박 전 수석의 부인이 운영하는 ‘조현화랑’은 한때 급부상했지만, 최근 경영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박 전 의원의 사촌누나가 대표로 있는 ‘박○○화랑’도 부도 위기에 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세계일보 보겠습니다.

제작년 8월, 서울에서 CNG 압축천연가스 버스가 폭발해서 승객과 행인 19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는

데요.

하지만 아직도 폐차 지정인 버스 수백 대가 도심을 질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수명 9년을 초과한 CNG 버스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2천7백여 대에 달한다는데요.

이 가운데 2,003대는 폐차 처리됐고, 72대는 재검사를 통해 수명이 연장됐지만, 나머지 671대는 별다른 조치 없이 등록을 유지하고 있고, 현재 정확히 몇 대가 운행 중인지 파악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시한폭탄이 방치돼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만큼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후략)

■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MBC-TV 〈뉴스투데이〉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정정보도문〉

가. 제 목 : 박○○ 화랑 관련 정정보도문

나. 내 용 : 본 프로그램은 지난 7월 12일 “失勢 3인방 ‘가족 갤러리 동반위기’라는 제목으로 박○○ 화랑이 친족관계인 정치인과 연계하여 현재 부도위기에 처해있다는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전 인터뷰 및 취재 없이 화랑이 부도위기에 있다는 보도를 함에 따라 현재 국내외 아트페어 참가 및 기획전시를 바탕으로 활발한 경영활동에 임하는 박

여속 화랑에 대한 보도 내용을 바로잡습니다. 7월 12일자 보도 내용에 언급된 정치인과는 화랑 수익에 대한 어떠한 상관관계도 없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정정 보도 합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금 20,000,000원을 지급한다.

■ 사건 처리결과 : 조정성립 (기사삭제 및 100만원)

〈합의내용〉

1. 피신청인 주식회사 문화방송과 주식회사 아이엠비씨는 서로 연대하여 2012년 11월 14일까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 일백만원(1,000,000원)을 계좌이체(○○은행, ○○○○○○-○○-○○○○○○ 예금주(주)박○○화랑)를 통해 지급한다.

2. 피신청인 주식회사 아이엠비씨는 피신청인의 조정대상기사(http://imnews.imbc.com/replay/nwtoday/article/3095117_5782.html) 중 신청인과 관련한 내용을 삭제하고, DB에 저장된 조정대상기사의 다시보기 동영상 중 신청인과 관련한 내용을 편집·삭제하도록 한다.

3. 피신청인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국민일보가 신청인 관련 전사회 보도를 하면 그 보도가 있는 당일 아침 뉴스투데이 [아침신문보기]에서 국민일보의 신청인 관련 전사회 기사를 소개하도록 한다.

4. 피신청인들이 제1~3항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이 보도와 관련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5. 피신청인들이 제1~3항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피신청인들은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1일에 1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알루미늄 호일의 문제점을 다루는 보도의 취지와 목적을 속이고 사업장을 취재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12서울조정1507

신청인 : 신○○

피신청인 : (주)매일방송

중재부 : 서울제8중재부

종결일 : 2012. 11. 5.

처리결과 : 조정성립 (200만원)

■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알루미늄 호일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면서 신청인의 인터뷰와 회사 전경 영상을 함께 내보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알루미늄 호일의 생산업체 대표로서 생산과정 소개라는 설명을 듣고 촬영에 응했는데 보도 취지와 목적이 달라 회사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며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MBN : 「생활의 재발견」 프로그램 “알루미늄 호일의 진실” 제하의 보도 (2012년 10월 2일 23:00)

내용 : [자막] ‘○’종합금융

[기자] 그렇다면 알루미늄 호일은 언제 처음 어떤 용도로 만들어 진 것일까?

[자막] 알루미늄 호일

1910년 J.G. 네어&선즈사(社)가 스위스에 위치한 호일 압연 공장에서 최초개발

[기자] 1910년 스위스에 한 압연 공장에서 처음 개발되었다.

[자막] 초기에는 담배와 과자 포장지로 사용되다가 1940년대 한 호일 제조사 영업이사가 추수 감사절 칠면조 포장에 호일을 사용하며 미국전역의 가정에 보급됨

신○○ [대표이사/‘ㅇ’종합금속]

[신○○] 저희 사업장에서는 15m 기준으로 (하루) 평균 1만개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기자] 공기와 빛을 차단해 박테리아 성장을 억제 하는데 효과가 뛰어난 알루미늄 호일

[자막] 차단성이 높아 박테리아 성장 억제에 효과가 뛰어난 호일

[기자] 그런데 알루미늄이 문제다.

3. 피신청인이 위 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매일 1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4. 신청인은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게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금 30,000,000원을 지급한다.

■ 사건 처리결과: 조정성립 (200만원)

〈합의내용〉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2년 11월 9일까지 신청인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해당 조정대상보도의 다시보기 영상 중 신청인을 알 수 있는 부분(초상, 회사주소, 성명 등)을 모자이크 처리한다.

국내언론관계판결

편집자 주 - 사건관계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름·주소 등을 익명처리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판결 원문의 일부를 수정 또는 삭제하였습니다.

[판례 1]

판 결

심층취재 보도프로그램은 신속보도 필요성이 낮아 의혹 수준의 사실을 신빙성이 부족한 자료에만 의존하여 보도했다면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판결요지〉

신속성이 요구되는 뉴스 속보의 경우에는 보도내용의 진실성 여부를 검증할 시간적 여유가 없고 진실 여부를 떠나 그와 같은 보도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신속하게 시청자들에게 전달할 필요성이 더 클 때가 많은 반면, 이 사건 프로그램과 같은 심층취재 보도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그와 달리 신속한 보도의 필요성이 크지 않고 진실 여부를 규명할 시간적 여유나 수단도 비교적 충분하기 때문에 단지 의혹 수준에 머물고 있는 사실을 일방의 진술이나 신빙성 없는 자료에만 의존하여 쉽게 이를 진실이라고 믿고 보도하였다면, 이러한 경우까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사건 : 2011가합14797 손해배상

원고 : 송○○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피고 : 주식회사 문화방송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변론종결 : 2012. 8. 31.

판결선고 : 2012. 9.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부터 2012. 9.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피고는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방송되는 문화방송 텔레비전 ‘생방송 오늘 아침’ 프로그램의 방송 첫 머리 화면 상단에 24급 크기의 고딕활자로 “정정방송”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그 제목 아래 화면에 별지 1 정정방송문을 18급 크기의 명조활자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

금 위 정정방송문을 원 프로그램의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1회 낭독하게 하여야 하고,

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인터넷 주소 <http://www.imbc.com>의 '생방송 오늘 아침' 해당 페이지에 위 가.항 기재 크기 및 종류의 활자로 별지 1 정정방송문을 함께 게시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2 기재 내용을 피고가 운영하는 문화방송 텔레비전의 08:30 프로그램 '생방송 오늘 아침'의 도입부에 제목은 24급 고딕활자, 본문은 18급 명조활자 크기의 문자와 함께 음성으로 통상적인 속도로 1회 방송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IMBC)의 위 프로그램 페이지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자로 게시하고, 원고에게 489,995,2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에 위치한 ○○○○

유치원 및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을 구별하여 지칭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통틀어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 건물 및 그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유치원을 각 설립하여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생방송 오늘 아침'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하는 텔레비전 방송사업자이다.

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둘러싼 원고와 학부모들 사이의 갈등 발생

(1) 이 사건 유치원에 아들 김○○를 등원시키고 있었던 김○○은 김○○가 유치원을 다녀온 후 복통을 호소하자 2011. 1. 13. 유치원을 방문하여 어린이집 원장이었던 표○○과 함께 조리실 냉장고에 보관 중인 식자재를 확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유통기한¹⁾이 지난 김, 전분, 생률 등의 식자재(이하 '이 사건 식자재'라고 한다)를 위 냉장고에서 발견하였다.

(2) 위 사건이 발단이 되어 이 사건 유치원에 아이들을 등원시키고 있었던 학부모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식자재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2011. 2. 21. 1차 간담회가 개최되었는데, 당시 원고와 표○○을 제외한 일부 재직 교사와 조리사 백○○가 위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3) 위 1차 간담회 후 원고는 2011. 2. 22. 학부모들에게 '최근 유통기한이 넘은 식자재가 냉장고 안에 있었고, 그 중 소량의 생크림이 간식시간에 빵과 함께 나왔으며, 유통기한이 넘은 감자가루를 이용하여 조리한 사실도 있었다. 조리실 안전 점검이 부실했던 원고의 과실을 깊이 뉘우치며 용서를 구한다. 다시는 이

1) 김 2010. 12. 21.까지, 진공 포장된 생률 2010. 10. 16.까지, 전분 2010. 1. 11.까지, 쇠고기 스프 2010. 12. 30.까지, 용기 포장된 생률 2009. 3. 31.까지 등

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원장인 원고는 위 사실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취지의 가정통신문을 보냈다. 그러나 원고는 다음날 유치원 7세 반 졸업식 행사 도중 위 가정통신문과는 달리 이 사건 식자재를 아이들에게 먹이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4) 이에 학부모 대표 김○○는 2011. 2. 24. 2차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그 후에도 원고가 여전히 원장직 사퇴 등 학부모들 요구사항의 이행을 거부하자 경기도 화성오산 교육지원청과 화성시청에 이 사건 유치원을 폐원하고 원고의 보육교육 관련 자격을 박탈해 달라는 민원 등을 제기하였으며, YTN과 피고 등 언론매체에 이 사건 식자재를 발견한 사건 등을 제보하였다.

(5) 이에 따라 2011. 2. 25. YTN 뉴스에서 별지 3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위 사건을 보도하기에 이르렀고, 다수의 언론매체도 그 무렵 위 보도내용과 유사한 내용의 인터넷뉴스를 게시하였다.

다. ‘생방송 오늘 아침’ 제작진의 취재 및 방송

(1) 학부모 대표 김○○의 제보를 받은 피고의 ‘생방송 오늘 아침’ 제작진(이하 ‘이 사건 제작진’이라 한다)은 2011. 2. 27. 김○○의 자택에서 학부모들을 만나 이 사건 유치원에 관한 취재를 시작하면서, 김○○가 자신의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 중이던 이 사건 식자재와 원생들의 진단서, 원고가 보낸 가정통신문 등을 확인하였고, 같은 달 28. 오전과 오후 2회에 걸쳐 이 사건 유치원을 방문하여 원고, 표○○, 퇴직교사 등을 취재하였으며, 같은 날 화성오산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계자를 취재하기도 하였다.

(2) 피고는 2011. 3. 1. 08:30경부터 ‘생방송 오늘 아침’ - “유통기한 지난 음식이 밥상에? 수상한 유치원”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약 15분 50초 동안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하였는데, 그 대본은 별지 4 기재와 같고,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전 토크 부분 : 엠씨 최윤영이 유아대상 어학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가 발견되었던 것과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하자 리포터 김승주가 경기도의 한 유치원에서 무려 유통기한이 2년 지난 식자재를 사용하여 파문이 일었고 이에 해당 유치원을 밀착 취재하였다고 밝히는 장면.

(나) 학부모들에 대한 취재 부분 :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와 아이들에 대한 진단서를 보여주고, 학부모들이 유치원 냉장고를 열어보게 된 계기가 비슷한 시기에 아이들에게 장염 등 유사한 병명의 질환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장면.

(다) 유치원 측에 대한 취재 부분 : ① 유치원 측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찾아 갔으나 원장인 원고가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다른 유치원 관계자는 피하기만 하였다는 설명에 이어, ‘나가세요’, ‘대답할 의무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을 연이어 배치한 장면. ② 학부모들이 위 유치원 관계자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의 사용을 인정하지 않았느냐고 따지자 위 유치원 관계자가 이를 부인하면서 ‘아이들의 생명을 제 생명처럼 생각한다’라고 답변하는 장면. ③ 곧이어 관계자의 말과는 달리 퇴직교사로부터 전혀 다른 내용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퇴직교사가 ‘식단에 대하여 몇 번 이야기를 하였고, 원장 등은 따로 음식을 해 먹으며 음식에 대해서는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는 장면.

(라) 반찬 없는 급식 문제에 대한 취재 부분 : ① 불량 식자재 뿐 아니라 학부모들을 분노케 한 또 다른 문제는 반찬 없는 급식 사진이라는 설명에 이어 아이들

의 식판 사진을 비추고 엠씨 신동호가 ‘맨밥을 먹었다는 건가요?’라고 말하는 장면. ② 퇴직교사가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장면에 이어 퇴직교사가 이야기하는 부실 급식의 실태는 심각했다는 설명과 함께 퇴직교사의 ‘자장밥이 나오는 경우 야쿠르트나 단무지 정도만 주고 반찬은 따로 없었다. 일주일에 거의 그런 식단이 제공된다.’는 취지의 인터뷰가 방송되는 도중에, 엠씨 신동호가 ‘이 건 뭐 포로수용소도 아니고’라고, 리포터 김승주가 ‘충격적이죠’라고 말하는 장면.

(마) 난방 문제에 대한 취재 부분 : 교사들과 인터뷰를 하던 중 또 다른 문제점도 드러났다는 설명과 함께 퇴직 교사가 ‘매우 추웠다. 보일러는 항상 절약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10시 반이면 보일러를 꺼야 한다. 원장이 보일러 끄라고 방송을 한다. 몰래 보일러를 켤 때도 있으나 원장이 있으면 돌아다니기 때문에 켤 수가 없었다.’는 취지로 인터뷰를 하는 장면.

(바) 원고에 대한 취재 부분 : ① 직접 음식을 만든 조리사는 사실을 인정하고 현재는 유치원을 떠난 상태라는 설명 후 학부모들의 격앙된 반응을 연이어 배치하고 ‘더 가슴이 미어지는 건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불량 식자재 사용을 인정하는 듯 했던 유치원 측의 태도 변화입니다. 갑자기 말을 바꿨다고 하는데요’라고 말하는 장면. ② 이어 대표자로서의 입장을 묻는 이 사건 제작진의 질문에 원고가 ‘지쳐 가지고 그냥 아무 이야기도 하고 싶지 않다. 문을 닫는다. 유치원도, 어린이집도 다. 지금 너무 떠들어가지고 여기서 내가 무슨 말을 하겠냐’, ‘뭐가 미안한 건데? 그러니까 미안한 이유를... 그냥 미안합니다 이건 아니죠’, ‘먹이지 않았거든요?’라고 답변하자, 리포터 김승주가 ‘먹이지 않았다고 이야기 하죠 계속해서’라고 말하는 장면.

(사) 화성오산 교육지원청 관계자에 대한 취재 부분 :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관내 학부모에게 사과하면서 해당 유치원의 원장이 사임의사를 표시하였고

앞으로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인터뷰를 하는 장면.

(아) 후 토크 부분 : ① 엠씨 신동호가 ‘폐기해야 마땅한 음식을 아이들에게 먹여 놓고 반성하는 기색이 없고, 아이들을 돈벌이의 수단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 제재를 하면 좋겠다.’라고 말하자, 리포터 김승주가 ‘진상조사를 통해서 문제가 드러났을 경우 행정조치만 취할 수 있다. 관계당국의 소홀한 관리도 문제인데 아이들의 건강과 연결되어 있는 만큼 체계적이고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장면. ②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용우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쓴 것을 보니 조리 위생상태도 불량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아이들은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식중독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 복통이나 설사 같은 가벼운 증상 뿐 아니라 뇌막염 같은 심각한 합병증도 유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장면.

라. 이 사건 방송 이후의 정황

(1) 화성시장은 2011. 2. 28.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하여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진열, 보관한 점을 위반 사항으로 하여 30만 원의 과태료처분을 하였고, 화성서부경찰서에 이 사건 유치원 종사자의 아동학대 등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였다.

(2) 또한 학부모 대표 김○○ 등은 화성시청의 위수사의뢰와 유사한 내용의 진정을 화성서부경찰서에 제기하였고, 김○○ 등의 진정 및 화성시청의 수사의뢰에 대하여 화성서부경찰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하여 음식을 조리한 후 원생들에게 급식하였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모두 내사종결 처리하였다. 위 내사 과정에서 조리사 백○○가 원고에게 법률적으로 자문한 결과 경찰서에 출석하여야 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며 출

석을 거부하여 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다.

(3) 한편 경기도 교육청장은 2011. 3. 21. 타인이 이 사건 유치원 운영에 참여한 사실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유치원 원장 자격을 취소하였다.

(4) 이 사건 식자재 등 사건이 발생하기 전 이 사건 유치원의 원생은 150명가량이었으나 그 후 10명가량으로 줄어들었고, 현재는 약 50명의 원생이 위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 8, 9, 11, 17 내지 20, 22, 24 내지 29, 31 내지 34, 39, 40, 43, 44호증, 을제1, 3, 5 내지 9, 11 내지 13, 15,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제2, 16호증의 각 영상, 증인 김정숙, 표○○, 김○○, 김○○의 각 증언, 화성 오산 교육지원청, 화성시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가 이 사건 유치원의 책임자로 특정된 사실이 없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유치원의 운영을 타인에게 맡겨 오다 2011. 3. 21. 교육청으로부터 유치원 원장 자격을 박탈당하였고, 어린이집은 처음부터 원장으로 등록되어 있지도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 사건 유치원의 원장도 아니어서 어느 모로 보나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683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원고를 유치원 대표자, 이 사건 유치원을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유치원이라고 표시하면서 모자이크 처리 및 목소리 변조처리를 하여 원고의 이름과 유치원의 명칭 등을 명시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프로그램이 방송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유치원의 학부모들 사이에 이 사건 식자재에 관한 문제가 알려져 학부모 1, 2차 간담회까지 개최되었고, YTN 등 다른 언론매체에서도 위 문제를 보도한 이후였으므로, 위 프로그램을 본 시청자 중 적어도 위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나 평소 원고를 알고 지내던 주변 사람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언급된 유치원 대표자가 원고를 지칭하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프로그램으로 인한 명예훼손의 피해자는 원고로 특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유치원이 있는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유치원을 설립하여 실제로 운영하는 자로서 사실상 이 사건 유치원의 대표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제작진 역시 원고가 위 유치원의 대표자라는 점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방송을 보도하였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하여 이 사건 유치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유치원의 대표자의 자격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하

여 원고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및 정정방송청구를 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원고의 당사자 적격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²⁾의 요지

(1) 이 사건 식자재를 보관, 사용, 급식한 부분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적시에 폐기하지 못한 불찰로 이 사건 유치원 냉장고에 이 사건 식자재가 보관되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를 사용하여 급식을 한 적은 없으므로 유치원생들의 배탈은 이 사건 유치원과는 무관하다. 원고가 선부르게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생크림, 전분의 사용을 인정한 적은 있으나 그 후 백○○로부터 이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원고의 결백을 알리기 위하여 입장을 변경하였을 뿐 태도를 번복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식자재 중 생물은 발견 당시 진공 포장된 상태로 냉동실에 보관되어 있었으므로 곰팡이가 필 가능성이 없었고, 곰팡이가 핀 생물을 보관한 적도 없다. 오히려 생물에서 발견된 곰팡이는 학부모들이 이 사건 유치원 냉동실에서 생물을 꺼내어 50일 넘게 들고 다니며 보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2) 반찬 없는 급식 부분

이 사건 유치원에서는 식단표에 기재된 대로 반찬을 준비하여 유치원생들에게 급식을 하였다. 피고가 반찬 없는 급식이라면서 방송에 사용한 사진은 아이들이 반찬을 가리지 않고 맛있게 식사를 하는 모습을 학부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담임교사가 찍어서 유치원 인터넷 카페에 올린 것이며, 원고 등 유치원 관계자들이 원생들과는 별도로 식사를 준비하여 먹은 적은 없다.

(3) 겨울철 난방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

기록적인 강추위로 이 사건 유치원의 가스보일러 1대가 동파된 적은 있으나 그 대신 전기 난방기 등을 가동하였기 때문에 난방에는 문제가 없었고, 또한 바닥 난방이 가능한 3층으로 이동하여 교육을 하였으므로 추운 교실에 아이들을 방치한 적은 없다.

(4) 정신적 손해에 관한 위자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사실들과는 다르게 허위의 사실을 방송하여 이 사건 유치원의 실제 운영자인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액은 1억 5,000만 원에 이른다.

(5) 원생수 감소로 인한 손해

또한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하여 이 사건 유치원의 원생수가 급감하였고,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설립자

2) 원고는 ① 곰팡이가 핀 생물을 보관한 부분, ② 이 사건 식자재의 사용으로 유치원 원생들이 배탈이 났다는 부분, ③ 원고 등 유치원 관계자들이 별도로 준비된 식사를 하였다는 부분, ④ 원고가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조리실에 CCTV를 달아주기로 하였으며, 유치원장에서 물러나기로 하였다가 태도를 바꾸었다는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위 주장은 원고의 주장 중 이 사건 식자재 보관, 사용, 급식 부분 또는 반찬 없는 급식 부분과 관련된 것이므로, 원고의 위 ① 내지 ④항 기재 주장을 이 부분에 포함하여 함께 판단하도록 한다.

부담금을 전입한 후 상환 받지 못한 금액 중 2010년도와 비교한 차액으로, 유치원의 경우는 31,500,000원, 어린이집의 경우는 26,795,079원에 이르며, 이 사건 방송 전 수준으로 원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년의 기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원생수 감소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의 합계는 174,885,237원(= 94,500,000원(31,500,000원 × 3년) + 80,385,237원(26,795,079원 × 3년))이다.

(6) 기타 재산상 손해

또한 이 사건 방송 전 이 사건 유치원이 있는 건물과 토지의 시세는 30억 원 정도였으나 방송 이후 시세가 급락하였고, 위 건물과 토지를 급매로 거래할 경우의 손해액은 1억 6,500만 원에 이르는데, 이 또한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로 보아야 한다.

(7)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및 정정보도 의무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방송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의 합계 339,885,237원(= 174,885,237원 + 165,000,000원) 및 정신적 손해 1억 5,000만 원을 모두 배상할 의무가 있고, 위 금전배상만으로는 원고가 입은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 불완전하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기재 정정방송문을 방송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해당 프로그램 페이지에 위 정정방송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송으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

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프로그램은 그 내용이 진실에 합치될 뿐만 아니라, 설령 그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작진은 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또한 피고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송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송에는 위법성이 없다.

4. 이 사건 방송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일반 법리

언론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 또한 텔레비전 방송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방송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참조). 나아가 보도내용 중에서 논란이 되는 표현의 객관적 의미는 그 언어적 문맥 및 그 표현이 이루어진 주변 상황에 의

3) 2012. 4.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의 339,995,237원의 기재는 오키로 보인다.

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설령 보도내용 중 일부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거기에 상대방에 대한 비판이 부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도내용 중의 다른 기재 부분과 함께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취지가 불분명한 일부 내용만을 따로 떼어내어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되며, 표현행위자의 내심의 의도나 상대방의 개인적 이해득실 등 주관적 사정에 따라 그 표현의 객관적 의미가 좌우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6다4527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송 제목은 ‘유통기한 지난 음식이 밥상에? 수상한 유치원’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 및 구성에 있어 1. 다. (2) 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장면을 순차로 방송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방송은 이 사건 유치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한 식사를 원생들에게 급식하고, 원장 등 관계자는 따로 준비된 식사를 먹으면서 원생들에게는 반찬이 없는 맨밥만을 주었으며, 한겨울에도 제대로 난방이 되지 않는 곳에 원생들을 방치하였는데, 책임자인 원고가 태도를 바꿔 부인과 회피로만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내용과 구성으로 편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까지 감안하여 위와 같은 방송제목, 이 사건 프로그램의 구성 및 내용, 전체적인 문맥과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프로그램은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해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거나 적어도 강하게 암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설령,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일부에서 ‘이건 뭐 포로

수용소도 아니고’,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생각한다’, ‘뇌수막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등의 이 사건 유치원 관계자를 비판하거나 전문가의 소견을 밝히는 내용의 의견표명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를 강조하기 위한 부수적인 수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송으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다.

5. 위법성 조각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일반 법리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표현행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 29 판결 등 참조).

먼저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고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그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2049 판결 등 참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개인적인 목적 또

는 동기가 내포되어 있거나 그 표현에 있어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들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도1239 판결 등 참조).

다음으로 ‘진실한 사실’이라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프로그램 방송의 공익성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식자재 등 문제는 아이들의 안전에 관한 문제로서 그 자체로 중요한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는 점, ② 특히 맞벌이 부부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사유로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맡기는 부모들로서는 그 시간 동안 자녀들의 안전과 건강을 오로지 어린이집에 맡기는 수밖에 없어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들에게는 이러한 문제가 매우 예민한 사안일 수밖에 없는 점, ③ 그럼에도 이 사건

식자재 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무렵 유아대상 여학원 등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 등을 사용하여 적발되거나, 어린이 보육기관에서 아동을 학대하여 문제가 된 사례가 다수 있었고, 이에 영유아 보육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있었던 점, ④ 이에 따라 이 사건 제작진은 이와 관련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프로그램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보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다. 이 사건 프로그램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식자재를 보관, 사용, 급식한 부분

이 사건 유치원 조리실 냉장고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전분, 생률 등의 식자재가 발견되었고, 이에 대하여 화성시장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2011. 2. 14. 이 사건 유치원을 방문하여 이 사건 식자재를 발견한 학부모 김○○은 이를 유치원으로부터 약 300미터 떨어진 자신의 과일 가게에 가져와 껏감 냉동고에 보관하였고, 학부모 대표 김○○가 학부모 1차 간담회날인 2011. 2. 21. 이를 넘겨받아 5분 거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옮겨 바로 사진을 찍은 후 냉장고의 냉동실에 보관한 사실, 다수의 유치원생들이 이 사건 유치원에 다니는 동안 위장염 또는 대장염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중 유치원생 최○○, 전○○, 이○○, 이○○은 2010. 12. 22.부터 같은 달 23. 사이 모두 대장염 등 유사한 병명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

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김○○과 김○○가 위 생물을 옮기고 이 사건 제작진 등에 보여주는 과정에서 이를 실온에 노출시켰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유치원과 김○○의 가게, 위 가게와 김○○집 사이의 거리, 이후의 보관 방법에 비추어 발견 당시에는 없었던 곰팡이가 위 과정에서 갑자기 번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발견 당시 생물의 유통기한이 75일이나 지난 시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생물의 보관장소가 유치원 냉장고의 냉동실이 아닌 냉장실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발견 당시 이미 부패했을 가능성이 있고, 김○○가 김○○으로부터 생물을 건네받아 찍은 사진에도 곰팡이가 피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조리사 백○○는 학부모 1차 간담회 당시 이 사건 식자재 중 유통기한이 1년 이상이나 지난 전분의 사용을 인정하였고, 백○○의 위 진술은 이 사건 식자재가 발견된 후 최초의 진술이라는 점에서 더욱 신빙성이 있는 점, ④ 이에 원고도 백○○의 위와 같은 자백을 전해 듣고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가정통신문을 전달하였던 점, ⑤ 그 후 백○○가 최초 자백과 달리 위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위 진술로 인하여 입을 불이익을 고려하여 이 사건 식자재의 사용을 부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⑥ 만일 백○○가 정말로 이 사건 식자재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이와 같은 진실을 밝힐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경찰의 출석요구에 계속 불응하면서 이 사건 식자재의 사용 여부를 끝내 밝히지 않았던 점, ⑦ 이 사건 식자재의 각 유통기한 및 그 종류와 수량 등에 비추어 원고가 단순히 냉장고 정리를 하지 못한 과실로 이를 방치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2010년도 식단표에 의하면 전분이 소스로 사용되는 탕수육® 등이 급식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⑧ 설령 과실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냉장

고에 보관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 조리과정에서 냉장고에 보관 중인 식자재의 유통기한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재료를 사용하기보다는 냉장고에 있었으니 안전하거나 유통기한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믿고 별생각 없이 그 식자재를 사용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유치원에서 이 사건 식자재 등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하여 조리한 음식을 유치원생들에게 급식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유치원생들이 배탈을 일으켰을 개연성 역시 충분하므로, 이 부분은 진실에 합치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작진이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이 사건 유치원에서 이 사건 식자재를 보관, 사용, 급식한 부분을 방송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되었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이상 그 위법성이 조각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2) 반찬 없는 급식 부분

이 사건 프로그램은 이 사건 유치원의 급식 문제를 보도하기 위한 것이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하였다는 부분과 반찬이 없는 급식을 하였다는 부분은 모두 이 사건 유치원의 급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이 사건 방송 취지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반찬 없는 급식 부분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한 문제에 부수되는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상당한 무게를 지닌 별도의 독립된 문제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방송 역시 그러한 차원에서 방송을 진행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진실성 여부 역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의 문제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생들이 탕수육을 케첩과 함께 먹는 것을 좋아해 전분으로 소스를 만든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제시된 유치원생들의 식판에 반찬이 없거나 반찬이 부실하게 제공된 것처럼 보이는 사진은 2009년경 유치원의 담임교사가 식사시간에 아이들을 촬영하여 학부모들이 볼 수 있도록 유치원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것인 점, ② 당초 촬영의 목적 및 계기는 아이들이 반찬을 가리지 않고 맛있게 식사를 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을 뿐 반찬이 부실하다는 점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 위 사진들로부터 반찬 없는 급식을 추정할 수는 없는 점, ③ 식판에 반찬이 없거나 일부만 남아있는 사진 역시 처음부터 반찬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최초 사진의 게시 의도대로 아이들이 반찬을 가리지 않고 잘 먹어서 반찬이 식판에 남아 있지 않았던 것인지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④ 위 사진의 촬영 및 게시 목적에 따라 위 사진이 유치원 인터넷 카페에 게시될 무렵 학부모들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이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던 점, ⑤ 또한 위 인터넷 카페에는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제시된 사진 이외에도 식사 중인 아이들의 사진이 다수 게시되어 있었고, 그 중에는 식판에 반찬이 없거나 일부만 남아있는 사진이 있는데 학부모들이 이러한 사진에 대하여도 어떠한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⑥ 경험칙상 어느 식당이든 짜장밥이나 카레밥 등의 메뉴가 나갈 때는 짜장이나 카레가 그 자체로 반찬의 역할을 하므로 단무지나 장국 이외의 추가적인 반찬이 나가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 점, ⑦ 그럼에도 이 사건 제작진은 퇴직교사의 인터뷰 중 위와 같이 반찬이 나가지 않는 경우가 많은 일품 음식인 자장밥과 관련하여 ‘반찬이 따로 없다’라고 한 부분만을 편집하고 부각시켜 방송하였

던 점, ⑧ 이 사건 제작진과 인터뷰를 한 퇴직교사는 ‘식단이 부실하고 자장밥에는 반찬이 따로 없다’는 취지의 진술⁵⁾을 하였을 뿐 반찬 없는 맨밥을 급식한다고 말한 사실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제4호증의 1 내지 5, 을제7호증의 1, 2, 을제8호증의 6 내지 10, 을제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 김○○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유치원에서 반찬 없는 급식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반찬 없는 급식과 관련한 이 사건 방송의 내용이 진실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겨울철 난방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

최초 이 사건 방송은 이 사건 유치원의 급식 문제를 취재하기 위한 것이었고 겨울철 난방에 관한 문제는 급식 문제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점으로 보도한 것일 뿐 급식 문제에 관한 내용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장이 있었던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의 진실성 여부 역시 따로 살펴보아야 한다.

살피건대 갑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유치원에 2010. 12.분 전기요금인 362,760원, 가스요금이 1,145,100원, 2011. 1.분 전기요금인 564,600원, 가스요금이 2,235,600원, 2012. 2.분 전기요금인 514,790원, 가스요금이 1,284,700원이 부과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1.초경 기록적인 혹한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일러가 동파되어 원고가 이에 관한 수리를 요청하였

5) 인터뷰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을제11호증).

‘양이 적었고, 음식이 싱거웠다. 아이들 입맛에 맞췄다고 조리를 하신 건데 어른들이 먹기에는 좀 힘들었다. 조리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은 의심할 정도는 아니어서 같이 먹었다. 식단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는 있었으나 가정통신문 식단표에 변경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자장밥이 나오면 요구르트나 단무지 정도만 찜다. 가끔 굴이나 이런 식으로, 반찬은 따로 없다. 식단은 많이 부실하고 부족하다는 생각은 든다. 몇 번 식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은 있다. 그런데 저쪽 안에서는 따로 음식을 해먹으니까 간도 맛고 괜찮다고 한다. 음식만 보고서는 솔직히 많이 믿음이 가지 않는다.’

던 점, ② 위 보일러가 동파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유치원에는 바닥 난방 이외에도 전기난방기를 보유하고 있어서 이를 이용하여 위 유치원에 필요한 난방을 하였던 점, ③ 이 기간 동안 원생들이나 학부형들이 이 사건 유치원의 실내 온도가 낮다는 이유로 불만을 제기하거나 이에 관한 항의를 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④ 겨울철 난방에 관한 문제에 관하여 이 사건 제작진과 인터뷰를 한 퇴직교사 역시 이 사건 유치원이 따뜻하지 않았을 뿐 덜덜 떨 정도로 춥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⁶⁾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제4호증의 1 내지 5, 을제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유치원에서 겨울철에 난방을 하지 않고 아이들을 방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겨울철 난방과 관련한 이 사건 방송의 내용이 진실이라는 피고의 주장 역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일반 법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

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표현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지만 표현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후에 밝혀진 사실들을 참고하여 표현 시점에서의 진실성 및 상당성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것이므로, 표현 행위 후에 수집된 증거자료들도 그 판단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다60971 판결 등 참조).

(2) 반찬 없는 급식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진실한 사실임이 입증되지 않았던 반찬 없는 급식 부분(이하 겨울철 난방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과 합하여 진실한 사실임이 입증되지 않는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허위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제작진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급식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식사라는 점을 떠나서, 어느 곳에서 누구에게 제공되는 식사이든지 반찬이 없는 식사를 제공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으로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매우 이례적인 경우이므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비하여 이러한 사안이 발생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 또한 이와 같이 사안은 그 내용이 매우 선정적이고 충격적이기 때문에 이를 접한 시청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충격 역시 일반적인 내용의 보도와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크고, 만일 그러한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역울한 피해 역시 다른 사안에서보다 현저하게 클 수밖에 없다. 반면, 이러한 내용을 보도하는 방

6) 인터뷰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을 제1호증)

‘많이 추웠다. 보일러는 항상 절약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10시 반이면 꺼야 됐고, 항상 보일러 끄라고 방송을 한다. 아이들 낮잠 시간에 몰래 켜는 있었어도 항상 원장님 계실 때는 켜 수가 없었다. 원장님이 돌아다니시기도 했다. 그런데 아이들이 추워서 덜덜 떨 정도는 아니었다. 춥다는 생각보다는 따뜻한 편은 아니었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다.’

송사의 입장에서는 시청자들에게 보다 강렬한 인상을 주고 지속적인 시청을 유도하기 위해 이와 같이 충격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보도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져 자칫 방송사가 보도하기 원하는 내용에 부합하는 자료만을 취사선택하고, 그 반대의 가능성에 대하여는 애써 눈감아 버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보도 대상 내용이 이례적이어서 발생할 가능성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리고 그러한 사안을 취재하고 보도하는 방송사의 지명도나 신뢰성이 높아 시청자에 대한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방송사로서는 보도되는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통상적인 사안보다 더욱 많은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그러한 자료들의 신빙성 여부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통의 상식을 가진 자라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누구라도 그 보도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이를 진실이라고 믿는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위와 같은 원칙과 기준을 배경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방송 약 1주일 전부터 YTN 등 다수의 언론매체에서 이 사건 유치원에서 발생한 이 사건 식자재 등의 문제를 보도하여 이 사건 유치원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는 이미 속보성을 상실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식자재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YTN 등 다른 매체들과 달리 이 사건 방송이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방송은 속보를 내보내는 뉴스가 아닌 심층취재를 하여 사실을 확인한 후 방송을 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③ 따라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긴급하게 방송할 필요성은 많지 않았던 반면 심층적으로 의혹을 취재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위 프로그램을 방송할 필요는 더 많았음에도 이 사건 제작진은 2011. 2. 25. 김○○로부터 제보를 받은 후 같은 달 27.부터 취재를 시작하여 불과 2일 뒤인 2011. 3. 1. 오전 8:30경

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송하였던 점, ④ 학부모들과 퇴직교사의 증언에 의하여 이 사건 제작진이 이 사건 허위 부분에 관한 의혹을 처음 접하게 되었으나 학부모들 역시 아이들 또는 퇴직교사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전해들은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는 퇴직교사의 증언만이 이 사건 허위부분에 관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언이었던 점, ⑤ 경험칙상 현재 직장에 몸담고 있는 자가 직장내에 대한 우호적인 진술을 하는 경우 이를 객관적인 진술로 보기 힘든 면이 있는 반면, 퇴직한 자 역시 퇴직 사유에 따라 이전 직장내에 대한 상당한 반감과 악의를 갖고 있는 경우도 많아 그들이 반드시 내부비리를 객관적이고 진실하게 고발하고 있다고 장담하기도 어려운 점, ⑥ 그럼에도 이 사건 제작진이 퇴직 교사의 퇴직 사유 등 퇴직교사 증언의 신빙성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방송 전에 어떠한 확인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설령 퇴직 교사의 증언이 전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그 증언 자체만으로도 퇴직 교사는 자장밥에는 반찬이 따로 안 나왔거나 전체적으로 식단이 부실하다고 하였을 뿐 이 사건 유치원에서 반찬이 없는 급식을 하였다고 말한 사실은 전혀 없는 점, ⑧ 보도과정에서 표현에 일부 과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더라도 반찬이 없다는 말은 식단이 부실하다는 말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별개의 것으로 이를 단순한 과장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⑨ 학부모와 퇴직 교사에 대한 인터뷰 후 이들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물증은 이 사건 제작진이 학부모들을 통하여 확보한 아동들이 식사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들뿐이었고 이를 뒷받침할 다른 자료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⑩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문제의 사진들은 반찬 없는 급식과는 전혀 무관하게 촬영된 사진이고 그 사진만으로는 원래 처음부터 반찬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이미 식사를 거의 마친 후여서 반찬이 식판에 남아 있지 않았던 것인지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⑪ 물

론 수사기관과 같은 수사력을 갖지 못한 이 사건 취재진으로서의 의혹의 진실 여부를 규명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만일 이 사건 제작진이 이 사건 유치원 관계자들에게 문제가 된 사진을 제시하며 그 출처, 촬영시기 및 동기 등에 관하여 확인한 후 식단표와 대조하여 보기만 하였어도 이 사건 사진이 반찬 없는 급식과는 무관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인 점, ⑫ 이 사건 프로그램의 취재력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제작진이 위와 같은 정도의 확인을 거치는 데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요하거나 고도의 취재기술이나 취재수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이 사건 제작진이 식단이 부실했다는 퇴직 교사의 증언 및 출처와 촬영 동기를 알 수 없는 사진을 취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제작진이 반찬 없는 급식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겨울철 난방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

다음으로 이 사건 방송 중 이 사건 유치원이 겨울철 난방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제작진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 (2)항에서 인정한 ① 내지 ⑥항의 각 사실들에 이어서 앞서 인정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⑦ 겨울철 난방에 관한 보도 부분은 사실상 퇴직 교사의 증언만이 위 보도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는데, 보일러를 끄도록 한 원장의 태도는 보는 관점에 따라 과도한 난방으로 인한 에너지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우리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약행동으로 볼 수도 있는 점, 따라서 ⑧ 그러한 행동 자체보

다는 그로 인한 결과가 어떠하였는지가 더 중요한데, 퇴직 교사의 증언에 의하면 퇴직 교사가 처음에는 ‘많이 추웠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인터뷰 마지막에서 ‘그런데 아이들이 추워서 덜덜 떨 정도는 아니었다. 춥다는 생각보다는 따뜻한 편은 아니었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진술하여 ‘많이 추웠다’는 표현을 ‘따뜻한 편은 아니었다’라고 정정하였던 점, ⑨ 그럼에도 이 사건 제작진은 자신들이 보도하기 원하는 방향으로 퇴직 교사의 인터뷰를 편집하여 퇴직 교사의 마지막 진술은 생략한 채 퇴직 교사가 마지막 진술로 사실상 철회한 것이나 다름없는 ‘많이 추웠다’는 부분만을 부각시켜 마치 이 사건 유치원이 겨울철에 난방을 제대로 하지 않아 원생들이 냉방에서 지냈다고 오해할 수 있는 내용만을 이 사건 방송에서 내보냈던 점, ⑩ 설령 이 사건 제작진이 퇴직 교사의 증언을 이 사건 유치원에서 겨울철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오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작진으로서의 최소한 이 사건 유치원의 난방시설을 확인하여 보던가, 다른 학부모나 원생들을 추가로 취재하여 평소 이 부분과 관련된 원생들의 불만과 학부모들의 항의가 있었는지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부분을 소홀히 하였던 점, ⑪ 이 사건 제작진으로서 취재 당시에 난방 문제에 관한 퇴직교사의 인터뷰 내용이나 이에 관한 취재 계획을 밝히고 원고로 하여금 난방 문제에 관한 부분을 해명할 기회를 제공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방송 이전까지 원고에게 난방에 관한 문제를 보도한다고 알리거나 이에 관한 해명의 기회를 부여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작진이 학부모, 퇴직교사를 상대로 취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방송에서 보도된 이 사건 유치원의 겨울철 난방 문제를 진실이라고 믿는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허위 부분의 방송은 모두 이 사건 제작진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는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결국 모두 이유 없다.

6.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방송 전 이 사건 유치원의 원생은 150명가량이었으나 이 사건 식자재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 후 원생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현재 약 50명의 원생만이 이 사건 유치원에 남아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생수의 감소가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방송을 시청하는 것만으로 이 사건 유치원을 특정하기는 어렵고, 위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나 기타 관련자들만이 이를 알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방송 당시는 이미 1, 2차 학부모 간담회가 개최되었을 뿐만 아니라, YTN 뉴스 등 다른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하여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이 사건 방송에서 보도한 내용을 알고 있었던 점, ② 이에 따라 이 사건 방송 전, 즉 학부모 2차 간담회가 있었던 2011. 2. 24.부터 이미 이 사건 유치원의 학부모들로부터 집중적인 환불요구가 시작되었던 점, ③ 이 사건 방송이 시청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른 매체의 보도보다 훨씬 크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방송 내용의 대부분은 이 사건 식자재 등의 보관, 사용, 급식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허위 부분은 이 사건 유치원의 총제적인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포함되었을 뿐 이 사

건 방송의 주된 내용은 아니었던 점, ⑤ 따라서 이 사건 허위 부분의 방송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진실한 부분의 방송 내용만으로도 이 사건 유치원의 원생수는 급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강제15 내지 18, 23, 32 내지 35, 40호 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표○○, 김정숙의 각 증언, 화성오산교육지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이 사건 허위 부분의 방송으로 인하여 원생수가 급감하였다거나 이 사건 유치원 건물 및 토지의 가격이 하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러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액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위자료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이 사건 허위 부분이 방송되어 위법하게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적절한 위자료 금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인지도나 신뢰도 및 시청자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한 공중파 방송사로서 이 사건 방송을 시청한 다수의 일반 시청자들로서는 이 사건 방송의 내용을 별다른 의심 없이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이 사건 허위 부분은 그 내용이 보통 사람으로서 생각하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서, 시청자들로서는 단순히 부주의함을 넘어 원고를 지극히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위선자로 낙인찍게 될 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로서는 원고에 대한 이러한 인상을 오랜 기간 동안 간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피해는 결코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방송 이전에 이미 학부모 1, 2차 간담회나 YTN 등 다른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하여 이 사건 유치원의 급식 문제가 주변 학부모들 및 일반 시민들 사이에 상당히 알려져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방송 내용의 대부분은 이 사건 식자재 등의 보관, 사용, 급식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허위 부분은 이 사건 유치원의 총체적인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포함되었을 뿐 이 사건 방송의 주된 내용은 아니었던 점, ③ 따라서 이 사건 허위 부분의 방송이 아니었더라도 이 사건 방송 이전의 보도나 이 사건 방송 중 나머지 진실한 부분의 방송 내용만으로도 원고의 명예는 이미 상당 부분 훼손될 수밖에 없어서 이 사건 허위 부분의 방송이 원고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④ 이 사건 제작진이 이 사건 유치원에 방문하였을 당시 원고 역시 위 제작진의 취재를 피하려고만 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이 사건 허위 부분에 대한 해명에 나서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 역시 피고에게 유리한 요소로 위자료 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에서 살핀 여러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피해에 관한 위자료 액수를 3,000만 원으로 정하기로 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송일인 2011. 3. 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9. 2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7. 정정방송 청구에 관한 판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과 무관하게 그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사실적 주장에 관한 피고의 이 사건 허위 부분 방송으로 인하여 원고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위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방송부분에 대하여 정정방송을 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정정방송문의 내용 및 방송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방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방송이 나간 시간대 및 그 비중, 표현방법과 방송 내용,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 정도, 언론 보도에서 고려해야 할 공익 및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정정방송의 내용 및 분량과 글자의 크기 및 모양, 방송방법, 방송시기 등을 주문과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에게 주문과 같은 내용과 방법의 정정보도를 명하고,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8.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배

판사 박주영

판사 정순열

(별지 1, 2, 3, 4 생략)

[판례 2]

‘기사형 광고’에서 광고라는 명확한 표시가 없다면 언론사는 보도기사 게재자로서 기사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여 게재할 의무가 있다.

〈판결요지〉

가. 일반적으로 언론 매체에 게재되는 기사의 저작권은 기사 작성자가 소속하는 언론사가 가지는 반면, 광고의 저작권은 광고주에게 있는데, 피고 디지털와이티엔의 기사 마지막 부분에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전재-재배포 금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일반 독자로서는 위 기사가 피고 디지털와이티엔에 의해 작성된 ‘보도기사’라고 판단하기 쉬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디지털조선일보, 피고 제이큐브 인터랙티브의 기사 마지막에는 작성자가 ‘객원기자’로 표시되어 있는데, 일반 독자들은 ‘객원기자’의 명확한 의미를 아는 것이 쉽지 않고, 이를 언론사의 밖에서 기사를 작성하여 이를 관련 언론사에 송고하는 형식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자로 판단하기 쉬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기사에 대하여는 ‘단순한 광고’가 아니라 ‘보도기사’의 게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 디지털와이티엔은 대행업체를 통하여 형식적인 심사만으로 하이플러스플라자를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업체로 선정하여 하이플러스플라자가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광고하게 함으로써, 이○○ 등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디지털와이티엔 등은 적어도 과실에 의한 방조의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할 것인바,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위 구매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헤럴드미디어가 게재한 기사에는 다른 피

고들의 기사에서와 같은 ‘1년 이상 또는 다년간 온라인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기사의 다른 내용을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의 다소의 과장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어서 위 피고가 게재한 기사로 인하여 이○○ 등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기범행이 용이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위 피고가 피고 디지털와이티엔 등과 공동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는바, 따라서 피고 헤럴드미디어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 결

사건 : 2011가합127350 손해배상

원고 : 임○○ 외 104명 :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

피고 : 1. 디지털와이티엔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김○○, 조○○

2.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

대표이사 김○

3.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4.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

대표이사 유○○

피고 2 내지 4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

피고 1. 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두드림커뮤니케이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정○○

변론종결 : 2012. 9. 19.

판결선고 : 2012. 10. 10.

주 문

1. 피고 디지털와이티엔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주식회사는 각자 원고에게 별지 2 피해내역의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12. 16.부터 2012. 10.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디지털와이티엔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주식회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디지털와이티엔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그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과 피고 디지털와이티엔 주식회사의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2 피해내역의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디지털와이티엔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이하 피고들을 지칭할 때에는 ‘주식회사’를 생략한다)는 각 인터넷신문인 ‘http://www.ytn.co.kr’, ‘http://news.chosun.com’, ‘http://joongang.co.kr’, ‘http://heraldbiz.com’을 운영하는 언론법인이다.

2) 원고들은 인터넷 쇼핑몰인 ‘하이플러스프라자(www.hiplusplaza.com)’를 통하여 전자제품을 구입하기로 하고, 별지 2 피해내역의 피해일시란 기재와 같이 2011. 6. 28.부터 2011. 7. 16.까지 사이에 위 쇼핑몰 사이트의 운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청구취지 기재 해당 금액을 송금하였으나 아무런 제품도 배달받지 못하여 위 청구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이다.

나. 홍보 기사 내용 및 게재경위 등

1) 피고 디지털조선일보,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는 2011. 5.경 인터넷 쇼핑몰의 운영자인 ‘하이플러스’¹⁾의 언론홍보대행사인 주식회사 오픈프레스(이하 ‘오픈프레스’라 한다)가 제공한 내용을 2011. 5. 19. 자신들의 인터넷 신문인 ‘http://news.chosun.com’, ‘http://joongang.co.kr’에 각 <국내 대표 네트워크 쇼핑몰 하이플러스프라자 이벤트 풍성>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3-1 기재 기사(갑 2호증의 3, 4)와 같이 게재

하하였고, 피고 헤럴드미디어 역시 오픈프레스로부터 넘겨받은 내용을 2011. 5. 20. 자신의 인터넷 신문인 ‘http://heraldbiz.com’에 <생활가전 똑똑하게 사는 법, 네트워크 전문 쇼핑몰 하이플러스프라자에 가면 OK>라는 제목으로 별지 3-2 기재 기사(갑 20호증)와 같이 게재하였다. 피고 디지털조선일보,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가 게재한 기사에는 각 기사 마지막에 작성자가 ‘이○○ 객원기자 ○○○○○○○○○@osen.co.kr’로 표시되어 있고, 피고 헤럴드미디어가 게재한 기사에는 작성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

2) 한편, 피고 디지털와이티엔은 2010. 10. 18. 피고 1.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Digital YTN E-biz 브랜드 대상 마케팅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보조참가인에게 E-biz 브랜드 대상업체의 선정 및 운영업무를 대행시켰다. 이에 보조참가인은 2011. 5.경 오픈프레스로부터 ‘디지털와이티엔 2011년 상반기 E-biz 브랜드 대상 선정 신청’을 접수받고, 소비자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거쳐 그 무렵 하이플러스프라자를 ‘E-biz 브랜드 대상’ 업체로 선정하였다. 이후 피고 디지털와이티엔은 2011. 6. 15. 자신의 인터넷 신문인 ‘http://www.ytn.co.kr’의 <비즈니스정보>란에 <E-BIZ 브랜드 대상 인터넷 최저가 가전제품, 하이플러스프라자>라는 제목으로 별지 3-3 기재 기사(갑 2호증의 2)를 게재하였는데, 이는 하이플러스가 제공한 내용을 그대로 게재한 것이고, 기사 마지막에는 ‘본 자료는 해당 업체에서 제공한 비즈니스 정보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위 기사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기사’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하이플러스프라자는 국내의 대표적인 온라인 가

1) 2011. 3. 31. ‘김○○’을 대표자로 하여 ‘하이플러스’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 신고 및 통신판매업 등을 종목으로 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이 이루어졌고(을다 3호증), 이후 2011. 6. 7. ‘이○○’를 대표자로 하여 ‘하이플러스프라자’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업을 종목으로 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이 이루어졌다(갑 11호증).

전쇼핑몰로서 이곳에서 대표적인 가전브랜드들의 제품을 국내 최저가로 구입할 수 있다.

○ 하이플러스프라자에서 고객들의 단순 변심에 의해 반품된 제품들을 최대 90%까지 할인 판매하는 리퍼브숍을 운영하고 있어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하이플러스프라자가 다양한 특별할인 혜택과 사은품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다. 원고들이 피해를 입게 된 경위 등

원고들은 포털사이트에서 가전제품을 저렴하게 파는 인터넷 쇼핑몰에 관한 기사를 검색하던 중 하이플러스프라자를 알게 되어, 위 업체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였다. 당시 위 홈페이지의 우측 상단에는 “수많은 언론에서도 극찬한 하이플러스프라자”라는 제목 밑에 피고들의 상호가 배너(banner)²⁾ 형태로 게시되어 있었고, 이를 클릭하면 이와 링크된 이 사건 각 기사를 읽을 수 있었다. 또한 위 홈페이지의 중간 하단에는 ‘피고 디지털와이티엔이 수여한 2011년도 E-biz 브랜드대상을 수상하였다’는 내용이 그래픽 형태로 표시되어 있다. 원고들은 위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 사건 각 기사를 읽고 또한 하이플러스프라자가 피고 디지털와이티엔에서 2011년에 E-biz 브랜드대상을 수상할 정도로 우량한 쇼핑몰 업체라고 판단하여 위 업체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을 통하여 전자제품을 구매하기로 결정하고 제품주문을 하여 2011. 6. 28.부터 2011. 7. 16.까지 사이에 각 물품대금 상당인 청구취지 기재 해당 금액을 위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송금하였으나, 아무런 제품도 배달받지 못하였다.

라. 관련 형사사건

하이플러스프라자를 운영한 이○○, 이○○는 원고들과 같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1, 2심에서 유죄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단1480, 2012노116, 270(병합)]을 선고받았다³⁾.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갑 4호증, 갑 6호증의 1 내지 갑 7호증의 28, 갑 16호증, 갑 20호증, 갑 34호증의 1 내지 갑 50호증, 을가 5 내지 을가 9호증, 을다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피고들은 각 공신력 있는 유명 언론사들로서 이들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에 게재된 기사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높은 신뢰성을 부여하게 되는데, 이 사건 각 기사는 내용이 허위이거나 과장이 심한 것이 있음에도 피고들이 이를 자신들의 인터넷 신문에 그대로 게재하였고, 이런 기사를 신뢰한 원고들이 하이플러스프라자에서 물품을 구입하였다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고의, 과실에 의한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들

2) 홈 페이지에 띠 모양으로 만들어 부착하는 인터넷상의 광고 형태. 처음에는 직사각형의 모양에 도메인과 사업 내용을 알리는 단순한 형태로 시작했으나, 요즘에는 동화상을 넣는 형태나 홈 페이지를 열면 화면에 고정적으로 배치되는 형태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3) 이후 이○○ 등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기각으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 디지털와이티엔은 기사 마지막에 '본 자료는 해당 업체에서 제공한 비즈니스 정보입니다'고 명시하였고, 피고 디지털조선일보,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의 기사에는 그 작성자가 '이○○ 객원기자 ○○○○○○○○○@osen.co.kr'로 되어 있으며, 피고 헤럴드미디어의 기사에는 그 작성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는 등으로 일반인도 쉽게 이 사건 각 기사가 '광고'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하이플러스나 그 언론홍보 대행사가 제공하는 광고를 그대로 게재하였을 뿐인 피고들에게 그 광고내용이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각 기사가 단순한 광고가 아닌 '기사'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외부에서 제공된 '기사형 광고'를 그대로 게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피고들의 소속 기자들이 위 기사들을 작성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기사형 광고'의 내용이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어 원고들의 피해를 배상할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기사가 '단순한 광고' 인지 여부 - 부정
신문, 방송, 인터넷 신문 등의 언론기관이 보도하는 기사에 대한 신뢰는 해당 언론기관이 가지는 높은 정보수집능력에 대한 일반인의 기대에 근거한 것이므로, 언론기관이 이 사건 각 기사와 같이 특정 업체를 홍보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른바 '기사형 광고'⁴⁾를 그 작성자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그대로 게재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광고임을 명백히 표시하여 독자로 하

여금 신중하게 거래에 임하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여 독자들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도기사'를 게재한 언론기관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케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앞서의 기초사실 및 갑 2호증의 2 내지 5, 갑 20호증, 을다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기사에는 그것이 광고임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기사의 형식도 일반적인 보도기사와 매우 유사하게 되어 있는 사실, 피고 디지털와이티엔의 기사 끝부분에는 기사의 작성자가 위 피고임을 전제로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전재-재배포 금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디지털조선일보,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는 주식회사 오에스이엔(osen)과 콘텐츠 사용 계약을 체결하여 위 회사로부터 앞서 본 기사를 제공받아 게재하였는데, 그 기사 마지막에는 그 작성자가 '객원기자'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이 사건 각 기사가 '뉴스'로 검색되고 있는 사실, 피고 헤럴드미디어의 기사는 인터넷 신문의 '뉴스' 부분에 게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객관적인 위치에서 기사를 작성하여 게재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언론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기사처럼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다면 이를 접한 독자들로서는 위 기사들이 단지 특정 상품이나 업체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광고'라기 보다는 언론사가 취재하여 작성한 '기사'라고 판단하기 쉬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일반적으로 언론 매체에 게재되는 기사의 저작권은 기사 작성자가 소속하는 언론사가 가지는 반면, 광고의 저작권은 광고주에게 있는데, 피고 디지털와이티엔의 기사 마지막 부분에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전재-재

4) Advertorial = Advertisement + Editorial

배포 금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일반 독자로서는 위 기사가 피고 디지털와이티엔에 의해 작성된 ‘보도기사’라고 판단하기 쉬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디지털조선일보,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의 기사 마지막에는 작성자가 ‘객원기자’로 표시되어 있는데, 일반 독자들은 ‘객원기자’의 명확한 의미를 아는 것이 쉽지 않고, 이를 언론사의 밖에서 기사를 작성하여 이를 관련 언론사에 송고하는 형식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자로 판단하기 쉬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기사에 대하여는 ‘단순한 광고’가 아니라 ‘보도기사’의 게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기사의 진실성을 조사할 의무를 태만히 하였는지 여부 - 일부 긍정

광고는 광고주의 이름과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하나, 언론 광고에 대한 신뢰는 고도의 정보 수집능력을 가지는 언론의 보도기사와 무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광고의 매개(媒介)업무를 담당하는 언론으로서의 언론 광고가 가지는 막강한 영향력에 비추어 일반 독자의 신뢰를 보호할 책임이 있고, 따라서 광고의 내용에 의심을 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고 이로 인해 독자에게 예측하지 못하는 손해를 가할 것을 예견하거나 쉽사리 예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광고의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여 허위의 광고를 독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언론은 광고를 게재함에 있어 그것이 광고임을 명백히 표시하여 독자로 하여금 신중하게 거래에 임하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고, 또한 언론 자신이 게재하는 기사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진실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기사 내용을 신뢰한 독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보도기사’와의 구분이 용이하지 아니한 형태로 게재되는 이른바 ‘기사형 광고’의 경우에는 일반 보도기사와 동

일하게 해당 기사의 내용에 의심을 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도, 기사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여 게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기사는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대부분이 ‘하이플러스프라자’를 홍보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일부 기사의 경우에는 <본 자료는 해당 업체에서 제공한 비즈니스 정보입니다>라는 표현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각 기사는 ‘기사형 광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자체로써 광고임이 명백하게 표시되어 있지는 아니하여 일반 독자들이 보도기사로 오해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들은 위 기사의 진실성을 확인하여 게재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디지털와이티엔, 피고 디지털조선일보,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이하에서는 위 3인의 피고들을 ‘피고 디지털와이티엔 등’이라 한다)의 기사에는 ‘1년 이상 또는 다년간 온라인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하이플러스는 2011. 3. 11.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마쳤기 때문에 위와 같은 기사내용은 명백히 허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위 피고들이 위와 같은 하이플러스의 사업자등록을 확인하였다면 어렵지 않게 하이플러스가 사업경험이 전혀 없는 업체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 디지털와이티엔 등이 이 사건 각 기사를 게재하였기 때문에 하이플러스프라자의 운영자가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위 피고들의 상호를 배너 형태로 게시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원고들이 위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의 상호에 링크되어 있는 위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기사를 보고 하이플러스프라자 홈페이지의 게시내용을 신뢰하여 위 사이트에서 전자 제품을 구매하기로 결정한 후 제품주문을 하면서 2011. 6. 28.부터 2011. 7. 16.까지 사이에 각 물품대금 상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이 위와 같

은 구매결정에 이른 것은 우리사회에서 상당한 공신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언론기관인 위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이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디지털와이티엔의 경우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Digital YTN E-biz 브랜드 대상 마케팅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보조참가인에게 2011년 E-biz 브랜드 대상업체의 선정 및 운영업무를 대행시켰고, 그 결과 사업경력이 3개월도 되지 아니한 하이플러스플라자가 간단한 설문조사 등만으로 E-biz 브랜드 대상 업체로 선정되어, 위 사실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게 되었는바, 일반 독자들로서는 위 브랜드 대상 수상이 공신력 있는 언론기관인 피고 디지털와이티엔이 실시한 엄정한 절차를 통하여 선정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디지털와이티엔 등은 허위내용의 이 사건 각 기사를 게재하였고, 아울러 피고 디지털와이티엔은 위와 같이 대행업체를 통하여 형식적인 심사만으로 하이플러스플라자를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업체로 선정하여 하이플러스플라자가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광고하게 함으로써, 이○○ 등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디지털와이티엔 등은 적어도 과실에 의한 방조의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위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위 구매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편, 갑 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헤럴드미디어가 게재한 기사에는 다른 피고들의 기사에서와 같은 '1년 이상 또는 다년간 온라인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기사의 다른 내용을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의 다소의 과장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어서 위 피고가 게재한 기사로 인하여 이○○ 등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기범행이 용이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위 피

고가 피고 디지털와이티엔 등과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는바, 따라서 피고 헤럴드미디어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에서 기사의 진실성을 조사할 의무를 태만히 하여 원고들에게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당사자는 피고 디지털와이티엔 등이고, 피고 헤럴드미디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책임의 제한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 대부분이 하이플러스플라자를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것이고, 일부 기사의 경우에는 <본 자료는 해당 업체에서 제공한 비즈니스 정보입니다>라는 표현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각 기사는 비록 기사의 형식을 갖추기는 하였으나 그 실질은 광고인 이른바 '기사형 광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를 접하는 독자들이 위 각 기사의 내용을 좀 더 세심하게 보았다면 기사의 목적이 단순히 객관적 진실을 밝히거나 순수한 공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특정 업체인 하이플러스플라자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들이 앞서 본 구매행위에 나아가게 된 원인이 오로지 피고 디지털와이티엔 등의 이 사건 각 기사를 본 때문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들이 하이플러스플라자에서 제시하는 저렴한 가격 등에 현혹된 것이 더 큰 원인이었다고 보이는 점, 하이플러스플라자가 제시한 가격은, 온라인 쇼핑몰이 제시하는 가격의 경우 오프라인보다 상당히 저렴하다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저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경우 사기적인 거래가 적지 아니하므로 원고들로는 스스로 위 거래업체의 실적 등

을 확인하거나 대금 지급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여 사기 거래로 인한 피해 발생을 최소화할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판단에 따라 상품 구매를 결정한 소비자들에게 그 구매로 인한 결과책임을 일정 부분 부담시키는 것이 대량·신속성을 특징으로 하는 온라인 쇼핑의 거래관행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기사를 통해 광고매체인 피고 디지털와이티엔 등이 얻은 광고수입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디지털와이티엔 등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이를 3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소결

따라서 피고 디지털와이티엔 등은 각자 원고들에게 별지 2 피해내역의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인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 12. 1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10.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디지털와이티엔 등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각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헤럴드미디어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노만경

판사 심병직

판사 김석재

(별지 1, 3-1, 3-2, 3-3 생략)

[별지 2]

피해내역

순번	원고	피해일시 ⁵⁾	청구금액 (원)	인용금액 (원)
1	임○○	2011. 7. 8.	664,000	199,200
2	조○○	2011. 7. 13.	295,850	88,755
3	김○○	2011. 7. 11.	1,674,220	502,266
4	안○○	2011. 7. 14.	1,105,800	331,740
5	이○○	2011. 7. 13.	247,600	74,280
6	정○○	2011. 7. 12.	2,081,620	624,486
7	이○○	2011. 7. 8.	2,414,700	724,410
8	임○○	2011. 7. 9.	252,000	75,600
9	김○○	2011. 7. 4.	2,578,260	773,478
10	백○○	2011. 7. 14.	2,586,020	775,806
11	정○○	2011. 7. 12.	1,257,120	377,136
12	이○○	2011. 7. 4.	1,020,440	306,132
13	최○○	2011. 7. 12.	309,430	92,829
14	이○○	2011. 7. 11.	331,740	99,522
15	최○○	2011. 7. 11.	3,458,950	1,037,685
16	나○○	2011. 7. 12.	522,500	156,750
17	이○○	2011. 6. 29.	2,955,000	886,500
18	신○○	2011. 7. 12.	672,210	201,663
19	차○○	2011. 7. 9.	646,020	193,806
20	최○○	2011. 7. 6.	1,336,850	401,055
21	안○○	2011. 7. 8.	372,000	111,600
22	서○○	2011. 7. 13.	2,487,000	746,100
23	이○○	2011. 7. 11.	303,000	90,900
24	우○○	2011. 7. 7.	369,000	110,700
25	이○○	2011. 7. 13.	532,000	159,600
26	오○○	2011. 7. 3.	455,000	136,500
27	김○○	2011. 7. 12.	1,025,290	307,587
28	김○○	2011. 7. 11.	430,680	129,204

5) 피해일이 다수인 경우 최초 피해일만 기재

29	선○○	2011. 7. 11.	1,128,210	338,463
30	전○○	2011. 7. 12.	1,057,300	317,190
31	김○○	2011. 7. 6.	855,000	256,500
32	허○○	2011. 7. 12.	1,191,160	357,348
33	김○○	2011. 7. 14.	342,410	102,723
34	구○○	2011. 7. 13.	1,141,690	342,507
35	정○○	2011. 7. 12.	1,396,000	418,800
36	김○○	2011. 6. 29.	230,000	69,000
37	임○○	2011. 7. 12.	2,203,840	661,152
38	송○○	2011. 7. 11.	1,470,520 ⁶⁾	441,156
39	손○○	2011. 7. 6.	1,035,000	310,500
40	김○○	2011. 7. 12.	220,190	66,057
41	김○○	2011. 7. 3.	882,700	264,810
42	방○○	2011. 7. 10.	280,000	84,000
43	한○○	2011. 7. 13.	895,310	268,593
44	유○○	2011. 7. 12.	2,204,810	661,443
45	김○○	2011. 7. 13.	1,317,260	395,178
46	유○○	2011. 7. 7.	2,309,000	692,700
47	맹○○	2011. 7. 5.	881,000	264,300
48	최○○	2011. 6. 30.	230,000	69,000
49	정○○	2011. 7. 5.	983,810 ⁷⁾	295,143
50	홍○○	2011. 7. 13.	624,680	187,404
51	김○○	2011. 7. 12.	294,000	88,200
52	박○○	2011. 7. 13.	1,373,520	412,056
53	이○○	2011. 7. 2.	1,816,500	544,950
54	지○○	2011. 7. 11.	1,584,010	475,203
55	장○○	2011. 7. 16.	320,000	96,000
56	제○○	2011. 7. 12.	796,370	238,911
57	유○○	2011. 6. 28.	770,000	231,000
58	정○○	2011. 7. 14.	1,824,570	547,371
59	송○○	2011. 7. 12.	321,100	96,330
60	노○○	2011. 7. 14.	255,110	76,533
61	박○○	2011. 7. 4.	270,000	81,000
62	송○○	2011. 7. 8.	767,000	230,100
63	최○○	2011. 7. 12.	1,145,570	343,671
64	이○○	2011. 7. 7.	1,284,000	385,200
65	차○○	2011. 7. 11.	380,240	114,072
66	장○○	2011. 7. 13.	895,310	268,593
67	이○○	2011. 7. 6.	378,000	113,400
68	김○○	2011. 7. 10.	1,073,790	322,137

69	홍○○	2011. 7. 8.	303,000	90,900
70	조○○	2011. 7. 2.	741,200	222,360
71	안○○	2011. 7. 8.	1,295,920	388,776
72	김○○	2011. 7. 11.	1,317,260	395,178
73	조○○	2011. 7. 4.	943,140	282,942
74	김○○	2011. 7. 12.	803,160	240,948
75	조○○	2011. 7. 14.	928,290	278,487
76	강○○	2011. 7. 9.	338,000	101,400
77	변○○	2011. 7. 11.	556,780	167,034
78	송○○	2011. 7. 9.	318,000	95,400
79	조○○	2011. 7. 10.	786,600	235,980
80	김○○	2011. 7. 15.	550,960	165,288
81	강○○	2011. 7. 13.	870,090 ⁸⁾	261,027
82	권○○	2011. 7. 11.	544,000	163,200
83	정○○	2011. 7. 11.	380,240	114,072
84	노○○	2011. 7. 11.	876,880	263,064
85	황○○	2011. 7. 8.	578,000	173,400
86	이○○	2011. 7. 9.	295,000	88,500
87	오○○	2011. 7. 11.	472,390	141,717
88	김○○	2011. 7. 6.	844,000	253,200
89	김○○	2011. 7. 11.	572,300	171,690
90	박○○	2011. 7. 4.	1,990,440	597,132
91	최○○	2011. 7. 13.	1,999,170	599,751
92	최○○	2011. 7. 11.	351,140	105,342
93	김○○	2011. 7. 13.	308,460	92,538
94	김○○	2011. 7. 13.	391,880	117,564
95	김○○	2011. 7. 13.	428,000	128,400
96	참○○○○	2011. 7. 6.	1,638,000	491,400
97	김○○	2011. 7. 11.	1,545,210	463,563
98	정○○	2011. 7. 12.	554,000	166,200
99	권○○	2011. 7. 12.	672,210	201,663
100	박○○	2011. 7. 12.	991,800	297,540
101	김○○	2011. 7. 13.	787,500	236,250
102	안○○	2011. 7. 14.	895,810	268,743
103	박○○	2011. 7. 13.	11,046,360	3,313,908
104	한○○	2011. 7. 14.	1,321,140	396,342
105	안○○	2011. 7. 8.	839,050	251,715
합계			110,888,660	33,266,598

6) 청구취지에서는 '1,407,52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갑 6호증의 38호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1,470,52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7) 청구취지에서는 '980,81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갑 6호증의 49호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983,81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8) 청구취지에서는 '870,59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갑 6호증의 81호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870,09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외국언론관계판결

편집자 주 -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건관계인의 이름·주소 등을 익명처리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판결 원문의 일부를 수정 또는 삭제하였습니다.

[일본판례]

입증조사 없이 소문이라는 표현을 빌어 진실이 확인되지 않은 기사를 작성하였다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가. 일반 독자의 보통의 주의와 읽는 방법을 기준으로 보면 「원고는 신사옥의 용지로 한 합동청사의 철거지를 경매에 의하지 않고 혈값에 도시재생기구가 취득토록 하여 그 권리를 차지했으며 그 후 용적률을 1,590%로 끌어올려 용적률 700%로 계산된 불하가격과의 차이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기사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이는 일반 독자들에게 대해 마치 원고가 신사옥의 부지를 취득하면서 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도모했다는 인상을 주는 것으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다.

나. 사람들의 소문이라는 표현을 빌려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소문 자체의 존재가 아닌 그 소문의 내용인 사실이 적시사실로 해석된다(최고재판소 1968년 1월 18일 제1소법정 판결). 그러므로 「“죽림의 방”은 임원의 친척에게 발주되었다는 소문이 떠돌았다」는 기사는 「원고는 신사옥의 응접

실의 공사 등을 부정하게 원고의 임원이 친척에게 발주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다. 원고 직원들의 자살에 관한 기사 내용은 전해들은 이야기에 불과하며 그 내용도 애매함으로 이러한 증거만을 가지고 파위하라(직권을 이용한 괴롭힘)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실이 진실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려면 입증조사가 필요한데 피고들에게서는 입증조사를 한 흔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 하에서는 피고들이 원고 내부직원들의 소문을 가지고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확실한 자료나 근거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진실이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공공성·공익성의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

도쿄지방법원

민사제5부

판 결

사건 : 도쿄지법 2010(7) 제15862호

원고 : 주식회사 X신문사

대표이사 니노미야 아키오(二宮昭男)

피고 : 주식회사 Y

대표이사 코오노 하루히코(甲野春彦) 외 1명
판결선고 : 2011. 6. 8.
참조조문 : 민법 709조 · 723조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 대해 연대하여 160만엔을 지불하라.
2. 원고의 다른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0등분하여 그 1을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를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이 판결은 제1항에 한해 가집행 할 수 있다.

사실 및 이유

제1. 청구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연대하여 4,500만엔을 지불하라.
2. 피고들은 원고회사 X회사가 발행하는 「X신문」 및 피고회사 Y가 발행하는 월간지 「WAI」에 별지 1 기재의 사과기사를 별지 2 기재의 게재조건으로 게재하라.

제2. 사건의 개요

1. 본 사건은 신문사를 운영하는 원고가 주식회사 Y(이하「피고회사」로 한다)가 발행하는 월간지 「WAI」(이하「본건잡지」로 한다)에 게재된 원고에 관한 2건의 기사(이하「본건각기사」로 한다)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며 피고회사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코호노 하루히코(甲野春彦)(이하「피고 코호노」로 한다), 본건잡지의 발행인인 피고 오토야마 나츠히코(乙山夏彦)(이하「피고 오토야마」로 한다)에 대해

①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연대하여 4,500만엔 지불과 ② 원고가 발행하는 「X신문」 및 본건잡지에 사과기사의 게재를 요구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피고는 본건각기사는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 아니며, 설령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성과 공익성, 진실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2. 전제사실

이하의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거나, 증거에 의해 인정된다.

(1) 원고는 일간신문의 제작, 발행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며, X신문 등 일간신문, 디지털매체, 잡지, 서적, 방송 등의 미디어를 통해 경제정보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정보를 국내외에 발신하고 있다.

피고회사는 잡지 및 서적의 편집, 제작,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며, 월간지 「WAI」(본건잡지)를 발행하고 있다. 본건잡지는 회당 발행부수 3만 6천부의 월간지이며, 주된 독자층은 기업의 임원과 부·과장 등 이상(전체의 70%)이다.

피고 코호노는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오토야마는 본건잡지의 발행인이다.

(2) 피고는 본건잡지 2008년 8월호에 이하의 기술(이하「본건기술1」로 한다)을 포함한 기사(이하「본건기사1」로 한다)를 게재했다.

【주제목】

X미디어그룹 「이치노세·니노미야체제」의 미주^① 편집국장 경험 없는 니노미야 사장 탄생으로 「관리주도인사」가 실시되었으나 광고부진은 멈추지 않아

되었다는 소문이 떠돌았다」(사내정보통)고 한다. (후략)
(상기 기술을 이하「본건기술2」로 한다)

【소재목2】

파워하라 방지교육 실시 중

【본문】

(전략)

편집국장 경험이 없는 니노미야 사장이 취임한 후에는 관리 부문이 더욱 강화되었다.

그러한 영향일까, 사내와 자회사에서는 파워하라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작년 6월, X신문의 자회사인 Z사에서 최고경영진으로부터 업적악화의 책임을 추궁 받은 부장이 행방불명되었다. 자살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책임추궁이 두려워 모회사에 보고를 하지 않고 있었다.

금년 4월 편집국의 I기사심사부장이 지주막하출혈⁵⁾로 쓰러져 병원에서 사망했는데 직전 회의에서 매도당했다는 이야기가 있으니 파워하라와도 무관하지 않다.

(중략)

같은 4월경 편집국 생활경제부의 C기자(여성)가 상사의 파워하라에 고통을 받아 자살했다. 그것도 일반적이지 않은 자살 방법으로 인해 사원들도 두려워했다고 한다.

X신문 관계자는 이와 같이 말했다.

「5월경 파워하라 방지교육이 실시됐다고 들었다. C기자의 자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4월말 즈음 파워하라 방지를 위해 회사규칙을 개정했다는 사실을 최근에 와서야 알았다」

(상기 기술을 이하「본건기술3」으로 한다)

(4) 원고는 내각에 설치된 토지재생본부의「오테마치 연쇄형 도시재생프로젝트」에 근거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이하「본건재개발」로 한다)에서 오테마치지구에 소유하고 있던 구사옥의 부지(이하「구부지」로 한다)에 대해 합동청사 철거지의 일부(이하「본건토지」로 한다)를 가환지⁶⁾로 지정받아 합동청사 철거지에 건설된「X빌딩, JA빌딩, 경제단체연합회관」가운데 일부를 원고의 신사옥으로 했다.

(5) 2008년 6월 20일 원고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Z사(이하「Z사」로 한다) 해외여행파트의 미즈이 부장이 자살로 사망했음이 알려졌다. 또한 2009년 3월 16일 원고의 편집국 기사심사부 요쓰야 부장이 사내에서 지주막하출혈로 쓰러져 병원에서 사망했다. 동년 5월 2일에는 원고의 편집국 생활경제부의 이즈키 기자(여성)가 사망했다.

3. 쟁점 및 쟁점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1) 본건기술1은 사실의 적시인가, 의견 내지 논평의 표명인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가 (쟁점1(1))

(원고의 주장)

본건기술1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며(이하「원고적시사실1」로 한다), 원고적시사실1은 일반 독자에 대해 보도기관인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하게 훼손하고 있다.

(피고들의 주장)

부인 내지 다툰다. 본건기술1은 원고의 보도기관으로서의 자세에 의문이 던져지고 있다는 의견 내지 논평에 해당한다.

5) 蜘蛛膜下出血・뇌동맥류 파열

6)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진행시키고, 관계자의 권리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하여 실제 한지처분을 한 것 같은 효과를 내도록 한지처분 전에 예정지로 미리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법정용어로는 한지에정지라 한다.

(2) 본건기술1의 공공성·공익성·진실성·상당성 (쟁점1(2))

(피고들의 주장)

가. 본건기술1에 관련한 사안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으며 그 목적은 오로지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나. 본건기술1은 피고회사로부터 의뢰를 받은 히노에카와 기자가 본건재개발관계자로부터 취재하여 관련자로 확인을 토대로 집필한 것이므로 원고적시사실1은 진실 혹은 피고들이 진실이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

(원고의 주장)

부인 내지 다툰다.

(3) 본건기술2에서 적시된 사실은 무엇이며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가 (쟁점2(1))

(원고의 주장)

본건기술은 소문이 존재한다는 기술인데, 소문의 내용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원고임원이 “죽림의 방”이라는 신사옥의 응접실을 적절한 절차 없이 친척에게 발주했다는 기술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이하 「원고적시사실2」로 한다). 따라서 원고적시사실2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피고들의 주장)

부인 내지 다툰다. 본건기술2는 소문의 존재를 적시한데 불과하며 따라서 본건기술2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 아니다.

(4) 본건기술2의 공공성·공익성·상당성 (쟁점2(2))

(피고들의 주장)

가. 원고는 사회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대형신문사이다. 본건기술2와 같이 그러한 신문사의 임원이 친척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으며 오로지 공익을 도모한 것이다.

나. 피고 오토야마는 원고의 신사옥 최상층에 있다는 “죽림의 방”이라는 호사스러운 응접실이 임원의 친척에게 발주되었다는 소문을 전해들은 후 원고 사회사의 다른 기자로부터도 동일한 이야기를 듣고 본건기술2를 집필했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적시사실2를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원고의 주장)

부인 내지 다툰다. 원고적시사실2는 공공성, 공익성이 없으며 피고들이 원고적시사실2를 진실이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도 없다.

(5) 본건기술3에 적시된 사실은 무엇이며,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가 (쟁점3(1))

(원고의 주장)

본건기술3은 ① 원고회사의 사장 취임 후 X신문 사내와 자회사에서 파워하라가 잇달아 일어났다. ② 2008년 6월 Z사에서 부장이 최고경영진으로부터 업적악화의 책임을 추궁 받는 파워하라로 자살했다. ③ Z사는 파워하라로 종업원이 자살한 책임 추궁이 두려워 모회사인 원고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 ④ 2009년 4월 원고의 편집국 기사심사부장이 회의에서 매도되는 파워하라를 당한 후 사내에서 지주막하출혈로 쓰러져 병원에서 사망했다. ⑤ 원고의 편집국 생활경제부 여성기자가 상사의 파워하라로 인해 자살했다는 사실 등을 적시한 것이다(이하 「원고적시사실3」으로 한다).

따라서 원고적시사실3은 일반 독자에 대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훼손한다.

(피고들의 주장)

부인 내지 다툰다.

가. 본건기술3은 원고 및 원고자회사에서 파워하라가 일어나고 있다는 의심을 갖게 한 것에 불과하다.

나. 본건기술3과 같이 단순히 파워하라의 의심을 갖게 하는 것만으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지 않는다.

(6) 본건기술3의 공공성·공익성·진실성 (쟁점3(2))

(피고들의 주장)

가. 본건기술3과 같이 일반사회에 강한 영향력을 갖는 원고에게 파워하라의 의심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이며 오로지 공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다.

나. 피고 오토야마는 다음과 같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입수하여 본건기술3을 집필한 것이므로 피고들이 원고적시사실3을 진실로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

(가) Z사의 미즈이 부장의 자살에 대해 피고 오토야마는 원고의 전 논설위원인 요우로다니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그 내용은 내부사정을 잘 아는 자가 아니면 쓸 수 없는 구체적인 것이었다.

(나) 원고의 요쓰야부장 사망에 대해 피고 오토야마는 원고의 기자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이는 내부사정을 잘 아는 자가 아니면 이야기할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이다.

(다) 원고의 이츠키 기자 자살에 대해 피고 오토야마는 복수의 신뢰할 수 있는 원고의 현직기자, 퇴직자, 원고사원들로부터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원고의 주장)

부인 내지 다툰다. 원고적시사실3은 공공성, 공익성이 없으며 피고들이 원고적시사실3을 진실이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도 없다.

제3. 쟁점에 대한 판단

1. 사실관계

전기「전제사실」에 증거 및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가. 원고는 도쿄도심부의 구체적인 도시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토지소유권자들로 구성된「오테마치(大手町)·마루노우치(丸の内)·유라쿠쵸(有楽町)지구 재개발계획추진위원회」(이하「본건협의회」로 한다)의 회원이었다.

2003년 1월 내각에 설치된 도시재생본부는 도시재생프로젝트(제5차 결정)를 결정, 오테마치지구에 대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본건재개발). 이것은 오테마치지구의 합동청사 철거지에 주변토지소유권자의 토지를 환지하여 재건축사업을 한 다음 순차적으로 환지와 재건축을 시행, 오테마치지구 전체의 재개발을 진행하는 연쇄형 재개발프로젝트였다.

나. 원고는 2003년 3월 도쿄도, 치요다구 및 다른 토지소유권자들과 함께 합동청사 철거지를 활용한 도시계획의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발족한「오테마치도시계획추진회의」(이하「본건회의」로 한다)에 참여했다. 또한 원고는 다른 토지소유권자 10개사와 공동출자하여 2003년 8월 26일 본건재개발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오테마치도시계획주식회사」(이하「도시계획회사」로 한다)를 설립, 동사의 이사로서 원고측 이사 1명을 취임시켰으며, 이후에도 원고측 이사 1명이 지속하여 자리하고 있다.

다. 본건회의 및 도시계획회사는 도시재생기구에 대해 본건재개발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① 재개발지구에서의 건축물 정비는 도시계획회사 등 민간이 할 것, ② 합동청사 철거지의 취득에 있어서는 현행 용적률 700%를 전제로 한 평가를 근거로 교섭을 할

것, ③ 개발이익은 사업시공자나 참여한 토지소유권자 등의 공헌도를 배려하여 적정하게 배분할 것 등을 제의했다. 본건회의는 2004년 3월 30일 합동청사 철거지에 대해서는 도시재생특별지구제도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용적률을 확보하기로 결정했다.

라. 도시계획회사는 본건재개발에서 시가지재개발 사업을 시공하는 유한회사 오테마치개발에 자금을 주입하는 등 그 설립과 운영에도 관계하고 있었다. 유한회사 오테마치개발은 도쿄도, 치요다구 및 도시재생기구 등과 아래와 같은 합의서 및 협정을 체결하고 그 취지에 합의했다.

(가) 2004년 10월 19일자「오테마치도시계획기본합의서」(① 합동청사 철거지의 취득에 있어서 도시재생기구가 재무성에 제시하는 상한가격은 도시재생기구와 도시계획회사의 합의로 결정할 것, ② 도시계획회사는 본건토지의 약 3분의 2를 도시재생기구로부터 양수받을 것)

(나) 2005년 2월 28일자「오테마치도시계획기본협정서」(①오테마치지구의 도시계획에 있어서는 필요에 따라 본건회의에서 토지소유권자 등 관계자의 확인을 받아가면서 진행할 것, ② 유한회사 오테마치개발은 합동청사 철거지의 공유지분 3분의 2를 신탁재산으로 하는 신탁수익권을 도시재생기구로부터 양수받을 것 ③ 도쿄도는 합동청사 철거지 등을 도시재생특별지구로 하는 도시계획 결정을 예정할 것, ④ 도시재생특별지구에서는 도시재생 공헌도에 따라 용적률을 설정한다는 것을 예정할 것)

마. 원고는 본건재개발에 근거하여 2006년 9월 21일 동 지구 내에 소유하고 있던 원고의 구부지에 대해 합동청사 철거지의 일부(본건토지)를 가환지 지정을 받았으며 동지정은 동월 25일에 발효됐다.

1999년 당시 구부지의 용적률은 1,000%, 본건토지

의 용적률은 700%였으나 본건재개발에 의해 모두 용적률이 완화되어 상기 가환지 지정의 시점에서는 구부지의 경우 1,470%, 본건토지의 경우 1,590%로 되어있었다. 더욱이 구부지에 대해서는 그 후 용적률이 1,570%로 완화되었다. 또한 1997년부터 2010년까지의 사이에 본건토지의 노선가⁷⁾는 일관해서 구부지의 노선가를 밑돌고 있다.

바. 합동청사 철거지에 「X빌딩, JA빌딩, 경제단체연합회관」이 건설되었다.

원고는 동건물의 보류상⁸⁾으로 시설건설부지 등의 대금 3,200,263,000엔, 시설건축물대금 28,943,284,979엔을 지급하고 취득하여 바닥면적 합계 62,620㎡를 원고의 신사옥부지로 건축했다. 원고의 구사옥 바닥면적은 38,490㎡였다.

원고의 신사옥 건설공사는 공모로 확정된 주식회사 닛켄설계가 설계와 설계감리를 수주하고, 시미즈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했다. 신사옥의 31층에는 응접실이 마련되었으며 그 앞의 복도와 회의실 밖의 공간에는 대나무가 심어져있는 공간이 있다.

(2) 가. 본건재개발과 관련 도쿄도의 예산특별위원회 및 도시정비위원회, 참의원의 재무금융위원회 및 행정개혁특별위원회, 중의원의 재무금융위원회 및 국토교통위원회 등에서는 합동청사 철거지에 대해 용적률이 증가될 예정이어서 가격이 올라갈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매각시점의 용적률에 근거한 가격으로 경매가 아닌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것은 문제이며, 재건축된 빌딩에 입주하는 일본경제단체연합회 등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논의되었다.

나. 피고 오토야마와 히노에카와 기자는 유력신문 등 각사의 동향을 리포트하는 4회의 기획기사「TV와 신문『신용합시대』를 본건잡지에 게재할 것을 기획

7) 가로에 접해 있는 획지의 가격을 평가하는 기준가격

8) 사업시행 전 각 권리자의 권리 종류와 그 자산액의 크기에 따라 사업 완료 후 건물의 대지나 연면적에 대해 권리를 부여받는 것

했다. 히노에카와 기자는 이 기획에 따라 도시기반정비공단, 도시계획회사, 본건협의회, 도쿄도, 도쿄도의회, 중의원, 참의원 등을 위시로 여러 곳을 취재하여 자료를 입수, 본건기사1의 원고를 집필했다.

다. 피고 오토야마는 이 원고를 필요에 따라 가감하거나 정정하는 한편 주제목과 소제목을 붙이는 작업을 거쳐 기사화했으며 본건기사1은 본건잡지 2008년 8월호에 게재되었다.

(3) 가. 2008년 6월 19일 심야에 Z사의 해외여행파트 부장인 미즈이 부장이 자살하여 다음날인 20일에 발견되었다. 미즈이 부장은 동년 4월에 부장으로 취임, 약 2개월여 후에 자살했다. Z사는 6월 20일 정오 전에 코후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고 미즈이 부장의 자살을 알게 되었으며, 담당자가 미즈이 부장의 모친과 함께 경찰서를 방문, 확인한 후 원고에게 보고했다. 장례에는 원고의 전무가 참석했으며 원고는 조화를 보냈다. 이즈음 Z사의 결산상황은 2008년 12월 기결산으로 영업이익이 5,350만엔, 이 가운데 해외여행부문 영업이익은 전년도보다 많은 3,146만엔이었다.

나. 2009년 3월 16일 오후 5시30분경 원고의 편집국 기사심사부 요쓰야 부장이 지주막하출혈로 쓰러져 동년 4월 3일 병원에서 사망했다. 요쓰야 부장은 쓰러지기 직전인 오후 5시부터 편집국 부장회의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이 회의에서 요쓰야 부장은 누구로부터도 매도당한 사실이 없었다. 또한 이즈음 원고의 사내에서는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사원이 있었으나, 편집국 차장 겸 관리부장인 무다 후유히코를 중심으로 사내조사를 실시한 결과 요쓰야 부장이 사망하기 6일 전인 동년 3월 10일 동 사원에 대한 처분이 내려져 있었다.

다. 2009년 5월 2일 원고의 편집국 생활경제부 여성기자인 이츠키 기자가 사망했다. 이츠키 기자는 2008년 3월 1일 생활경제부에 배치되었는데 동년 10

월 하순부터 2009년 2월 9일 출산 때까지 산전휴가를 받은 후 육아휴가 중에 사망했다.

(4) 가. 피고 오토야마는 2009년 8월 27일 발매된 「週刊現代」(8월 22일·29일 합병호)에 게재된 기사「신문·TV는 죽는 것인가」를 읽고 원고의 신사옥 최상층에 「죽림의 방」이라고 부르는 호화스러운 응접실이 있다는 소문이 있음을 알게 되면서 원고의 퇴직자 등을 상대로 취재를 했다. 원고의 퇴직자로부터 「죽림의 방」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그 「죽림의 방」이 이치노세 회장의 친척에게 발주되었다는 소문이 난무하고 있다는 말도 들었고 원고의 현역기자, 원고 자회사에 다니고 있는 다른 기자로부터도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나. 피고 오토야마는 2009년 8월 하순 원고 및 자회사에서의 파워하라 의혹에 관해 다음과 같은 취재를 했다.

(가) Z사의 미즈이 부장 자살에 관해 피고 오토야마는 원고의 전 논설위원이었던 요우로다니로부터 자신 앞으로 원고를 내부 고발하는 서신이 왔다는 사실과 그 내용에는 「해외여행파트 부장이 자살한 이유는 상사가 회사의 업적 부진 책임을 부장 1인에게 추궁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Z사는 책임 추궁이 두려워 원고에 대한 보고를 태만했다」는 기재가 있었다는 것을 들었다.

(나) 원고의 요쓰야 부장 사망에 관해 부장회의 석상에서 상사로부터 면박을 받은 요쓰야 부장은 회의 직후 문제가 있는 부하와 통화하던 중 쓰러져 구급차로 옮겨져 병원에 입원했으나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했다는 말을 원고의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들었으며 「X의 불상사」라는 블로그에도 전기와 같은 내용의 기입이 있음을 확인했다.

(다) 생활경제부 이츠키 기자의 사망에 대해서는 원고의 현직기자, 퇴직자, 원고사원 등 복수의 사람들로

부터 사건이 일어나기 전 이츠키 기자에 대해 상사가 여러 가지 추궁을 한 것이 계기가 되어 자택에 화재를 일으켜 자살한 것 같고 현장에 어린이 하나가 있었으나 무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다. 피고회사는 본건기사2를 작성하면서 원고의 경영기획실 홍보부서에 대해 「죽림의 방」의 유무, 층수 및 발주처와 파워하라 방지를 위한 회사규칙개정 의 유무 등에 대해 서면으로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죽림의 방」이라는 호사스러운 특별한 응접실은 없으며 경영간부의 친척에게 응접실의 설계를 발주한 사실도 없고 회사규칙도 수시로 개정하고 있다고 회답했다.

라. 피고 오토야마는 이러한 원고의 회답도 포함하여 원고를 작성했으며, 본건기사2가 본건잡지 2009년 10월호에 게재되었다.

2. 쟁점1(1)(본건기술1은 사실의 적시인가, 의견 내지 논평의 표명인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가)에 대하여

(1) 어떤 기사의 의미내용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지의 여부는 당해기사에 대한 일반 독자의 보통의 주의와 읽는 방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만 한다(최고재판소 1956년 7월 20일 제2소법정 판결).

(2) 본건기술1은 「X의 물 파기『연금술』이라는 소재목 하에 「현재 X의 신문사로서의 자세에 대해 커다란 의문이 던져지고 있다.」 「그러나 도시기반정비공단(현 도시재생기구)을 중간에 넣어 교묘히 경매를 피해 토지의 권리를 획득했다.」 「보도기관으로서의 자각이 심히 결여되어 있다.」 「용적률 700%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지구계획 및 토지용도 변경까지 했으며, 이로 인해 용적률이 1,200%로 끌어 올려졌다. 이후 추가적으로 『도시재생특별지구』지정까지 받아 다시 1,590%까지

끌어 올리는데 성공했다. 한편 1㎡당 970만엔으로 건적된 불하가격은 종래의 용적률 700% 기준 산출된 가격이라고 한다.」 「이 정도로 대담한『연금술』 앞에서는 웬만한 언론기관의 경우 망설이게 된다. 그러나 X신문사는 그러한 양심이 결정적으로 결여되어 있으며, 오히려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기재되었다.

이러한 본건기술1을 일반 독자의 보통의 주의와 읽는 방법을 기준으로 보면 「원고는 신사옥의 용지로 한 합동청사의 철거지를 경매에 의하지 않고 헐값에 도시재생기구가 취득토록하여 그 권리를 차지했으며 그 후 용적률을 1,590%로 끌어올려 용적률 700%로 계산된 불하가격과의 차이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이하 「본건적시사실1」로 한다).

본건적시사실1은 일반 독자들에게 대해 마치 원고가 신사옥의 부지를 취득하면서 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도모했다는 인상을 주는 것으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다.

(3) 피고들은 본건기술1은 본건재개발에서의 갖가지 문제점을 적시하면서 이를 「연금술」이라고 평하고 있으며 보도기관인 원고는 이러한 일부의 민간기업이 이익을 챙기는 결과가 되는 재개발의 문제점을 검증하여 보도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도 혜택을 입고 있다는 점에서 원고의 보도기관으로서의 자세에 의문이 던져지고 있다는 의견 내지 논평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건기술1은 「X의 물 파기『연금술』이라는 소재목 하에 갖가지 기재가 되어있고, 이러한 기재내용 전체를 일반 독자의 보통의 주의와 읽는 방법을 기준으로 할 때 본건적시사실1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며, 피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전제사실 하에서 원고의 보도기관으로서의 자세에 대한 의견 내지 논평을 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4) 한편 원고는 본건적시사실1로 인해 일반 독자들이 원고가 보도기관으로서의 양심이 결정적으로 결여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을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건적시사실1과 원고가 보도기관으로서의 양심이 결여되어 있다는 보도가 중립·공평한 것인지의 여부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일반 독자가 상기적시사실에서 원고가 지적하는 것과 같은 인상까지 받을 것이라고는 인정하기 어렵다(하지만 원고가 양심이 결정적으로 결여되어 있다는 기술은 그 자체가 의견 내지 논평형의 명예훼손이 될 여지는 있으나, 이것은 본건기술1에서 적시된 사실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3. 쟁점(2)(본건적시사실1의 공공성·공익성·진실성·상당성)에 관하여

(1) 피고들은 본건적시사실1이 진실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① 원고는 본건회의 관여와 함께 도시계획회사에도 관여하여 동사의 이사에 원고의 이사를 취임시키기도 했으며, 본건회의 및 도시계획회사는 도시기반정비공단에 대해 본건재개발사업에의 참여도 요청했다. 또한 동사는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유한회사 오테마치개발의 운영에도 관여했으며, 유한회사 오테마치개발과 도시재생기구 등과의 합의에 의해 도시재생기구는 합동청사 철거지를 국가로부터 취득했다. 용적률을 변경한 경위를 보면 원고는 오테마치 지역의 토지소유권자로서 본건재개발에 처음부터 깊이 관여하여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로서 본건토지를 가환지로 지정받아 신사옥을 취득했다.

② 구부지와 본건토지의 가치가 동일할리도 없고 신사옥은 구사옥보다 바닥면적이 대폭 늘어나는 등 훨씬 대규모로 최신설비를 갖추었으므로, 이로 인해 원고는 본건재개발에 의해 이익을 취했다는 것 등을 지적했다.

그러나 상기 ①에 대해, 원고는 내각에 설치된 도시재생본부에 의한 2003년 1월의 토지재생프로젝트에 근거하여 오테마치지구 내에 소유하고 있던 구부지에 대해 합동청사 철거지의 일부(본건토지)를 가환지로 지정받은 사실은 전기1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며 원고가 본건재개발을 추진하는 입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원고가 중심이 되어 도시재생기구에 합동청사 철거지를 구용적률로 구입하게 했다는 것, 이로 인해 원고가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고 추인할 수는 없다.

상기 ②에 대해서는 신사옥은 그 바닥면적이 구사옥보다도 대폭 늘어나는 등 대규모로 최신설비를 갖추었으나, 구부지와 본건토지의 면적이 거의 같다는 사실, 1994년부터 2010년까지의 사이에 본건토지의 노선가는 지속적으로 구부지의 노선가를 밀돌았다는 사실, 원고가 신사옥의 바닥 증가분의 취득비용으로 약 289억엔을 지불했다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지적하는 점들만 가지고 원고가 본건재개발에 의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추인할 수 없다. 그 밖에 달리 본건적시사실1이 진실이라는 것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는 없다.

(2) 피고들은 본건적시사실1을 진실이라고 믿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① 히노에카와 기자는 본건기술1의 원고를 집필하면서 본건재개발관계자에 대한 취재, 관련 자료의 확인·검토, 신중한 취재와 검증을 거듭했으며 ② 위에서 서술한 원고의 본건재개발에 대한 깊이 관여했으며 구사옥보다 훨씬 대규모로 최신설비를 갖춘 신사옥을 건설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러나 상기 ①의 히노에카와 기자의 취재에 관한 증거는 합동청사 철거지가 도시재생기구에 헐값으로 매각된 것은 부당하며 원고도 이익을 얻고 있다는 주장을 기술한데 불과하며 원고가 본건재개발에서 도시재생기구에 헐값으로 합동청사 철거지를 취득하게 했

다든가 이로 인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상기 ②에 관해 도시재생본부, 도시재생기구 등의 홈페이지 등에는 오테마치의 재개발, 그에 수반되는 용적률의 변경 및 연쇄형 개발방식 등에 관해 기재가 되어있고 피고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 이들 홈페이지에 액세스하여 오테마치의 재개발을 검색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상기 정보를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었다. 또한 원고의 신사옥과 구사옥의 소재장소가 동일한 오테마치지구에 있고 도보로 수분 거리에 불과하고, 신사옥의 부지와 구사옥의 부지 면적이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일반인들도 쉽게 알 수 있으며, 원고가 신사옥의 바닥면적을 늘리기 위해 거액을 출자했음은 전기1에서 인정한 사실이다. 이와 같은 사정 하에서는 피고들이 본건적시사실1을 진실이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확실한 자료나 증거에 근거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3) 그렇다면 본건적시사실1은 진실이 아니며 피고들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공공성·공익성에 관해 판단할 필요도 없이 본건기술1은 명예훼손이 성립한다.

4. 쟁점2(1)(본건기술2에서 적시된 사실은 무엇인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인가)에 관하여

(1) 본건기술2는 「호사스러운 “죽림의 방”, 파워라, 자살, 소송 등 안팎으로부터의 난문」이라는 제목 하에 신사옥의 최상층에는 사원들 사이에서 “죽림의 방”이라고 불리는 넓은 응접실을 만들었다는 취지의 기재에 이어 “죽림의 방”은 임원의 친척에게 발주되었었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사람들의 소문이라는 표현을 빌려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소문 자체의 존재가 아닌 그 소문의 내용인 사실이 적시사실로 해석된다(최고재판소 1968년 1월 18일 제1소법정 판결). 그러므로 본건기술2는 「소문이 떠돌아 다녔다」고 하는 형식을 빌린 기사이지만 「원고는 신사옥의 응접실의 공사 등을 부정하게 원고의 임원이 친척에게 발주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해석된다(이하 「본건적시사실2」로 한다).

본건적시사실2의 적시는 일반의 독자들에게 대해 마치 원고의 임원이 친척에게 부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도 원고가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으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있다.

(2) 피고는 본건기술2에 대해 「“죽림의 방”을 임원의 친척에게 발주했다는 소문이 떠돈다」는 소문의 존재를 적시한데 불과하다고 주장,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내세웠다. ① 응접실의 공사 등이 임원의 친척에게 발주되었다는 아무런 단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았으며 임원이나 친척의 이름 등도 쓰지 않았다. ②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해 경영간부의 친척에게 응접실의 설계를 발주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회답을 했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소문이라는 표현을 빌어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대상이 된 인물의 사회적 평가에 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소문과 관련해 제시된 사실임으로 소문의 내용인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해석된다. 실제로 본건기술2는 사내정보통으로부터의 정보라고 밝히면서 “죽림의 방”을 설치한 원고에 대한 비판적 기술에 이어 기재된 것으로 일반 독자들에게 대해 그 내용대로의 사실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인상을 주고 있으며 원고로부터의 회답부분 기재도 기사의 말미에 그대로 기재한데 불과하여 상기 인상을 떨쳐버릴 수 있는 배려를 했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기 ① 및 ②의 주장

은 본건기술2가 소문의 내용인 본건적시사실2를 적시했다는 판단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5. 쟁점2(2)(본건적시사실2의 공공성·공익성·상당성)에 관하여

피고들은 본건적시사실2를 진실이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로는 피고 오토야마가 원고의 신사옥 최상층에 “죽림의 방”이라고 부르는 호사스러운 응접실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원고의 현직기자와 퇴직자 등과 접촉, 취재한 바 원고의 퇴직자로부터 “죽림의 방”이 존재한다는 구체적인 이야기라든가, “죽림의 방”이 이치노세 회장의 친척에게 발주되었다는 소문이 떠돌아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자회사에 나가고 있는 다른 기자로부터도 동일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실들을 내세운다.

그러나 피고 오토야마의 진술에 의해서도 동 피고는 원고의 현직기자나 퇴직자로부터 “죽림의 방”이 이치노세 회장의 친척에게 발주되었다는 소문을 들은 후 원고가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회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문을 그대로 본건기술2로 하여 기사화한데 불과하며 동 피고는 상기 사실의 입증조사를 태만히 한 채 원고의 현직기자나 퇴직자로부터의 이야기를 신용할 수 있다고 가볍게 여기고 소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본건적시사실2를 진실이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본건적시사실2에 대해서는 공공성·공익성의 판단을 할 것 필요도 없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

6. 쟁점3(1)(본건기술3에서 적시된 사실은 무엇인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가)에 관하여

(1) 본건기술3은 소제목을 「파워하라 방지교육 실시중」으로 하고, 본문기사는 「편집국장 경험 없는 니

노미야 사장이 취임한 후로는 관리부문이 한층 강화되었다. 그 영향일까, 사내와 자회사에서는 파워하라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작년 6월 X신문의 자회사, Z사에서 최고경영진으로부터 업적악화의 책임을 추궁당한 부장이 행방불명이 되었다. 자살했다는 것을 알았으나 책임 추궁이 두려워 모회사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고 있었다. 「금년 4월 편집국의 I기사심사부장이 X신문사에서 지주막하출혈로 쓰러져 병원에서 사망했다. 사망 직전 회의에서 매도당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므로 파워하라와도 무관하지 않다. 「같은 4월 경 편집국 생활경제부의 C기자(여성)가 상사의 파워하라에 고통을 받아 자살했다. 그것도 일반적이지 않은 자살방법으로 인해 사원들도 두려워했다고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으며, 이어 X신문사 관계자의 이야기를 내용으로 해서 「5월경 파워하라 방지교육이 실시됐다고 들었다. C기자의 자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4월말 쯤 파워하라 방지를 위해 회사규칙을 개정했다는 사실을 최근에 와서야 알았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본건기술3은 일반 독자들의 보통의 주의와 읽는 방법을 기준으로 하면 「원고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원고 및 원고의 자회사에서는 파워하라가 잇달아 일어났으며 파워하라가 원인이 되어 사원 2명이 자살하고 1명이 병사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이하 「본건적시사실3」으로 한다).

본건적시사실3의 적시는 일반 독자들에게 대해 마치 원고 및 그 자회사에서 파워하라가 횡행하고 있으며 파워하라 때문에 사원 2명이 자살하고 1명이 병사한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으므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

(2) 피고들은 본건기술3의 「파워하라와도 무관하지 않다」라는 기재에도 나타나고 있듯이 원고 및 원고의 자회사에서 파워하라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문이 있으

며 3명의 사망원인이 파워하라에 있다는 의문을 적시하고 있는데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건기술3은 첫머리에서 「사내나 자회사에서 파워하라가 잇달아 일어나고 있다」고 단정적으로 기재되는데다가 Z사의 미즈이 부장의 자살에 대해 「최고경영진으로부터 업적 악화의 책임을 추궁 받은 부장이 자살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요쓰야 부장의 사망에 대해서는 「파워하라와도 무관하지 않다」라고, 이즈키 기자의 사망에 대해서는 「C기자(여성)가 상사의 파워하라에 고통을 느껴 자살했다」고 각각 기재되어있는 것은 앞에서 인정된 사실이며 이러한 기사 전체를 일반 독자의 보통의 주의와 읽는 방법을 기준으로 읽으면 본건적시사실3을 적시한 것이다.

피고들은 본건적시사실3은 파워하라가 원인으로 3명의 사원이 사망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병사나 자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을 생각할 수 있으며 복수의 요인이 겹쳐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으므로 일반 독자가 파워하라라는 기재에서 3명의 사망원인이 파워하라에 있었다고 경솔하게 믿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본건적시사실3에서는 일반 독자에 대해 마치 원고 및 그 자회사에서 파워하라가 횡행하고 있으며, 파워하라로 인해 사원 2명이 자살하고 1명이 병사한 것 같은 인상을 주어 원고의 사회적 인 평가를 저하시키고 있음은 앞에서 지적한 대로이며 피고들이 지적하고 있는 점은 상기 판단을 좌우하지 않는다.

7. 쟁점3(2)(본건적시사실3의 공공성·공익성·상당성)에 관하여

피고들은 본건적시사실3을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① Z사 부장의 자살에 관하여

피고 오토야마에게 전해진 원고의 전 논설위원인 요우로다니의 내부고발 편지에는 「해외여행파트 부장이 자살한 이유는 상사가 회사의 업적부진책임을 부장 1인에게 추궁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Z사는 책임 추궁이 두려워 원고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는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는 자가 아니면 쓸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이다. ② 원고의 기사심사부장의 사망에 관하여 피고 오토야마는 원고의 기자로부터 「동 부장은 부장회의 석상에서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고 회의 직후 부하와 전화를 하던 도중에 쓸어져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했다」고 들었는데 이는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는 자가 아니면 말할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이며 「X의 불상사」라는 블로그에도 상기와 같은 내용이 쓰여져 있었다. ③ 생활경제부 여성기자의 자살에 관하여 피고 오토야마는 복수의 신뢰할 수 있는 원고의 현직기자, 퇴직자, 원고사원 등 복수의 사람들로 부터 「사건이 일어나기 전 이즈키 기자에 대해 상사가 여러 가지 추궁을 한 것이 계기가 되어 자택에 화재를 일으켜 자살한 것 같고 현장에 어린이 하나가 있었으나 무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상기 ① 내지 ③은 전부가 전해들은 이야기에 불과하며 그 내용도 애매함으로 이러한 증거만을 가지고 파워하라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실이 진실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려면 입증조사가 필요한데 피고들에게서는 입증조사를 한 흔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 하에서는 피고들이 상기 ① 내지 ③의 사정만을 가지고 본건적시사실3이 진실이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확실한 자료나 근거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적시사실3에 대해서는 공공성·공익성의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

8. 쟁점4(원고의 손해)에 관하여

이상과 같이 원고는 본건각기사에 의해 명예가 훼손되어 무형의 손해를 입고 있다. 그리고 본건각기사의 내용, 본건잡지의 발행부수, 피고들이 일체 사과 등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원고가 본소 제기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다는 사실 등, 본건에 나타난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원고가 입은 무형의 손해는 본건기사 각각에 대해 각 70만엔의 합계 140만엔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또한 손해배상인용액과 기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들의 상기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변호사 비용은 20만엔이 상당하다.

9. 쟁점5(사과기사의 필요여부·내용)에 관하여

본건각기사는 주제목을「X의 룰 파기『연금술』,「호사스러운 “죽림의 방”에 파워하라, 자살, 소송과 내외로부터의 난문」 등으로 하고 본건기술1 내지 3을 기재하고 있었으나 적시사실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기재를 하지 않았으며, 또한「소문이 떠돌았다」,「파워하라와도 무관하지 않다」 등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부분도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에 본건각기사의 명예훼손의 양태 및 정도, 본건잡지의 발행부수, 원고들이 입은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 손해배상 인용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다시 사과기사를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까지는 인정할 수 없다.

제4. 결론

이상에 의하면 당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1. 피고회사는 본건기술1 내지 3에 의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으며 피고 코호노는 본건잡지의 편

집주간으로서, 피고 오토야마는 본건잡지의 발행인으로서 이에 관여하고 있으므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160만엔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0년 5월 31일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연 5부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연대지불을 청구하는 한도에서 이유가 있으나 다른 나머지는 이유가 없다.

2. 원고의 사과기사 청구는 이유가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2 생략)

■ 출처 : 『판례타임즈』1374호/P.167~177

■ 번역 : 한동원(전 한국언론연구원장)

[미국판례 1]

정보 공개 의무에 따라 요청된 문서를 적절히 편집하더라도 개인 신상이 확인될 수 있는 기록을 포함하면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판결요지〉

가. 교육부는 기존의 법문에 대한 안내문을 발표하여 요청한 기록 내에서 지칭하는 학생이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교육기록이 공개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만약 공개된 기록에 의해서, 또는 다른 공개된 정보에 의해서, 이름, 신분 번호, 사건의 날짜와 시간 등을 편집해 내는 것이 징계절차에 관련한 증인, 피해자 등의 학생의 신원을 보호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면, FERPA는 교육기관이나 시설이 그 정보를 공개하는 정책이나 관행을 가지는 것을 금지한다.

나. 교육부가 규칙개정제안 및 공지를 통해 설명한 것과 같이 “제안된 규칙은 안내문이 규정하는 것을 명시하고 그 법적 효력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2009년 1월 개정의 의도는 법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법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었다.

아이오와주 대법원
(Iowa Supreme Court)

원고 : Press-Citizen Company Inc.

피고 : University of Iowa

사건번호: No. 09-1612

판결선고: 2012. 7. 13.

Mansfield, J. 판사 :

이 소송은 Iowa 주 기록물 공개법(Open Records

Act)상의 정보 공개 의무와 연방법인 가정교육원 및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률(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이하 「FERPA」로 한다) 상의 기밀 보호 의무의 충돌에 관한 판단을 요구한다.

2007년 10월 두 명의 University of Iowa(이하 「Iowa 주립대학」으로 한다) 소속 풋볼 선수들이 학교 기숙사 방에서 다른 학생을 성폭행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범죄 수사 및 고발을 통해 한 선수에 대해선 심각한 상해를 입힐 고의에 의한 폭행죄로 유죄 판결을, 다른 한 선수에 대해선 단순 폭행죄로 인한 유죄 판결로 이어졌다. 이 사건은 또한 대학 내부조사와 대학의 답변, 외부에서의 대학에 대한 비난, 특별 감사에 의한 수사와 보고서를 야기시켰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본 소송의 발단이 되었다.

본 소송은 사건이 제기되고 Iowa City Press-Citizen(이하 「Press-Citizen」로 한다)이 대학에 제출한 기록물 공개법에 의거한 정보 공개 요청에 관한 것이다. 이 요청에 대한 대학의 초기 대응에 만족하지 못한 Press-Citizen은 소를 제기하였다. 그 소송을 통해 더 많은 문서가 공개되었고 일부 문서는 지방법원의 판사 단독 비밀 심리(in camera review)를 위해 제출되었다. 지방법원은 추가 문서 제출을 명령하였고 일부 문서에 대해선 제출 전 필요한 편집을 허가하였다. 대학은 이 명령의 일부에 대해 상소하였다. 대학은 FERPA가 일부 문서, 특히 편집 후에도 학생의 신원정보가 노출될 “교육기록”의 공개를 금지한다고 주장했다. Press-Citizen은 FERPA가 대학이 기록물 공개법에서의 정보 공개 의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니며, 대학이 FERPA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본 법원은 아래 서술된 근거를 바탕으로 FERPA의 의미와 효력에 관한 대학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지방법원의 판결을 일부 파기한다.

I. 배경 사실과 소 절차

2007년 10월 14일 이른 일요일 아침, Iowa 주립대학의 Hillcrest 기숙사에서 여학생 운동선수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사건에 연루된 두 풋볼 선수들은 팀에서 선수자격이 중지되었고 이후에 퇴출되었다. 범죄 수사 이후 두 선수 모두 형사 기소되었다. 한 선수는 심각한 상해를 입힐 고의에 의한 폭행죄로, 다른 한 선수에 대해선 단순 폭행죄로 인해 각각 유죄를 선고받았다.

2007년 10월 15일 수명의 대학 관계자들이 사건에 관한 보고를 받았으나 피해자의 부모들은 그들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믿었다. 무엇보다도 대학의 피해자에 대한 인식 부재가 드러났고 피해자와의 의사소통이 부족했으며 피해자가 다른 학생들에게 보복성 괴롭힘을 당하게 방치했다는 사실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2008년 대학 이사회는 자세한 조사를 위해 외부 로펌(Stolar Partnership)을 고용하였다. 외부 로펌의 보고서(Stolar Report)는 대학의 일부 정책과 관행을 비난하였다.

한편, 이 사건은 미디어를 통해 대중의 상당한 관심을 끌었다. 두 명의 풋볼 선수 이름이 모두 기사에 등장하였다. 2007년 11월 13일 Press-Citizen은 대학에 Iowa의 기록물 공개법에 따른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Iowa Code § 22.2(1)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공공 문서를 조사, 열람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¹⁾ 이 요청은 이번 사건을 포함한 모든 성폭행 혹은 성폭행 미수에 대한 보고서, 대학 관계자들의 성폭행 등에 관한 보고서, 2007년 10월 1일에 발생한 이번 사건 이후로 지금까지 발생한 모든 비슷한 사건들에 관한 기록 등의 공개를 포함했다.

대학은 처음엔 다른 모든 답변서류는 Iowa Code §

22.7(1)에 의거하여 공개로부터 보호된다고 주장하며 18페이지의 문서만 공개하였다(§ 22.7(1)은 학교 법이나 교육기관을 위하여 혹은 이들에 의해서 제작, 수집, 조합, 유지되는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 기록은 정보 공개로부터 보호된다고 규정한다). 2008년 1월 4일, Press-Citizen은 지방법원에 기록물 공개법의 사법 집행을 요청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2.10는 이 법의 사법 집행을 규정한다).

소를 제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Press-Citizen은 강제 제출 명령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 청구는 대학이 공개하지 않고 있는 서류들에 대한 본 인덱스(Vaughn index)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구한다.²⁾ 또한 필요한 부분에서는 학생의 개인 신상정보가 식별되지 않게 편집된 문서를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대학은 FERPA를 비롯한 여러 이유를 들어 강제 제출 명령 청구를 거부했다. 2008년 8월 7일 지방법원은 Press-Citizen의 강제요구를 받아들였다. 대학은 약 950 페이지의 추가 서류를 Press-Citizen에 공개하였고, 공개된 문서 및 2,000페이지가 넘는 공개되지 않은 서류를 포함한 약 3,000페이지 상당의 문서들에 관한 본 인덱스를 제출했고, 그 약 3,000페이지 상당의 문서들을 판사 단독 비밀 심리를 위해 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판사의 단독 비밀 심리 후, 지방법원은 2009년 8월 31일 또 하나의 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은 대학의 문서를 다섯 종류로 나누었다.

종류 1: 대학이 이미 편집없이 공개한 문서

종류 2: 대학이 편집하여 이미 공개한 문서

종류 3: 기밀 보호 대상이 아니며 편집 없이 공개되

1) 논의의 편의를 위해 2011년 버전 § 22를 적용한다. 사건의 계류 중 § 22는 이 사건에 관련해서 중요한 변화는 없었다.

2) 본 인덱스(Vaughn index)는 Vaughn v. Rosen 판례에서 유래하였다. D.C. 연방고등법원은 정보자유법(Federal 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의거한 이 판례에서 정부가 공개가 면제된다는 이유로 공개 거부하고 있는 서류들의 설명 인덱스를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한편, Press-Citizen이 지적한 바와 같이 Iowa의 기록물 공개법을 적용한 판례 Des Moines Independent Community School District Public Records v. Des Moines Register & Tribune, Co.에서 학교(school district)이 비슷한 인덱스를 작성하기도 했다.

어야 할 문서

종류 4: 학생의 이름, 부모의 이름, 학생의 이메일 주소, 기숙사 방 번호를 포함한 주소 등의 학생들의 개인 신상정보를 적절히 편집하여 공개해야 할 문서

종류 5: FERPA, 기록물 공개법 § 22.7,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특권 등에 의거하여 공개대상이 아닌 문서

지방법원의 8월 31일 명령은 대학이 30일 내에 종류 3의 문서를 편집 없이 공개하고 종류 4의 문서를 편집 후 공개하도록 지시했다. 2009년 10월 5일, 지방법원은 8월 31일의 명령을 포함한 최종 명령을 내려 대학에 위 문서들의 공개를 재지시하였고, Iowa Code § 22.10(3)(c)에 의거하여 Press-Citizen에 \$30,500의 변호사 비용을 지급할 것도 명했다. 대학은 항소심의 결정 전까지 지방법원의 명령에 대한 이행 보류를 요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허락하였다. 대학은 지방법원이 일부 종류 3의 문서와 모든 종류 4의 문서를 공개 명령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며 본 법원에 항소하였다.³⁾

II. 검토의 기준

본 법원은 지방법원의 Iowa 주법 22장과 FERPA에 대한 법리 해석의 오류를 검토한다. 우리는 지방법원의 법조문 해석에 의존하지 않고 이 법조문을 새로이 해석한다.

III. 분석

A. Iowa의 기록물 공개법

일반적으로 Iowa의 기록물 공개법("Examination of Public Records" 이나 "Iowa Freedom of Information Act"이라고 불리기도 함)은 주(州)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신들의 기록을 대중에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City of Riverdale v. Diercks 판례는 Iowa 주법 22장을 "우리 주의 정보 자유법"이라 칭했다. 이 법은 대중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정부가 자신의 의사 결정 행위를 대중에게 숨기는 일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본 법원은 기록물 공개법이 "개방과 공개의 추정"을 규정한다고 말한 바 있다. University of Iowa는 주립대학으로 확연히 기록물 공개법의 규제 대상이다. 본 법원은 주립대학에 의해 모금활동을 하도록 위임된 사립회사역시 이 법의 규제대상이라 결정한 바 있다(Gannon v. Bd. of Regents에서 Iowa State University와 이의 사립 재단이 기록물 공개법의 규제 대상이라 결정했다).

기록물 공개법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면제대상들도 규정한다(Iowa Code § 22.7는 "다음 공공문서는 법원이 다른 결정을 내리지 않는 이상 적법한 기록 관리인이나 이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정식으로 허가 받은 사람에 의해서 기밀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64개의 예외 사항을 나열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은 여기 규정된 예외가 이 소송에 적용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대학의 유일한 주장은 연방법 FERPA가 종류 3과 종류 4의 문서를 기밀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B. FERPA

국회는 자신의 지출능력 하에 학생교육기록의 입수와 공개에 관한 요건을 연방지원금의 지원 조건으로 만들고자 1974년 FERPA를 제정하였다. FERPA는

3) 대학은 종류 3의 문서 중 133, 140-43, 202-03, 756-60, 835, 1009, 1230, 1479, 1488-89, 1814, 1869-70, 1878, 1878-88, 1973, 1988-89, 1993-95, 2031, 2043-44, 2055, 2062, 2063, 2217, 2234, 2251-56에 해당하는 문서의 공개를 항소하였고 이를 "항소된 종류 3"이라 부르기로 한다.

교육부 장관(Secretary of Education)이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모든 공립 혹은 사립 교육기관이나 시설에 연방지원금 제공을 중단할 수 있게 한다. 이 법 § 1232g(b)(1)는 “학생의 교육기록(혹은 개인 신상이 확인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 기록)을 학부모의 서면에 의한 허가 없이 개인, 기관, 단체에 공개하는 것을 허락하는 정책 혹은 관행을 둔 교육기관이나 시설에서 모든 적용중인 프로그램에 대해 어떠한 지원금도 제공되어선 안 된다”라고 규정한다. 이 법 § 1232g(b)(2)는 “학부모의 서면에 의한 허가가 없는 한 개인 신상이 확인될 수 있는 기록을 공개, 제공하는 정책 혹은 관행을 둔 모든 교육기관이나 시설에서 모든 적용중인 프로그램에 대해 어떠한 지원금도 제공되어선 안 된다”라고 규정한다.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는 FERPA를 이행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하였다. 이 중 본 소에 관련된 부분을 보면, 34 C.F.R. § 99.3을 “교육기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a) “교육기록”은 다음과 같은 기록을 말한다.

(1) 학생과 직접적 연관이 있고;
(2) 교육기관이나 시설, 혹은 교육기관이나 시설을 위해 일하는 단체에 의해 유지되는 기록

(b) “교육기록”은 다음과 같은 기록을 포함하지 않는다.

(1) 기록자의 단독 소유 하에 있고, 개인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만 사용되며, 기록자를 잠시 대체하는 목적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 열람되지 않는 기록

(2) 교육기관이나 시설 하의 경찰 등 법 집행 기구의 기록

(3) (i) 교육기관이나 시설에 고용된 직원에 관한 기록으로

(A) 정상적 운영과정을 통해 만들어지고 유지되며

(B) 개인의 직원으로서의 능력에만 연관되며

(C) 다른 어떤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기록

같은 규칙은 “개인 신상이 확인될 수 있는 기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이 용어는 다음을 포함하지만 다음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a) 학생의 이름

(b) 학생의 부모나 다른 가족의 이름

(c) 학생이나 학생 가족의 주소

(d) 사회보장 번호, 학생 번호, 생체 측정 기록 등 개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e) 학생의 생년월일, 출생 장소, 어머니의 결혼 전 성 등 비직접적 신분 확인 정보

(f) 단독으로 혹은 조합으로 특정 학생과 관계되거나 연관될 수 있어, 관련 정황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지 않은 이성 분별이 있는 학교 관계자로 하여금 학생을 상당한 확실성을 가지고 식별할 수 있게 할 다른 정보

(g) 교육기관이나 시설이 교육기록에 관련된 학생의 개인 신상정보를 알고 있을 것이라 합리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이 요청한 자료

대학은 항소된 종류 3과 종류 4의 문서가 위에서의 정의에 미루어보아 공개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대학의 본 법에 대한 해석에 의하면 “개인 신상이 확인될 수 있는 기록”이 담긴 “교육기록”은 공개되어선 안 된다. 또한, 편집 후 혹은 편집 전의 문서에 학생의 이름이나 개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 학생의 신분이 실제로 드러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규칙은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이 학생의 신분정보를 알게 될 것이거나 혹은 이성 분별이 있는 사람이 학생을 상당한 확실성을 가지고 식별할 수 있게 될 경우 그 공개를 금지한다. 쉽게 말하면 대학은 FERPA에 의하면 Press-Citizen이나 학생 단체가 교육기록에서 논의되고 있는 학생의 신분을 알게 될 경우에는 편집된 상태에서의 기록이라도 그 공개가 금지된다고 주장한다.

본 항소에서, 우리는 항소된 종류 3과 종류 4의 문서가 FERPA에서 말하는 “교육기록”이라고 간주한다.⁴⁾ Press-Citizen은 비록 편집 후에도 이 문서가 공개되면 문서가 가리키는 학생을 식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곤 인정한다.⁵⁾ 하지만 Press-Citizen은 FERPA는 단순한 자금지원법으로 기록물 공개법에 의해 공개가 필요한 문서의 공개를 금지하는 법이 아니라고 밝혀왔다. 결국 Press-Citizen은 FERPA가 기록의 편집을 허가하는 반면, 기록 공개의 보류는 허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견해 불일치 문제에 대해 논하겠다.

C. FERPA와 Open Records Act의 상호관계

대학은 FERPA와 Open Records Act의 상호관계는 단순한 연방법 우위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U.S. Const. art. VI(“미 연방의 법이 이 나라의 최고 법이다”라고 규정함)대학에 따르면 연방법이 기밀을 요구하는 문서에 대해 Iowa 주법이 공개를 허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Press-Citizen은 FERPA가 실제 법이 아닌 단순한 자금지원법으로 명확하고 직접적인 기록물 공개법을 무효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논의는 다른 관할법원의 판례에서도 다루어졌다. 일부 법원은 FERPA가 교육기록의 공개를 금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Bauer v. Kincaid(FERPA는 교육기록의 공개를 금지하는 법이 아니다. 이는 교육기록의 공개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법일 뿐이다);

WFTV, Inc. v. Sch. Bd. of Seminole(FERPA는 교육기록의 공개를 금지하지 않는다. FERPA는 만약 교육기관이나 시설이 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 정보 보호, 공개, 열람 권리에 반하는 정책이나 관행이 있으면 교육기록에 대한 공공의 열람에 관한 그 정책이나 관행에 기반해 교육기관이나 시설의 적용 가능한 연방지원금을 받지 못하도록 할 뿐이다); Kirwan v. The Diamondback(The Diamondback의 다른 주장은 연방법 FERPA가 법의 보호를 받는 교육기록의 공개를 직접적으로 금지하지 않으며 교육기록을 공개하는 정책이나 관행을 둔 교육기관이나 시설에 연방지원금을 주지 않는 것이 유일한 강제제도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미 이 소에 해당되는 기록이 교육기록이 아니라 결정하였기 때문에 The Diamondback의 이 주장에 대해선 고려하지 않겠다)

FERPA 규칙 34 C.F.R. § 99.61는 “주나 지방법에 의해 교육기관이 FERPA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인정한다. 규칙이 이와 같은 상황을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FERPA는 주법을 대체하지 않는다는 근거라 주장할 수 있다.⁶⁾

한편, 다른 법원들은 FERPA를 주 당국에 구속력을 미치는 실체법으로 간주하고 FERPA 규정에 직접적 영향력을 부여하였다. Sherry v. Radnor Twp. Sch. Dist.(공개 요청된 기록의 공개가 FERPA에 의해 금지됨을 결정) United States v. Miami University 판례에서 연방 항소법원은 FERPA에 의해 보호되는 교육기록의 공개를 금지하는 유지 명령을 확인하였

4) Press-Citizen은 각주(footnote)에서, 그리고 법정 참고인인 제 삼자들은 좀 더 긴 내용을 통해 일부 문서는 “경찰 등 법 집행기구” 문서일수 있다고 주장한다. 20 U.S.C. § 1232g(a)(4)(B) (“교육기록”은 다음과 같은 기록을 포함하지 않는다. (2) 교육기관이나 시설 하의 경찰 등 법 집행 기구의 기록) 하지만 이 주장은 지방법원에서 제기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본 항소에서 이 주장을 고려하지 않겠다. DeVoss v. State (지방법원에서 제기되지 않은 주장에 대해 고려할 것 거부함) 여하튼, 그 주장을 고려할 충분한 기록이 없다.

5) 어떤 소송 당사자도 지방법원의 판사 단독 비밀 심리의 정확성을 문제 삼지 않는다. 본 항소에 제기된 문제는 단순한 법률문제일 뿐이다.

6) 한 학군이 South Dakota 주법이 정보 공개를 요한다고 주장하며 주 외에서의 특별 교육 서비스에 얼마나 지불하고 있는지를 공개하자, 교육부는 “FERPA는 이와 상반되는 주법을 대체하지 않는다”라고 조언하였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군이 동의 없이 정보를 공개할 때 FERPA를 위반하게 되며 연방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동 사건에 대한 다른 소송에서 연방법원은 학군에 약식 승소 판결을 내리며 “학군은 연방법이 명백히 대체하지 않은 주법을 따른 이유로 책임을 지게 될 수 없다”고 논증하였다(Maynard). 하지만, 교육부의 이 소송에서의 조언은 United States v. Miami University 판례에서의 교육부 입장과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 Miami University 판례에서 교육부는 FERPA가 Ohio 주법에 의해 공개가 요구되는 교육기록의 공개를 금하는 입장을 취했다.

다. 법원은 FERPA 위반에 따른 제재가 연방지원금의 중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논증하였다. 오히려, 일단 지원금을 받으면 학교가 동의 없이 교육기록을 공개하는 것은 FERPA로 인해 실제로 금지된다는 것이다. *Rim of the World Unified Sch. Dist. v. Super. Ct.*(FERPA가 학생 제적 기록의 공개를 요구하는 California 주법보다 상위법이다); *Unincorporated Operating Div. of Ind. Newspapers, Inc. v. Trs. of Ind. Univ.*(FERPA는 교육기록을 기밀로 할 것을 요구하는 연방법이다)

간략히 말해서, 위의 법원이 말한 것처럼 “주와 연방 법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 크게 다른 입장들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본 법원이 이 논쟁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 Iowa의 기록물 공개법이 이미 FERPA의 상위법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록물 공개법 § 22.9는 말하길:

본 법의 규정이 이 주(州)의 기관에 반드시 주어질 때 연방정부의 지원금, 서비스, 중요 정보의 차단을 야기시킨다고 판단되면, 해당 규정은 지원금, 서비스, 중요 정보의 거부를 막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적용이 중단되어야 한다.

§ 17A.2(1)에서의 기관은 위 문단이 적용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지원금, 서비스, 중요 정보의 차단을 막기 위해 적용이 중지되는 본 법의 조항의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다르게 말하자면 § 22.9의 첫 문단은 기록물 공개법의 규정이 연방정부의 지원금 중단을 야기시킬 때 그 규정의 적용을 중지시킨다. 이 문단은 FERPA가 실체법이 아니라는 *Press-Citizen*의 주장이 틀림을 보여준다. § 22.9가 FERPA에 실체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교육기록이 개인 신분이 식별될 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가정할 때, 만약 대학이 기록물 공개법 § 22.2(1)에 의거하여 교육기록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면, 대학은 기밀 교육문서의 공개를 허용하는 관행이 있게 된다. 이에 따른 처벌은 연방지원금

의 중단이다. 20 U.S.C. §§ 1232c, 1234c(지원금 수혜자가 지원금에 관한 법적 요건을 크게 충족시키지 못할 때 지원금의 중단을 허가함); § 1232g(f)(장관은 본 법의 이행과 본 법의 위반을 처벌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지원의 중단은 장관이 본 법의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본법의 자발적 준수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할 시만 가능하다)

*Press-Citizen*은 대학이 문서의 공개가 § 22의 첫 문단에서 규정하는 지원금 중단을 “반드시” 야기시킬 것을 확신하지 못한다고 대응한다. 법원은 이 주장이 법조문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 믿는다. § 22.9는 대학이 연방지원금을 “반드시”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할 뿐이다. 대학은 이 조건을 충족시켰다. 대학은 상당한 연방지원금을 받고 있다. *University of Iowa, General Education Fund, FY 2011-Use of New Revenues and Reallocations*(대학은 2009년 회계년도 동안 \$258,999,082의 총 연방지원금을 받음) 법 조문은 지원금 중단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한편, *Press-Citizen*은 본 소의 한 번의 자료 공개가 “정책이나 관행”에 달하지는 않을 것이라 주장한다. *Gonzaga Univ.* 153 L.Ed.2d at 324(FERPA의 비공개 규정은 제도화된 정책이나 관행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각각의 사례에 적용되지는 않으며 총체적 상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Achman v. Chisago Lakes Indep. Sch. Dist.* No. 2144(한 번의 위반은 학군이 FERPA를 정책이나 관행적으로 위반했다는 결말을 내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이 주장의 한가지 문제는 정보 제공이 Iowa 법원에 의해 허가 되면 그 정보제공은 우연적이거나 의도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이는 일종의 선례가 된다는 것이다. 즉, 일종의 “정책이나 관행”이 성립된다.⁷⁾

*Press-Citizen*의 주장의 더 큰 문제는 § 22.9이 총체적 상황에 의거하여 적용된다는 것이다. § 22.9는

한 특정 정보 공개가 지원금의 중단을 야기시킬 것인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한 규정(이를 테면, § 22.2(1)의 공공 기록이 열람가능 해야 한다는 법적 요건)이 지원 중단을 야기시킬 것인지를 묻는다. 따라서 규정이 기관에 연방지원금 중단을 야기시키지는지를 판단하려면, 규정이 적용되는 한 번의 사례가 아닌 규정 자체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 22.9는 “주(州)의 기관”인 University of Iowa의 교육기록에 계속해서 적용되는 § 22.2(1) 같은 규정이 지원금의 중단을 야기시키면 이의 적용을 중단토록 규정하는 것이다.⁸⁾

물론, 연방 정부가 결국에는 University of Iowa에 지원금 중단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 22.9를 적용함에 있어 Washington D.C.에서 행하는 그런 정책 결정에 대한 예견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는 실행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Iowa Code § 4.4(3)(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결과가 의도되었다고 추정한다) 따라서 § 22.9의 첫 문단은 § 22.2(1) 같은 Open Records Act의 규정이(규정의 한 번의 적용이 아닌) 주(州) 기관의 연방 재정 지원 중단을 야기시킬 것처럼 보일 때 이 적용을 중단토록 규정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Press-Citizen은 § 22.9의 두 번째 문단에 의존하여 대학이 이 문단에서 말하는 “규칙”을 채택하지 않았고, 따라서 첫 번째 문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⁹⁾ 기록물 공개법이 1967년 처음 제정되었을 때, § 22.9의 첫 문단만 포함되어 있었고, 두 번째 문단은 1984년까지 포함되지 않았다.

Press-Citizen의 위 주장의 문제점은 두 가지 개별적 메커니즘을 하나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첫 문단은

모든 개인에 적용되는 조항이 수동태로(“적용이 중단되어야 한다”) 적혀있다. 따라서 첫 문단은 “본 법의 규정이 이 주(州)의 기관에 반드시 주어질 미 연방정부의 지원금, 서비스, 중요 정보의 차단을 야기”시킨다는 “판단”이 되면, “기관”과 상관없이 그 규정의 적용을 막고 있다. 반면, 두 번째 문단은 “기관”에 적용되는 것으로 첫 문단이 적용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기관은 지원금, 서비스, 중요 정보의 거부를 막기 위해 적용이 중지되어야 하는 본 법의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S.F. 2294 Explanation, 70th G.A., Reg. Sess. (§ 8은 주(州) 기관으로 하여금 연방 지원금 조건에 대한 “규칙”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다) § 22.9 어디에서도 입법부가 기관이 두 번째 문단에서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첫 번째 문단이 효력이 없게 되기를 의도했다는 증거는 없다. 특히, 첫 번째 문단은 두 번째 문단이 17년 후 제정될 때까지 독립된 의미를 갖고 있었다. 요컨대, 1984년도의 개정은 기존의 첫 문단의 내용을 바꾸지 않고 기관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따라서 기록물 공개법은 FERPA의 기밀 유지 의무를 인정, 포함하고 있다.

D. FERPA와 “개인 신상이 확인될 수 있는 기록”

FERPA가 적용된다고 가정 했을 때, 다음 문제는 FERPA의 의무가 문서의 편집만으로 준수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경우에 있어선 문서 전체의 공개 중지가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대학은 교육부의 규칙에 의하면 학생의 이름 등 개인 정보를 편집해 내기도 열람자가 기록이 가리키는 학생이 누구인지 알 수

7) FERPA에 따르면 “정책이나 관행”이 “교육기관이나 시설”의 것이어야 하지만 대학의 “자발적인” 관행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8) 다시 말하자면, § 22.9는 특정 공개가 지원금 중단을 발생시키는지가 아닌, 주(州) 기관에 적용되는 기록물 공개법이 지원금 중단을 발생시키는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떤 소 당사자도 Iowa 주립대학이 § 22.9와 § 17A.2에서 규정하는 주(州) 기관임을 부정하지 않는다. Papadakis v. Iowa State Univ. of Sci. & Tech.(대학의 교수진 연봉 및 복리후생 지급 중단이 § 17A.2(2)에서 말하는 “주(州) 기관” 활동임을 판결)

9) 대학은 Iowa 행정법(Administrative Code) 규정 681-17.13(2)(d)이 그와 같은 “규칙”이라고 주장한다. 이 규칙은:

다음의 기록은 기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기록은 대중의 검열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는 종류에 따라 나열되어 있다.

d. 학생기록(20 U.S.C. 1232g로 개정된 FERPA (1974)와 Iowa 주법 section 22.7)

라고 규정한다. 본 법원이 § 22.9 둘째 문단의 “규칙”이 첫째 문단을 적용하기 위한 필요조건이 아니라 결론지었으므로 대학의 주장을 검토하지는 않겠다.

있을 때 그런 “개인 신상이 확인될 수 있는 기록”의 공개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4 C.F.R. § 99.3 (“개인 신상이 확인될 수 있는 기록”을 “단독으로 혹은 조합으로 특정 학생이 연관되거나 연관될 수 있어, 관련 정황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지 않는 이성 분별이 있는 학교 집단 관계자로 하여금 학생을 상당한 확실성을 가지고 식별 할 수 있게 할 다른 정보”로 정의) 대학은 2007년 10월 14일의 악명 높은 사건을 고려할 때, 사건 관련된 기록에 어떤 편집을 하더라도, 사건에 관련된 학생들의 신상이 신문에 알려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Press-Citizen은 기록물 공개법에 의하면 기록의 공개 열람은 “허가 혹은 불허가” 되어야 한다고 대응한다. 기록의 공개의 정도가 그 공개를 청구한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이다. *Ne. Council on Substance Abuse, Inc. v. Iowa Dep't of Pub. Health*, (기록물 공개법에 의거한 기록공개는 기록 공개 청구자에 따라 달리 판단되어야 한다는 소 당사자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음) 그러나 이 주장은 § 22.9를 통해 Iowa 주법에 포함된 연방법 FERPA가 이 사안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함을 망각하고 있다.

또한, Press-Citizen은 교육부의 관련 규칙이 이 소가 제기된 후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기존의 판례법과 다르므로 본 소에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Press-Citizen이 말하는 바와 같이, “개인 신상이 확인될 수 있는 기록”의 정의에 관한 항목 (f)와 (g)는 2008년 12월 9일 최종 규칙으로 공인되었고 2009년 1월 9일 효력을 발휘하였다. 소송은 2008년 1월 4일 처음 지방법원에 제기되었다. 지방법원은 종류 3, 종류 4에 대한 결정을 2009년 8월 31일 내렸다.

하지만 연방법에 의하면 “법원은 부당한 처사가 야기되거나, 법조문에 명시되거나, 입법 과정 및 배경 자료가 다른 결말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판결을 내릴 당시의 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사건의

법적 효력은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존재했던 법에 따른 판단을 통해 밝혀야 한다”는 원칙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미 연방 최고법원은 새로 바뀐 규칙을 계속 중인 소송에 적용 시, 당사자가 사건 당시 가지고 있던 권리가 침해되는가, 당사자의 행동에 의한 책임이 커지는가, 혹은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해 새로운 의무를 부가하는가를 물어 이 문제를 해결해 왔다.

새로운 “개인 신상이 확인될 수 있는 기록”의 정의는 이 소급적용에 대한 연방법 기준을 쉽게 통과한다. 여기에 중요한 “사건”은 항소된 종류 3과 종류 4에 해당하는 문서를 공개하지 않은 대학의 결정이다. 이 “사건”은 소송이 제기된 후에도 계속되었고, 법이 변경되었을 때도 계속 진행중이었다. 우리가 새 규칙을 적용할 때 편견이 될 만한 기존법에 대한 신뢰는 없었다.

또한, 기존의 “개인 신상이 확인될 수 있는 기록”에 관한 정의는 그렇게 다르지 않았다. 기존법은 “학생의 신상이 쉽게 추적 가능한 기록”의 공개를 금지하였다. 교육부는 “기존 법조문이 특정성과 명확성이 없어” 새 법조문으로 대체하였다. 교육부는 또한 “쉽게 추적 가능”한 기준이 너무 낮은 수준임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즉, 정보가 개인 신상을 “쉽게” 추정 가능케 할 때만 이 법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기존의 법문에 대한 안내문을 발표하여 기록이 지칭하는 학생이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교육기록이 공개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만약 공개된 기록에 의해서, 또는 다른 공개된 정보에 의해서, 이름, 신분 번호, 사건의 날짜와 시간 등을 편집해 내는 것이 징계절차에 관련한 증인, 피해자 등의 학생의 신원을 보호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면, FERPA는 교육 기관이나 시설이 그 정보를 공개하는 정책이나 관행을 가지는 것을 금지한다.

교육부가 규칙개정제안 및 공지를 통해 설명한 것과 같이 “제안된 규칙은 위 안내문이 규정하는 것을 명시하고 그 법적 효력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 따

라서, 2009년 1월 개정의 의도는 법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법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었다.

Press-Citizen은 또한 대학이 문서를 편집하지 않고 문서의 공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개인 신상이 확인될 수 있는 기록”이란 용어에 대한 법적 가능한 해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는 잘못된 주장이다. 20 U.S.C. § 232g(b)(1)은 부모의 허락 없이 교육기록(혹은 “개인 신상이 확인될 수 있는 기록”)을 공개하는 정책이나 관행을 둔 기관의 연방지원금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이 문장은 최소한 편집이 학생의 신상보호에 충분하지 않을 때 전체 문서의 공개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또한 적용할 법조문의 뜻이 애매할 때, 우리는 합리적이고 허용된 범위 내의 담당 기관(이 경우, 교육부)의 해석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Press-Citizen은 신문사가 관련 두 학생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을 때 이름을 편집해낸 징계기록의 공개를 명한 Montana 최고법원의 판례를 예로 들었다. 그러나 이 판례는 2009년 FERPA 개정 이전에 결정되었다. 최소한 이 판례에서의 학군은 “편집이 연계된 학생의 신상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못할 때 그 문서의 공개가 금지되어야 한다”는 본 소에서 대학의 주장을 직접적으로 내세우지 않았다. 또한, Press-Citizen은 일단 개인 신상 정보가 편집되면, 기록이 학생에 직접 연관되지 않으므로, “교육기록”의 정의 상, 그 기록은 더 이상 교육기록이 아니다”라는 Wisconsin 최고법원의 방론을 예로 들었다. 이 언급 역시 2009년 개정 전이었으며 이 판례는 우리가 지금 다루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법원은 현재의 교육부 규칙에 의거하여, 편집 후이라도 관련 학생이나 학생들의 신원을 정보 공개 청구자가 알게 될 수 있다면 문서 전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결정하는 바이다. Press-Citizen은 이 결론을 비판한다. Press-Citizen에 의하면: “대학의 입장은 FERPA가 유연하게 적용되어, 가장 악명

높은 범죄혐의나 범죄에 가장 강력이 적용되고, 그렇지 않는 미미한 사건엔 그 적용이 보류될 수 있다는 이상한 주장으로 압축된다.” 하지만, 이런 FERPA의 적용 성격은 이 법의 전체적 목표가 학생의 신원 보호라는 의회와 교육부의 앞선 판단에 의한 것이다. 본 법원은 의회와 교육부의 이런 판단을 재검토할 역할을 가지고 있지 않다.

E. 추가 쟁점

Press-Citizen은 교육기록이 법원의 명령이나 적법하게 발효된 소환장을 따르기 위해서 공개되어야 할 때, 학부모와 학생이 그 명령이나 소환장에 대해 교육기관의 사전 공지를 받는다면, FERPA가 그 적용의 예외를 허용한다고 제안한다. 20 U.S.C. § 1232g(b)(2)(B); 34 C.F.R. 99.31(a)(9)(i)(교육기록이 법원의 명령이나 적법하게 발효된 소환장을 따르기 위해서 공개될 수 있다고 암시) 이 예외는 기존 판례에 적용되어왔다. *Ragusa v. Malverne Union Free Sch. Dist.* (차별을 다루는 소송에서 관련 교육 문서의 제출을 명령한다); *Catrone v. Miles* (의료 사고 소송에서 교육기록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고 법에 의해 보호되는 교육기록은 법원의 명령이 있을 때 이의 공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공개를 허락한다); *Gaumond v. Trinity Repertory Co.* (FERPA는 개인 상해 소송에서 법원의 명령에 의해 교육기록이 공개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본 소송에서 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해당 교육기록 자체를 포함하지 않는다. “법원의 명령”에 의한 예외가 당사자가 해당 교육기록을 열람하기 위해 법원에 따로 소를 제기할 때 마다 적용된다는 건 말이 안되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당사자가 그 정보를 얻기 위해 소를 제기할 때 마다 FERPA가 그 효력을 잃게 되는 부적절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¹⁰⁾

Press-Citizen은 또한 대학의 입장에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Press-Citizen이 말하는 바와 같이, 대학 총장, 운동부 책임자, 그리고 풋볼 코치를 비롯한 대학 관계자들은 성폭행 혐의에 대한 대학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왔다. 게다가 학교 이사회에 의해 발표된 72 페이지의 Stolar Report는 대학의 사건 대응에 대한 자세한 비판을 포함하고 있으며 “풋볼 선수 #1,” “풋볼 선수 #2,” “학생 선수”와 같은 언급으로 가득 차 있다.

법원은 대학에게 완전한 일관성이 있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학자들은 이미 FERPA가 기관의 일관성 없는 행위, 즉 학교에 유리한 상황에서선 학생의 정보를 공개하고 불리한 상황에서는 공개하지 않는 전략적 행위를 허용한다고 비난해 왔다. Matthew R. Salzwedel & Jon Ericson, *Cleaning Up Buckley: How the 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Shields Academic Corruption in College Athletics*(대학들의 선택적 공개를 언급) 그룹에도 불구하고, Press-Citizen은 대학의 비밀관성에 대해 특별한 법적 의미를 부여하지 못했다. Press-Citizen의 이 주장에 대한 준비 서류는 어떤 법적 권한도 인용하지 않고 있고, 구술 주장 당시에는 대학이 공개 거부 권리를 기권했다는 주장을 스스로 포기했다. City of Riverdale(지자체 당국이 기록물 공개법 § 22.7(50)에서의 면제를 스스로 기권했다고 결정) 이와 같은 이유로 Press-Citizen의 비밀관성 주장은 FERPA의 본 사안에서의 효력을 따지는 법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소송 참가자들은 공적인 서류의 공개가 공개 청구

자의 지식에 따라 다시 비공개화 될 수 있다면 연방 헌법과 주의 헌법에 반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비록 이 주장이 소송참가자들의 준비 서류에서 길게 논의되어 있지만 이는 지방법원에서 제기되지 않았고 Press-Citizen에 의해 주장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판단을 거부한다. *Mueller v. St. Ansgar State Bank*(Iowa 주법에 따르면 법원은 소송 당사자에 의해 제기된 주장만 판단할 수 있다); *Rants v. Vilsack*(지방법원에서 제기되지 않은 소송 참가자의 주장을 판단 거부한다)

IV. 결론

항소된 종류 3, 종류 4 문서의 제공을 명령한 지방법원 판결을 파기한다. 대학은 지방법원 판결의 다른 부분, 특히 변호사 비용지급 명령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부분의 지방법원 판결을 인용한다.¹⁰⁾ 본 법원의 판결에 따른 지방 법원의 추가 절차를 명한다.

지방법원의 판결을 일부 파기 환송한다.

Appel, Wiggins, Hecht 판사를 제외한 모든 판사가 이 결정에 동의한다.

Appel 판사(반대의견) :

법원의 판단에 정중히 반대하는 바이다. FERPA는 연방지원금이 “학생의 교육기록 (혹은 개인 신상이 확 인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 기록)을 학부모의 서면에 의한 허가 없이 개인, 기관, 단체에 공개하는 것을 허

10) 법원들은 이러한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아 왔다. *Ragusa*(FERPA에 대한 법원명령 예외는 무조건 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법원이 정보 공개를 허용 하기 전, 정보 공개 요청자는 정보 공개에 따른 공공의 이익이 학생 개인의 프라이버시 훼손보다 큼을 입증해야 한다); *Zaal v. State*.(FERPA가 법원의 명령에 따라 ‘개인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지방교육체제나 교육기관에 제재를 가하지 않는 예외를 허용한다는 것은, 해당 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법원의 명령이 요청되었을 때 마다 학생 개인이 자신의 교육기록에 가지는 프라이버시나 기밀에 대한 이해관계가 무시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쉽게 말해, 법원 명령 예외는 교육기관이 언제 교육 문서를 공개할 수 있는지를 알려줄 뿐이며(법원 명령이 있을 때), 법원이 언제 공개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알려 주지는 않는다(법원이 항상 공개명령을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11) Press-Citizen은 준비서류를 통해 대학이 항소의 대상이 아닌 종류 3의 문서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만약 대학이 아직까지 해당 서류를 제공 하지 않았으면, 이를 속히 제공해야 한다.

락하는 정책 혹은 관행을 가진 교육기관이나 시설”에 제공되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주(州)의 정보 공개법에 의거한 법원의 명령에 따르는 것은 “교육기관이나 시설”의 정책 혹은 관행에 이르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다수의 의견은 “정책 혹은 관행”이란 단어를 자주 사용하면서도 이는 “교육기관이나 시설”의 정책 혹은 관행을 칭함을 망각하고 있다. 사실, 다수의 의견은 법조문에 있는 “교육기관이나 시설”의 단어들을 삭제하고 새 법을 제정하는 결과를 일으키는 것이다.

FERPA와 기록물 공개법에 명시된 법조문에 따라, 새 법을 쓰고 있는 다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연방법이 우선 법임은 자명하지만, 현 사안에서 FERPA와 기록물 공개법 사이의 모순점이 있다는 다수의 의견은 틀렸다. 따라서 본 소송의 해당 기록의 공개를 요구함이 옳다.

Wiggins, Hecht 판사는 이 반대의견에 동의한다.

[미국판례 2]

**어떠한 청구로부터도 제작사는 면책된다는
서류에 사인을 했더라도 외견상 일리가 있는
사유로 인한 소제기에 대해 기각요청을 할 순 없다.**

〈판결요지〉

가. Sahoury는 비디오 제작자가 의도적으로 혹은 부주의하게 성을 뺀 이름만 ‘모유수유 안내’(Breastfeeding Help)에 사용될 것이며, 비디오는 Parents® 웹사이트나 케이블TV에서만 보여질 것이라 진술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이 진술을 믿고 비디오 촬영에 참여했고 모유수유를 시범 보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원고는 자신이 면책 허가 서류를 읽지 않았음을 인정하지만, 이 서류가 제작자가 이미 자신에게 진술한 사항을 재확인하는 것이라 믿고 서명했다고 말한다. 소장에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원고는 사기 유도, 형평상 사기, 부주의한 허위 진술 등에 관한 외견상 일리가 있는 청구권에 관한 충분한 사실을 주장했다.

나. 피고들은 “이 문서에 의도된 서명자의 영상, 목소리, 이름의 사용에 관해 서명자가 언제든지 가질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소송권을 포함한 어떠한 청구권으로부터 피고들을 면책한다”라고 기술된 면책 허가 서류를 원고가 서명함으로써 이 소송 자체가 금지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질 시 원고의 주장에 대한 유효한 반론이 되겠지만, Sahoury는 외견상 일리 있는 허위 유도 청구권을 소장에 기술했고, 이 청구권이 받아들여지면 면책 허가 서류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

다. 피고들은 원고가 서명한 면책 허가 서류가 Sahoury와 A.S.의 이름과 녹화물 등의 사용을 허락하므로 자신들의 행동은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원고는 법적으로 계약 위반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진술한다. 면책 허가 서류는 “이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이 “이름”이 성과 이름을 동시에 지칭한다고 정의하지 않는다. 이 계약 위반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려면 계약서 상 단어의 의미를 해석해야 하지만 이는 소장 기술의 분석 기준인 “외견상 일리 있는 계약 위반 청구권을 주장하고 있는가”와는 초점을 달리한다. 소장에서의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소장은 원고가 손해배상 받을 자격이 있음을 충분히 나타내고 있다.

뉴저지 지방법원

(U.S. District Court District of New Jersey)

원고: Maryann Sahoury (개인 및 자녀(A.S.)의
보호자 자격)

피고: Meredith Corporation,

Meredith Video Studios, Parent TV

사건번호: Civ. Action No. 11-5180 (KSH)

판결선고: 2012. 8. 2.

Hayden, J. 판사 :

이 판결은 피고 Meredith Corporation, Meredith Video Studios, Parent TV의 원고 소송각하요청에 관한 것이다. 원고 Maryann Sahoury는 피고들에 의해 촬영, 제작, 보급된 교육용 비디오에 참여한 뒤 그녀와 그녀의 딸 A.S.를 대표하여 이 소송을 제기하였다. 교육용 비디오는 인터넷에 게시되었고, 그 후에 (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가 이를 “도용”해 Sahoury와 A.S.의 이름을 따 제목이 정해진 음란 비디오를 만들었다. 아래에 설명된 이유에 근거하여 피고들의 각하요청을 일부 받아들이고 일부 거절한다.

I. 사실 배경

Meredith Corporation(이하 「Meredith」로 한다)은 책과 잡지 출판, 텔레비전 방송, 통합 마케팅, 쌍방향 미디어 등을 다루는 미디어 마케팅 회사이다. Meredith가 가진 상표 중에 하나인 Parents®은 Parents TV를 운영한다. Meredith Video Studios는 Meredith에 의해 소유, 운영되는 비디오 개발, 제작, 다매체 보급 서비스 회사이다. Parents TV는 Meredith Video Studios가 취급하는 매체 중 하나로 모바일이나 케이블 TV를 통해 제공한다.

2009년, 첫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던 Sahoury는 모유수유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위해 수유 전문가 Shari Criso를 고용했다. Sahoury는 Criso의 도움으로 딸 A.S.가 태어난 후 수유를 시작했다. Parent TV가 Criso에게 모유수유에 관한 교육용 비디오에 출연할 것을 요청하였을 때, Criso는 Sahoury와 그녀의 갓난아기에게 “첫 아기 엄마가 어떻게 수유에 관한 두려움을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를 지켜 본 산중인”으로서 출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Sahoury는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 이 모유수유를 하려는 다른 초보 엄마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미가 깊다고 느껴 출연을 허락하였다.

2010년 1월 8일, Sahoury와 생 후 한 달이었던 A.S.는 ‘모유수유 안내(Breastfeeding Help)’란 제목의 비디오를 촬영하러 Criso의 집에 갔다. 촬영이 시작되기 전, Sahoury와 Criso는 Parent TV의 촬영, 진행 과정, 비디오 사용 의도에 관해 제작자에게 질문했다. Sahoury는 “비디오 제작 담당자로부터 비디오는 음성이나 화면을 통해 Sahoury나 A.S.의 성 내지 이름이 모두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모유수유 비디오는 교육용이나 설명용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비디오는 웹사이트나 케이블 TV에서 보여 질 것이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한다. 이런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Sahoury는 촬영에 응했다.

촬영 중 Sahoury는 그녀의 딸에게 모유수유하는

것을 배우던 경험에 관한 질문을 받았고 모유수유 기술을 시범하였다. 그 직후, 역시 Criso의 집에서 같은 제작자와 촬영 기사가 다른 아기 엄마를 촬영했다. 촬영이 끝나고 Sahoury가 A.S.를 데리고 떠나려 할 때, 제작자는 그녀에게 부엌 조리대에 있는 서류에 반드시 서명 해야한다고 말했다. 서둘러 떠나던 Sahoury는 서류가 제작자가 말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라 믿고 그 서류를 읽지 않고 서명했다.

후에 Sahoury는 자신이 서명한 것이 “Authorization & Full Release(이하「면책 허가 서류」로 한다)”였음을 알게 되었다. 이 서류는 “이 문서에 의도된 서명자의 영상, 목소리, 이름의 사용에 관해 서명자가 언제든지 가질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소송권을 포함한 어떠한 청구권으로부터” 피고들을 면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 서류는 “피고들이 서명인의 어떤 필름, 비디오테이프, 테이프, 음성 녹음, 이미지, 사진, 네거티브, 재현, 그리고/또는 다른 영상이나 목소리(이하「녹화물 등」으로 한다)등의 저작권 보호, 사용, 제출, 전파, 방영, 게재, 게재허가, 게재를 허가할 것을 허락”하고 “서명인은 녹화물 등에서 서명인의 ‘이름’을 사용할 것을 동의”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모유수유 안내’ 동영상 촬영하고 수 개월이 지나도록 Sahoury는 언제 비디오가 방영될지 전해 듣지 못했다. 과거 홍보 및 PR에 관련된 일을 한 적이 있는 Sahoury는 종종 자신의 이름을 Google에서 검색해 보았다. 2010년 7월, 그녀는 자신의 성과 이름을 Google에서 검색하고 아연실색했다. 검색 결과에 자신의 이름이 삽입된 수개의 음란 웹사이트와 비디오 링크들이 나타났다. A.S.의 성명 검색 결과 역시 음란물 링크들이 나타났다. 더 많은 조사 후에 그녀는 그 링크들이 ‘모유수유 안내’ 영상과 자신과 비슷한 외모와 체격의 여자가 출연하는 음란영상을 조합된 음란비디오임을 알게 되었다. Sahoury는 ‘모유수유 안내’ 동영상이 자신의 성과 이름 및 딸의 이름을 사용한

것을 음란비디오를 통해 깨달았다. 그녀는 소장을 통해 자신의 성명 사용은 비디오 촬영 전에 자신에게 설명한 것과 다르며 피고들이 자신과 자신의 딸의 이름을 해당 장면에 삽입하지 않았다면 음란 비디오물 제작자들이 이를 모유수유 영상과 음란비디오에 연계시키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소장에 의하면 피고들은 다른 아기 엄마들과 아기들의 이름, 특히 원고와 같은 장소, 같은 제작자, 같은 촬영기사와 ‘모유수유 안내’ 영상을 촬영한 다른 아기 엄마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Sahoury는 ‘모유수유 안내’ 비디오가 Parents® 웹사이트와 케이블 TV에서만 방영될 것이라 들은 것과 달리 YouTube에 게시되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원고는 피고들이 게시된 YouTube 영상을 제삼자가 내려 받지 못하도록 막는 어떠한 제재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Sahoury는 음란영상물과 그 링크를 발견한 직후 피고들과 Criso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자신과 딸의 명예 회복을 위해 원고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시간”을 음란영상물 사용자, 웹사이트와 링크를 찾아 신고하는데 썼다. 원고는 Criso의 도움으로 Nizard라는 사람이 음란비디오의 원본을 만든 것을 알아냈다.

처음에는 피고들도 Sahoury를 도와 Nizard를 찾고 음란영상물을 삭제하고자 하는 의지와 긴급함을 보였다. 그러나 2010년 8월에 들어서 피고들의 의지는 사라졌고, 원고는 변호인을 선임했다. 그러자 피고들은 원고에게 평판 관리 회사(reputation management company)를 고용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평판 관리 회사는 원고에게 검색엔진에서 음란영상물보다 상위의 검색결과를 가져다 줄 긍정적 내용을 만들어주겠다고 했지만 모든 음란영상물과 링크를 인터넷에서 완벽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Sahoury와 A.S.를 음란영상물과 연계시키는 신규 링크와 비디오는 인터넷 상에 계속 재등장했다. Sahoury는 소장을 통해 자신이 수모, 심각한 정신적

중압감, 불안감, 공황 발작, 울음과 떨림, 분노감, 슬픔, 자신과 딸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무분별한 집착을 겪어왔다고 주장한다.

II. 관할권

본 법원은 28 U.S.C. § 1332에 의한 복수의 주간 관할권 아래 본 소송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실체법에 관해서는 주법을, 절차법에 관해서는 연방법을 적용하도록 한다. *Gasperini v. Ctr. for Humanities*(Erie doctrine에 의해서 복수의 주간 관할권 아래 소를 맡는 연방 법원은 주 실체법과 연방 절차법을 적용한다)

III. 검토 기준

Fed.R.Civ.P. § 8(a)(2)에 따르면, 소장은 원고가 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간결하고 명백한 청구권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소장은 충분한 사실적 사항을 통해 청구권이 외견상 일리가 있음을 밝혀야 하고 법원은 이를 통해 피고들이 소장에서 주장된 위법행위에 책임이 있다는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기준은 구체적인 사실적 주장을 요하지 않지만 간소하게나마 “피고가 불법적으로 나를 해하였다”라는 정도의 기소는 요구한다.

소장에 있는 충분한 사실적 사항을 기술된 그대로 받아 들여졌을 때 원고가 외견상 일리가 있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이 나타나야만 피고의 청구권 기술 불충분으로 인한 소송각하요청(Fed.R.Civ.P. § 12(b)(6))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법원은 이 절차적 소송에서 소장에 주장된 사실적 사항을 있는 그대로 받아 들여야 하지만 소장에 적힌 법적 결말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추단적인 소송 구성요소의 단순한 나열은 이 절차적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원고는 특별히 정해진 개연성을 보일 필요

는 없지만, 피고가 불법 행위를 하였다는 확률이 단순한 가능성 이상임을 보여야 한다. 이 소장에 의한 통지는 문맥 전후 관계가 중요한데, 소장에 있는 사실적 사항이 피고에게 Fed.R.Civ.P. § 8에서 요구하는 청구권 통지 기능을 하지 못할 정도로 불충분 할 때엔 피고의 청구권 기술 불충분으로 인한 소송각하요청이 받아들여져야 한다.

피고가 소송각하요청을 하였을 때 법원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분석해야 한다. 첫째로, 법원은 소장의 각 주장에서 사실적 요소와 법적 요소를 구분해야 한다. 소장의 모든 사실적 요소를 사실로 간주하여 받아 들여야 하지만 법적 결말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둘째로, 법원은 주장된 사실이 원고가 외견상 일리가 있는 청구권이 있음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지를 결정해야 한다. 외견상 일리가 있음을 결정하는 것은 특정 전후 상황에 기인하며 법원의 경험과 일반 상식에 의지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소장은 단순히 원고가 손해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주장하는데 그쳐선 안되고 반드시 사실적시를 통해 그 자격이 있음을 제시하여야 한다.

Fed.R.Civ.P. § 12(b)는 소송각하요청에 관한 판단을 할 때 소장 이외의 사항이 고려되면 소송각하요청이 아닌 Fed.R.Civ.P. § 56에서의 약식판결 절차로 간주됨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3구 연방고등법원과 다른 연방고등법원은 법원이 소송각하요청을 약식판결 절차로 변환하지 않고 특정한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특히 법원은 소장의 근간이 되었거나 소장에 직접적으로 인용된 문서를 참고할 수 있다.

이 소송에서 피고들은 ‘모유수유 안내’ 영상과 원고가 서명한 면책 허가 서류를 첨부하였다. 이 자료들은 Sahoury의 청구권의 기반이 되므로 소송각하요청을 약식판결 절차로 변환하지 않고 이들을 참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Sahoury 또한 Criso의 진술서와 ‘모유

수유 안내' 영상이 포함된 음란영상물을 제출했다. 하지만 소장에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법원은 음란영상물을 참고할 필요가 없다. 이 음란영상물은 Sahoury의 청구권의 기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고들의 손해배상금에 관련될 뿐이다. Criso의 진술서는 소장의 내용보다 더 많은 사실을 담고 있고 소장에 담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증거가 되지만 동일한 이유로 이를 참고하지 않겠다.

IV. 분석

A. 소장은 사기적 허위진술, 부주의한 허위진술, 형평상 사기에 관한 청구권을 충분히 기술하고 있다.

소장에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원고는 사기적 허위진술, 형평상 사기, 부주의한 허위진술 등에 관한 외견상 일리가 있는 청구권에 관한 충분한 사실을 주장했다.

사기적 허위진술에 의한 청구권을 주장하려면, 원고는 다음의 다섯 가지 요소를 보여야 한다: (1) 현존하거나 과거에 존재했던 사실에 관한 중요한 허위진술; (2) 그 사실이 거짓임에 대한 피고의 믿음 또는 지식; (3) 다른 사람들이 그 허위진술을 믿게 하려는 의도; (4) 다른 사람들의 허위진술에 대한 합리적 신뢰; (5) 이로 인한 손해들.

반면, 원고가 형평상 사기를 주장할 때에는 다음의 세 가지 요소만 충족시키면 된다: (1) 현존하거나 과거에 존재했던 사실에 관한 중요한 허위진술; (2) 원고의 허위진술에 대한 합리적 의존; (3)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피해. 다시 말해, 형평상 사기를 주장하기 위해선 원고는 피고의 '고의성', 즉, 피고가 자신이 허위진술 하는 사실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거짓이라고 믿었고, 그로 인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 하였다는 것을 보일 필요가 없다.

마찬가지로, 원고가 부주의한 허위진술에 관한 청구권을 주장하려면 피고가 부주의하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였고, 자신이 이를 합당하다고 믿고 그 결과로 피해를 입었다고 증명하여야(허위 사실에 대한 '신뢰' 요소는 사기와 부주의 허위진술과 같다).

Sahoury는 비디오 제작자가 의도적이거나 부주의하게 성을 제외한 이름이 '모유수유 안내' 동영상에 사용될 것이며, 비디오는 Parents® 웹사이트나 케이블 TV에서만 보여질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원고는 이 말을 믿고 비디오 촬영에 참여했고 모유수유를 시범 보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원고는 자신이 면책 허가 서류를 읽지 않았음을 인정하지만, 이 서류가 제작자가 이미 자신에게 진술한 사항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믿고 서명했다고 말한다.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과 딸의 이름이 포함된 비디오를 YouTube에 게시함으로써 제작자의 말을 믿은 자신과 자신의 딸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이 비디오에 자신과 딸의 이름을 사용하고 그 비디오를 YouTube에 게재함으로써 제삼자가 이를 다운 받아 음란영상과 모유수유 장면을 합성해 자신과 딸의 이름을 음란영상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주장이다.

위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원고가 청구권 자격이 있음이 입증된다. 첫째로, Fed.R.Civ.P. § 8(d)(2)-(3)은 원고가 양자택일의 대체적 형태로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피고들이 허위진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 허위진술이 의도적이었는지 혹은 부주의에 의하였는지는 증거 개시 절차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 현 상황에서 소장에 제시된 사실을 근거로 볼 때 두 이론들 중 어떤 것도 가능하다. 또한, 사기를 주장할 때 원고는 사기를 둘러싼 자세한 상황을 진술해야 하지만, 악의, 고의, 지식 등 피고의 심리상태에 대한 다른 조건들은 진술할 필요가 없다. 원고는 이 필요조건을 충족하였다. 원고는 자신이 면책 허가 서류에 서명하게 하고 비디오 촬영에 참가하게 만

든 허위 진술의 자세한 상황을 주장하였고, 피고들이 진술사실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으며, 자신이 이를 믿을 것을 의도하고 진술하였음을 대체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들은 원고가 허위진술을 합리적으로 믿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청구권 기술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은 또한 원고가 서명한 면책 허가 서류가 녹화물 등에서 원고와 원고의 딸의 이름을 사용하고 녹화물 등을 현재와 이후에 제작될 어떠한 매체에서라도 사용할 것을 허가하였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피고들은 기존에 구술로 설명된 내용이 계약문서와 상반되기 때문에 Sahoury가 피고들의 구술 설명을 합리적으로 믿을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결론은 현재의 소장 수준에서 주어진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Sahoury가 비디오 촬영이 끝난 뒤 서둘러 갓난 아기인 딸을 집으로 데려가려는 상황에서 면책 허가 서류에 서명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사건 진행 상황 자체만 보아도 그런 속결을 배제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피고들은 또한 “이 문서에 의도된 서명자의 영상, 목소리, 이름의 사용에 관해 서명자가 언제든지 가질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소송권을 포함한 어떠한 청구권으로부터 피고들을 면책한다”라고 기술된 면책 허가 서류를 원고가 서명함으로써 이 소송 자체가 금지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질 시 원고의 주장에 대한 유효한 반론이 되겠지만, Sahoury는 사기적 허위진술 등에 관한 외견상 일리가 있는 청구권을 소장에 기술했고, 이 청구권이 받아들여지면 면책 허가 서류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

일반적으로, 피고들이 면책 허가 서류에 의존해 소송각하를 요구하는 것은 소장 기술의 기준이 입증 책임 기준과 다름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소송각하 요청에서의 적절한 분석은 소장의 첫째, 둘째, 일곱째 소인이 외견상 일리 있는 사기적 허위진술, 부주의한

허위진술, 형평상 사기에 관한 청구권을 기술하고 있음을 보인다는 것에 그쳐야 한다. 따라서, 이 청구권들에 대한 소송각하요청을 거절한다.

B. 소장은 외견상 일리가 있는 계약 위반 청구권을 기술한다.

네 번째 소인은 피고들이 성을 제외한 이름만을 사용하겠다고 말했으므로 피고들이 ‘모유수유 안내’에 Sahoury의 성과 이름을 이용했을 때 면책 허가 서류의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사실적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이는 외견상 일리가 있는 계약 위반 청구권을 기술하고 있다. 피고들은 원고가 서명한 면책 허가 서류가 Sahoury와 A.S.의 이름과 녹화물 등의 사용을 허락하므로 자신들의 행동은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원고는 법적으로 계약 위반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진술한다.

면책 허가 서류는 “이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이름”이 성과 이름을 동시에 지칭한다고 정의하지 않는다. 이 계약 위반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려면 계약서상 단어의 의미를 해석해야 하지만 이는 소장 기술의 분석 기준인 “외견상 일리 있는 계약 위반 청구권을 주장하고 있는가”와는 초점을 달리한다. 소장에서의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소장은 원고가 손해배상 받을 자격이 있음을 충분히 나타내고 있다.

C. 소장은 외견상 일리가 있는 과실과 그 과실에 의한 정신적 손해 배상 청구권을 기술하고 있다.

세 번째와 여섯 번째 소인은 피고들에 과실이 있었고, 그 과실로 인해 원고가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기술한다. 과실은 불합리한 위협과 해악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정해진 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행동을 말한다. 과실로 인한 소권은 손해를

입힌 주의 의무 위반이 원인이다. 과실로 인한 청구권을 가지려면 원고는 네 가지 요소를 입증해야 한다:

(1) 피고는 원고에 대한 주의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행동은 그 주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3) 그 위반이 원고의 손해의 주원인이었다. 이와 독립적으로 과실에 의한 정신적 손해 배상 청구권을 가지려면 (4) 원고는 피고의 과실 행위가 목전의 신체 상해에 대한 합리적인 위해를 느끼게 하였고, 그 신체 상해의 수준이 육체적 상해, 질병을 야기하는 정신적 고통 정도여야 한다.

소장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충분히 주장하고 있다: (1) 피고들은 모유수유 비디오를 촬영, 편집, 제작, 배포함에 있어 Sahoury와 A.S.에 대해 합리적으로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2) 피고들은 Sahoury의 이름이 담긴 비디오를 YouTube에 게시함에 있어 합리적으로 보안에 신경쓰지 못하였고, 이는 피고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3) 피고들은 부주의한 행동이 Sahoury와 A.S.에게 피해를 입힐 것임을 알았어야 한다; 그리고 (4) 피고들의 부주의는 Sahoury와 A.S.가 음란영상물과 연계되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는데 직접적인 주요 원인이다. Sahoury는 자신이 자신과 딸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집착하게 되었고 수모, 심각한 정신적 중압감, 불안감, 공황 발작, 울음과 떨림, 분노감, 슬픔을 겪어왔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이 ‘모유수유 안내’ 동영상상을 제작·배포함에 있어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원고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고들이 Parents® 웹사이트에 게시한 다른 비디오가 제삼자가 내려 받지 못하도록 보호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들이 다른 모유수유 비디오를 포함한 여타 교육용 비디오에 선 성과 이름을 모두 사용하지 않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피고들이 Sahoury의 모유수유를 촬영한 날,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제작자, 촬영

기사와 모유수유 전문가와 촬영된 두 번째 모유수유 비디오에 참여한 여성의 동영상 화면에는 성과 이름 모두가 표기되지 않았다. 또, Sahoury는 음란영상물이 발견된 후에 Criso가 제작자에게 전화를 걸어 왜 Sahoury의 성과 이름이 모두 사용되었는지를 물었고, 그 제작자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으며, 우리가 보통 하는 일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대답했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자신들에게 제삼자의 행위를 제지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는 법적으로 본 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한다. 첫째로, 피고는 원고의 소장을 잘못 읽고 있다. 소장은 피고들이 피해를 끼치는 음란영상물을 만든 제삼자들의 행위로부터 Sahoury와 A.S.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모유수유 안내’ 비디오의 부주의한 노출로부터 Sahoury와 A.S.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은 전문가로서 사례금을 받거나 선전효과를 얻지 않았던 원고가 자신의 일상적인 두려움을 떨치고 그녀의 갓난 아기가 자신과 함께 촬영되는 것을 허락해 모유수유 기술을 시범해 보였다는 사실들에서 자연스레 기인한다.

둘째로, 피고들에 의해 인용된 판례들이 말하는 것처럼 주의 의무의 유무를 따지는 것은 당사자들의 관계, 주의를 다할 기회나 능력, 주장된 해결방책이 공공에 주는 이익 등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찾아내고 분석, 비교 평가하는 과정을 요구한다. 이 분석은 필연적으로 사실 특정적이고 원칙에 입각한다.

이 다수 요소들의 사실 특정적 비교평가는 증거 개시 절차를 요한다. 하지만, Twombly 판례로 소장 기술의 기준이 조금 높아진 이후에도 법원들은 원고가 반증이 없으면 승소가 확정될 사건의 모든 요건을 확증할 필요는 없고, 증거 개시 절차가 필요 요건의 증거를 밝힐 것이란 합리적 전망을 보일만한 주장을 내세우기만 하면 된다고 판단해 왔다.

본소에서 Sahoury는 외견상 일리가 있는 과실과 그 과실에 의한 정신적 손해 배상 청구권을 보일만한 사실을 주장했고, 따라서 이 세 번째와 여섯 번째 소인에 대한 피고들의 소송각하요청을 거절한다.

D. 소장 기술 시기에서 경제적 손실 원칙은 불법행위나 사기에 대한 권리 주장을 막지 못한다.

피고들은 비록 사기와 과실에 대한 권리 주장(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그리고 일곱 번째 소인들)이 적절하더라도, 경제적 손실 원칙이 이들의 권리주장을 막는다고 주장한다. 경제적 손실 원칙은 일반적으로 계약서에서의 권리로부터 나오는 경제적 손실은 불법행위나 사기에 대한 청구권으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다시 말하면, 계약 위반과 사기, 불법행위에 대한 권리가 같은 기본 사실에 의거할 때, 원고는 계약 위반 청구권만 주장할 수 있고 사기, 불법행위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다는 원칙이다.

피고들의 주장은 Fed.R.Civ.P. § 8(d)(2)이 원고가 소장에서 대체적이거나 상호 모순된 권리주장을 하는 것을 허락함을 망각한 것이다. 경제적 손실 원칙이 이 사건에 적용될 시, 이는 원고가 계약 위반과 같은 기본 사실로부터 기인하는 불법행위나 사기에 대한 권리 주장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게 할 뿐이고, 원고가 불법행위나 사기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적절한 판례법은 경제적 손실 원칙이 본 사건에 적용되지 않음을 강하게 나타낸다. 양 당사자가 인용한 거의 모든 판례가 물품 판매나 저당(담보) 계약에서 기인한다. 또, 피고들의 주장은 법원이 면책 허가 계약이 유효하고 구속력 있는 계약서라고 결정할 것임을 가정할 때만 유효하지만, 본 법원은 이 시점에서 계약의 유효 여부에 대해 결정하지 않을 것이

다. 피고들이 원고의 권리주장에 유효한 반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그 권리주장이 소장에 충분히 기술되었는지를 판단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다.

E. 소장은 프라이버시권 침해나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권리주장은 기술하지 못했다.

다섯 번째 소인은 피고들이 Sahoury와 A.S.의 이름을 모유수유 비디오에 “거래 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인해 프라이버시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였고 Sahoury와 A.S.의 이름을 피고들의 이익을 위해 부당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양 당사자는 New Jersey 법이 개인의 이름, 초상의 부당 사용에 대한 퍼블리시티권 침해소송을 판례법에서의 불법행위 소송으로서 인정한다는 데 동의한다. 부당사용에 대한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 원고는 다음의 요건을 보여야 한다: (1) 피고가 원고의 이름이나 초상을 이용하였고; (2) 그 이용은 상업적 혹은 거래 목적이거나 피고의 회사나 제품을 광고하기 위한 것이었다.

본 소에서 피고가 Sahoury와 A.S.의 이름과 초상을 이용했다는 사실은 양당사자 모두 인정한다. 그러나 소장은 그 이용이 거래목적이었다는 점은 주장하지 않았다. New Jersey 법에 의하면 피고는 초상의 사용이 주로 상업적 목적을 위한 것이었을 때만, 즉, 피고가 뉴스나 정보 배포목적이 아닌 원고의 초상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취하고자 했을 때만 부당한 사용에 대해 책임이 있다. Hart v. Elec. Arts, Inc.(상업적 목적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은 ‘피고인들의 발행물이 원고의 초상을 이용함에 있어 원고의 이름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상업적 기획에 이용했는가’이다) 불법행위가 아닌 다른 사람의 초상 이용도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수익 목적 하나만으로는 “상업적 목적” 요소를 충족시키지 못한

다. 따라서 이용은 공공의 이익이나 뉴스로서의 가치, 혹은 역사적 가치가 없이 주로 거래목적이어야 한다.

본 소에서 Sahoury는 피고들이 ‘모유수유 안내’ 영상을 YouTube에 게시함으로써 “상업적 목적”을 지님을 입증했다고 보았다. 원고는 큰 회사들이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기 위해 YouTube에 비디오를 게시하고, 게시된 비디오는 회사 웹사이트를 선전하고자 회사 로고를 포함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이 회사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그 웹사이트에서의 광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 주장들은 피고들이 비디오를 YouTube에 게시함으로써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는 사실만 암시한다. Sahoury이 주장한 사실들을 통해 어떤 회사들이 무슨 이유로 교육용 비디오 내용을 게시하는지를 설명할 수는 있으나,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Sahoury와 A.S.의 이름과 초상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 하였다는 구체적 사실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더군다나 소장은 비디오가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거나, 아무런 뉴스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지 않았다. 사실, 소장은 비디오가 “교육용 혹은 시범용”이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Castro 판례에서 다수의 응급실 환자들은 동의서에 사인을 한 뒤 비디오 촬영을 하였고, 후에 초상의 무단 사용에 대한 소를 제기하였다. 환자들은 피고들이 자신들을 리얼리티 TV쇼 촬영 스태프들이 아닌 병원 직원으로 소개했다고 주장한다. Castro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들이 원고들의 초상과 이름을 상업적 수익과 이익을 위해 무단 사용하였다”는 법률적 결론만을 주장하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Castro 법원은 원고의 소장이 비디오 영상이 거래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이 결말에 도달하기 위해 Castro 판례는 불법행위법제술 제2판(Restatement Second of Torts)을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논증하였다.

“비디오 영상의 TV 방영이 촬영된 사람에게 자신의

초상권 무단 사용에 관한 소 제기 권리를 자동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이름과 초상 모두 사적인 것이 아니고, 대중의 관찰에 의해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이나 초상이 대중에 공개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 피고가 이름이나 초상을 통해 상업적 혹은 다른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하였을 때만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된다. 피고가 신문사 같이 출판, 방송 등으로 수익을 취하거나 수익을 취하려 하는 회사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피고의 이름, 초상 게시를 상업적 사용이라 단정하기 힘들다. 따라서, 비록 신문사가 자선사업단체는 아니지만, 그 사실이 신문사가 이름, 초상을 게시할 때마다 프라이버시권 침해나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하도록 만드는 것은 아니다.”

또한, Castro 판례는 해당 영상이 연예·오락관련 프로그램에서만 방영되었는지, 혹은 중요한 사회문제에 관한 프로그램에서 방영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원고들이 초상들이 상업적 혹은 거래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 이를 떼면 “비디오 영상이 선전용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같은 주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Castro 법원은 청구권이 받아들여질 만한 소장 기술을 하지 못하였다고 결론지었다.

이와 비슷하게, 피고가 주로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주장이 없이 Sahoury와 A.S.의 이름과 초상이 방영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무단 사용의 소를 제기하기 불충분하다. Sahoury와 A.S.의 초상이 광고나 선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은 소장에 제기되지 않았다. 피고들이 “교육용 혹은 시범용의” ‘모유수유 안내’ 비디오를 제작 배급함에 있어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무단 사용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소를 제기하는데 있어 “상업적 목적”요소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소장은 피고들이 원고의 이름과 초상을 “거래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법률적 결론만을 제기하고 있고, 따라서 무단 사용의 소제기는 각하되어

야 한다.

V. 결론

피고들의 소송각하요청은 상기된 이유를 바탕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소인에 대해 받아들여졌고 다섯 번째 소인에 대해서는 각하되었다. 이에 상응한 법원의 명령이 따를 것이다.

[미국판례 3]

게을러서 직장을 잃었다는 표현은

**경멸적 내용을 담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므로
경제적 손실이 없이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판결요지〉

가. 피고의 “너무 게으르다”는 일반적인 진술은 의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원고의 명예훼손 주장은 소송의 현 단계에서 필요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보여진다. Celle 판례에서 인용된 New York 항소법원의 테스트를 적용할 때, 피고의 기술은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객관적으로 사실 또는 거짓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출판 정황을 살펴볼 때 독자들에게 진술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 의견이라고 받아들여질 만한 징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된 K.S. Liu의 진술의 최소한 일부분은 의견이 아닌 사실로 읽혀질 수 있다고 판결한다.

나. “New York 법에 의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려면 원고는 반드시 금전적 가치의 손실로 이루어진 특별한 손해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옳다. 하지만, 진술이 그 자체로 소송을 걸 수 있는 경우엔, 원고는 특별한 손해를 주장할 필요가 없다. New York 법에 의하면 글이 증오, 경멸 또는 혐오에 원고를 노출하는 경향이 있거나, 공동체 안의 상당한 수의 사람들의 마음에 원고에 대한 불미스러운 의견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으면, 그 글은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다. 이는 비록 그 글이 원고에게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진 않거나 또는 원고의 사무, 직업 수행, 거래 방식에 관해 비방하는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소송의 현 단계에서 피고의 진술이 이 조건을 충족했다고 판결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뉴욕 남부지방법원
(U.S. District Court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원고: Sang Lan

피고: AOL Time Waner, Inc. 등

사건번호: No. 11 Civ. 2870(LBS)(JCF)

판결선고: 2012. 5. 9.

Sand, J. 판사 :

원고 Sang Lan과 잔류 피고 K.S. Liu, Gina Liu, Hugh Mo는 2011년 11월 21일 발효된 치안 판사 James C. Francis의 보고와 권유(Report and Recommendation; 이하 「판결서」라 한다)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판결서는 (1) 원고의 소장 정정신청을 허가하고, (2) 피고들의 사물관할권 부재로 인한 소송각하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3) 피고들의 소장 기술 부족에 의한 소송각하청구를 일부 인용, 일부 기각하고, (4) 피고의 원고와 원고의 전(前) 변호사 Ming Hai에 대한 제재 요구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다. 판결서와 당사자들의 판결서에 대한 이의를 검토 한 후, 판결서를 일부 인용, 일부 기각한다.

I. 배경

당사자들이 사건의 사실 관계와 소송 절차를 잘 알고 있다고 간주하고 자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이에 대해 궁금한 사람은 판결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판결서가 나온 이후로, 당사자들은 Fed.R.Civ.P. § 11에 의거한 피고의 Ming Hai에 대한 제재 요구의 기각에 동의해왔지만 원고에 대한 제재 요구의 기각은 동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Ming Hai의 책임 유무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으므로, 2011년 11월 14일 확정된 본

법원의 기록을 재강조한다: Ming Hai가 더 이상 원고의 변호사가 아닌 이상, Ming Hai는 원고를 대변해 문서를 제출할 자격이 없고 따라서 Ming Hai의 판결서에 대한 이의는 고려하지 않겠다.

II. 검토의 기준

치안 판사의 판결서를 검토하는 지방법원은 판결서 전부 혹은 일부를 인용, 기각, 변경할 수 있다. 지방 법원은 이의가 제기된 판결서의 부분은 판결서 내용에 의존하지 않고 새로이 분석하며,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명백한 오류가 있는지만 검토한다.

III. 논의

A. 소장 정정신청

세 번째 정정된 소장이 불성실, 부당한 지연, 시간 지체 의도 등으로 제출되진 않았다는 Francis 판사의 판결에 동의한다. 정정을 허가하는 것이 피고들에 피해를 입히지 않을 것이란 Francis 판사의 판결에도 동의한다. 또한, 피고들이 이 쟁점에 대한 Francis 판사의 판결에 구체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Francis 판사의 판결을 인용하고 원고의 소장 정정신청을 허가한다.

B. 사물관할권

원고가 본 안 소송에 승소한다고 가정할 때, (1) 손해 보상액이 \$75,000를 넘고, (2) 원고의 Winston Sie.에 대한 소가 기각됨으로 인해 완벽한 다양성이 이루어졌다는 Francis 판사의 판결에 동의한다. 이 결정 역시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고, 따라서 이 판결을 인용한다. 피고들의 사물관할권 부재로 인한 소송각하

청구를 기각한다.

C. 소장 청구권 기술 부족

피고들은 아홉 번째, 열 번째, 열세 번째 소인에 대한 Francis 판사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각각을 순서대로 논하겠다.

i. 아홉 번째 소인: 수탁자 의무 위반

피고들은 자신들이 원고의 초상을 허가 없이 사용하여 수탁자 의무를 위반했다는 원고의 주장이 원고의 프라이버시권 침해 주장과 중복되므로 수탁자 의무 위반 청구권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 청구권이 같은 사실 관계에 기인할 때, 각각의 다른 손해가 주장되지 않는 이상, 둘은 중복되는 주장이다. 따라서, 쟁점은 ‘원고의 수탁자 의무 위반 주장과 프라이버시권 침해 주장이 같은 사실관계와 손해에 기인하는가’이다. 본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에 동의한다.

아홉 번째와 열세 번째 소인에서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의 허락 없이 자신의 영상, 이름, 초상을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프라이버시권 침해 주장인 열세 번째 소인이 좀 더 구체적이고 허가 되지 않은 원고의 목소리 사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양 주장의 주요 취지는 크게 같다. 따라서 피고들이 자신의 허락 없이 자신의 영상, 이름, 초상을 사용했다는 원고의 수탁자 의무 위반 주장을 기각하며 이에 대한 재소를 허용한다.

ii. 열 번째 소인: 명예훼손

K.S. Liu는 자신이 2011년 1월에 중국 웹사이트 Sinovision에서 게재한 것이 명예훼손이었다는 법원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다. K.S. Liu는 “Sang Lan은 매우 게을리 직장을 구하지 못한다. 나는 나와 중국

정부와의 연줄을 이용해 그녀가 Star TV에서 직장을 얻도록 도와주었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런 일도 하기 싫어해서 그 직장을 잃었다”고 말했다.

New York 법에 의하면 원고가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다음의 다섯 가지 요건을 입증해야 한다:

(1) 원고에 관련된 사실에 대한 서면의 명예훼손 진술; (2) 그 서면의 제 삼자에 대한 출판; (3) 명예 훼손된 사람에 대한 부주의 혹은 현실적 악의 등의 잘못; (4) 명예훼손 진술의 거짓; 그리고 (5) 특별한 손해, 혹은 의견상의 명예훼손 그 자체로 소송을 걸 수 있는 경우.

K.S. Liu는 첫째로, 자신의 진술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의 진술이었으며, 둘째로, 원고가 특별한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본 법원은 K.S. Liu의 원고에 대한 “게을러서 Star TV에서의 직장을 잃었다”는 진술이 충분히 사실의 적시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비록 K.S. Liu의 “너무 게으르다”는 일반적인 진술은 의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원고의 명예훼손 주장은 소송의 현 단계에서 필요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보여진다. Celle 판례에서 인용된 New York 항소법원의 테스트를 적용할 때, K.S. Liu의 진술은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객관적으로 사실 또는 거짓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출판 정황을 살펴볼 때 독자들에게 진술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 의견이라고 받아들여질 만한 징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된 K.S. Liu의 진술의 최소한 일부분은 의견이 아닌 사실로 읽혀질 수 있다고 판결한다.

반면, “New York 법에 의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려면 원고는 반드시 금전적 가치의 손실로 이루어진 특별한 손해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옳다. 하지만, 진술이 그 자체로 소송을 걸 수 있는 경우엔, 원고는 특별한 손해를 주장할 필요가 없다.

특정 진술이 명예훼손인지는 법적 문제로 법원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 New York 법에 의하면 글이 중요, 경멸 또는 혐오에 원고를 노출하는 경향이 있거나, 공동체 안 상당한 수의 사람들의 마음에 원고에 대한 불미스러운 의견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으면, 그 글은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다. 이는 비록 그 글이 원고에게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진 않거나 또는 원고의 사무, 직업 수행, 거래 방식에 관해 비방하는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소송의 현 단계에서, K.S. Liu의 진술이 이 조건을 충족했다고 판결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K.S. Liu의 진술은 원고를 어떤 직업이나 생업의 수행에도 필요한 필수적인 특성(근면, 헌신, 혹은 부지런함)이 없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런 진술은 원고의 전문가로서의 지위에 분명 해를 입힐 것이다.

또한 또 다른 K.S. Liu의 진술 - “Sang Lan은 게으르다. 그녀는 혼자 소변을 보도록 훈련되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따라서 내가 소변 줄을 이용해 그녀가 소변을 보도록 도와야만 했다.” - 역시 그 자체로서 명예훼손이다. 이 진술은 원고가 마비 증상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배뇨 도움이 필요한 이유가 순전히 그녀의 게으름 때문이라고 암시한다. 이 진술이 중요, 경멸 또는 혐오에 원고를 노출하는 경향이 있거나, 공동체 안의 상당 수의 사람들의 마음에 원고에 대한 불미스러운 평가를 유도하는 경향이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와 비슷하게, K.S. Liu와 Gina Liu에 대한 명예훼손 주장은 외견상 일리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Hugh Mo에 대한 명예훼손 주장을 각하한 판결서를 인용한다. 열 번째 소인의 다른 부분, 즉 K.S. Liu와 Gina Liu에 대한 명예훼손 주장에 대한 피고의 소송각하청구는 기각한다.

iii. 열세 번째 소인: 프라이버시 침해

원고가 New York Civil Rights Law §§ 50, 51에 의거해 반증이 없으면 승소가 확정될 프라이버시 침해 청구권 요소를 입증하였다는 Francis 판사의 결정을 인용한다. 원고가 CD 표지에서의 초상 사용과 CD에서의 목소리 사용이 객관적으로 계산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피고들의 이의 제기는 의미가 없다. 원고는 CD의 목적이 피고들의 회사 광고였음을 주장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반대되는 증거를 제기하지 못했다. 이 경우 원고는 소제기 필요 요건을 충족시켰다.

피고들의 열세 번째 소인에 대한 소송각하신청을 기각한다.

D. 제재 요청

피고들은 원고와 원고의 전 변호사 Ming Hai에 대한 제재를 요청해 왔다. 피고들은 그 제재의 근거로; 무분별한 청구권 제기, 소장 정정신청이 Fed.R.Civ.P. § 11를 위반한 것, 원고의 주장들이 사실이 아닌 일로 가득했다는 것, Hugh Mo를 변호인 자리에서 몰러나게 강요하기 위해서 그를 피고인으로서 추가하였다는 것 등을 든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피고들의 Ming Hai에 대한 제재 요청은 이미 해결되었다. 문제는 ‘원고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가’이다.

방법원은 제재가 필요한가를 결정하는데 대해 일반적으로 많은 재량을 갖는다. Francis 판사가 명시한 바와 같이 유일하게 가능한 제재 근거는 원고가 제기한 일부 청구권이 명백히 무분별했다는 것이다.

객관적인 합리성의 기준에서, 원고의 청구권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고, 현존하는 법을 연장, 수정, 취소할 타당한 주장이 없다면, 원고의 주장이 무분별하며, 이에 따라 Fed.R.Civ.P. § 11에 의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는 비교적 엄격한 기준이다. 미

약하거나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만으로는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일부 사람들이 원고의 소장이 무분별한 주장이라 비난할 수 있음은 사실이나,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제재 요청을 기각한다.

IV. 결론

상기된 이유를 바탕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재 요청을 기각하고, 아홉 번째 소인에 대한 피고의 소송 각하요청을 받아들인다(원고는 재소가 가능하다). 열 번째 소인 중 Hugh Mo에 대한 명예훼손 주장에 대한 피고의 소송각하요청을 인용하고, K.S. Liu와 Gina Liu에 대한 명예훼손 주장에 대한 피고의 소송각하요청은 기각한다. Francis 판사의 판결서를 다른 모든 면에서 인용한다.

■ 출처 : 『MEDIA LAW REPORTER』

미국판례 1 : Vol. 40/P.2057~2068

미국판례 2 : Vol. 40/P.2182~2191

미국판례 3 : Vol. 40/P.2109~2112

■ 번역 : 이해성

(University of California Law School)

외국신문평의회사례

[영국사례 1]

**지나치게 상세한 자살 방법 보도는
보도윤리강령 위반이다.**

신청인 : A woman

매체명 : Wiltshire Gazette & Herald

불만내용

신청인은 2012년 9월 6일자 〈Wiltshire Gazette & Herald〉에 실린 기사가 자살의 방법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여 보도윤리강령 제5조(슬픔과 충격에 대한 침해)를 위반하였다며 불만을 제기하였다. 이 불만 신청은 인용되었다.

문제의 기사는 자살한 남성의 사인규명 공판에 관한 보도였다. 자살에 사용된 가스(gas)의 종류, 흡입이 이루어진 방식과 발견 당시 고인의 상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실렸다. 신청인은 기사내용이 노골적이고 전문적이며 고인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고통을 불러왔다고 전했다.

언론사는 고인에 대해 보도하면서 가족의 바람대로 신중함을 기하고자 노력했고, 그들의 요청으로 위 죽음 당시에는 기사를 게재하지 않았다고 밝혀왔다. 세 부적인 보도내용들은 사인규명 공판을 통해 공개되었고, 이들을 누락할 경우 검시관의 의견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게 된다고도 덧붙였다.

결정

불만제기 내용을 인용한다.

평결

보도윤리강령 제5조 제2항은 언론 보도가 자살 방법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2006년에 신설되었다.

사인규명은 일반적으로 사망 방법에 관한 높은 수준의 정보를 포함한다. 자살 사건의 경우 언론은 사인규명에 대해 보도할 권리가 있지만 보도윤리강령 제5조에 위반되지 않도록 정보의 수위를 제한하는 주의를 마땅히 기울여야 한다.

기사는 한 남성의 목숨을 잃게 만든 가스의 명칭, 그것을 얻게된 방법과 흡입 방식에 관해 보도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위원회는 해당 정보의 공개 수위가 지나쳤다고 보아 신청인의 불만신청을 인용한다.

[영국사례 2]

**기사 헤드라인에 일인칭을 사용한 것은
신중하지 않은 보도태도다.**

신청인 : Nick Crossley

언론사 : Halifax Courier

불만내용

신청인은 John Pickering & Partners에 소속된 변호사(Solicitor)를 통해, 2012년 3월 17일자 〈Halifax Courier〉에 실린 “거물 Crossley: 나는 죽어가고 있

다” 제하의 기사가 보도윤리강령 제1조(정확성) 위반으로 부정확하며, 제5조(슬픔 및 충격에의 침해)를 위반하여 신중하지 못하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보도윤리강령 제5조에 관한 불만 신청은 인용되었다.

신청인은 악성중피종(malignant mesothelioma)¹⁾ 환자이다. 기사는 신청인이 이전의 고용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는 고용주가 신청인이 근무 현장에서 석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신청인은 자신이 “나는 죽어가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암시한 기사의 헤드라인이 부정확하고 신중하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비록 자신이 불치의 병에 걸렸지만, 중피종에 걸린 채로 남은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기사는 신청인이 하지 않은 말을 직접 말한 것처럼 보도하였고, 신청인은 위와 같은 표현을 언론사의 기자에게나 (그에게는 어떠한 코멘트도 하지 않았다) 그의 소송 과정에서도 결코 - 혹은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어떠한 표현도 - 사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보도로 인해 신청인과 그의 가족은 상처와 고통을 받았으며, 그의 고용인들은 직장을 옮겨갔다고 밝혔다.

언론사는 신청인에게 고통을 불러온 점에 대하여 사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기사의 헤드라인은 관련 소송의 요약으로써 신청인이 “그의 병환이 말기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위 진단으로 인해 본인과 그의 가족이 비탄에 빠져있다는 정보 - 일반에게 공개된 자료를 통해 알려진 - 를 포함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헤드라인에는 인용부호(“ ”)를 넣지 않았고 이는 신청인의 상태를 기술한 것으로써 독자들에게 정확히 이해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보도가 사생활을 침해한다거나 신중하지 못하다는 점은 인정할 수 없으며, 이미

공개된 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기사임을 강조했다.

결정

불만제기 내용을 인용한다.

평결

언론은 보도윤리강령 제5조에 따라 슬픔이나 충격이 수반되는 사건에 관해, 연민과 신중함을 갖추어 취재에 임하고, 세심한 보도를 해야한다. 다만, 사인구명과 같은 법적인 절차에 관해 보도할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 사건은 매우 까다로우며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언론사는 신청인이 걸린 병의 경과를 포함하여 그가 제기한 소송에 관한 세부내용 - 이미 대중에 공개되었다 - 에 대해 보도할 권리가 있다. 언론사측이 신청인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보여지나 신청인이 자신을 “죽어가고 있다”고 묘사했다는 사실에 관해 증명하지는 못했다.

기사의 헤드라인에 일인칭을 사용하는 것이, 때로는 개인의 관점을 요약하는 적절한 기법이 되지만 이 사건의 소재는 몹시 개인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위원회는 신청인이 걸린 병의 경과를 보도하는 수단으로써 기사의 헤드라인에 일인칭을 사용한 것은 신중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므로 제5조에 관한 불만 신청을 인용한다.

또한 신청인은 보도윤리강령 제1조(정확성) - 언론은 부정확하거나, 독자를 호도하거나 정보를 왜곡하는 보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중대한 잘못(부정확성, 호도성 진술 혹은 왜곡)이 인정되는 즉시 시정해야 한다 - 의 규정에 근거하여 기사의 헤드라인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위원회는 헤드라인의 정확성에 대한 불만을 살핌에

1) 석면가루가 등 폐·흉막 등에 쌓여 발병하는 종양으로, 석면 노출 후 20년 이상 경과 후 발병하여 1~2년 이내에 사망하는 치명적인 병이다.

있어서, 그것의 문맥을 고려하였다. 보도는 신청인의 소송 과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신청인이 언론사 측과 인터뷰한 것이라고 암시하지도 않았다. 위원회는 독자들이 신청인이 주장하는 자세한 내용을 이해하였다고 보며, 여기에는 공개된 자료를 통해 얻어진 신청인의 병력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 그리고 전체적인 보도 내용으로 보아 독자들은 사실에 기반하여 위 기사의 내용을 오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제1조 위반은 없다.

[영국사례 3]

정정보도는 비중있게(due prominence) 이루어져야 한다.

신청인 : Honest Reporting

언론사 : The Guardian

불만내용

신청인은 Asserson Law Offices를 통해, 2012년 4월 22일자 <The Guardian>의 정정·해명란에 실린 기사가 보도윤리강령 제1조를 위반했다며 불만을 제기하였다.

언론사는 보도윤리강령 제1조를 위반하여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보도하지 말아야 할 주의를 다하지 못하였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

기사는 예루살렘에서 전차에 탄 승객들을 촬영한 사진과 함께 수도라고 설명하는 캡션(사진·삽화에 붙인 설명)을 달았다. 이어서 후속 기사(첫 번째 정정보도)를 통해 “이스라엘의 수도로 잘못 언급된 도시”라는 캡션과 함께 “<The Guardian>의 지침에 따르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니며 텔아비브’라고 서술되어 있다”고 해명했다.

신청인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는 주장은 논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텔아비브를 수도라고 칭하는 것은 부정확하다고 주장했다. 애초에 위원회는 이 기사에 보도윤리강령의 위반이 없다고 보았지만, 신청인이 제기한 수많은 추가사안들에 관련된 언론사의 답변을 요청하는 것에는 동의했다.

신청인은 이스라엘 중앙 정부의 세 부처 -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 가 예루살렘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과 1980년에 이스라엘의 국회(Knesset)가 통과시킨 기본법(Basic Law)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다”고 명명하고 있음을 포함해 많은 논점들을 제시했다.

신청인은 이스라엘 중앙 정부의 세 부처 -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 가 예루살렘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과 1980년에 이스라엘의 국회(Knesset)가 통과시킨 기본법(Basic Law)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다”고 명명하고 있음을 포함해 많은 논점들을 제시했다.

반면, 언론사는 예루살렘의 지위 변화를 규탄하고, 회원국들에게 그곳에 대한 외교적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 UN안전보장이사회의 기본법 및 그 통과에 대한 반응을 언급했다. 이스라엘과 외교적 관계를 맺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텔아비브에 대사관을 두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국제사회는 텔아비브를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간주하”는 참고자료를 신뢰한 것이고, “UN과 국제법은 1950년 이전부터 수도였던 텔아비브를 계속하여 수도라고 여겨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텔아비브를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봄이 정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예루살렘의 지위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도 인정하였다. 그리하여 두 번째 정정보도를 게재했는데, 즉 예루살렘의 지위를 둘러싼 논쟁의 역사에 관한 몇 가지의 배경지식을 제공하고, 텔아비브 - 나라의 경제·외교적 중심지 - 가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기술한 잘못을 인정했다. 또한 해당 보도에서 언론사의 지침이 수정되었다고도 밝혔다.

신청인은 두 번째 정정보도가 예루살렘의 법적 지위를 부적절하게 조명하고 있으며, 이는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또한 신청인은 텔아비브가 이스라엘의 외교적 중심지임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두 번째 정

정보도 역시 결함이 있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정정보도가 “비중(due prominence)”없이 보도되었고 위사안에 관해 위원회가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결정

충분한 해결조치가 취해졌다.

평결

보도윤리강령 제1조(정확성)에 따르면, 언론은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보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중대한 부정확하거나 호도적인 표현에 대해 즉각적이고 비중있게(due prominence) 정정해야 한다.

본 사건은 여러 이유에서 매우 이례적인 불만신청에 속하는데, 특히 불만이 정정보도 자체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예루살렘의 지위를 둘러싼 매우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다. 이와 더불어 텔아비브에 대부분의 외국 대사관이 위치해있다는 – 논쟁이 없는 – 사실을 고려할 때, 위원회는 애초에 텔아비브를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기술한 언론사의 보도가 보도윤리강령과 관련해 문제점이 없다고 여겼다. 그러나 신청인 측이 제출한 추가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언론사가 신뢰해 온 증빙자료에도 불구하고, 텔아비브가 이스라엘의 수도라는 명백한 표현은 독자들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보도윤리강령 제1조의 위반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언론사는 보도윤리강령 제1조가 요구하는 “즉각적이고 비중있게(due prominence)” 정정보도를 게재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보도한 두 번째 정정보도에서는 텔아비브를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잘못 표현했음을 인정했다. 위원회는 정정보도가, 신청인이 무관한 쟁점이라고 여겨온 예루살렘의 지위에 관해 지나치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텔아비브가 예루살렘

의 경제·외교적 중심지라고 표현한 언론사의 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신청인의 불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언론사는 보도윤리강령의 준수를 다한 채로 독자들에게 가공되지 않은 내용을 설명하는 권리를 갖는다고 보며, 게재된 두 번째 정정보도는 원문 기사의 부정확성에 대해 충분히 고심한 것으로 보여졌다. 나아가 정정보도는 비중있게(due prominence) 기사화되었으며, 신청인이 불만을 제기한 원문기사가 게재된 동일한 위치인 정정·해명란에 실렸음을 주목하는 바이다.

보도윤리강령 하에서, 더 이상의 문제점은 없다.

[호주사례]

보도가 부정확한 경우 언론사는 기사 삭제 뿐만 아니라 비중있게 정정보도하여야 한다.

신청인 : Andrew Williams

언론사 : The Courier Mail

개요

APC는 2012년 3월 7일, 브리즈번(Brisbane)의 〈The Courier Mail〉 홈페이지에 게재된 “경찰, 폭행 혐의로 사임” 제하의 기사에 대한 신청인의 불만을 검토하였다. 문제의 기사는 서퍼스 파라다이스(Surfer's Paradise) 경찰서에서 발생한 사건을 전하면서 한 고위 경찰이 “사임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유사한 이야기는 적어도 다른 2개의 웹사이트에 게재되었으며 그들 중 하나는 The Courier Mail이 출처라고 분명하게 언급했다.

신청인의 주장

서퍼스 파라다이스 경찰서 측인 신청인은 문제의

고위 경찰은 다른 경찰서 소속이며 사임의 원인이 된 사건은 신청인 측 경찰서에서 발생한 사건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문제의 기사는 부정확하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비록 위 기사가 몇 시간 후에 웹사이트에서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정정보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른 웹사이트’ 중 한 곳에 게재된 정정보도를 대조하면서, “이전 기사는 링크가 잘못 연결되었는데, 그것은 최근에 서퍼스 파라다이스에서 한 남성을 폭행한 사건이었다. 두 개의 사건은 무관하며, 해당 웹 사이트는 실수에 대해 사과했다”고 전했다.

언론사의 주장

APC의 질의에 대해, 언론사는 최초의 보도가 부정확하였음을 시인하였으므로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통상의 관례를 따랐어야 했다. 언론사는 사과를 표명했고, 이 사안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게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혀왔다.

결정 이유

APC는 언론사가 최초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퀸즈랜드(Queensland) 경찰의 보도자료에도 서퍼스 파라다이스 경찰서는 언급되지 않았고, 보도된 남부지역 출신의 고위 경찰의 기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언론사는 단지 기사를 삭제하는 것만이 아니라 비중있게(due prominence) 정정보도했어야 했다. 따라서 보도의 부정확성 및 정정보도 불이행에 관한 신청인의 불만을 받아들인다.

■ 번역 : 임미숙 (언론중재위원회 정책연구팀)

언론법제관련문헌

- 강신후 (2012. 12. 1). 언어와 뉴스보도. 한국소통학회주최 '2012년 한국소통학회 가을 정기 학술대회' 발제문.
- 고영철 (2012). 한·미 지역일간지 1면 기사의 보도방식 비교. 『언론과학연구』, 제12권 제3호, 37-78.
- 권만우 (2012. 10. 13). 한국 언론학의 융복합 현상 파악과 진단. 한국언론학회주최 '2012 한국언론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발제문.
- 권혁남 (2012). 2012 국회의원 총선에서 나타난 미디어 이용, 정치 냉소주의, 투표 참여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60호, 28-51.
- 김경모 (2012. 10. 13). 온라인 뉴스 확산과 여론형성 : '박정신 블로그 논란' 이슈 사례분석. 한국언론학회주최 '2012 한국언론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발제문.
- 김경환 (2012. 11. 1). 뉴스 전쟁의 글로벌 현장 : 글로벌 보도전문 채널의 현황 및 시사점. 한국언론학회 국제커뮤니케이션 분과주최 '글로벌 글로벌 보도전문 채널의 경쟁 전략과 국제뉴스의 미래' 세미나 발제문.
- 김국진 (2012. 12. 4). 미래가 있는 미디어 정책방향. 미디어미래연구소주최 '2012 미디어산업포럼 - 차기정부 방송통신정책포럼 6' 발제문.
- 김병선 (2012. 12. 20). 소셜 미디어의 진화적 계보와 생태학적 환경. 한국언론학회 철학과 사상분과주최 '2012년 송년 세미나' 발제문.
- 김보라미 (2012. 12. 20). 국내 망중립성 논의 현황과 쟁점.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주최 '12월 특별세미나' 발제문.
- 김상호 (2012. 12. 20). 소셜 미디어를 통한 발화의 철학적 성격. 한국언론학회 철학과 사상분과주최 '2012년 송년 세미나' 발제문.
- 김수미 (2012. 12. 14). 무료신문 뉴스 생산 과정의 특성 : <메트로>와 <더 데일리 포커스>의 사례 연구. 대구경북언론학회, 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주최 '2012 제4회 영남지역 대학원생 컨퍼런스 - 영남 언론학의 생태계를 찾아서' 발제문.
- 김영희 (2012. 10. 13). 한국전쟁기 이승만정부의 언론정책과 언론의 대응. 한국언론학회주최 '2012 한국언론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발제문.
- 김지영 (2012. 12. 14). 영남지역 언론사 사회자본 분석. 대구경북언론학회, 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주최 '2012 제4회 영남지역 대학원생 컨

퍼린스 - 영남 언론학의 생태계를 찾아서' 발제문.

- 김춘식 · 양승찬 · 이강형 · 황용석 (2012. 12. 1). 헤드라인 및 본문의 지배적 내용 분석. 한국소통학회주최 '2012년 한국소통학회 가을 정기 학술대회' 발제문.
- 김춘식 · 이강형 (2012. 12. 1). 취재원 및 인용구 분석. 한국소통학회주최 '2012년 한국소통학회 가을 정기 학술대회' 발제문.
- 문재완 (2012. 11. 9). 프라이버시 보호의 이상과 현실.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주최 '2012년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추계학술대회' 발제문.
- 박영흠 · 김균 (2012). 포스트저널리즘 시대의 이해를 위한 탐색적 연구. 『언론과학연구』, 제12권 제3호, 141-169.
- 박태순 (2012. 11. 16). 콘텐츠산업 법제도 개편 방안 - 심의제도 개편 및 통합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주최 '콘텐츠 미래전략 제11차 정기포럼' 발제문.
- 송경재 (2012. 12. 8). 소셜 미디어의 사회적 영향력과 리터러시 향상 방안. 한국미디어교육학회주최 '제16회 미디어교육전국대회 - 스마트미디어 시대, 새로운 미디어교육 방향 모색' 발제문.
- 심 훈 (2012. 12. 1). 다문화사회와 언론의 역할. 한국소통학회주최 '2012년 한국소통학회 가을

정기 학술대회' 발제문.

- 안동근 (2012. 12. 8). 소셜미디어 시대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주최 '가을철 정기 학술대회' 발제문.
- 안종묵 (2012). 인터넷 미디어의 유형과 뉴스 속성에 따른 뉴스 프레임 분석. 『언론과학연구』, 제12권 제3호, 201-230.
- 양승찬 · 황용석 (2012. 12. 1). 여론조사 보도 분석. 한국소통학회주최 '2012년 한국소통학회 가을 정기 학술대회' 발제문.
- 양재규 (2012. 10). 법을 알고 기사쓰기 87 - 자율과 의무 사이 엠바고 효력은 여전히 방황 중. 『신문과 방송』, 통권 502호, 94-98.
- 양재규 (2012. 11). 법을 알고 기사쓰기 88 - 범죄 피해가 부모 탓? 명예훼손 부르는 위험한 보도. 『신문과 방송』, 통권 503호, 91-95.
- 양재규 (2012. 12). 법을 알고 기사쓰기 89 - 공인 실명보도 업무 연관성 있다면 필수. 『신문과 방송』, 통권 504호, 102-106.
- 양정애 (2012). 일반인들의 온라인 뉴스게시물 제 목붙이기와 내용구성. 『한국언론학보』, 제56권 제5호, 114-140.
- 오창우 (2012). 미디어체계의 폐쇄성과 현실구성의 향상성. 『한국언론학보』, 제56권 제5호, 216-243.

- 윤호진 (2012, 11, 1). 국제뉴스의 미래 그리고 미래의 국제뉴스. 한국언론학회 국제커뮤니케이션 분과주최 ‘글로벌 글로벌 보도전문 채널의 경쟁 전략과 국제뉴스의 미래’ 세미나 발제문.
- 이기형 (2012, 12, 7). 정론, 쟁론, 풍자 그리고 정치 비평의 명암. 한국방송학회주최 ‘선거방송 긴급진단 세미나’ 발제문.
- 이만제 (2012, 11, 23). 디지털 전환에 따른 지역방송의 미래전략. 호남언론학회주최 ‘2012 가을철 세미나’ 발제문.
- 이승선 (2012). ‘지역신문 운영 등’의 입법취지에 대한 비판적 성찰. 『언론과학연구』, 제12권 제3호, 355-389.
- 이승선 (2012, 11). 섬세하고 엄밀한 취재 없다면 차라리 보도하지 말아야 - 인권보호 등 성범죄 보도 개선방안. 『신문과 방송』, 통권 503호, 28-32.
- 이완수 (2012, 12, 7). 지상파 방송뉴스의 대선 보도 평가: 공정성, 균형성, 맥락성. 한국방송학회주최 ‘선거방송 긴급진단 세미나’ 발제문.
- 이완수 (2012, 12, 8). 지역신문 구조 연구: 부산일보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주최 ‘가을철 정기 학술대회’ 발제문.
- 이인호 (2012, 11, 9). 정보프라이버시권의 과잉현상에 대한 비판.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주최 ‘2012년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추계학술대회’ 발제문.
- 이재진 (2012, 12). 정보전달자에서 사실검증자로 역할 변화 - 인터넷실명제 위헌 판결과 저널리즘이 주의해야 할 점. 『신문과 방송』, 통권 504호, 64-67.
- 이종혁 · 길우영 · 강성민 (2012, 10, 13). 뉴스가치(News value) 관련 개념에 대한 구조적 분석: 2차 요인분석(second-order factor analysis)를 통한 뉴스가치 모델 도출. 한국언론학회주최 ‘2012 한국언론학회 가을철 정기 학술대회’ 발제문.
- 이진규 · 문재학 (2012, 11, 9). 방통융합 시대의 지역방송의 경쟁력 강화방안. 부산MBC, 울산MBC, MBC경남, 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주최 ‘제10회 부산울산경남 언론학술상 연구과제 세미나’ 발제문.
- 임종수 (2012, 10, 13). 미디어화: 일상의 미디어에서 미디어의 일상으로. 한국언론학회주최 ‘2012 한국언론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발제문.
- 정경순 (2012, 12, 14). 사이버공간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와 마녀사냥 논란에 관한 연구. 대구경북언론학회, 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주최 ‘2012 제4회 영남지역 대학원생 컨퍼런스 - 영남 언론학의 생태계를 찾아서’ 발제문.
- 정동우 · 황용석 (2012). 공정성 개념에 대한 신문기자들의 인식 차이 연구. 『언론과 사회』, 제20권 제3호, 120-158.
- 정성은 (2012, 11, 2). SNS공간에서 실명성과 조직

- 소속 여부가 의사표현 위축행위에 미치는 영향.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주최 '11월 특별 세미나' 발제문.
- 정용국 (2012. 11). 성범죄를 '이야깃거리'로 취급하는 언론, 시나브로 신뢰 잃는다 - 성범죄 보도에서 점검해볼 세 가지 이슈. 『신문과 방송』, 통권 503호, 24-27.
 - 정의철 (2012. 12. 8). 다문화사회 통합과 방송의 역할.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주최 '가을철 정기 학술대회' 발제문.
 - 정의철 · 김민경 (2012. 12. 1). 다문화사회와 이주민에 대한 뉴스 연구. 한국소통학회주최 '2012년 한국소통학회 가을 정기 학술대회' 발제문.
 - 정준희 (2012. 10. 13). 미디어 환경의 융복합화 조건에서 콘텐츠 산업 진흥의 원칙과 방향성: 콘텐츠 범주의 재정비와 제도적 고찰에 기초하여. 한국언론학회주최 '2012 한국언론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발제문.
 - 조성호 (2012). 지상파 TV 뉴스와 보도 시청행태의 변화. 『언론과학연구』, 제12권 제3호, 455-492.
 - 조재현 (2012. 11. 2). 인터넷실명제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고찰.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주최 '11월 특별세미나' 발제문.
 - 조향제 (2012. 12. 7). 새로운 방송 구도와 정치 문화의 변화. 한국방송학회주최 '선거방송 긴급 진단 세미나' 발제문.
 - 채영길 (2012. 12. 1). 해외 언론의 다문화사회와 이주민에 대한 보도사례 II : 미국. 한국소통학회주최 '2012년 한국소통학회 가을 정기 학술대회' 발제문.
 - 최영재 (2012. 12. 7). 대통령 선거와 방송뉴스의 지적 기능. 한국방송학회주최 '선거방송 긴급 진단 세미나' 발제문.
 - 최은희 (2012. 12. 1). 해외 언론의 다문화사회와 이주민에 대한 보도사례 I : 독일. 한국소통학회주최 '2012년 한국소통학회 가을 정기 학술대회' 발제문.
 - 한혜경 (2012. 11. 9). 지역 뉴스 프로그램 시청패턴에 관한 연구. 부산MBC, 울산MBC, MBC경남, 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주최 '제10회 부산울산경남 언론학술상 연구과제 세미나' 발제문.
 - 홍성구 (2012. 12. 1). 다문화사회와 방송의 역할. 한국소통학회주최 '2012년 한국소통학회 가을 정기 학술대회' 발제문.
 - 황유선 (2012).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의 트위터 정보 전파력 비교 분석. 『한국언론학보』, 제56권 제5호, 350-372.
 - Daniel Trottier (2012. 11. 8). 소셜미디어 감시 : 컨버전스, 위험과 불확실성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주최 '2012 가을 국제세미나 - 빅데이터, 도전과 미래' 발제문.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 안내

사무처 및 서울중재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대표전화 02) 397 - 3114 언론분쟁상담 02) 397 - 3000, 3010, 3100, 3110 팩스 02) 397 - 3089
부산중재부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739(수영동 503-17)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8층 전화 051) 759 - 7083~4 팩스 051) 759 - 7093
대구중재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126 (황금동 541-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전화 053) 763 - 0020~1 팩스 053) 763 - 0242
광주중재부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185 (주월동 1274-2)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A동 5층 전화 062) 676 - 0360~1 팩스 062) 676 - 0362
대전중재부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 450 (용문동 227-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전화 042) 525 - 0778~9 팩스 042) 525 - 0768
경기중재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인계동 1116-1) 경기문화재단 8층 전화 031) 211 - 9022, 9027 팩스 031) 211 - 0223
강원중재부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6(요선동 4-9) 무림빌딩 8층 전화 033) 255 - 2878~9 팩스 033) 255 - 2872
충북중재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남로 64 (산남동 657번지) 이엔젤번호사빌딩 404호 전화 043) 286 - 8081, 8083 팩스 043) 286 - 8084
전북중재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감영로 72 (전동2가 140-11) 전주상공회의소빌딩 303호 전화 063) 288 - 0010, 0981 팩스 063) 288 - 0980
경남중재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95번길 5 (사파동 80) 보고빌딩 601호 전화 055) 263 - 1780, 1787 팩스 055) 263 - 1769
제주중재부	제주도 제주시 남광복 5길 6 (이도2동 1081-3) 현곡빌딩 4층 전화 064) 722 - 3328, 3352 팩스 064) 726 - 3201